

第2代國會經過報告書

國會事務處

第2代 國會經過報告書

國會事務處

不為所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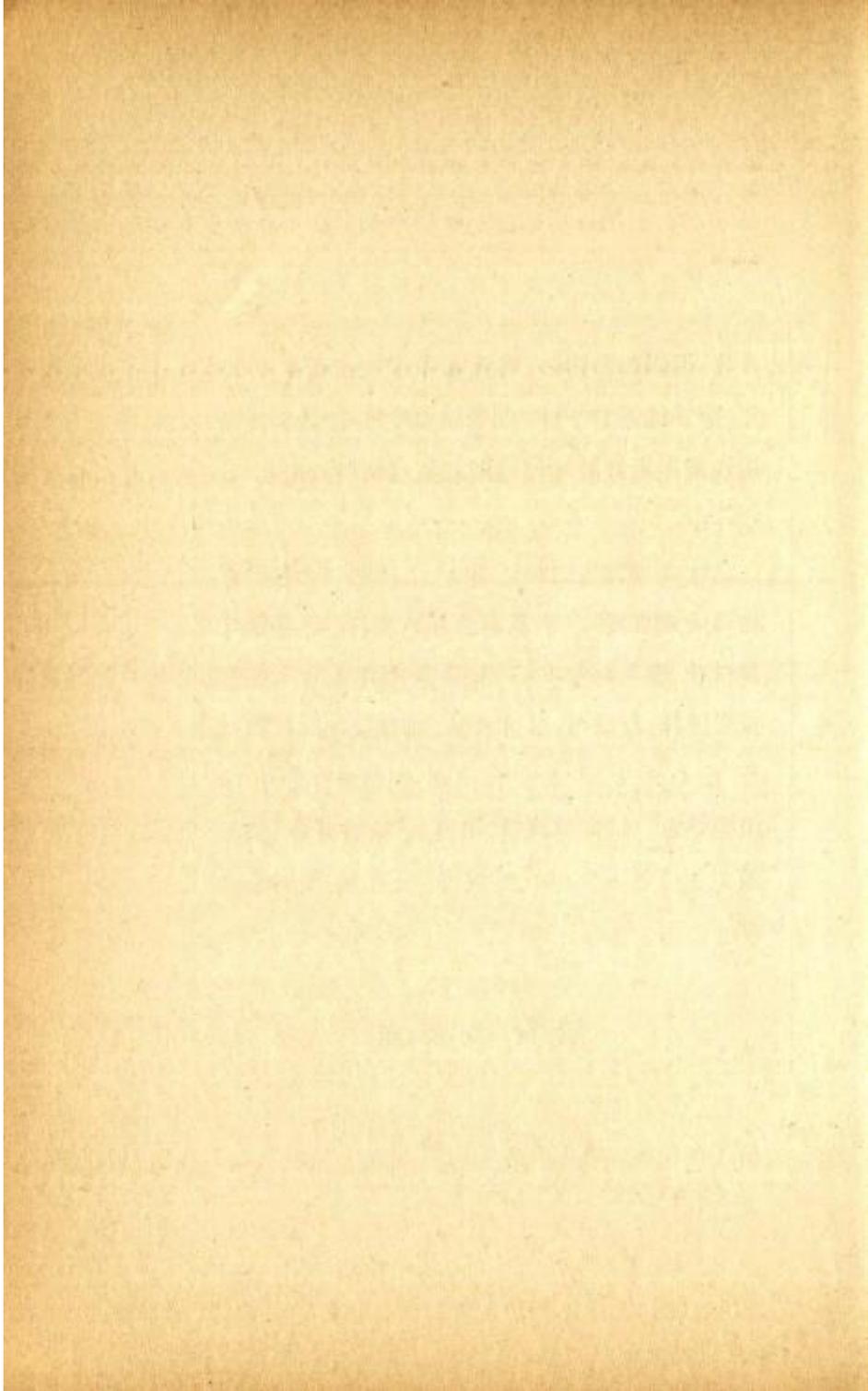
不為所動

이 經過報告書는 事務處의 年次計劃에 의하여 第5代國會부터 制憲國會까지의 代別經過報告書作成計劃의 一環으로 發刊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第2代國會任期中인 1950年 6月25日 北韓傀儡集團의 不法南侵으로 因하여 多數의 資料가 燒失되었거나 未備된 關係로 本經過報告書의 作成에 있어서는 會議錄 등의 資料를 中心으로 하였으며 現在 經過報告書의 作成基準에 따라 整理된 關係로 他資料와 統計數字上에는 若干의 差異가 있음을 附言합니다.

1982. 12.

國會事務處



目 次

1. 集會 및 會期

가. 集會公告日과 集會日.....	3
나. 會期・本會議開議日數와 時間.....	3
다. 國會議事堂의 移轉.....	4
라. 委員會와 그 開會日數	5

2. 議員과 委員

가. 議員姓名과 그 異動	6
(1) 議員姓名	6
(2) 議員異動	16
나. 交涉團體와 그 變遷	19
다. 委員과 그 姓名	51
(1) 全院委員	51
(2) 常任委員	52
(3) 特別委員	78

3. 國務總理・國務委員과 政府委員

가. 國務總理	106
나. 國務委員	106
다. 政府委員	109

4. 議 案

가. 議案提出數와 그 成績	113
----------------------	-----

(1) 豫算案斗 決算	114
(2) 法律案	116
(가) 議員發議法律案	116
(나) 政府提出法律案	129
(3) 法律案再議斗件	142
(4) 同意(承認)案	145
(5) 建議案	154
(6) 決議案	164
(7) 重要動議	189
나. 國政監查斗 事件調查報告	203
다. 選舉斗 任命承認	206
라. 請願提出數斗 그 成績	208

5. 質問斗 答辯

가. 緊急質問斗 答辯	221
나. 質問斗 答辯	227

6. (附), 式辭斗 致辭

233

概 況

第2代國會는 1950年 5月 30日 民議院總選舉를 實施하여 國會法 第2條의 規定에 의거 同年 6月 19日 最初의 集會를 가짐으로써 構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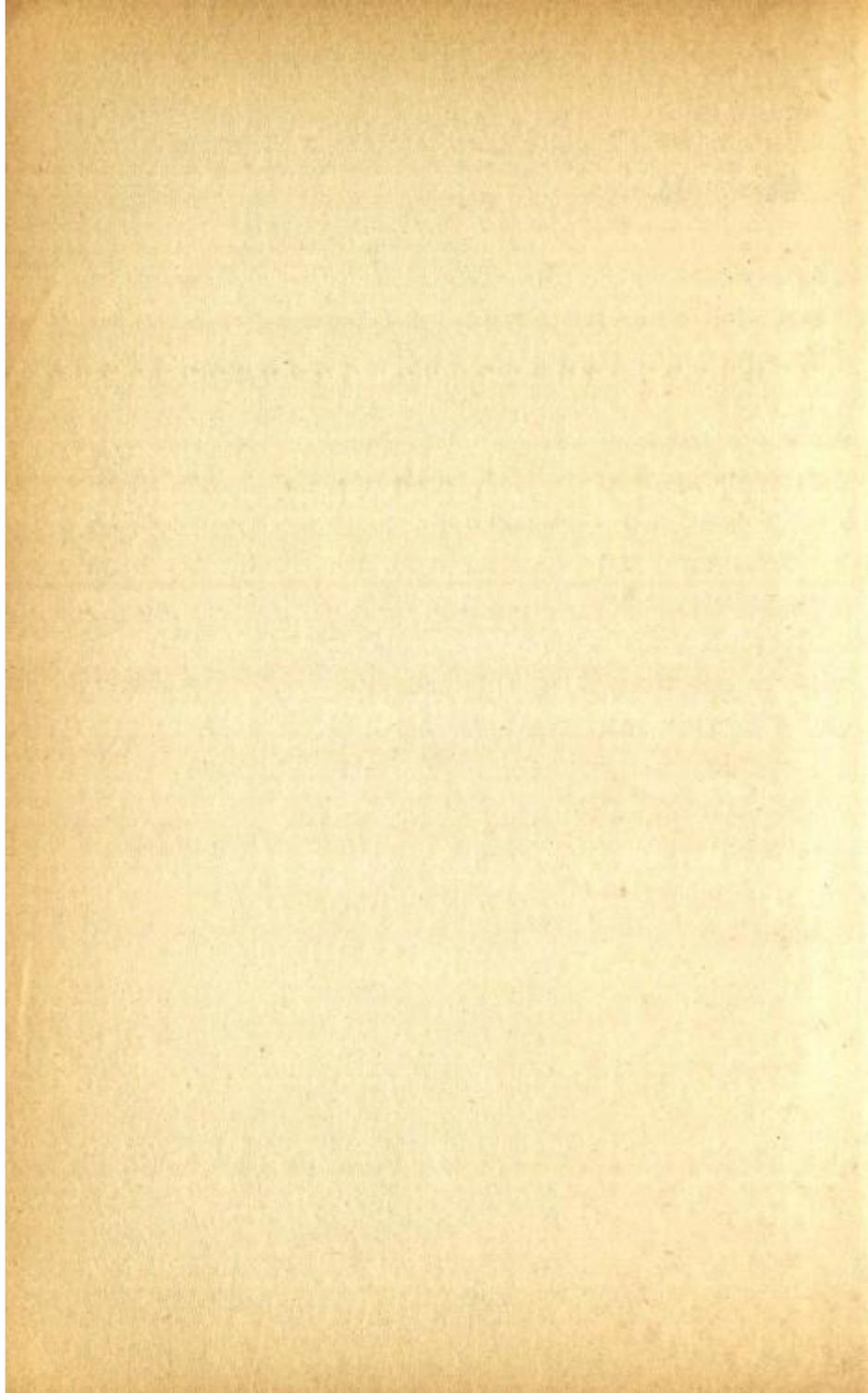
第2代國會는 第7回國會부터 第18回國會까지 열두번의 會期(定期會 4回 臨時會 8回)를 가졌는바 總會期 1,310日 동안 631次의 本會議을 열었으며 會議總時間은 1,350時間 58分이었고 1日 平均會議時間은 2時間 9分이었다.

第2代國會中 議員異動狀況을 보면, 總選舉當時의 議員在籍數는 210人이었다. 그러나 1950年 6月 25日 北韓傀儡集團의 不法南侵으로 因하여 行方不明된 議員이 27人, 死亡한 議員이 8人으로 議員在籍數는 175人이었으며 “國會議員在籍數에 關한 特別措置法 (1950. 12. 21 公布)”이 制定되고 死亡한 議員으로 因한 補闕選舉로 當選된 議員이 8人으로 在籍議員數는 183人이 되었다.

그러나 그 以後 辭職한 議員이 1人, 退職한 議員이 1人, 死亡한 議員이 2人으로 任期終了時의 議員在籍數는 179人이었다.

또한 國會議事堂은 6. 25事變으로 因하여 1950年 7月 27日(第8回國會)부터는 大邱·釜山等地로 移轉하였다.

第2代國會中 提出된 議案의 總件數는 1,197件인바 그중 可決이 871(法律 確正으로 看做한 4件 包含)件, 否決이 26件, 廢棄가 156件, 撤回가 11件, 保留가 22件, 返戻가 6件, 그리고 會期不繼續으로 因한 廢棄가 105件이었다.



1. 集會 및 會期

가. 集會公告日과 集會日

回 別	會 別	集 會 要 求 者	集會公告日	開 會 日	閉 會 日
第7回	臨時會	國會法第2條에 의거		1950. 6. 19	1950. 6. 27
第8回	臨時會	議 長	1950. 7. 21	1950. 7. 27	1950. 11. 25
第9回	臨時會	1950. 12. 4 在京議員82人이 非公式會議로 國會召集을 決議	1950. 12. 1	1950. 12. 8	1950. 12. 16
第10回	定期會	憲法第34條에 의거		1950. 12. 20	1951. 5. 30
第11回	臨時會	白南軾議員外 46人	1951. 5. 25	1951. 5. 31	1951. 12. 19
第12回	定期會	憲法第34條에 의거		1951. 12. 20	1952. 6. 30
第13回	臨時會	李在鶴議員外 61人	1952. 6. 23	1952. 7. 1	1952. 9. 10
第14回	臨時會	大統領	1952. 10. 8	1952. 10. 15	1952. 12. 19
第15回	定期會	憲法第34條에 의거		1952. 12. 20	1953. 5. 30
第16回	臨時會	吳誠煥議員外 在籍議員 4分之1 以上議員	1953. 5. 28	1953. 6. 3	1953. 10. 20
第17回	臨時會	邊鎮甲議員外 47人	1953. 11. 1	1953. 11. 10	1953. 12. 19
第18回	定期會	憲法第34條에 의거		1953. 12. 20	1954. 4. 30

나. 會期 · 本會議開議日數와 時間

回 別	會 別	會 期	開議日數	會 議 總 時 間	會 議 1 日 平 均 時 間
第7回	臨時會	9日	6日		
第8回	臨時會	122日	58日	135時間15分	2時間20分
第9回	臨時會	9日	6日	8時間53分	1時間29分
第10回	定期會	162日	90日	218時間 5分	2時間26分
第11回	臨時會	203日	113日	251時間 5分	2時間13分
第12回	定期會	193日	86日	154時間25分	1時間48分

回別	會別	會期	開議日數	會議總時間	會議1日平均時間
第13回	臨時會	72日	29日	65時間10分	2時間15分
第14回	臨時會	66日	38日	90時間45分	2時間23分
第15回	定期會	162日	77日	173時間15分	2時間15分
第16回	臨時會	140日	61日	114時間	1時間52分
第17回	臨時會	40日	18日	53時間10分	2時間57分
第18回	定期會	132日	49日	86時間55分	1時間46分
計		1,298日 (1,310日)	625日 (631日)	1,350時間58分	2時間 9分

備考：第7回國會는 1950年 6月 25日 北韓傀儡集團의 不法南侵으로 因하여 1950年 6月 27日 새벽會議를 最終으로 自然閉會되었는바 當時의 資料不在로 會議狀況을 記載치 못하였으며 ()內는 7回 統計를 算入한 것임.

다. 國會議事堂의 移轉

第2代國會中 國會議事堂을 다음과 같이 移轉하였음.

會期別	所在期間	所 在 地	備 考
第7回	1950. 6. 19 ~6. 26	서울特別市 世宗路 中央廳	國會議事堂
第8回	1950. 7. 27 ~8. 17	慶尙北道 大邱市 文化劇場	國會議事堂(6. 25動亂時)
	1950. 9. 1 ~10. 6	慶尙南道 釜山市 文化劇場	"
	1950. 10. 7 ~11. 26	서울特別市 世宗路 中央廳	"
第9回~ 第10回	1950. 12. 8 ~1951. 1. 3	서울特別市 太平路 (現世宗文化會館別館)	"
第10回~ 第11回	1951. 1. 4 ~6. 11	慶尙南道 釜山市 釜山劇場	"
第11回~ 第16回	1951. 6. 27 ~1953政 府遷都前	慶尙南道 釜山市 慶南道廳 武德殿	憲法과 國會法改正으로 第 13回國會以後는 民議院議 事堂(6. 25動亂時)
第16回~ 第18回	1953. 9. 21 -1954. 5. 30	서울特別市 世宗路 中央廳	民議院議事堂(遷都)

라. 委員會와 그 開會日數

〈本資料는 國會10年誌에서 抄萃〉

委員會別	第7回	第8回	第9回	第10回	第11回	第12回	第13回	第14回	第15回	第16回	第17回	第18回	計
(法 制 司 法)	9	122	9	162	203	193	72	66	162	140	40	132	1,310
(外 務 國 防)				22	29	17	9	13	25	22	4	24	165
(內 務 治 安)				9	29	22	1	10	37	37	4	24	173
(國 防 經 濟)				27	30	18	9	14	33	31	8	25	195
(商 工 業)				30	27	27	6	9	46	52	7	36	240
(農 林 漁)				34	69	36	12	25	62	25	5	33	301
(文 教 社 會)				19	32	20	7	6	12	7	5	8	116
(文 教 社 會 保 健)				40	58	40	28	31	66	58	17	42	380
(交 通 遞 信)				16	27	20	5	10	25	13	7	19	142
(懲 戒 實 格)				32	41	19	8	10	34	29	4	21	198
(國 會 運 營)				21	20	17	4	7	30	12	3	17	131
(總 算 決 算)				4	6	3	-	3	6	5	6	1	34
總 計				26	11	15	2	13	75	62	14	41	259
總 計				280	379	254	91	151	482	364	87	316	2,404

備考 1. 第7回, 第8回, 第9回 國會는 資料不在로 記載치 못함.

2. ()內의 委員會는 第10回國會 以前의 常任委員會로서 第10回國會에 國會法의 改正으로 因하여 常任委員會의 種數가 變更되었고 ()內 名記되었으나 統計가 記錄된 委員會는 第10回國會 以後에도 계속 存續된 委員會이며 豫算決算委員會는 第15回 國會法改正時 追加된 委員會임.

2. 議員과 委員

가. 議員姓名과 그 異動

(1) 議員姓名(가·나·다順)

第2代國會中 議員의 姓名은 다음과 같다.

議 長	申 翼 熙	1950. 6. 19	被選
		1952. 6. 18	任期滿了
		1952. 7. 10	再選
		1954. 5. 30	任期滿了
副 議 長	張 澤 相	1950. 6. 19	被選
		1952. 5. 6	辭任
"	曹 奉 岩	1950. 6. 19	被選
		1952. 6. 18	任期滿了
		1952. 7. 10	再選
		1954. 5. 30	任期滿了
"	金 東 成	1952. 5. 8	被選
		1952. 6. 18	任期滿了
"	尹 致 暎	1952. 7. 10	被選
		1954. 5. 30	任期滿了
臨 時 議 長	申 翼 熙	1952. 6. 18~7. 10	
"	曹 奉 岩	"	
"	金 東 成	"	

1952. 6. 18 第12回 第80次 本會議에서 議長·副議長의 任期가 滿了 되었으나 特別한 事由(政局混亂)로 臨時議長으로 3人을 選出함.

選 舉 區	姓 名	黨 籍	備 考
南 濟 州	康慶玉	無 所 屬	
北 濟 州 乙	姜昌琿	"	
長 興	高永完	民主國民黨	
仁 川 乙	郭尙勳	無 所 屬	
清 原 乙	郭義榮	"	
高 靈	郭泰珍	民主國民黨	
舒 川	丘德煥	大韓獨立促 成 國民會	拉北

選 舉 區	姓 名	黨 籍	備 考	
唐 義 達 永 馬 延 蔚 寶 開 公 陝 灑 東 昌 昌 青 茂 高	津 乙 城 城 川 甲 山 白 甲 珍 城 城 州 乙 川 乙 陽 萊 甲 乙 松 朱 甲	具乙會 權炳魯 權五勳 權仲敦 權泰郁 金庚培 金光俊 金洛五 金東成 金明東 金命洙 金汶鏞 金凡父 金秉嶺 金奉才 金鳳祚 金相賢 金秀學	無 所 屬 一民俱樂部 無 所 屬 " " 大韓國民黨 無 所 屬 大韓獨立促 成 國 民 會 無 所 屬 大韓國民黨 民主國民黨 自 由 黨 無 所 屬 大韓青年團 無 所 屬 " " " 民主國民黨 " 無 所 屬 民主國民黨 無 所 屬 大韓國民黨	1951. 2. 2 死亡 拉北 1951. 1. 9 死亡 1951. 2. 5 補關選舉에서 當選 1954. 1. 30 退職 拉北
安 順 保 務 西 天	東 甲 天 寧 甲 大 門 甲 安	金始顯 金良洙 金永善 金用茂 金用雨 金鏞化	民主國民黨 " 無 所 屬 民主國民黨 無 所 屬 大韓國民黨	

選	舉	區	姓 名	黨 籍	備 考
密	陽	乙	金亨德	無 所 屬	第8回 死亡 (死亡月日未詳)
潭		陽	金洪鏞	"	
龍	山	乙	南松鶴	大韓國民黨	拉北
陝	川	甲	盧企容	無 所 屬	
清		州	閔泳復	"	
海	南	乙	朴棋培	"	
軍		威	朴晚元	"	
和		順	朴珉基	"	
尙	州	甲	朴性宇	"	
大	邱	乙	朴性夏	中 央 佛 教 會 委 員	
江	陵	甲	朴世東	大韓國民黨	
鍾	路	甲	朴順天	大韓婦人會	
春		城	朴勝夏	無 所 屬	拉北
完	州	甲	朴良載	"	
完	州	乙	朴榮來	"	
義	城	甲	朴永出	大韓國民黨	拉北
咸		陽	朴正圭	大韓獨立促會 成 國 民 會	
全		州	朴定根	無 所 屬	拉北
富		川	朴濟煥	"	
禮		山	朴哲圭	"	
光		州	朴哲雄	"	拉北
公	州	甲	朴忠植	"	
高	興	甲	朴八峰	"	
慶		山	方萬洙	"	

選	舉	區	姓 名	黨 籍	備 考
星		州	婁相淵	無 所 屬	
達		城	婁恩希	大韓國民黨	1952. 2. 5 補選選舉에서 當選
尙	州	乙	白南軾	大韓獨立促 成 國民會	
長		淵	白象圭	無 所 屬	拉北
群		山	邊光鎬	民主國民黨	
長		城	邊鎮甲	無 所 屬	
高	興	乙	徐珉濂	"	
夔	津	甲	徐範錫	"	
統	營	甲	徐相淵	無 所 屬	
成		平	徐相國	民主國民黨	
羅	州	乙	徐相德	大韓青年團	
鬱		陵	徐二煥	一民俱樂部	
梁		山	徐璋珠	無 所 屬	
永		同	成得煥	民主國民黨	
益	山	甲	蘇宜奎	"	
金	堤	甲	宋邦鍾	無 所 屬	
沃		川	申珏休	民主國民黨	
開		豐	申光均	一民俱樂部	
井	邑	甲	辛錫斌	無 所 屬	拉北
高	敞	乙	愼鋪頊	"	
昌		寧	辛容勳	"	拉北
廣		州	申翼熙	民主國民黨	
居		昌	愼重穆	無 所 屬	
瑞	山	乙	安萬福	"	

選	舉	區	姓 名	黨 籍	備 考	
橫 慶 平 康 成 開 任 光 金 楊 槐 麻 蔚 夔 鍾 金 中 龍 晉 洪 靈 永 善 西	州	城 甲 澤 津 安 慶 實 陽 陵 平 山 甲 甲 乙 乙 泉 甲 仁 州 城 岩 乙 山 乙	安相漢	無 所 屬	拉北	
			安龍大	"		
			安在鴻	"		
			梁炳日	民主國民黨		
			梁又正	無 所 屬		1953. 12. 24 辭職
			梁在廈	無 所 屬		拉北
			嚴秉學	大韓國民黨		
			嚴祥雙	無 所 屬		
			呂永復	"		
			呂運弘	"		
浦 山 津 路 區	浦 山 津 路 區	山 甲 甲 乙 乙 泉 甲 仁 州 城 岩 乙 山 乙	延秉吳	大韓國民黨	拉北	
			吳誠煥	"		
			吳緯泳	無 所 屬		
			吳誼寬	"		
			吳夏英	"		
			禹 文	大韓國民黨		
			元世勳	民主自 主 聯 盟		拉北
			柳驥秀	無 所 屬		拉北
			柳德天	"		
			俞昇潁	"		
登 浦 山 門	登 浦 山 門	乙 山 乙	柳寅坤	大韓國民黨	拉北	
			柳 鴻	大韓獨立促 成國民會		
			陸洪均	大韓國民黨		
			尹琦雙	無 所 屬		

選	舉	區	姓 名	黨 籍	備 考
原	山	州	尹吉重	無 所 屬	
		乙	尹 潭	大韓獨立促 成國民會	
論	南	川	尹璵淳	無 所 屬	
		甲	尹泳善	民主國民黨	
抱	華	甲	尹在根	大韓國民黨	
		乙	尹致燾	"	
海	州	乙	尹宅重	民主國民黨	1952. 2. 5 補關選舉에서 當選
		乙	李甲成	無 所 屬	
江	邱	丙	李教善	"	
		城	李教承	"	
公	浦	山	李奎甲	大韓國民黨	
		山	李肯鍾	無 所 屬	
益	山	岐	李道榮	"	1951. 1. 24 死亡
		甲	李東煥	"	
大	州	岐	李範昇	"	1952. 2. 5 補關選舉에서 當選
		清	李炳洪	"	
安	清	東	李相慶	大韓獨立促 成國民會	拉北
		陽	李相喆	無 所 屬	
金	餘	甲	李錫基	"	
		寧	李時穆	"	
牙	川	甲	李容高	"	
		興	李載濬	大韓國民黨	
燕	川	川	李在鶴	"	
		甲	李鍾麟	一民俱樂部	
清	山	甲			1950. 9 死亡 (日字未詳)

選 舉 區	姓 名	黨 籍	備 考		
利 金 扶 平 麻 旌 楊 統 裡 鎮 求 陰 求 慶 醴 木 錦 三 城 釜 東 漆 務 釜	川	李宗聖	無 所 屬	拉北	
	乙	李鍾壽	"		
	乙	李鍾純	"		
	昌	李鍾郁	大韓獨立促會 成國民黨		
	乙	李宗欽	朝 民 黨		
	善	李鍾榮	大韓獨立促會 成國民黨		1954. 2. 1 死亡
	乙	李鎮洙	大韓國民黨		
	乙	李采五	無 所 屬		
	里	李春基	"		
	川	李忠煥	"		
	禮	李判烈	民主國民黨		1950. 12. 9 死亡
	城	李鶴林	無 所 屬		
	禮	李漢昌	自 由 黨		1950. 2. 5 補關選舉에서 當選
	乙	李協雨	大韓青年團		
泉	李浩根	"			
浦	林基奉	大韓勞總			
山	任永信	大韓國民黨			
陟	任容淳	大韓青年團			
乙	任興淳	民主國民黨			
乙	張建相	無 所 屬	拉北		
門	張連松	"			
谷	張澤相	"			
乙	張洪瑛	民主國民黨			
山	錢鎮漢	大韓勞總	1952. 2. 5 補關選舉에서 當選		

選	舉	區	姓 名	黨 籍	備 考
釜	山	丁	鄭基元	無 所 屬	
莞		島	鄭南局	民主國民黨	
奉		化	鄭文欽	無 所 屬	
光	州	甲	鄭純朝	大韓獨立促 成國民會	
光	州	乙	鄭仁值	"	拉北
中	區	乙	鄭一亨	無 所 屬	
麗		水	鄭在浣	"	
靈		光	鄭憲祚	大韓青年團	
泗		川	鄭憲柱	無 所 屬	
大	邱	甲	趙瓊奎	"	
永	登 浦	甲	趙光燮	朝 民 黨	
永	川	乙	曹圭高	無 所 屬	拉北
忠		州	趙大衍	"	
珍		島	曹秉雯	"	
仁	川	丙	曹奉岩	大韓國民黨	
城		北	趙素昂	社 會 黨	拉北
谷		城	趙 淳	大韓青年團	
楊	州	甲	趙時元	社 會 黨	
南		原	趙定勳	無 所 屬	
丹		陽	趙鍾勝	大韓國民黨	拉北
南		海	趙柱泳	無 所 屬	
英		陽	趙憲泳	"	拉北
沃		溝	池蓮海	"	
城	東	甲	池青天	民主國民黨	

選 舉 區	姓 名	黨 籍	備 考
高 陽	崔國鉉	民主國民黨	
報 恩	崔勉洙	大韓國民黨	
扶 安	崔丙柱	無 所 屬	拉北
密 陽	崔成雄	大韓青年團	
釜 山	崔元鳳	無 所 屬	1950. 11. 10 死亡
迎 日	崔遠壽	"	
金 海	崔瑗浩	民主國民黨	
金 堤	崔允鎬	無 所 屬	第 8 回 死亡 (死亡年月日未詳) 1952. 2. 5 補闕選舉에서 當選
金 堤	崔主日	大韓青年團	
江 陵	崔獻吉	大韓國民黨	
寧 越	太完善	無 所 屬	
晉 陽	河萬漢	"	
盈 德	韓國源	"	
堤 川	韓弼洙	"	
水 原	洪吉善	民主國民黨	
加 平	洪翼杓	無 所 屬	
春 川	洪昌燮	"	
麗 川	黃炳珪	大韓國民黨	
龍 山	黃聖秀	無 所 屬	

備考：1. 黨籍欄은 1950年 5月 30日 選舉當時의 黨派를 表示하였으며 補選 議員은 補闕選舉當時의 黨派를 表示한 것임.

2. “拉北”은 1950年 6月 25日 以後 北韓傀儡集團에 의하여 北韓으로 拉致된 議員임.

(2) 議員異動

第2代國會中 議員의 異動은 다음과 같다.

選 舉 區	姓 名	黨 籍	異動年月日 및 事由
서울特別市鍾路乙區	吳夏英	無 所 屬	6.25 ^에 拉北
서울特別市 東大門	張連松	〃	〃
서울特別市中區甲區	元世勳	民 主 自 主 聯 盟	〃
서울特別市 西大門乙區	尹琦燮	無 所 屬	〃
서울特別市 城 北	趙素昂	社 會 黨	〃
京畿道 利 川	李宗聖	無 所 屬	〃
京畿道 龍 仁	柳驥秀	〃	〃
京畿道 平 澤	安在鴻	〃	〃
京畿道 華城乙區	金雄鎭	大韓國民黨	〃
京畿道 長 湍	白象圭	無 所 屬	〃
京畿道 延白甲區	金庚培	大韓國民黨	〃
忠清北道 丹 陽	趙鍾勝	〃	〃
忠清南道 論山甲區	金憲值	無 所 屬	〃
忠清南道 舒 川	丘德煥	大韓獨立促 成 國 民 會	〃
忠清南道 禮 山	朴哲圭	無 所 屬	〃
全羅北道 井邑甲區	辛錫斌	〃	〃
全羅北道 完州乙區	朴榮來	〃	〃
全羅北道 扶 安	崔丙柱	〃	〃
全羅南道 務安甲區	金用茂	民主國民黨	〃
全羅南道 光山乙區	鄭仁值	大韓獨立促 成 國 民 會	〃

選 舉 區	姓 名	黨 籍	備 考
慶尙北道 尙州甲區	朴性宇	無 所 屬	6.25 ⁴ 拉北
慶尙北道 英 陽	趙憲泳	"	"
慶尙北道 永川乙區	曹圭尚	"	"
慶尙北道 聞 慶	梁在廈	"	"
慶尙南道 釜山乙區	金七星	無 所 屬	"
慶尙南道 昌 寧	辛容勳	"	"
慶尙南道 河 東	李相慶	大韓獨立促 成國民會	"
忠清南道 燕 岐	李肯鍾	無 所 屬	1951. 1.24 死亡
"	李範昇	"	1952. 2. 5 補關選舉에서 當選
忠清南道 公州乙區	金明東	大韓國民黨	1951. 1. 9 死亡
"	尹致暎	"	1952. 2. 5 補關選舉에서 當選
忠清南道 瑞山甲區	李鍾麟	一民俱樂部	1950. 9 (日字未詳) 死亡
"	金濟能	自 由 黨	1952. 2. 5 補關選舉에서 當選
全羅北道 金堤乙區	崔允鎬	無 所 屬	第8回國會 死亡(年月日未詳)
"	崔主日	大韓青年團	1952. 2. 5 補關選舉에서 當選
全羅南道 潭 陽	金洪鏞	無 所 屬	第8回國會 死亡(年月日未詳)
"	金汶鏞	自 由 黨	1952. 2. 5 補關選舉에서 當選
全羅南道 求 禮	李判烈	民主國民黨	1950.12. 9 死亡
"	李漢昌	自 由 黨	1952. 2. 5 補關選舉에서 當選
慶尙北道 達 城	權五勳	無 所 屬	1951. 2. 2 死亡
"	裴恩希	大韓國民黨	1952. 2. 5 補關選舉에서 當選
慶尙南道 釜山戊區	崔元鳳	無 所 屬	1950.11.10 死亡
"	錢鑽漢	大韓勞總	1952. 2. 5 補關選舉에서 當選
慶尙北道 安東甲區	金始顯	無 所 屬	1954. 1.30 退職

選 舉 區	姓 名	黨 籍	備 考
忠清南道 大 德	金從會	自 由 黨	1953. 5. 27 死亡
慶尙南道 咸 安	梁又正	〃	1953. 12. 24 辭職
江 原 道 旌 善	李鍾榮	無 所 屬	1954. 2. 1 死亡

<參 考>

6. 25事變으로 因하여 行方不明된 議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國會議員在籍數에 關한特別措置法」을 制定하여 在籍議員數를 最初의 在籍議員 210人에서 同法에 의한 27名을 除外한 183人으로 함.

國會議員在籍數에 關한特別措置法^(1950. 12. 21 公布)_{法律 第173號}

6. 25事變으로 因하여 行方不明이 된 別表에 列記한 議員은 國會에 다시 登錄할 때까지 在籍議員數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附 則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別 表)

元世勳 李宗聖 金庚培 崔丙柱 吳夏英 柳驥秀 趙鍾勝
 張連松 安在鴻 金憲植 鄭仁植 尹琦燮 金雄鎮 丘德煥
 趙素昂 白象圭 朴哲圭 金用茂 趙憲永 梁在履 朴榮來
 曹圭高 金七星 李相慶 辛錫斌 朴性宇 辛容勳

나. 交涉團體와 그 變遷

各交涉團體의 構成과 所屬議員의 名簿는 다음과 같다.

共和俱樂部 (1951. 3. 4~1951. 5. 29)

加入年月日	姓 名	備 考	加入年月日	姓 名	備 考
1951. 3. 4 (3. 2)	金東成	1951. 5. 29 共和民政會에 加入	1951. 3. 4 (3. 2)	徐珉濠	1951. 5. 29 共和民政會에 加入
"	鄭一亨	"	"	嚴詳燮	"
"	金用雨	"	"	李采五	"
"	朴順天	"	"	鄭憲柱	"
"	趙大衍	"	"	郭尙勳	"
"	李道榮	"	"	韓弼洙	"
"	李容島	"	"	洪翼杓	"
"	李宗鉉	"	"	太完善	"
"	安相漢	"	"	趙柱泳	"
"	李鍾壽	"	"	柳德天	"
"	金澤天	"	"	張洪瑛	1951. 3. 26 脫退 (民友會에 加入)
"	尹璵淳	"	"	郭義榮	"
"	李相喆	"	"	李錫基	1951. 5. 29 共和民政會에 加入
"	李時穆	"	"	具乙會	"
"	閔泳復	"	"	金凡父	"
"	金奉才	"	"	徐相灝	"
"	金永善	"	"	朴祺培	"
"	尹吉重	"	"	金宗順	"
"	吳緯泳	"	"	金鍾烈	"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1. 3. 4 (3. 2)	金洛五	1951. 5. 29 共和民政會에 加入	(1951. 3. 2)	權仲敦	1951. 3. 3 脫退 (民友會에 加入)
"	朴井圭	"	"	金光俊	"
1951. 4. 3	李協雨	1951. 4. 3 新政同志會에서 加入 1951. 5. 29 共和民政會에 加入	"	金意俊	"
(1951. 3. 2)	李鶴林	1951. 3. 3 脫退 (民友會에 加入)	"	金智泰	"
"	金翼基	"	"	李忠煥	"
			"	禹文	"

備考：共和俱樂部의 活動은 1951年 3月 2日부터 始作되었으나 正式으로
交涉團體로 構成되어 名簿가 提出된 것은 1951年 3月 4日임.

新政同志會 (1951. 3. 4~1951. 5. 29)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1. 3. 4 (2. 28)	南松鶴	1951. 5. 29 共和民政會에 加入	1951. 3. 4 (2. 28)	李敦善	1951. 5. 29 共和民政會에 加入
"	金從會	"	"	林基奉	"
"	黃聖秀	"	"	李甲成	"
"	趙定勳	"	"	李敦承	"
"	朴勝夏	"	"	朴濟煥	"
"	金泰熙	"	"	金正植	"
"	李浩根	"	"	李東煥	"
"	金判錫	"	"	徐璋珠	"
"	崔成雄	"	"	鄭基元	"
"	任容淳	"	"	鄭憲祚	"
"	金仁善	"	"	金益魯	"
"	金正科	"	"	李協雨	1951. 4. 3 脫退 (共和俱樂部에 加入)
"	洪昌燮	"	"	金亨德	1951. 5. 29 共和民政會에 加入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1. 3. 4 (2. 28)	鄭文欽	1951. 5. 29 共和民政會에 加入	1951. 3. 4 (2. 28)	李鍾榮	1951. 5. 29 共和民政會에 加入
"	陸洪均	"	"	柳寅坤	"
"	金秉鎭	"	"	嚴秉學	"
"	金正實	"	"	尹在根	"
"	池蓮海	"	"	趙瓊奎	"
"	朴晚元	"	"	朴世東	"
"	宋邦鏞	"	"	金俊熙	"
"	慎鏞頊	"	"	吳誼寬	"
"	康慶玉	"	"	李鍾郁	"
"	李在鶴	"	"	朴永出	"
"	金仁泰	"	"	李奎甲	"
"	李載濬	"	"	梁又正	"
"	朴定根	"	"	崔獻吉	"
"	金相賢	"	"	張建相	"
"	安龍大	"	"	金鏞化	"
"	延秉吳	"	"	吳誠煥	"
"	朴良載	"	"	崔勉洙	"
"	姜昌琿	"	"	黃炳珪	"
"	呂永復	"	"	權泰郁	"
"	李鎮洙	"	"	邊鎮甲	"
"	金字城	"	(2. 28)	申光均	1951. 3. 3 脫退 (民友會에 加入)
"	呂連弘	"	(")	趙光燮	"
"	慎重穆	"	(")	朴哲雄	"
"	趙時元	"	(")	崔遠壽	"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2. 28)	朴性夏	1951. 3. 3 脫退 (民友會에 加入)	(2. 28)	金鳳祚	1951. 3. 3 脫退 (民友會에 加入)
(〃)	徐二煥	〃	(〃)	方萬洙	〃

備考：新政同志會의 活動은 1951年 2月 28日부터 始作되었으나 正式으로 交涉團體가 構成되어 名簿가 提出된 것은 1951年 3月 4日임.

民友會 (1951. 3. 4~1952. 6. 28)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1. 3. 4 (3. 3)	申光均	1952. 6. 28 民友會 解體(無所屬으로)	1951. 3. 4 (3. 3)	趙光燮	1952. 1. 17 脫退 (自由黨①에 加入)
〃	禹文	1951. 11. 12 脫退 (無所屬으로)	〃	方萬洙	〃
〃	韓國源	1952. 6. 28 民友會 解體(無所屬으로)	〃	朴哲雄	〃
〃	李鶴林	1952. 5. 19 脫退(自由 黨(合同)에 加入)	1951. 3. 26	張洪球	1951. 3. 26 共和俱樂部에서 加入
〃	李忠煥	1952. 6. 12 脫退(自由 黨(合同)에 加入)	〃	郭義榮	〃
〃	朴性夏	1952. 6. 3 脫退(自由 黨(合同)에 加入)	1951. 7. 25	韓弼洙	1951. 7. 25 無所屬에서 加入 1952. 6. 28 民友會 解體(無所屬으로)
〃	金鳳祚	1952. 6. 27 脫退(自由 黨(合同)에 加入)	〃	金相賢	1951. 7. 25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6. 3 脫退(自由 黨(合同)에 加入) 1952. 6. 16 自由黨合同에서 加入 1952. 6. 28 民友會 解體(無所屬으로)
〃	金意俊	1952. 6. 28 民友會 解體(無所屬으로)			
〃	河萬洙	〃			
〃	金智泰	〃			
〃	金溶泰	1952. 1. 17 脫退 (自由黨①에 加入)			
〃	金翼基	1952. 6. 12 脫退(自由 黨(合同)에 加入)	〃	尹吉重	1951. 7. 25 無所屬에서 加入 1952. 1. 17 脫退 (自由黨①에 加入)
〃	崔遠壽	1952. 1. 17 脫退 (自由黨①에 加入)	〃	白南軾	1951. 7. 25 無所屬에서 加入 1952. 6. 28 民友會 解體(無所屬으로)
〃	權仲敦	1952. 6. 28 民友會 解體(無所屬으로)			
〃	金光俊	〃			
〃	徐二煥	〃	〃	李東煥	1951. 7. 25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6. 28 民友會 解體(無所屬으로)
〃	權炳魯	〃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1. 7. 25	權泰郁	1951. 7. 25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5. 19 脫退(自由 黨(合同)에 加入)	1951. 7. 25	柳 鴻	1951. 7. 25 無所屬에서 加入 1952. 6. 28 民友會 解體(無所屬으로)
"	金益魯	1951. 7. 25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1. 17 脫退 (自由黨①에 加入)	"	陸洪均	1951. 7. 25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1. 17 脫退 (自由黨①에 加入)
"	襄相淵	1951. 7. 25 民主國民黨에서 加入 1952. 6. 28 民友會 解體(無所屬으로)	"	呂永復	1951. 7. 25 無所屬에서 加入 1952. 6. 28 民友會 解體(無所屬으로)
"	朴世東	1951. 7. 25 無所屬에서 加入 1952. 1. 17 脫退 (自由黨①에 加入)	"	金鍾烈	1951. 7. 25 無所屬에서 加入 1952. 6. 28 民友會 解體(無所屬으로)

備考: 1. 民友會의 活動은 1951年 3月 3日부터 始作되었으나 正式으로
交沙團體로 構成되어 名簿가 提出된 것은 1951年 3月 4日임.
2. 民友會는 1951年 6月 28日 所屬議員이 19名이 되어 國會法 第
14條의 規定에 의하여 解體됨.

民主國民黨 (1951. 3. 4~1954. 5. 30)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1. 3. 4 (3. 2)	池青天	1952. 6. 28 脫退 (無所屬으로)	1951. 3. 4 (3. 2)	申瑛休	
"	金良洙		"	金命洙	
"	蘇宣奎		"	鄭純朝	
"	高永完		"	洪吉善	18回(日字未詳)脫退 (無所屬으로)
"	李春基		"	崔國鎰	1953. 1. 19 脫退 (無所屬俱樂部에 加入)
"	尹 潭		"	徐相德	1952. 6. 28 脫退 (無所屬으로)
"	尹宅重		"	朴忠植	
"	任興淳	1953. 7. 15 脫退 (無所屬으로)	"	崔瑗浩	
"	徐相國		"	白南軾	1951. 3. 20 脫退 (無所屬으로)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1. 3. 4 (3. 2)	裴相淵	1951. 7. 25 脫退 (民友會에 加入)	1951. 3. 4 (3. 2)	朴八峯	1953. 7. 15 脫退 (無所屬으로)
"	金始顯	1952. 5. 7 脫退 (無所屬으로)	"	李鍾純	"
"	金宅述	1952. 6. 21 脫退 (無所屬으로)	"	邊光鎭	
"	金秀學	1953. 2. 17 脫退 (無所屬으로)	"	兪昇濬	1953. 7. 15 脫退 (無所屬으로)
"	盧企容		"	尹泳善	1952. 7. 7 脫退 (無所屬으로)
"	李炳洪	18回(日字未詳)脫退 (無所屬으로)	"	鄭南局	1953. 7. 15 脫退 (無所屬으로)
"	郭泰珍	1952. 10. 29 脫退 (新羅會에 加入) 1952. 11. 8 新羅會에서 加入	"	梁炳日	
"	徐範錫	1953. 7. 15 脫退 (無所屬으로)	"	朴珉基	
"	曹秉雯	1952. 6. 28 脫退 (無所屬으로)	"	趙淳	1952. 6. 28 脫退 (無所屬으로)
"	安萬福		1951. 6. 8	具乙會	1951. 6. 8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6. 29 脫退 (無所屬으로)
"	成得煥				
"	鄭在浣	1954. 4. 5 脫退 (無所屬으로)			

備考: 民主國民黨의 活動은 1950年 3月 2日부터 開始되었으나 正式으로 交涉團體가 構成되어 名簿가 提出된 것은 1950年 3月 4日일.

共和民政會 (1951. 5. 29~1952. 1. 17)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1. 5. 29	南松鶴	1951. 5. 29 新政同志會에서 加入 1952. 1. 17 脫退 (自由黨①에 加入)	1951. 5. 29	金判錫	1951. 5. 29 新政同志會에서 加入 1952. 1. 17 脫退 (自由黨①에 加入) 二
"	金從會	上 同	"	朴勝夏	上 同
"	黃聖秀	"	"	崔成雄	"
"	金泰熙	"	"	任容淳	"
"	李浩根	"	"	金仁善	"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1. 5. 29	鄭基元	1951. 5. 29 新政同志會에서 加入 1951. 5. 21 脫退 (自由黨①에 加入)	1951. 5. 29	李載禧	1951. 5. 29 新政同志會에서 加入 1952. 1. 17 脫退 (無所屬으로)
"	李東煥	1951. 5. 29 新政同志會에서 加入 1951. 7. 25 脫退 (民友會에 加入)	"	朴定根	上 同
"	金益魯	上 同	"	池蓮海	"
"	徐瑋珠	1951. 5. 29 新政同志會에서 加入 1952. 1. 17 脫退 (自由黨①에 加入)	"	朴晚元	"
"	趙定勳	上 同	"	朴良載	"
"	鄭憲柱	"	"	姜昌蓉	"
"	金亨德	"	"	呂永複	1951. 5. 29 新政同志會에서 加入 1951. 6. 5 脫退 (無所屬으로)
"	鄭文欽	"	"	李鎮洙	1951. 5. 29 新政同志會에서 加入 1952. 1. 17 脫退 (自由黨①에 加入)
"	李協兩	1951. 5. 29 共和俱樂部에서 加入 1952. 1. 17 脫退 (自由黨①에 加入)	"	金字城	上 同
"	陸洪均	1951. 5. 29 新政同志會에서 加入 1951. 7. 25 脫退 (民友會에 加入)	"	吳誼寬	"
"	金秉鎮	1951. 5. 29 新政同志會에서 加入 1952. 1. 17 脫退 (自由黨①에 加入)	"	李鍾郁	"
"	金正實	上 同	"	朴永出	"
"	洪昌雙	"	"	李奎甲	1951. 5. 29 新政同志會에서 加入 1952. 1. 17 自然脫退 (無所屬으로)
"	李教善	"	"	尹在根	1951. 5. 29 新政同志會에서 加入 1952. 1. 17 脫退 (自由黨①에 加入)
"	李甲成	"	"	趙瓊奎	上 同
"	李教承	"	"	金鏞化	"
"	朴濟煥	"	"	宋邦鐘	"
"	林基奉	1951. 5. 29 新政同志會에서 加入 1952. 1. 17 脫退 (無所屬으로)	"	慎鏞項	"
			"	康慶玉	"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1. 5. 29	李在鶴	1951. 5. 29 新政同志會에서 加入 1952. 1. 17 脫退 (自由黨①에 加入)	1951. 5. 29	崔勉洙	1951. 5. 29 新政同志會에서 加入 1952. 1. 17 脫退 (自由黨①에 加入)
1951. 5. 29	朴世東	1951. 5. 29 新政同志會에서 加入 1951. 6. 1 脫退 (無所屬으로)	"	黃炳珪	上 同
"	金相賢	1952. 5. 29 新政同志會에서 加入 1951. 7. 25 脫退 (民友會에 加入)	"	金用雨	1951. 5. 29 共和俱樂部에서 加入 1952. 1. 17 脫退 (自由黨①에 加入)
"	梁又正	1951. 5. 29 新政同志會에서 加入 1952. 1. 17 自由黨 ① 에 名單提出時 自然脫 退(無所屬으로)	"	朴順天	1951. 5. 29 共和俱樂部에서 加入 1951. 6. 5 脫退 (無所屬으로)
"	金仁泰	1951. 5. 29 新政同志會에서 加入 1952. 1. 17 脫退 (自由黨①에 加入)	"	朴泰郁	1951. 5. 29 新政同志會에서 加入 1951. 7. 25 脫退 (民友會에 加入)
"	金俊熙	上 同	"	邊鎮甲	1951. 5. 29 新政同志會에서 加入 1952. 1. 17 脫退 (自由黨①에 加入)
"	安龍大	"	"	趙大衍	1951. 5. 29 共和俱樂部에서 加入 1952. 1. 17 脫退 (自由黨①에 加入)
"	延秉昊	"	"	金東成	上 同
"	崔獻吉	"	"	鄭一亨	1951. 5. 29 共和俱樂部에서 加入 1951. 7. 25 共和民正 會名簿正式提出時脫退 (無所屬으로)
"	張建相	"	"	李容高	1951. 5. 29 共和俱樂部에서 加入 1951. 8. 1 脫退 (無所屬으로)
"	呂運弘	"	"	李宗鉉	上 同
"	愼重稷	1951. 5. 29 新政同志會에서 加入 1951. 6. 5 脫退 (無所屬으로)	"	安相漢	1951. 5. 29 共和俱樂部에서 加入 1952. 1. 17 脫退 (自由黨①에 加入)
"	趙時元	1951. 5. 29 新政同志會에서 加入 1952. 1. 17 脫退 (自由黨①에 加入)	"	李鍾壽	上 同
"	李鍾榮	上 同	"	金澤天	1951. 5. 29 共和俱樂部에서 加入 1951. 6. 5 脫退 (無所屬으로)
"	柳寅坤	"	"		
"	嚴秉學	"	"		
"	吳誠煥	"	"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1. 5. 29	尹城淳	1951. 5. 29 共和俱樂部에서 加入 1952. 1. 17 脫退 (自由黨①에 加入)	1951. 5. 9	李道榮	1951. 5. 29 共和俱樂部에서 加入 1952. 1. 17 脫退 (自由黨①에 加入)
"	李相喆	上 同	"	洪翼杓	上 同
"	金永善	"	"	太完善	"
"	金宗順	"	"	趙柱泳	"
"	朴祺培	"	"	李錫基	"
"	金洛五	"	"	金奉才	"
"	吳緯泳	"	"	朴井圭	"
"	嚴詳雙	"	"	具乙會	1951. 5. 29 共和俱樂部에서 加入 1951. 6. 5 脫退 (民主國民黨에 加入)
"	李時穆	1951. 5. 29 共和俱樂部에서 加入 1951. 10. 12 脫退 (無所屬으로)	"	閔泳復	1951. 5. 29 共和俱樂部에서 加入 1951. 6. 5 脫退 (無所屬으로)
"	郭尙勳	上 同	"	金正科	1951. 5. 29 新政同志會에서 加入 1951. 6. 3 脫退 (無所屬으로)
"	金凡父	"	"		1951. 7. 25 無所屬에서 加入 1952. 1. 17 脫退 (自由黨①에 加入)
"	徐相瀨	"	"	金正植	1951. 5. 29 新政同志會에서 加入 1951. 6. 7 脫退 (無所屬으로)
"	金鍾烈	1951. 5. 29 共和俱樂部에서 加入 1951. 6. 5 脫退 (無所屬으로)	"		1951. 7. 25 無所屬에서 加入 1952. 1. 17 脫退 (自由黨①에 加入)
"	尹吉重	上 同	1951. 7. 30	任永信	1951. 7. 30 無所屬에서 加入 1952. 1. 17 脫退 (自由黨①에 加入)
"	徐取濠	"			
"	韓弼洙	"			
"	柳德天	"			
"	李采五	1951. 5. 29 共和俱樂部에서 加入 1952. 1. 17 脫退 (自由黨①에 加入)			
"	鄭憲柱	上 同			

備考：共和民政會는 1951年 5月 29日 共和俱樂部와 新政同志會가 合同하여 構成되어 活動하였으나 正式으로 交涉團體 名簿가 提出된 것은 1951年 7月 25日이었다. 本書에는 1951年 5月 29日 發足 當時부터의 異動事項을 掲載함.

自由黨(①)(1952. 1. 17~1952. 12. 23)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2. 1. 17	鄭文欽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5. 19 脫退(自由 黨(合同)에 加入)	1952. 1. 17	朴濟煥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11. 17 脫退 (自由黨(院外)에 加入)
"	金正植	上 同	"	尹在根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12. 23 自由黨(院 內)으로 名稱變更
"	康慶玉	"	"	任容淳	上 同
"	尹璵淳	"	"	太完善	"
"	金從會	"	"	金宇城	"
"	邊鎮甲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12. 23 自由黨(院 內)으로 名稱變更	"	崔遠壽	1952. 1. 17 民友會에서 加入 1952. 5. 19 脫退(自由 黨(合同)에 加入)
"	張建相	上 同	"	鄭基元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5. 19 脫退(自由 黨(合同)에 加入)
"	趙定勳	"	"	黃聖秀	上 同
"	李相喆	"	"	洪昌燮	"
"	金益魯	1952. 1. 17 民友會에서 加入 1952. 5. 19 脫退(自由 黨(合同)에 加入)	"	延秉昊	"
"	朴哲雄	上 同	"	徐璋珠	"
"	方萬洙	"	"	金東成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10. 22 脫退 (無所屬으로)
"	黃炳珪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5. 19 脫退(自由 黨(合同)에 加入)	"	趙瓊奎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5. 19 脫退(自由 黨(合同)에 加入)
"	金泰熙	上 同	"	趙時元	上 同
"	禹 文	1952. 1. 17 無所屬에서 加入 1952. 2. 1 脫退 (無所屬으로)	"	崔勉洙	"
"	李鎮洙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1. 23 脫退 (無所屬으로)	"	朴良載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11. 17 脫退(自由 黨(院外)에 加入)
"	崔成雄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6. 11 脫退 (無所屬으로)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2. 1. 17	嚴秉學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1. 17 脫退(自由 黨(院外)에 加入)	1952. 1. 17	李敎承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5. 19 脫退(自由 黨(合同)에 加入)
"	李鍾榮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10. 21 脫退 (新羅會에 加入)	"	陸洪均	1952. 1. 17 民友會에서 加入 1952. 6. 12 脫退(自由 黨(合同)에 加入)
"	李浩根	上 同	"	朴井圭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11. 17 脫退(自由 黨(院外)에 加入)
"	吳誠煥	"	"	金俊熙	上 同
"	朴世東	1952. 1. 17 民友會에서 加入 1952. 5. 19 脫退(自由 黨(合同)에 加入)	"	愼重穆	1952. 1. 17 無所屬에서 加入 1952. 5. 19 脫退(自由 黨(合同)에 加入)
"	李鍾郁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10. 21 脫退 (新羅會에 加入)	"	宋邦鍾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12. 23 自由黨(院 內)으로 名稱變更
"	金判錫	上 同	"	金仁泰	上 同
"	李采五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12. 23 自由黨(院 內)으로 名稱變更	"	柳寅坤	"
"	金秉鎮	上 同	"	金永善	"
"	李在鶴	"	"	趙大衍	"
"	李錫基	"	"	金奉才	"
"	洪翼杓	"	"	金用雨	"
"	吳誼寬	"	"	朴定根	"
"	安相漢	"	"	嚴詳燮	"
"	朴晚元	"	"	吳緯泳	"
"	南松鶴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5. 19 脫退(自由 黨(合同)에 加入)	"	鄭憲柱	"
"	趙柱泳	上 同	"	任永信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5. 19 脫退(自由 黨(合同)에 加入)
"	金正實	"	"	朴永出	上 同
"	呂運弘	"	"	金鍾化	"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2. 1. 17	朴勝夏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5. 19 脫退(自由 黨(合同)에 加入)	1952. 1. 17	朴祺培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10. 21 脫退(新羅 會에 加入)
"	慎鋪頊	上 同	"	池蓮海	上 同
"	尹吉重	1952. 1. 17 民友會에서 加入 1952. 5. 19 自由黨(院 內)으로 名稱變更	"	金正科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11. 17 脫退(自由 黨(院外)에 加入)
"	李鍾壽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11. 17 脫退(自由 黨(院外)에 加入)	"	李協雨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6. 12 脫退(自由 黨(合同)에 加入)
"	李載慶	上 同	"	趙光燮	1952. 1. 17 民友會에서 加入 1952. 5. 19 脫退(自由 黨(合同)에 加入)
"	金宗順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10. 21 脫退(新羅 會에 加入)	"	姜昌晳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5. 19 脫退(自由 黨(合同)에 加入)
"	安龍大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6. 27 脫退(自由 黨(合同)에 加入)	"	金洛五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6. 27 脫退(自由 黨(合同)에 加入)
"	李教善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5. 19 脫退(自由 黨(合同)에 加入)	"	李道榮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加入 1952. 12. 23 自由黨(院 內)으로 名稱變更
"	李甲成	上 同			
"	鄭憲祚	"	1952. 2. 24	尹致暎	1952. 2. 24 無所屬에서 加入 1952. 5. 19 脫退(自由 黨(合同)에 加入)
"	崔獻吉	"			
"	金仁善	"			
"	金亨德	"	1952. 2. 15	崔主日	1952. 2. 15 無所屬에서 加入 1952. 5. 19 脫退(自由 黨(合同)에 加入)
"	金滄泰	1952. 1. 17 民友會에서 加入 1952. 11. 17 脫退(自由 黨(院外)에 加入)			

- 備考: 1. 自由黨(㉠)은 共和民政會가 政黨을 組織하여 "自由黨"으로 發足하
고 交涉團體名簿를 1952年 1月 17日 提出하여 構成되었으나 "自
由黨(㉠)"이라고 標記한 것은 他自由黨(第15回 이후)과의 區別이
容易하도록 하였을 뿐 交涉團體의 正式名稱은 "自由黨"인.
2. 自由黨(㉠)은 自由黨(合同)과의 區別을 하기 위하여 1952年 12月
23日자로 自由黨(院內)로 交涉團體名稱을 變更함.

自由黨(合同) (1952. 5. 19~1952. 11. 17)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2. 5. 19	金正實	1952. 5. 19 自由黨①에서 加入 1952. 11. 17 自由黨(院 外)으로 名稱變更	1952. 5. 19	愼鍾頊	1952. 5. 19 自由黨①에서 加入 1952. 11. 17 自由黨(院 外)으로 名稱變更
"	南松鶴	上 同	"	黃炳珪	上 同
"	李教善	"	"	朴哲雄	"
"	金益魯	"	"	崔遠壽	"
"	裴恩希	1952. 5. 19 無所屬에서 加入 1952. 11. 17 自由黨(院 外)으로 名稱變更	"	呂運弘	"
"	金濟能	上 同	"	金泰熙	"
"	李鎮洙	"	"	趙時元	"
"	尹致暎	1952. 5. 19 自由黨①에서 加入 1952. 11. 17 自然脫退 (無所屬으로)	"	鄭文欽	"
"	任永信	上 同	"	梁又正	1952. 5. 19 無所屬에서 加入 1952. 11. 17 自由黨(院 外)으로 名稱變更
"	黃聖秀	1952. 5. 19 自由黨①에서 加入 1952. 11. 17 自由黨(院 外)으로 名稱變更	"	李漢昌	上 同
"	崔主日	上 同	"	洪昌燮	1952. 5. 19 自由黨①에서 加入 1952. 11. 17 自由黨(院 外)으로 名稱變更
"	金正植	"	"	李教承	上 同
"	朴永出	"	"	崔獻吉	"
"	趙光燮	"	"	崔勉洙	"
"	趙柱泳	"	"	李甲成	"
"	金仁善	"	"	金鍾化	"
"	康慶玉	"	"	姜昌琿	"
"	禹 文	1952. 5. 19 無所屬에서 加入 1952. 11. 17 自由黨(院 外)으로 名稱變更	"	鄭基元	"
			"	尹玟淳	"
			"	李奎甲	1952. 5. 19 無所屬에서 加入 1952. 5. 19 脫退 (無所屬으로)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2. 5. 19	權泰郁	1952. 5. 19 民友會에서 加入 1952. 11. 17 自由黨(院 外)으로 名稱變更	1952. 6. 12	金翼基	1952. 6. 12 民友會에서 加入 1952. 11. 17 自由黨(院 外)으로 名稱變更
"	李鶴林	上 同	"	李忠煥	上 同
"	方萬洙	1952. 5. 19 自由黨①에서 加入 1952. 11. 17 自由黨(院 外)으로 名稱變更	"	李協雨	1952. 6. 12 自由黨①에서 加入 1952. 11. 17 自由黨(院 外)으로 名稱變更
"	愼重穆	上 同	1952. 6. 12	陸洪均	1952. 6. 12 自由黨①에서 加入 1952. 11. 17 自然脫退 (無所屬으로)
"	延秉昊	"	1952. 6. 27	安龍大	1952. 6. 27 自由黨①에서 加入 1952. 11. 17 自由黨(院 外)으로 名稱變更
"	朴勝夏	"	"	金洛五	上 同
"	趙瓊奎	"	1952. 6. 3	金相賢	1952. 6. 3 民友會에서 加入 1952. 6. 16 脫退 (民友會에 加入)
"	金從會	"	1952. 6. 12	朴性夏	1952. 6. 12 民友會에서 加入 1952. 11. 17 自然脫退 (無所屬으로)
"	徐璋珠	"	1952. 6. 27	金宅述	1952. 6. 27 民主國民黨에서 加入 1952. 11. 17 自由黨(院 外)으로 名稱變更
"	金亨德	"	"	金鳳祚	1952. 6. 27 民友會에서 加入 1952. 11. 17 自然脫退 (無所屬으로)
"	林基奉	1952. 5. 19 無所屬에서 加入 1952. 11. 4 脫退 (新羅會에 加入)	"	金汶鏞	1952. 6. 27 無所屬에서 加入 1952. 11. 17 自由黨(院 外)으로 名稱變更
"	鄭憲祚	1952. 5. 19 自由黨①에서 加入 1952. 11. 17 自由黨(院 外)으로 名稱變更			
"	朴世東	上 同			
"	錢鎮漢	1952. 5. 19 無所屬에서 加入 1952. 6. 21 脫退 (無所屬으로)			

備考：“自由黨(合同)”은 1952年 11月 17日 交涉團體名稱을 “自由黨(院外)”
으로 名稱을 變更함.

新羅會 (1952. 10. 21~1953. 2. 18)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2. 10. 21	徐二煥	1952. 10. 21 無所屬에서 加入 1953. 2. 18 脫退 (自由黨(院外)에 加入)	1952. 10. 21	張澤相	1952. 10. 21 無所屬에서 加入 1953. 2. 18 脫退 (自由黨(院外)에 加入)
"	金宗順	1952. 10. 21 自由黨①에서 加入 1953. 2. 18 脫退 (自由黨(院外)에 加入)	"	金相賢	上 同
"	金鍾烈	1952. 10. 21 無所屬에서 加入 1953. 2. 18 脫退 (自由黨(院外)에 加入)	"	李東煥	"
"	權炳魯	上 同	"	韓國源	"
"	金判錫	1952. 10. 21 自由黨①에서 加入 1953. 2. 18 脫退 (自由黨(院外)에 加入)	"	白南軾	"
"	李浩根	上 同	"	朴祺培	1952. 10. 21 自由黨①에서 加入 1953. 2. 18 脫退(自由 黨(院外)에 加入)
"	申光均	1952. 10. 21 無所屬에서 加入 1953. 1. 27 脫退 (自由黨(院外)에 加入)	"	張洪瑛	1952. 10. 21 無所屬에서 加入 1953. 2. 18 新羅會解 體(無所屬으로)
"	李鍾榮	1952. 10. 21 自由黨①에서 加入 1953. 2. 18 新羅會解 體(無所屬으로)	"	呂永復	1952. 10. 21 無所屬에서 加入 1953. 2. 18 脫退 (自由黨(院外)에 加入)
"	吳誠煥	1952. 10. 21 自由黨①에서 加入 1953. 2. 18 脫退 (自由黨(院外)에 加入)	"	池蓮海	1952. 10. 21 自由黨①에서 加入 1953. 2. 18 脫退 (自由黨(院外)에 加入)
"	權仲敦	1952. 10. 21 無所屬에서 加入 1953. 2. 18 新羅會解 體(無所屬으로)	1952. 10. 29	裴相淵	1952. 10. 21 無所屬에서 加入 1952. 11. 17 脫退 (自由黨(院外)에 加入)
"	李鍾郁	1952. 10. 21 自由黨①에서 加入 1953. 2. 18 脫退 (自由黨(院外)에 加入)	1952. 11. 4	郭泰珍	1952. 10. 29 民主國民黨에서 加入 1952. 11. 8 脫退 (民主國民黨에 加入)
				林基奉	1952. 11. 4 自由黨(合同)에서 加入 1953. 2. 11 脫退 (無所屬으로)

備考：新羅會는 1952年 5月 20日부터 活動을 始作하였으나 正式으로 交
涉團體의 名簿가 提出된 것은 1952年 10月 21日이었으며 解體日字는
國會史에서는 1953年 2月 21日로 記載하였으나 議員의 異動事項으
로 보아 國會法 第14條에 의거 同年 2月 18日로 보는 것이 妥當하
다고 思料되어 本稿에서는 同年 2月 18日로 記載하였음.

自由黨(院內) (1952. 12. 23~1953. 4. 15)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2. 12. 23	張建相	1953. 4. 15 自由黨(院內) 解體 (無所屬으로)	1952. 12. 23	尹吉重	1953. 4. 15 自由黨(院內) 解體 (無所屬으로)
"	李相喆	"	"	金字城	1953. 1. 19 脫退 (自由黨(院外)에 加入)
"	趙大衍	"	"	李在鶴	1953. 4. 15 脫退 (自由黨②에 加入)
"	金秉鎮	"	"	安相漢	1953. 4. 15 脫退 (自由黨②에 加入)
"	嚴詳燮	"	"	朴定根	"
"	鄭憲柱	1953. 2. 18 脫退 (無所屬으로)	"	趙定勳	1952. 2. 6 脫退 (自由黨(院外)에 加入)
"	洪翼杓	"	"	太完善	1953. 4. 15 脫退 (自由黨②에 加入)
"	金奉才	1953. 1. 30 脫退 (無所屬으로)	"	任容淳	"
"	金用雨	1953. 4. 15 自由黨(院內) 解體 (無所屬으로)	"	吳緯泳	1953. 4. 15 自由黨(院內) 解體 (無所屬으로)
"	吳誼寬	"	"	金永善	"
"	邊鎮甲	"	"	宋邦鋪	"
"	李錫基	1953. 4. 15 脫退 (自由黨②에 加入)	"	柳寅坤	1953. 4. 15 脫退 (自由黨②에 加入)
"	朴晚元	"	"	尹在根	"
"	李采五	1953. 4. 15 自由黨(院內) 解體 (無所屬으로)	"	李道榮	1952. 1. 19 脫退 (自由黨(院外)에 加入)
"	金仁泰	"			

備考: 1. 自由黨(院內)는 自由黨(①)이 1952年 12月 23日 自由黨(合同)의 區別을 위하여 名稱을 變更한 것임.

2. 自由黨(院內)는 1953年 4月 15日 現在 多數의 議員이 交渉團體를 脫退함에 따라 國會法 第14條의 規定에 의거 自然 解體됨.

自由黨(院外) (1952. 11. 17~1953. 4. 14)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2. 11. 17	梁又正	1953. 4. 14 自由黨②로 名稱變更	1952. 11. 17	朴世東	1953. 4. 14 自由黨②로 名稱變更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2. 11. 17	李鎮洙	1953. 4. 14 自由黨②로 名稱變更	1952. 11. 17	洪昌燮	1952. 11. 17 自由黨(合同)에서加入 1953. 4. 14 自由黨②로 名稱變更
"	鄭文欽	"	"	金汶鍾	上 同
"	徐瑋珠	"	"	金亨德	"
"	禹 文	"	"	方萬洙	"
"	金仁善	"	"	趙時元	"
"	金正植	"	"	崔遠壽	"
"	金濟能	"	"	李敦承	"
"	崔主日	"	"	趙光燮	"
"	李忠煥	"	"	崔勉洙	"
"	崔獻吉	"	"	權泰郁	"
"	李漢昌	"	"	金正科	1952. 11. 17 自由黨①에서 加入 1953. 4. 14 自由黨②로 名稱變更
"	呂運弘	"	"	具乙會	1952. 11. 17 無所屬에서 加入 1953. 4. 14 自由黨②로 名稱變更
"	黃炳珪	"	"	韓弼洙	上 同
"	延秉吳	"	"	金鋪化	1952. 11. 17 自由黨(合同)에서加入 1953. 4. 14 自由黨②로 名稱變更
"	李載權	1952. 11. 17 自由黨①에서 加入 1953. 4. 14 自由黨②로 名稱變更	"	李敦善	上 同
"	朴濟煥	上 同	"	李鶴林	"
"	朴良載	"	"	姜昌略	"
"	嚴秉學	"	"	金洛五	"
"	愼重穆	1952. 11. 17 自由黨(合同)에서加入 1953. 4. 14 自由黨②로 名稱變更	"	裴恩希	"
"	南松鶴	上 同	"	金正實	"
"	金泰熙	"	"		
"	尹玟淳	"	"		
"	金益魯	"	"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2. 11. 17	慎鍾頊	1952. 11. 17 自由黨(合同)에서加入 1953. 4. 14 自由黨②로名稱變更	1952. 11. 17	朴哲雄	1952. 11. 17 自由黨①에서加入 1953. 4. 14 自由黨②로名稱變更
"	康慶玉	上同	"	趙柱泳	上同
"	金翼基	"	"	金宅達	"
"	金俊熙	1952. 11. 17 自由黨①에서加入 1953. 4. 14 自由黨②로名稱變更	"	安龍大	"
"	李鍾壽	上同	1953. 1. 17	陸洪均	1953. 1. 17 無所屬俱樂部에서加入 1953. 4. 14 自由黨②로名稱變更
"	金濬泰	"	1953. 1. 19	李道榮	1953. 1. 19 自由黨(院內)에서加入 1953. 4. 14 自由黨②로名稱變更
"	朴井圭	"	"	金宇城	上同
"	黃聖秀	1952. 11. 17 自由黨(合同)에서加入 1953. 4. 14 自由黨②로名稱變更	"	金鳳祚	1953. 1. 19 無所屬에서加入 1953. 4. 14 自由黨②로名稱變更
"	朴永出	上同	"	曹秉雲	上同
"	趙瓊奎	"	1953. 1. 27	申光均	1953. 1. 27 新羅會에서加入 1953. 4. 14 自由黨②로名稱變更
"	朴勝夏	"	1953. 2. 6	趙定勳	1953. 2. 6 自由黨(院內)에서加入 1953. 4. 14 自由黨②로名稱變更
"	池青天	1952. 11. 17 無所屬에서加入 1953. 4. 14 自由黨②로名稱變更	"	趙淳	1953. 2. 6 無所屬에서加入 1953. 4. 14 自由黨②로名稱變更
"	崔成雄	上同	1953. 2. 18	李鍾郁	1953. 2. 18 新羅會에서加入 1953. 4. 14 自由黨②로名稱變更
"	喪相淵	1952. 11. 17 新羅會에서加入 1953. 4. 14 自由黨②로名稱變更	"	金鍾烈	上同
"	李甲成	1952. 11. 17 自由黨(合同)에서加入 1953. 4. 14 自由黨②로名稱變更	"	金宗順	"
"	鄭基元	上同	"	朴祺培	"
"	金從會	"			
"	鄭憲祚	"			
"	李協雨	"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3. 2. 18	金相賢	1953. 2. 18 新羅會에서 加入 1953. 4. 14 自由黨②로 名稱變更	1953. 2. 18	李東煥	1953. 2. 18 新羅會에서 加入 1953. 4. 14 自由黨②로 名稱變更
"	池蓮海	上 同	"	白南軾	上 同
"	李浩根	"	"	韓國源	"
"	權炳魯	"	"	金判錫	"
"	呂永復	"	"	張澤相	"
"	吳誠煥	"	1953. 3. 23	金光俊	1953. 3. 23 無所屬俱樂部에서 加入 1953. 4. 14 自由黨②로 名稱變更
"	徐二煥	"			

備考：1. 自由黨(院外)는 1952年 11月 17日 自由黨(合同)이 名稱을 變更한 것임.

2. 自由黨(院外)는 同交渉團體가 主軸이 되어 1953年 4月 14日字로 自由黨(自由黨 ②로 標記)으로 名稱을 變更함.

無所屬俱樂部 (1952. 11. 29~1953. 4. 15)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2. 11. 29	郭尙勳	1952. 11. 29 無所屬에서 加入 1953. 4. 15 無所屬俱樂部解體 (無所屬으로)	1952. 11. 29	閔泳復	1952. 11. 29 無所屬에서 加入 1953. 4. 15 無所屬俱樂部解體 (無所屬으로)
"	金光俊	1952. 11. 29 無所屬에서 加入 1953. 3. 22 脫退 (自由黨(院外)에 加入)	"	錢鎮漢	上 同
"	河萬濶	1952. 11. 29 無所屬에서 加入 1953. 4. 15 無所屬俱樂部解體 (無所屬으로)	"	郭義榮	1952. 11. 29 無所屬에서 加入 1953. 4. 15 脫退 (自由黨②에 加入)
"	金澤天	上 同	"	金意俊	1952. 11. 29 無所屬에서 加入 1953. 4. 15 無所屬俱樂部解體(無所屬으로)
"	李宗鉉	"	"	金智泰	上 同
"	鄭一亨	"	"	柳德天	"
"	金正基	"	"	朴順天	"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2. 11. 29	李時穆	1952. 11. 29 無所屬에서 加入 1953. 4. 15 脫退 (自由黨②에 加入)	1952. 11. 29	陸洪均	1952. 11. 29 無所屬에서 加入 1953. 1. 17 脫退 (自由黨(院外)에 加入)
"	李容高	上 同	1953. 1. 19	崔國鉉	1953. 1. 17 民主國民黨에서 加入 1953. 4. 15 無所屬俱樂部解體 (無所屬으로)
"	金凡父	"			
"	李範昇	"			
"	徐相德	1952. 11. 29 無所屬에서 加入 1953. 4. 15 無所屬俱樂部解體 (無所屬으로)	1953. 2. 21	權仲敦	1953. 2. 21 無所屬에서 加入 1953. 4. 15 無所屬俱樂部解體 (無所屬으로)

自由黨(②) (1953. 4. 14~1954. 5. 30)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3. 4. 14	梁又正	1953. 12. 24 辭職	1953. 4. 14	金俊熙	
"	金正植		"	李教善	
"	黃炳珪		"	呂運弘	
"	李漢昌		"	崔遠壽	
"	嚴秉學		"	趙時元	
"	金仁善		"	禹 文	
"	徐璋珠		"	李鶴林	
"	朴世東		"	金鋪化	
"	朴良載		"	朴濟煥	
"	延秉昊		"	崔勉洙	
"	鄭文欽		"	趙光燮	
"	崔主日		"	金濟能	
"	李鎮洙		"	裒恩希	

加入年月日	姓名	備	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	考
193. 4. 14	金洛五			1953. 4. 14	池青天		
"	慎重穆			"	李鍾壽		
"	慎鍾項			"	李協雨		
"	金正實			"	崔成雄	18回(日字未詳)脫退 (無所屬으로)	
"	李載禮			"	李敦承		
"	鄭基元			"	朴永出		
"	李甲成			"	金翼基		
"	金泰熙			"	姜昌培		
"	南松鶴			"	金宅述		
"	金清泰			"	朴哲雄	18回(日字未詳)脫退 (無所屬으로)	
"	金益魯			"	權泰郁		
"	崔獻吉			"	襄相淵		
"	李忠煥			"	趙瓊奎		
"	具乙會			"	朴勝夏		
"	金正科			"	鄭憲祚		
"	尹玟淳			"	安龍大		
"	金亨德			"	康慶玉		
"	金汶鏞			"	黃聖秀		
"	洪昌燮			"	張澤相	1953. 5. 29 脫退 (無所屬으로)	
"	韓弼洙			"	陸洪均		
"	金從會	1953. 5. 27 死亡		"	曹秉雲		
"	趙柱泳			"	趙 淳		
"	方萬洙			"	金鍾烈		
"	朴井圭			"	朴祺培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3. 4. 14	金字城		1953. 4. 14	金相賢	
"	李道榮		"	李浩根	
"	金鳳祚		"	呂永複	
"	申光均		1953. 4. 15	李在鶴	1953. 4. 15 自由黨(院內)에서 加入
"	趙定勳		"	安相漢	"
"	池蓮海		"	柳寅坤	"
"	權炳魯		"	朴定根	"
"	吳誠煥		"	李錫基	"
"	李東煥		"	太完善	"
"	韓國源		"	朴晚元	"
"	徐二煥		"	尹在根	"
"	白南軾		"	任容淳	"
"	金判錫		"	郭義榮	1953. 4. 15 無所屬俱樂部에서 加入
"	金光俊		1953. 4. 24	金秀學	1953. 4. 24 無所屬에서 加入
"	李鍾郁		"	尹泳善	1953. 4. 24 無所屬에서 加入
"	金宗順				1954. 4. 20 脫退 (無所屬으로)

備考：自由黨(②)는 1953年 4月 14日 自由黨(院外)가 交渉團體 名稱을 變更함에 따라 第13回 國會以前의 自由黨(自由黨①標記)과 區別하기 위하여 便誼上 “自由黨②”라고 標記하였으며 그의 正式名稱은 “自由黨”임.

無 所 屬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1. 3. 2	柳 鴻	1951. 7. 25 民友會에 加入 1952. 6. 28 民友會解體	1951. 3. 2	曹奉岩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1. 3. 2	任永信	1951. 7. 30 共和民政會에 加入 1952. 11. 17 自由黨(合同)에서 自然脫退	1951. 6. 5	閔泳復	1951. 6. 5 共和民政會에서 脫退 1952. 11. 29 無所屬俱樂部에 加入 1953. 4. 15 無所屬俱樂部解體
"	金正基	1952. 11. 29 無所屬俱樂部에 加入 1953. 4. 15 無所屬俱樂部解體	"	韓弼洙	1951. 6. 5 共和民政會에서 脫退 1951. 7. 25 民友會에 加入 1952. 6. 28 民友會解體 1952. 11. 17 自由黨(院外)에 加入
"	張澤相	1952. 10. 21 新羅會에 加入 1953. 5. 29 自由黨(2)에서 脫退	"	金澤天	1951. 6. 5 共和民政會에서 脫退 1952. 11. 29 無所屬俱樂部에 加入 1953. 4. 15 無所屬俱樂部解體
1951. 3. 20	白南軾	1951. 3. 20 民主國民黨에서 脫退 1951. 7. 25 民友會에 加入 1952. 6. 28 民友會解體 1952. 10. 21 新羅會에 加入	"	呂永復	1951. 6. 5 共和民政會에서 脫退 1951. 7. 25 民友會에 加入 1952. 6. 28 民友會解體 1952. 10. 21 新羅會에 加入
1951. 6. 3	金正科	1951. 6. 3 共和民政會에서 脫退 1951. 7. 25 共和民政會에 加入	"	朴順天	1951. 6. 5 共和民政會에서 脫退 1952. 11. 29 無所屬俱樂部에 加入 1953. 4. 15 無所屬俱樂部解體
1951. 6. 5	金鍾烈	1951. 6. 5 共和民政會에서 脫退 1951. 7. 25 民友會에 加入 1952. 6. 28 民友會解體 1952. 10. 21 新羅會에 加入	"	慎重穆	1951. 6. 5 共和民政會에서 脫退 1952. 1. 17 自由黨(1)에 加入
"	尹吉重	1951. 6. 5 共和民政會에서 脫退 1951. 7. 25 民友會에 加入 1953. 4. 15 自由黨(院內)解體	1951. 6. 7	金正植	1951. 6. 7 共和民政會에서 脫退 1951. 7. 25 共和民政會에 加入
"	柳德天	1951. 6. 5 共和民政會에서 脫退 1952. 11. 29 無所屬俱樂部에 加入 1953. 4. 15 無所屬俱樂部解體	1951. 7. 25	鄭一亨	1951. 7. 25 共和民政會에서 自然脫退 1952. 11. 29 無所屬俱樂部에 加入 1953. 4. 15 無所屬俱樂部解體
"	徐玟濂	1951. 6. 5 共和民政會에서 脫退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1. 8. 1	李容高	1951. 8. 1 共和民政會에서 脫退 1951. 11. 29 無所屬俱樂部에 加入 1953. 4. 15 無所屬俱樂部解體	1952. 2. 5	李範昇	1952. 2. 5補選當選 1952. 11. 29 無所屬俱樂部에 加入 1953. 4. 15 無所屬俱樂部解體
"	李宗鉉	1951. 8. 1 共和民政會에서 脫退 1951. 11. 29 無所屬俱樂部에 加入 1953. 4. 5 無所屬俱樂部解體	"	錢鎮漢	1952. 2. 5補選當選 1952. 5. 19 自由黨(合同)에 加入 1952. 6. 21 自由黨(合同)에서 脫退 1952. 11. 29 無所屬俱樂部에 加入 1953. 4. 15 無所屬俱樂部解體
1951. 10. 12	徐相瀾	1951. 10. 12 共和民政會에서 脫退	"	李漢昌	1952. 2. 5補選當選 1952. 5. 19 自由黨(合同)에 加入
"	李時穆	1951. 10. 12 共和民政會에서 脫退 1952. 11. 29 無所屬俱樂部에 加入 1953. 4. 15 無所屬俱樂部解體	"	金汝鏞	1952. 2. 5補選當選 1952. 6. 27 自由黨(合同)에 加入
"	金凡父	上 同	"	金濟能	1952. 2. 5補選當選 1952. 5. 19 自由黨(合同)에 加入
"	郭尙勳	"	"	裴恩希	上 同
1951. 11. 12	禹 文	1951. 11. 12 民友會에서 脫退 1952. 1. 17 自由黨①에 加入 1952. 2. 1 自由黨①에서 脫退 1952. 5. 19 自由黨(合同)에 加入	"	尹致暎	1952. 2. 5補選當選 1952. 2. 24 自由黨① 에 加入 1952. 11. 17 自由黨(合同)自然脫退
1952. 1. 17	林基奉	1952. 1. 17 共和民政會에서 自然 脫退 1952. 5. 19 自由黨(合同)에 加入 1953. 2. 16 新羅會脫退	1952. 5. 7	金始顯	1952. 5. 7 民主國民黨에서 脫退 1954. 1. 30 退職(有罪判決)
"	李奎甲	1952. 1. 17 共和民政 會에서 自然脫退 1952. 5. 19 自由黨(合同)에 加入 및 脫退(同日字)	1952. 6. 11	崔成雄	1952. 6. 11 自由黨①에서 脫退 1952. 11. 17 自由黨(院外)에 加入 18回(日字未詳) 自由黨②에서 脫退
"	梁又正	1952. 1. 17 共和民政 會에서 自然脫退 1952. 5. 19 自由黨(合同)에 加入	1952. 6. 21	金宅述	1952. 6. 21 民主國民黨에서 脫退 1952. 6. 27 自由黨(合同)에 加入
			1952. 6. 28	曹秉雲	1952. 6. 28 民主國民黨에서 脫退 1953. 1. 19 自由黨(院外)에 加入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2. 6. 28	趙淳	1952. 6. 28 民主國民黨에서 脫退 1953. 2. 6 自由黨(院外)에 加入	1952. 6. 28	韓國源	1952. 6. 28 民友會解體 1952. 10. 21 新羅會에 加入
"	徐相德	1952. 6. 28 民主國民黨에서 脫退 1952. 11. 29 無所屬俱樂部에 加入 1953. 4. 15 無所屬俱樂部解體	"	申光均	上 同
"	池青天	1952. 6. 28 民主國民黨에서 脫退 1952. 11. 17 自由黨(院外)에 加入	"	襄相淵	"
"	金意俊	1952. 6. 28 民友會解體 1952. 11. 29 無所屬俱樂部에 加入 1953. 4. 15 無所屬俱樂部解體	"	張洪瑛	1952. 6. 28 民友會解體 1952. 10. 21 新羅會에 加入 1953. 2. 18 新羅會解體
"	河萬漢	上 同	"	李東煥	1952. 6. 28 民友會解體 1952. 10. 21 新羅會에 加入
"	金光俊	1952. 6. 28 民友會解體 1952. 11. 29 無所屬俱樂部에 加入	"	金相賢	1952. 6. 28 民友會解體 1952. 10. 21 新羅會에 加入
"	郭義榮	上 同	"	具乙會	1952. 6. 29 民主國民黨에서 脫退 1952. 11. 27 自由黨(院外)에 加入
"	金智泰	1952. 6. 28 民友會解體 1952. 11. 29 無所屬俱樂部에 加入 1953. 4. 15 無所屬俱樂部解體	1952. 7. 7	尹泳善	1952. 7. 7 民主國民黨에서 脫退 1953. 4. 24 自由黨②에 加入 1954. 4. 20 自由黨②에서 脫退
"	徐二煥	1952. 6. 28 民友會解體 1952. 10. 21 新羅會에 加入	1952. 10. 22	金東成	1952. 10. 22 自由黨①에서 脫退
"	權炳魯	上 同	1952. 11. 17	朴性夏	1952. 11. 17 自由黨(合同)自然脫退
"	權仲敦	1952. 6. 28 民友會解體 1952. 10. 21 新羅會에 加入 1953. 2. 18 新羅會解體 1953. 2. 24 無所屬俱樂部에 加入 1953. 4. 15 無所屬俱樂部解體	"	陸洪均	1952. 11. 17 自由黨(合同)에서 自然脫退 1952. 11. 29 無所屬俱樂部에 加入
			"	金鳳祚	1952. 11. 17 自由黨(合同)에서 自然脫退 1953. 1. 19 自由黨(院外)에 加入
			1953. 1. 29	金奉才	1953. 1. 29 自由黨(院內)에서 脫退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加入年月日	姓名	備考
1953. 2. 17	金秀學	1953. 2. 17 民主國民黨에서 脫退 1953. 4. 24 自由黨②에 加入	1953. 7. 15	任興淳	1953. 7. 15 民主國民黨에서 脫退
			"	徐範錫	"
1953. 2. 18	李鍾榮	1953. 2. 18 新羅會解體 1954. 2. 1 死亡	"	俞昇瀟	"
			"	朴八峯	"
1953. 4. 15	金秉嶺	1953. 4. 15 自由黨(院內)解體	"	李鍾純	"
"	嚴詳雙	"	"	鄭南局	"
"	張建相	"	1954. 4. 5	鄭在浣	1954. 4. 5 民主國民黨에서 脫退
"	李相喆	"	第18回 (日字未詳)	洪吉善	18回(日字未詳) 民主國民黨에서 脫退
"	吳誼寬	"	"	李炳洪	"
"	邊鎮甲	"	"	朴哲雄	18回(日字未詳) 自由黨②에서 脫退
"	趙大衍	"	1953. 2. 18	鄭憲柱	1953. 2. 18 自由黨(院內)에서 脫退
"	金用雨	1953. 4. 15 自由黨(院內)解體	"	洪翼杓	"
"	李采五	"	1951. 6. 1	朴世東	1951. 6. 1 共和民政會에서 脫退 1951. 7. 25 民友會에 加入
"	金仁泰	"			
"	吳緯泳	"	1952. 1. 23	李鎮洙	1952. 1. 23 自由黨①에서 脫退 1952. 5. 19 自由黨(合同)에 加入
"	金永善	"			
"	宋邦鏞	"	1952. 2. 5	崔主日	1952. 2. 5 補選當選 1952. 2. 15 自由黨①에 加入
"	崔國欽	1953. 4. 15 無所屬俱樂部解體			

備考：交渉團體가 正式으로 構成된 것은 1951年 3月 4日부터이나 會議錄에서는 그 以前의 議員 異動事項이 있으므로 本書에서는 同年 3月 4日 以前의 異動事項도 記載하였음.

各交渉團體의 構成員數와 그 比率

第2代國會의 交渉團體는 第10回國會(1951. 3. 4)부터 構成됨.

第10回國會(定期會)

交渉團體	51. 3. 4 現 在 構成員數	在籍數에 대한比率	交渉團體	51. 5. 30 現 在 構成員數	在籍數에 대한比率	備 考
共和俱樂部	40人	22.9%	共和俱樂部	39人	22.3%	
新政同志會	70人	40%	新政同志會	69人	39.4%	
民主國民黨	40人	22.9%	民主國民黨	39人	22.3%	
民友會	20人	11.4%	民友會	22人	12.6%	
無所屬	5人	2.8%	無所屬	6人	3.4%	
計	175人	100%	計	175人	100%	

第11回國會(臨時會)

交渉團體	51. 5. 31 現 在 構成員數	在籍數에 대한比率	交渉團體	51. 12. 19 現 在 構成員數	在籍數에 대한比率	備 考
共和俱樂部	39人	22.3%	共和民政會	85人	48.6%	共和俱樂部와 新政同志會가 合同하여 19 52. 5. 29 共和 民政會로 設 足하였으나 正式으로 名 簿提出은 同 年7月25日임.
新政同志會	69人	39.4%				
(共和民政會)	(108人)	(61.7%)				
民主國民黨	39人	22.3%	民主國民黨	39人	22.3%	
民友會	22人	12.6%	民友會	34人	19.4%	
無所屬	6人	3.4%	無所屬	17人	9.7%	
計	175人	100%	計	175人	100%	

第12回國會(定期會)

交渉團體	52. 1. 17 現 在 構成員數	在籍數에 대한比率	交渉團體	52. 6. 28 現 在 構成員數	在籍數에 대한比率	備 考
自由黨①	93人	53.1%	自由黨①	47人	25.7%	1951. 12. 22 共和民政會는 自由黨으로 政黨組織
			自由黨(合同)	61人	33.3%	
民主國民黨	39人	22.3%	民主國民黨	34人	18.5%	民友會는 19 52. 6. 28解體
民友會	25人	14.3%	民友會	19人	10.3%	
無所屬	18人	10.3%	無所屬	22人	12.2%	
計	175人	100%	計	183人	100%	

備考：1. 本比率表는 第12回國會 開會日인 1951. 12. 20 現在의 比率에 대한 資料의 未備로 一部交渉團體의 構成日을 基點으로 比率을 算定한 것임.

2. 自由黨①의 正式名稱은 “自由黨”이나 第15回國會以後의 “自由黨”과 區別하기 위하여 便說上 “自由黨①”로 標記하였음.

第13回國會(臨時會)

交渉團體	52. 7. 1 現 在 構成員數	在籍數에 대한比率	交渉團體	52. 9. 10 現 在 構成員數	在籍數에 대한比率	備 考
自由黨①	47人	25.7%	自由黨①	47人	25.7%	
自由黨(合同)	61人	33.3%	自由黨(合同)	61人	33.3%	
民主國民黨	31人	16.9%	民主國民黨	31人	16.9%	
無所屬	44人	24.1%	無所屬	44人	24.1%	
計	183人	100%	計	183人	100%	

第14回國會(臨時會)

交渉團體	52. 10. 21 現在 構成員數	在籍數에 대한 比率	交渉團體	52. 12. 19 現在 構成員數	在籍數에 대한 比率	備 考
自由黨①	39人	21.3%	自由黨①	29人	15.9%	
自由黨(合同)	61人	33.3%	自由黨(院外)	68人	37.1%	1952. 11. 17 自由黨(合同) 이 自由黨(院 外)로改稱
民主國民黨	31人	16.9%	民主國民黨	31人	16.9%	
新羅會	21人	11.5%	新羅會	21人	11.5%	1952. 10. 21 新羅會發足
			無所屬俱樂部	20人	10.9%	1952. 11. 29 無所屬俱樂部 發足
無所屬	31人	16.9%	無所屬	14人	7.7%	
計	183人	100%	計	183人	100%	

第15回國會(定期會)

交渉團體	52. 12. 20 現在 構成員數	在籍數에 대한 比率	交渉團體	53. 5. 30 現在 構成員數	在籍數에 대한 比率	備 考
自由黨(院內) (自由黨①)	29人	15.9%	自由黨②	103人	56.6%	1952. 12. 23 自由黨①을 自由黨(院內) 로 名稱變更
自由黨(院外)	68人	37.1%				自由黨(院內) 自由黨(院外) · 新羅會 및 無所屬議員으 로自由黨發足
新羅會	21人	11.5%				1953. 2. 18 新羅會解體
無所屬俱樂部	20人	10.9%				1953. 2. 18 無所屬俱樂部 解體
民主國民黨	31人	16.9%	民主國民黨	29人	16%	
無所屬	14人	7.7%	無所屬	50人	27.4%	
計	183人	100%	計	182人	100%	

備考：“自由黨②”의 正式名稱은 “自由黨”이나 第12回國會의 “自由黨”과 區別하기 위하여 便誼上 “自由黨②”로 標記하였음.

第16回國會(臨時會)

交渉團體	53. 6. 3 現 在 構成員數	在籍數에 대한比率	交渉團體	53. 10. 20 現 在 構成員數	在籍數에 대한比率	備 考
自由黨②	103人	56.6%	自由黨②	103人	56.6%	
民主國民黨	29人	16%	民主國民黨	23人	12.6%	
無 所 屬	50人	27.4%	無 所 屬	56人	30.8%	
計	182人	100%	計	182人	100%	

第17回國會(臨時會)

交渉團體	53. 11. 10 現 在 構成員數	在籍數에 대한比率	交渉團體	53. 12. 19 現 在 構成員數	在籍數에 대한比率	備 考
自由黨②	103人	56.6%	自由黨②	103人	56.6%	
民主國民黨	23人	12.6%	民主國民黨	23人	12.6%	
無 所 屬	56人	30.8%	無 所 屬	56人	30.8%	
計	182人	100%	計	182人	100%	

第18回國會(定期會)

交渉團體	53. 12. 20 現 在 構成員數	在籍數에 대한比率	交渉團體	54. 4. 30 現 在 構成員數	在籍數에 대한比率	備 考
自由黨②	103人	56.6%	自由黨②	99人	55.6%	
民主國民黨	23人	12.6%	民主國民黨	20人	11.2%	
無 所 屬	56人	30.8%	無 所 屬	60人	32.2%	
計	182人	100%	計	179人	100%	

다. 委員과 그 姓名

(1) 全院委員

(가) 第2代國會中 全院委員長은 다음과 같다.

回 別	選舉年月日	委員長名	備 考
第7回			1950. 6. 25 事變으로 選舉하지 아니함
第8回	1950. 7. 30	池 青 天	
第9回		池 青 天	"會議錄"과 "國會10年誌"에서는 前會 期와 同一
第10回	1950. 12. 24	李 甲 成	
第11回	1951. 11. 29	李 甲 成	
第12回	1952. 1. 23	吳 緯 洙	
第13回	1952. 7. 4	池 青 天	
第14回			資料의 不在
第15回	1953. 1. 29	郭 尙 勳	
第16回		郭 尙 勳	"國會10年誌"에서는 前會期와 同一
第17回		郭 尙 勳	
第18回	1953. 12. 29	池 青 天	

(나) 全院委員은 國會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議員 全員으로 構
成함에 따라 全院委員의 名單은 省略함.

(2) 常任委員

(가) 各常任委員長과 常任委員은 다음과 같다.

第7回國會(臨時會)

本會期中 常任委員會는 6.25事變으로 因하여 構成되지 않았음.

第8回國會(臨時會)

法制司法委員會

區分	姓名	黨籍	區分	姓名	黨籍
委員長	尹吉重	無所屬	委員	朴祺培	無所屬
幹事(法制)	徐二煥	一民俱樂部	"	李協雨	大韓青年團
"(司法)	金鍾烈	無所屬	"	鄭憲昨	"
委員	金鳳祚	"	"	金命洙	民主國民黨
"	趙柱泳	"	"	李判烈	"
"	韓國源	"	"	△金正實	無所屬
"	鄭憲柱	"	"	△金始顯	民主國民黨
"	李炳洪	無所屬			

外務國防委員會

區分	姓名	黨籍	區分	姓名	黨籍
委員長	池青天	民主國民黨	委員	鄭基元	無所屬
(外務分科)			"	朴八峯	"
			"	朴忠植	"
主查委員			"	△呂運弘	"
			(國防分科)		
"	鄭一亨	無所屬	主查委員	金從會	無所屬
"	金東成	"		金明東	大韓國民黨
"	禹文	大韓國民黨	"	李鎮洙	"
"	李甲成	無所屬			
"	李容高	"			
"	黃聖秀	"			

區分	姓名	黨籍	區分	姓名	黨籍
委員	白南軾	國民黨	委員	徐璋珠	無所屬
"	金判錫	大韓青年團	"	河萬漢	"
"	李浩根	"	"	△崔國鉉	"
"	李鍾榮	大韓國民黨	"	△金秉鎮	"
"	徐相國	"	"	△梁又正	"
"	安龍大	無所屬			

內務治安委員會

區分	姓名	黨籍	區分	姓名	黨籍
委員長	徐珉濠	無所屬	委員	權炳魯	一民俱樂部
幹事	金光俊	"	"	金濬泰	無所屬
"	徐範錫	"	"	方萬洙	"
委員	李錫基	"	"	張洪瑛	民主國民黨
"	吳誠煥	大韓國民黨	"	△李鶴林	無所屬
"	趙定勳	無所屬	"	△趙淳	大韓青年團
"	尹泳善	民主國民黨	"	△愼重穆	無所屬
"	盧企容	無所屬	"	△金澤天	"
"	崔成雄	大韓青年團	"	△韓弼洙	"
"	朴世東	民主國民黨			

財政經濟委員會

區分	姓名	黨籍	區分	姓名	黨籍
委員長	金秀學	無所屬	委員	李忠煥	無所屬
幹事	吳緯泳	"	"	郭義榮	"
"	蘇宜奎	民主國民黨	"	李載馨	大韓國民黨
委員	李鍾純	無所屬	"	任興淳	民主國民黨
"	成得煥	民主國民黨	"	朴濟煥	無所屬

區分	姓名	黨籍	區分	姓名	黨籍
委員	李春基	無所屬	委員	金正科	無所屬
"	朴晚元	"	"	金良洙	民主國民黨
"	梁炳日	民主國民黨	"	康慶玉	無所屬
"	金亨德	無所屬	"	具乙會	"
"	金智泰	"	"	姜昌琫	"
"	金權泰	"	"	△洪昌燮	"
"	崔獻吉	大韓國民黨	"	△邊光鎬	民主國民黨
"	李鍾郁	大韓獨立促成國民會	"	△李肯鍾	無所屬
"	高永完	民主國民黨	"	△鄭純朝	大韓國民黨
"	金永基	無所屬	"	△金意俊	無所屬
"	金益魯	"	"	△金正基	"
"	宋邦鋪	"			

產業委員會

區分	姓名	黨籍	區分	姓名	黨籍
委員長	李宗鉉	朝鮮民主黨	委員	△陸洪均	"
(農林分科)			(商工分科)		
主查	申珏休	民主國民黨	主查	朴定根	無所屬
"	△呂永復	"	"	△金相賢	"
委員	安萬福	無所屬	"	△趙時元	社會黨
"	曹秉雯	"	"	△李教善	無所屬
"	朴井圭	"	委員	金永善	"
"	李東煥	"	"	尹潭	大韓國民黨
"	金宇城	"	"	柳鴻	"
"	金宗順	"	"	池蓮海	無所屬
"	柳寅坤	大韓國民黨	"	金洛五	大韓獨立促成國民會
"	金仁泰	無所屬	"	朴勝夏	無所屬

區分	姓名	黨籍	區分	姓名	黨籍
(鑛業分科)			(水產分科)		
主查員	尹 瑛 淳	無所屬	主查員	黃 炳 珪	國民黨
"	任 容 淳	大韓青年團	"	吳 誼 寬	無所屬
"	權 仲 敦	無所屬	"	林 基 奉	大韓勞總
"	大 完 善	"	"	鄭 南 局	民主國民黨
"	李 道 榮	"	"	金 奉 才	無所屬
"	△俞 昇 濬	"	"	安 相 漢	"

文教社會委員會

區分	姓名	黨籍	區分	姓名	黨籍
委員長	李 奎 甲	國民黨	委員	崔 瑗 浩	民主國民黨
幹事(文教)	朴 永 出	"	"	李 時 穆	無所屬
"(社會)	金 用 雨	無所屬	"	金 凡 父	"
"(保健)	嚴 秉 學	國民黨	"	金 正 植	大韓青年團
委員	閔 泳 復	無所屬	"	崔 元 鳳	無所屬
"	尹 在 根	大韓國民黨	"	△洪 吉 善	民主國民黨
"	李 在 鶴	"	"	△李 教 承	無所屬
"	朴 哲 雄	無所屬	"	△朴 性 夏	中央佛教會
"	尹 宅 重	民主國民黨			委員

交通通信委員會

區分	姓名	黨籍	區分	姓名	黨籍
委員長	愼 鋪 頊	無所屬	委員	△申 光 均	一民俱樂部
幹事(通信)	南 松 鶴	大韓國民黨	"	金 宅 述	大韓勞總
"(交通)	洪 翼 杓	無所屬	"	金 鋪 化	國民黨
委員	李 相 喆	"	"	金 泰 熙	無所屬
"	趙 大 衍	"	"	權 五 勳	"
"	趙 光 雙	朝鮮民主黨	"	金 仁 善	愛國團體
"	徐 相 德	大韓青年團	"	崔 遠 壽	聯合會

懲戒資格委員會

區分	姓名	黨籍	區分	姓名	黨籍
委員長	趙瓊奎	無所屬	委員	李鍾壽	無所屬
委員	崔勉洙	大韓國民黨	"	襄相淵	"
"	郭尙勳	無所屬	"	郭泰珍	民主國民黨
"	柳德天	"	"	鄭文欽	無所屬
"	鄭在浣	"	"	延秉吳	大韓國民黨

備考：1. △標는 서울에 國會가 遷都한 後에 補選한 委員임.
 2. 第7回 부터 第8回 까지는 交渉團體가 構成되지 않았으므로 政黨所屬은 1950年 選舉當時의 黨籍를 表示하였음.

第9回國會(臨時會)

本會期中 常任委員의 異動은 없었음.

第10回國會(定期會)

※ 國會法改正과 1951年3月9日 常任委員會改編에 關한 決議에 따라 改編된

所屬團體	構成 委員數	新政同志會	共和俱樂部	民主國民黨	民友會	無所屬	計
		69	39	39	22	6	175
常任委員會	委員定數						
法制 司法	20	△金正實 康慶玉 鄭憲祚 (李協雨) 李鎭洙 吳誠煥 (5)	○嚴詳雙 尹吉重 金宗順 趙柱泳 李協雨 (5)	高永完 尹泳善 朴珉基 (3)	△徐二煥 金意俊 (2)		15

所屬團體		新政同志會	共和俱樂部	民主國民黨	民友會	無所屬	計
		構成 員數	構成 員數	構成 員數	構成 員數	構成 員數	構成 員數
常任 委員會		69	39	39	22	6	175
內務	20	△安龍大 崔成雄 趙定勳 朴世東 趙瓊奎 嚴秉學 金秉鎮 (7)	○徐取濠 △李錫基 金澤天 閔泳復 (4)	徐範錫 趙淳 盧企容 襄相淵 (4)	金光俊 方萬洙 (2)		17
外務	15	○梁又正 △黃聖秀 李甲成 呂運弘 張建相 (5)	△鄭一亨 金東成 李容高 (3)	金良洙 朴忠植 鄭南局 (3)	禹文 (1)		12
國防	20	○金從會 金俊熙 李浩根 徐璋珠 金判錫 尹在根 朴勝夏 (7)	韓弼洙 朴祺培 金洛五 (3)	池青天 徐相國 任興淳 金命洙 (4)	李鶴林 金潛泰 (2)	柳鴻 (1)	17

所屬團體		新政同志會	共和俱樂部	民主國民黨	民友會	無所屬	計
		69	39	39	22	6	175
常任委員會	構成員數						
	委員定數						
財政 經濟	30	○李載澧 權泰郁 朴濟煥 姜昌瑢 金正科 朴良載 宋邦鋪 崔獻吉 朴晚元 愼重穆 (10)	△鄭憲柱 吳緯泳 金永善 (郭義榮) 金奉才 李鍾壽 (5)	△李春基 金秀學 尹 潭 梁炳日 李鍾純 鄭純朝 (6)	△李忠煥 金翼基 金智泰 郭義榮 (4)		25
農林	20	○朴定根 陸洪均 金仁泰 柳寅坤 邊顯甲 呂永復 金字城 (7)	柳德天 朴井圭 李宗鉉 具乙會 (4)	△申珏休 安萬福 曹秉雯 (3)	申光均 河萬濬 (2)		16
商工		○金亨德	△太完善	△蘇宜奎	權仲敦	金正基	

所屬團體		新民主主義青年團	共和俱樂部	民主國民黨	民友會	無所屬	計
		構成 員數					
常任 委員會	委員 定數	69	39	39	22	6	175
		商工	20	△黃炳珪 洪昌燮 金益魯 李東煥 任容淳 池蓮海 (7)	李道榮 李采五 (3)	俞昇濬 成得煥 朴八峯 (4)	崔遠壽 (2)
文教	20	○李在鶴 延秉吳 李奎甲 李教善 李教承 鄭基元 金正植 (7)	李時穆 金凡父 郭尙勳 安相漢 (4)	△尹宅重 鄭在沆 洪吉善 (3)	△金鳳祚 朴哲雄 (2)	任永信 (1)	17
社會 保健	20	○朴永出 林基奉 崔勉殊 吳誼寬 金相賢 鄭文欽 (6)	金用雨 朴順天 (張洪瑛) 洪翼杓 (3)	△郭泰珍 金始顯 李炳洪 崔國鉉 (4)	△韓國源 朴性夏 張洪瑛 (3)		16

所屬團體		構成	新政同志會	共和俱樂部	民主國民黨	民友會	無所屬	計
		員數	69	39	39	22	6	175
常任委員會	委員定數							
交通 遞信	15	○愼鍾項 金仁善 金鍾化 金泰熙 南松鶴 (5)	趙大衍 尹璵淳 徐相灝 (3)	△徐相德 金宅述 邊光鎬 (3)	△趙光燮 (1)			12
懲戒 資格	(10)	○鄭文欽 (社) 李鍾榮(運) 李鍾郁(運) 趙時元(運) (4)	郭尙勳(文) 金宗順(法) (2)	任興淳(國) 白南軾(運) (2)	△朴性夏 (社) (1)			9
國會 運營	10	李鍾郁 李鍾榮 趙時元 (3)	○李相喆 金鍾烈 (2)	崔瑗浩 申翼熙 (白南軾) (2)	權炳魯 (1)	張澤相 曹奉岩 白南軾 (3)		11

- 備考：1. ○標는 委員長, △標는 幹事를 表示함.
 2. 議員定數 175人은 拉北 및 死亡議員을 除外한 數임.
 3. ()는 所屬團體의 變更으로 異動된 委員임.

第11回國會(臨時會)

本會期中 常任委員 異動은 다음과 같다.

常任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異動年月日
法制司法	李鎮洙	金洛五	1951. 6. 30
國防	金洛五	李鎮洙	"

第12回國會(定期會)

※ 本會期中 常任委員은 自由黨發足을契機로 1952年 1月 22日 改編하였고 同年 2月 5日 補選된 8議員을 配定하였음.

所屬團體	自由黨	民主國民黨	民友會	無所屬	計
常任委員會 構成員數	93	39	25	26	183
法制司法	△金正實 嚴詳燮 尹吉重 吳誠煥 趙柱泳 金洛五 金宗順 康慶玉 鄭憲祚 (9)	高永完 朴珉基 安萬福 (3)	○金意俊 △徐二煥 金鍾烈 (3)	金凡父 徐相灝 (2)	17
內務	○趙瓊奎 △崔成雄 方萬洙 嚴秉學 李錫基 安龍大 朴世東 趙定勳 金秉鎮 (9)	△徐範錫 趙淳 盧企容 尹泳善 (4)	裴相淵 金光俊 (2)	徐取濠 閔泳復 裴恩希 (3)	18

所屬團體	自由黨	民主國民黨	民友會	無所屬	計
常任委員會	93	39	25	26	183
外務	△黃聖秀 金東成 李甲成 張建相 呂運弘 尹致暎 (6)	金良洙 朴忠植 (2)	△韓弼洙 權炳魯 (2)	○鄭一亨 李容高 禹文 (3)	13
國防	○金從會 △金俊熙 李浩根 徐璋珠 朴勝夏 尹在根 △金判錫 朴祺培 (8)	△金命洙 池青天 徐相國 任興淳 (4)	柳 鴻 李鶴林 (2)	郭尙勳 李鎮洙 金澤天 金汶鋪 (4)	18
財政經濟	○李載權 朴濟煥 姜昌培 金正科 朴良載 宋邦鏞 朴晚元 慎重穆 吳緯洙 鄭憲柱 金永善 金奉才 李鍾壽 (13)	金秀學 梁炳日 尹 潭 李鍾純 李春基 鄭純朝 (6)	權泰郁 郭義榮 張洪琰 李忠煥 (4)	梁又正 李時穆 金濟能 (3)	26
農林	○朴定根 陸洪均 金仁泰 柳寅坤 朴井圭 邊鎮甲	△申珥休 曹秉雯 金始顯	呂永復 河萬濬	柳德天 李宗鉉 李範昇	18

所屬團體	自由黨	民主國民黨	民友會	無所屬	計	
常任委員會	93	39	25	26	183	
農林	金字城 李協雨	崔獻吉 (9)	具乙會 (4)	(2)	(3)	
商工	△李采五 黃炳珪 金益魯 太完善 金亨德	池蓮海 任容淳 李道榮 崔遠壽 (9)	○蘇宜奎 俞昇濬 朴八峯 鄭南局 (4)	△權仲敦 李東煥 金智泰 (3)	金正基 李漢昌 (2)	18
文教	○安相漢 李在鶴 李致善 鄭基元 任永信	△金正植 延秉吳 李教承 朴哲雄 (9)	△鄭在浣 洪吉善 尹宅重 崔瑗浩 (4)	金鳳祚 韓國源 (2)	林基奉 (1)	16
社會 保健	△金用雨 朴永出 崔勉洙 洪翼杓 趙大衍	金滄泰 吳誼寬 鄭文欽 趙時元 (9)	李炳洪 崔國鉉 郭泰珍 成得煥 (4)	○金翼基 金相賢 朴性夏 (3)	朴順天 錢鎮漢 (2)	18
交通 遞信	○尹璵淳	金鏞化	△徐相德	△白南軾		

所屬團體 常任委員會	自由黨		民主國民黨	民友會	無所屬	計
	構成員數	93		39	25	26
交通 遞信	金仁善 愼鎬項 金泰熙 (8)	南松鶴 趙光燮 崔主日 (8)	邊光鎬 金宅述 (3)	(1)		12
懲戒 資格	○鄭文欽(社) 洪昌燮(運) 李鍾榮(運)	李相喆(運) 李鍾郁(運) (5)	任興淳(國) 成得煥(社) (2)	白南軾(交) 韓弼洙(外) (2)	郭尙勳(國) (1)	10
國會 運營	○洪昌燮 李鍾榮 (4)	李鍾郁 李相喆 (4)	(申翼熙) (1)	申光均 (1)	李奎甲 (曹奉岩) (張澤相) (3)	9

備考: 1. ○標는 委員長, △標는 幹事를 表示함.

2. 國會運營委員會의 ()는 議長과 副議長임.

第13回國會(臨時會)

本會期中 常任委員의 異動은 없었음.

第14回國會(臨時會)

(1) 本會期中 常任委員長 改選은 다음과 같다.

常任委員會	前 常 任 委 員 長	所屬團體	新 常 任 委 員 長	變更年月日 및 事由
財政經濟	李 載 權	自 由 黨		1952. 11. 6 商工部長官就任으로 辭任
"		"	吳 緯 泳	1952. 11. 7 被選

(2) 本會期中 常任委員의 異動은 없었음.

第15回國會(定期會)

※ 1953年 1月 15日 豫算決算委員會의 增設과 常任委員의 任期가 滿了 됨에 따라 改編됨.

所屬團體	自由黨 (院外)	民主國民黨	自由黨 (院內)	新羅會	無所屬俱樂部	無所屬	計
	常任委員數	67	30	31	21	22	12
法 制 司	△金濬泰 趙柱泳 李忠煥 韓弼洙 金正實 (5)	梁炳日 (1)	○尹吉重 嚴詳燮 鄭憲柱 (3)	△金宗順 金鍾烈 (2)	金意俊 李範昇 (2)	李奎甲 (1)	14
	內 務	△崔成雄 嚴秉學 裴相淵 安龍大 朴世東	郭泰珍 盧企容 徐範錫	○李錫基 △趙定勳 金秉鎮	徐二煥 權炳魯	金光俊 閔泳復	趙 淳

所屬團體	自由黨 (院外)	民主國民黨	自由黨 (院內)	新羅會	無所屬 俱樂部	無所屬	計
	常任委員會	67	30	31	21	22	12
內務	方萬洙 崔主日 趙瓊奎 (8)	(3)	(3)	(2)	(2)	(1)	
	外務	○黃聖秀 △禹文 李甲成 愼重穆 呂運弘 具乙會 (6)	△金良洙 朴忠植 (2)	張建相 (1)	張澤相 (1)	鄭一亨 李容高 (2)	任永信 (1)
國防	徐璋珠 李鶴林 池青天 鄭憲祚 金汶鋪 朴勝夏 李鎮洙 金從會 (8)	○任興淳 徐相國 金命洙 高永完 (4)	尹在根 洪翼杓 (2)	朴祺培 金判錫 (2)	郭尙勳 金澤天 (2)	柳鴻 (1)	19

所屬團體	自由黨 (院外)	民主國民黨	自由黨 (院內)	新羅會	無所屬 俱樂部	無所屬	計
	常任委員會	67	30	31	21	22	12
財政經濟	權泰郁 朴良載 崔獻吉 (8)	(4)	(3)	(2)	(2)	(1)	
農林	金鑄化 金益魯 朴井圭 李協雨 洪昌燮 金宇城 申光均 陸洪均 曹秉燮 (9)	申珏休 安萬福 李炳洪 朴珉基 (4)	○朴定根 柳寅坤 邊鎮甲 金仁泰 (4)	呂永復 (1)	柳德天 李宗鉉 (2)	(1)	20
商工	○黃炳珪 金亨德 尹玟淳 李道榮 趙時元 康慶玉 李漢昌 崔遠壽 (8)	蘇宣奎 鄭南局 朴八峰 (3)	△太完善 △李采五 任容淳 (3)	池蓮海 權仲敦 李東煥 (3)	金智泰 河萬濬 (2)	徐珉濠 (1)	20

所屬團體	自由黨 (院外)	民主國民黨	自由黨 (院內)	新羅會	無所屬 俱樂部	無所屬	計
	構成員數	67	30	31	21	22	12
常任委員會							
文教	△金正植 金鳳祚 李教承 鄭基元 延秉吳 朴哲雄 (6)	○尹宅重 鄭在浣 鄭純朝 (3)	李在鶴 安相漢 (2)	△李浩根 李鍾郁 (2)	李時穆 金凡父 (2)	金始顯 (1)	16
社會 保健	鄭文欽 裴恩希 金翼基 崔勉洙 金洛五 朴永出 梁又正 (7)	△俞昇濬 成得煥 (2)	○金用雨 趙大衍 金永善 (3)	韓國源 (1)	朴順天 錢鎮漢 (2)		15
交通 通信	○慎鋪項 金泰熙 南松鶴 金仁善 趙光燮 姜昌琫 金宅述 (7)	邊光鎬 洪吉善 尹 潭 (3)	△宋邦鍾 (1)	△白南軾 林基奉 (2)	徐相德 崔國鉉 (2)	徐相灝 金東成 (2)	17

所屬團體	自由黨 (院外)	民主國民黨	自由黨 (院內)	新羅會	無所屬 俱樂部	無所屬	計
常任委員會	67	30	31	21	22	12	1183
懲戒資格	△趙光燮 (交) 鄭文欽 (社) 陸洪均 (農) 李敦承 (文) 李載權 (豫) 趙柱泳 (法) (6)	成得煥 (社) 高永完 (國) (2)	吳緯泳 (豫) 趙大衍 (社) (2)	△徐二煥 (內) 李鍾榮 (豫) (2)	李時穆 (文) 李範昇 (法) (2)	○朴性夏 (1)	15
國會運營	尹城淳 (商) 金益魯 (農) 金濟能 (豫) 申光均 (農) (4)	△洪吉善 (交) 任興淳 (國) (申翼熙) (3)	李相喆 (豫) 洪翼杓 (國) (2)	○吳誠煥 (豫) (1)	金正基 (財) (1)	(曹奉岩) (尹致暎) (2)	13

備考：1. ○標는 委員長, △標는 幹事, 姓名欄 ()標는 議長・副議長을 表示함.
 2. 資料不在로 1952.12. 5 現在의 所屬常任委員會를 記載하였음.

本會期中 常任委員 異動은 다음과 같다.

常任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異動年月日
外豫 算決 務算	具乙會	尹載淳	1953. 2. 6
農林	申光均		1953. 4. 16
商工	任容淳	具乙會 李載濬	1953. 2. 6 1953. 4. 20
國會 運營	任興淳	蘇宜奎 洪昌燮	1953. 2. 4 1953. 2. 6
商國會 運營	尹璵淳		1953. 2. 6
豫算 決算	鄭憲祚 姜昌蓉 金相賢	金從會 白南軾 朴良載	1953. 4. 10 1953. 4. 16 "
國會 運營 豫算 決算		申光均	"
懲戒 豫算 資決 格算	李載濬	任容淳	1953. 4. 20

第16回國會(臨時會)

本會期中 常任委員 異動은 다음과 같다.

常任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異動年月日
農林		申光均	1953. 6. 3
商工	李載濬	任容淳	"
豫算 決算	任容淳	李載濬	"

常任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異動年月日
豫算決算	朴良載	金相賢	"
	申光均	●	"

第17回國會(臨時會)

本會期中 常任委員 異動은 다음과 같다.

常任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異動年月日
國防	鄭憲祚		1953. 11. 28
商工	太完善	李道榮	1953. 11. 16
豫算決算 防算	金從會	鄭憲祚	1953. 5. 2 死亡 1953. 11. 28
商工 豫算決算	李道榮	太完善	1953. 11. 16

第18回國會(定期會)

(※ 任期滿了로 1953. 12. 29 改編)

所屬團體	構成 委員數	自	由	黨	民主國民黨	無所屬	計
				102	23	55	180
常任 委員會	委員 定數	○金正實		李忠煥	△梁炳日	尹吉重	12
		金宗順		金滄泰		嚴祥燮	
法制 司法	14	吳誠煥		金鍾烈		金意俊	
		趙柱泳		(7)	(1)	李範昇 (4)	

所屬團體 構成數		自	由	黨	民主國民黨	無 所 屬	計	
		102			23	55	180	
常任委員會	委員數	內務	19	○趙瓊奎	安龍大	崔瑗浩	閔泳復	19
				方萬洙	朴世東	郭泰珍	林基奉	
				趙 淳	崔主日		徐範錫	
				襄相淵	趙定勳		金永善	
				李錫基	金光俊		金秉鎮	
				崔成雄			鄭憲柱	
				(11)	(2)		(6)	
外務	14	○黃聖秀	呂運弘	金良洙	△鄭一亨	13		
		△禹 文	李甲成	朴忠植	張建相			
		尹玟淳	愼重穆		任永信			
		李教善			張澤相			
			(7)	(2)	(4)			
國防	19	△朴祺培	池青天	△金命洙	○任興淳	18		
		李鶴林	尹在根	徐相國	△鄭憲柱			
		金判錫	朴勝夏		金澤天			
		李鎮洙	鄭憲祚		郭尙勳			
		朴永出	金汝鏞		柳 鴻			
		徐璋珠						
			(11)	(2)	(5)			

所屬團體		自	由	黨	民主國民黨	無	所	屬	計
常任委員會	構成員數	102			23	55		180	
	委員定數	102			23	55		180	
豫算決算	(36)	○李忠煥(法) 趙定勳(內) 郭義榮(財) 申光均(農) 太完善(商) 金相賢(社) 白南弼(文) 韓弼洙(憲) 崔遠壽(運) 尹瑛淳(外)	李錫基(內) 愼重穆(外) 朴濟煥(財) 金宇城(農) 李東煥(商) 嚴秉學(交) 徐二煥(憲) 權炳魯(運) 金正植(文) 金判錫(國)	△李春基(財) 梁炳日(法) 金命洙(國) 高永完(社) 鄭在莞(文)	△宋邦鏞(交) 嚴詳燮(法) 金永善(內) 任永信(外) 金澤天(國) 柳德天(農) 河萬漢(商) 李鍾榮(文) 俞昇濬(社) 李相喆(運) 吳緯泳(憲)	(20)	(5)	(11)	(36)
財政經濟	20	○朴晚元 權泰郁 朴良載 朴濟煥 金正科 尹泳善	李鍾壽 金俊熙 郭義榮 金秀學 崔獻吉	李春基 盧企容 鄭純朝	△金奉才 吳誼寬 李鍾純 金正基 張洪琰 李宗鉉	(11)	(3)	(6)	20
農林		○朴定根	△申光均	△申珪休	金仁泰				

所屬團體		自	由	黨	民主國民黨	無 所 屬	計
常任委員會	構成員數	102			23	55	180
	委員數						
農林	20	金鋪化 金字城 朴井圭 金益魯 柳寅坤 (11)	呂永復 李協雨 陸洪均 曹秉雯		安萬福 李炳洪 朴珉基 (4)	柳德天 邊鎮甲 李時穆 (4)	19
商工	20	○黃炳珪 康慶玉 李東煥 李漢昌 趙時元 池蓮海 (11)	△太完善 任容淳 具乙會 李道榮 金亨德		蘇宜奎 洪吉善 (2)	△李采五 鄭南局 朴八峰 河萬漢 金智泰 權仲敦 (6)	19
文教	18	○金鳳祚 △李浩根 朴哲雄 李在鶴 安相漢 (10)	△金正植 李敦承 李鍾郁 延秉昊 鄭基元		尹宅重 鄭在浣 (2)	金凡父 李鍾榮 朴性夏 李奎甲 (4)	16

所屬團體		自 由 黨		民主國民黨	無 所 屬	計
		構成員數	委員數			
常任委員會		102	23	55	180	
社會保健	18	○韓國源 △金相賢 金翼基 李載燮 (8)	袁思希 崔勉洙 金洛五 金濟能 (2)	△高永完 成得煥 (2)	趙大衍 金用雨 李容高 錢鎮漢 朴順天 俞昇濬 (6)	16
交通遞信	19	○愼鏞頊 趙光燮 金宅述 姜昌略 洪昌燮 (10)	△金泰熙 南松鶴 金仁善 白南軾 嚴秉學 (2)	邊光鎬 尹玟淳 (2)	△徐相德 宋邦鏞 徐相灝 崔國鉉 金東成 (5)	17
懲戒資格	(15)	○鄭文欽 徐二煥(豫) 韓弼洙(豫) 金鍾烈(法) (8)	△趙光燮(交) 李載權(社) 趙時元(商) 婁相淵(內) (2)	成得煥(社) 洪吉善(商) (2)	△朴性夏(文) 吳韓泳(豫) 李時穆(農) 崔國鉉(交) 趙大衍(社) (5)	(15)

所屬團體		自 由 黨	民主國民黨	無 所 屬	計
常任委員會	權成員數	102	23	55	180
	委員數				
國會運營	(10)	洪昌雙(交) △吳誠煥(法) 金益魯(農) 金濟能(社) 權炳魯(豫) 崔遠壽(豫)	蘇宜奎(商) (申翼熙)	○洪翼杓 李相喆(豫) 金正基(財) (曹奉岩) (尹致燾)	(13)
		(6)	(2)	(5)	

備考：○標는 委員長, △標는 幹事, 姓名欄 ()標는 議長・副議長을 表示함.

本會期中 常任委員 異動은 다음과 같다.

常任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異動年月日
內 務	鄭憲柱		
外 務		李容高	1954. 1. 11
外豫算決務算	愼重穆	金濟能	1954. 1. 12
國 防	池青天		1954. 1. 9
		李奎甲	1954. 1. 7
		金判錫	1954. 1. 14
國豫算決防算	金判錫		1954. 1. 14
		韓弼洙	1954. 1. 9
農國會運林營		愼重穆	1954. 1. 12

常任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異動年月日
文 教	李奎甲		1954. 1. 7
文 豫 算 決 算	李鍾榮		1954. 2. 1 死亡
社 會 保 健	李載鏗		1954. 1. 9
	李容高		1954. 1. 11
豫 算 決 算		李載鏗	1954. 1. 9
		李鎮洙	1954. 1. 14
	俞昇潛	金用雨	1954. 1. 22
國 社 會 運 營 保 健	金濟能		1954. 1. 12

(3) 特別委員

第8回 國會(臨時會)

常任委員銓衡委員

(1950. 7. 27
第1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黨 籍	委員名	黨 籍
池青天	民主國民黨	金秀學	無 所 屬
金良洙	"	李甲成	"
金東成	無 所 屬	李時穆	"
閔泳復	"	金光俊	"
李相喆	"	康慶玉	"

「유엔」總會及美國等禮訪委員

(1950. 9. 6)
(第15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黨籍	委員名	黨籍
張澤相	無所屬	黃聖秀	無所屬
金東成	"		

國會自家肅清이 관한特別審査委員

(1950. 11. 3)
(第42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黨籍	委員名	黨籍
○郭尙勳	無所屬	鄭在浣	無所屬
朴定根	"	尹吉重	"
吳緯泳	"	李相喆	"
李鍾榮	"		

「유엔」韓國委員團歡迎委員

(1950. 11. 10)
(第47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黨籍	委員名	黨籍
申翼熙	民主國民黨	徐珉濠	無所屬
曹奉岩	大韓國民黨	朴定根	"
張澤相	無所屬	柳鴻	大韓獨立促成國民會
鄭一亨	"	黃聖秀	無所屬
金東成	"	金秀學	"
朴忠植	"	(朴鍾萬)	
李錫基	"	(鄭雲近)	

備考：()內는 國會議員이 아닌 事務總長・次長임.

委員名	黨籍	委員名	黨籍
○申翼熙	民主國民黨	任興淳	民主國民黨
張澤相	無所屬	李春基	無所屬
曹奉岩	大韓國民黨	申珏休	民主國民黨
尹吉重	無所屬	朴定根	無所屬
鄭憲柱	無所屬	太完善	"
金從會	"	黃炳珪	大韓國民黨
禹文	大韓國民黨	朴永出	"
黃聖秀	無所屬	李在鶴	"
徐取濠	"	南松鶴	"
李錫基	"	趙光燮	大韓勞總
李鍾純	"	趙瓊奎	無所屬
邊光鎬	民主國民黨	鄭文欽	"

第9回 國會(臨時會)

一線軍警「크리스마스」祝賀慰問에 관한特別委員

(1950. 12. 12
第2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黨籍	委員名	黨籍
鄭一亨	無所屬	朴定根	無所屬
徐範錫	"	洪翼杓	"
金從會	"	李鍾壽	"
金光俊	"	金用雨	"
徐二煥	一民俱樂部	朴永出	大韓國民黨

委員名	黨籍	委員名	黨籍
蘇宜奎	民主國民黨		

政府・軍部・유엔韓委・在京外國公館等連絡委員(非常對策連絡委員)
(1950. 12. 13)
(第3次本會議決議)

委員名	黨籍	委員名	黨籍
池青天	民主國民黨	金用雨	無所屬
徐玟濠	無所屬	李容高	"
黃聖秀	"	金從會	"

「백아더」元帥禮訪 및 「메세지」傳達委員(「백아더」元帥禮訪 및 武裝交涉委員)
(1950. 12. 13)
(第3次本會議決議)

委員名	黨籍	委員名	黨籍
張澤相	無所屬	池青天	民主國民黨

外國通信・雜誌의 大韓民國 및 國會誹謗記事糾明에 관한 特別委員
(1950. 12. 14)
(第4次本會議決議)

委員名	黨籍	委員名	黨籍
張澤相	無所屬	鄭一亨	無所屬

國民防衛軍設置法案審查委員
(1950. 12. 15)
(第5次本會議決議)

委員名	黨籍	委員名	黨籍
尹吉重	無所屬	李奎甲	大韓國民黨

委員名	黨籍	委員名	黨籍
徐二煥	一民俱樂部	朴永出	無所屬
金鍾烈	無所屬	金用雨	"
池青天	民主國民黨	徐玟濠	"
鄭一亨	無所屬	金光俊	"
金從會	"	徐範錫	"

第10回國會(定期會)

非常對策連絡委員(追加委員)

委員名	黨籍	委員名	黨籍
朴晚元	無所屬	嚴詳燮	無所屬
徐範錫	"	愼重穆	"
南松鶴	大韓國民黨	李鍾郁	大韓獨立促成國民會
李載燮	"	(池青天)	民主國民黨
(徐玟濠)	無所屬	(金用雨)	無所屬
(黃聖秀)	"	(李容高)	"
(金從會)	"		

※ ()는 前會期中 選任된 委員임.

「백아대」元帥禮訪및 武裝交涉委員(追加委員)

委員名	黨籍	委員名	黨籍
申翼熙	民主國民黨	(池青天)	民主國民黨
(張澤相)	無所屬	張洪瑛	"

※ ()는 前會期中 選任된 委員임.

錦江以北戰災民救出特別委員

(1951. 1. 17)
(第8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黨籍	委員名	黨籍
金用雨	無所屬	郭義榮	無所屬
洪昌燮	"	李鍾純	"
李鎮洙	大韓國民黨		

非常時局下緊急援護對策特別委員

(1951. 1. 17)
(第11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黨籍	委員名	黨籍
徐二煥	一民俱樂部	朴哲雄	無所屬
徐相國	民主國民黨	尹宅重	民主國民黨
張洪瑛	"	朴永出	大韓國民黨
崔獻吉	大韓國民黨	趙大衍	無所屬
太完善	無所屬	鄭文欽	"

第2國民兵處遇特別調查委員

(1951. 2. 1)
(第19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黨籍	委員名	黨籍
崔國鉉	民主國民黨	李時穆	無所屬
朴定根	無所屬	宋邦鏞	"
金正實	"		

國會事務監查特別委員

(1951. 2. 3
第21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黨籍	委員名	黨籍
白南軾	大韓獨立促成國民會	蘇宜奎	民主國民黨
李鍾榮	"	李載禮	大韓國民黨
洪翼杓	無所屬		

壁報事件特別調查委員

(1951. 2. 15
第25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黨籍	委員名	黨籍
金光俊	無所屬	禹文	大韓國民黨
李錫基	"	李鍾榮	大韓獨立促成國民會
朴忠植	"		

遣日委員團入國許可再交涉委員

(1951. 2. 16
第26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黨籍	委員名	黨籍
金東成	無所屬	金從會	無所屬
鄭基元	"		

歸屬財產拂下에 관한特別調查委員

(1951. 3. 20
第46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鄭憲柱	共和俱樂部	崔遠壽	民友會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李鍾純	民主國民黨	林基奉	新政同志會
任興淳	"	張洪瑛	共和俱樂部
洪昌燮	新政同志會	朴順天	"

國民防衛軍疑獄事件特別調查委員

(1951. 3. 29
第54次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李鍾榮	新政同志會	徐珉濠	共和俱樂部
黃炳珪	"	趙光燮	民友會
朴晚元	"	張洪瑛	"
蘇宜奎	民主國民黨	方萬洙	"
梁炳日	"	金正基	無所屬
金命洙	"	白南軾	"
嚴詳燮	共和俱樂部	柳鴻	"
太完善	"		

居昌事件特別調查委員

(1951. 3. 30
第55次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金正實	新政同志會	慎重穆	新政同志會
李炳洪	民主國民黨	朴井圭	共和俱樂部
盧企容	"	金意俊	民友會
金宗順	共和俱樂部	李忠煥	"

一線師團長等の國防部長官留任運動에 관한決議文作成傳達委員
 (1951. 5. 3)
 (第72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南松鶴	新政同志會	徐範錫	民主國民黨
李相喆	共和俱樂部	徐二煥	民友會

國政監查報告處理委員
 (1951. 5. 5)
 (第74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宋邦鋪	新政同志會	梁炳日	民主國民黨
金正實	"	尹宅重	"
金奉才	共和俱樂部	權仲敦	民友會
李錫基	"	郭義榮	"

居昌事件調查結果處理委員
 (1951. 5. 8)
 (第76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池蓮海	新政同志會	盧企容	民主國民黨
金宗順	共和俱樂部	徐二煥	民友會

國民防衛軍疑獄事件調查處理委員
 (1951. 5. 8)
 (第76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曹奉岩	無所屬	趙光雙	民友會

委員名	黨籍	委員名	黨籍
徐範錫	民主國民黨	太完善	共和俱樂部
洪昌雙	新政同志會	白南軾	無所屬

第11回 國會(臨時會)

國會自肅이권社特別調查委員

(1951. 6. 6)
(第5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朴晚元	共和民政會	宋邦鏞	共和民政會
嚴詳雙	"	徐範錫	民主國民黨
金奉才	"	金秀學	"
李載禮	"	崔遠壽	民友會
李鍾榮	"	白南軾	無所屬
池蓮海	"	俞昇潛	民主國民黨
洪昌雙	"	蘇宜奎	"
鄭憲柱	"	金意俊	民友會
趙柱泳	"	柳鴻	無所屬

國會議員舌禍事件特別調查委員

(1951. 6. 29)
(第12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鄭憲柱	共和民政會	洪吉善	民主國民黨
黃聖秀	"	尹宅重	"
太完善	"	權炳魯	民友會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洪昌雙	共和民政會	柳鴻	無所屬
梁又正	"		

濟州島第1陸軍訓練所視察委員

(1951. 11. 6
第88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金奉才	共和民政會	李鎮洙	共和民政會
尹在根	"	徐相國	民主國民黨
宋邦鋪	"	金命洙	"
金俊熙	"	韓弼洙	民友會
金正科	"		

第12回 國會(定期會)

補開選舉視察特別調查委員

(1952. 1. 21
第10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鄭憲柱	自由黨	李相喆	自由黨
黃炳珪	"	嚴秉學	"
李錫基	"	金從會	"
李鍾榮	"	池青天	民主國民黨
鄭憲祚	"	朴珉基	"
尹潭	民主國民黨	金相賢	民友會
白南軾	民友會	金正基	無所屬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金智泰	民友會	郭尙勳	無所屬
鄭一亨	無所屬	成得煥	民主國民黨
李宗鉉	"	李春基	"
徐珉濂	"	張洪琰	民友會
徐範錫	民主國民黨	申光均	"
趙淳	"	徐相灝	無所屬
洪吉善	"	李容高	"
金鍾烈	民友會		

朝鮮爭議事件特別調查委員(第1次)

(1952. 1. 21)
(第10次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吳誼寬	自由黨	柳鴻	民友會
金正實	"	金正基	無所屬
鄭南局	民主國民黨		

國會議員召選說에 관한件特別調查委員

(1952. 2. 16)
(第16次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李鍾榮	自由黨	徐範錫	民主國民黨
尹吉重	"	蘇宣奎	"
嚴詳燮	"	徐二煥	民友會
李錫基	"	徐珉濂	無所屬
大完善	"		

緊急食糧特別對策委員

(1952. 3. 5
第26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朴定根	自由黨	申珪休	民主國民黨
崔獻吉	"	吉秉雯	"
金奉才	"	權炳魯	民友會
金用雨	"	柳德天	無所屬
方萬洙	"		

捕虜實情特別調查委員

(1952. 3. 11
第31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李道榮	自由黨	具乙會	民主國民黨
黃聖秀	" (外務)	任興淳	" (國防)
尹在根	" (國防)	郭義榮	民友會
李宗鉉	無所屬	權炳魯	" (外務)

朝紡爭議事件特別調查委員(第2次)

(1952. 3. 18
第32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徐範錫	民主國民黨(內務)	鄭南局	民主國民黨(商工)
嚴秉學	自由黨(內務)	金用雨	自由黨(社會保健)
崔成雄	" (內務)	吳誼寬	" (社會保健)
任興淳	" (商工)	趙時元	" (社會保健)
權仲教	民友會(商工)		

食糧事情特別調查委員

(1952. 3. 19
第33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盧企容	民主國民黨(內務)	洪昌雙	自由黨(農林)
方萬洙	自由黨(內務)	池蓮海	" (商工)
李教承	" (文教)	李炳洪	民主國民黨(社會)
朴哲雄	" (文教)	朴性夏	民友會(社會)
具乙會	民主國民黨(農林)		

徐珉濠議員事件特別調查委員

(1952. 4. 26
議長職權으로 構成)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柳鴻	民友會	趙淳	民主國民黨
金正基	無所屬	金光俊	民友會
趙定勳	自由黨	李錫基	自由黨

食糧非常施策狀況調查監視委員

(1952. 5. 9
第53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任興淳	民主國民黨	金宇城	自由黨
金仁泰	自由黨	柳寅坤	"
韓弼洙	民友會	呂永復	民主國民黨
崔獻吉	自由黨	盧企容	"
具乙會	民主國民黨		

國會議員의國際共產黨關聯事件特別調查委員

(1952. 6. 19)
(第81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李 鎮 洙	自 由 黨(合同)	俞 昇 潛	民 主 國 民 黨
金 益 魯	"	韓 國 源	民 友 會
吳 誠 煥	自 由 黨	白 南 軾	"
金 判 錫	"	李 時 穆	無 所 屬
徐 相 國	民 主 國 民 黨	柳 德 天	"

大統領狙擊事件特別調查委員

(1952. 6. 28)
(第86次 本會議決議)

各 團體 構成員數比率에 의하여 9人을 選定하기로 되었으나 選任報告 및 資料未備로 委員名을 記載치 못함.

第13回 國會(臨時會)

政府保有弗및重石弗에 의한輸入糧穀肥料其他物資取扱에 관한特別調查委員

(1952. 7. 18)
(第10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李 鎮 洙	自 由 黨(合同)	蘇 宣 奎	民 主 國 民 黨
朴 晚 元	自 由 黨	李 時 穆	無 所 屬
李 春 基	民 主 國 民 黨	金 從 會	自 由 黨(合同)
柳 德 天	無 所 屬	池 運 海	自 由 黨
金 亨 德	自 由 黨(合同)	朴 珉 基	民 主 國 民 黨
金 仁 泰	自 由 黨	柳 鴻	無 所 屬

(서울·京畿地區)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金仁泰	自由黨	南松鶴	自由黨(合同)
呂運弘	自由黨(合同)	吳誼寬	自由黨
趙時元	自由黨(合同)	尹瑛淳	自由黨(合同)
朴濟煥	自由黨	李東煥	無所屬
尹在根	"	李敎承	自由黨(合同)
李炳洪	民主國民黨	李奎甲	"

(江原地區)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崔獻吉	自由黨(合同)	李在鶴	自由黨
朴勝夏	"	安相漢	"
李鍾郁	自由黨	李鍾榮	"
任容淳	"		

(濟州地區)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姜昌略	自由黨(合同)		

(忠南·北地區)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李範昇	無所屬	金永善	自由黨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具乙會	無所屬	趙大衍	自由黨
安萬福	民主國民黨	延秉吳	自由黨(合同)
韓弼洙	無所屬	金鍾烈	無所屬
李鍾純	民主國民黨	金鏞化	自由黨(合同)
金濟能	自由黨(合同)	鄭文欽	"
俞昇滄	民主國民黨	郭義榮	無所屬
李錫基	自由黨	崔勉洙	自由黨(合同)
李相喆	"		

(慶南・北地區)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柳德天	無所屬	徐二煥	無所屬
河萬漢	"	權炳魯	"
金益魯	自由黨(合同)	李采五	自由黨
朴性夏	"	李鍾壽	"
鄭基元	"	崔遠壽	自由黨(合同)
趙瓊奎	"	權泰郁	"
金鳳祚	"		

(全南・北地區)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朴定根	自由黨	趙定勳	自由黨
金宇城	"	林基奉	自由黨(合同)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柳寅坤	"	尹泳善	無所屬
邊鎮甲	"	朴八峰	民主國民黨
呂永複	無所屬	梁炳日	"
蘇宜奎	民主國民黨	黃炳珪	自由黨(合同)
張建相	自由黨	朴珉基	民主國民黨
任永信	自由黨(合同)	任興淳	"
鄭憲祚	"	徐相德	無所屬
尹宅重	民主國民黨	金良洙	民主國民黨
邊光鎭	"	方萬洙	自由黨(合同)
李春基	"	金宅述	"
朴良載	自由黨	襄恩希	"
金奉才	"	張洪瑛	無所屬
宋邦鏞	"	金相賢	"
鄭憲柱	"	崔主日	自由黨(合同)
朴晚元	"	金汶鏞	"
金宗順	"	曹秉雯	無所屬

第14回 國會(臨時會)

重石弗事件處理에 관한特別委員

(1952. 10. 28
第9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黃炳珪	自由黨(合同)	金從會	自由黨(合同)
趙瓊奎	"	蘇宜奎	民主國民黨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李錫基	自由黨	韓國源	新羅會
嚴詳燮	"	郭尙勳	無所屬
李春基	民主國民黨		

尹致暎議員發言內容糾明委員

(1952. 11. 8
第16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禹文	自由黨(合同)	鄭南局	民主國民黨
崔主日	"	安萬福	"
金仁善	"	白南軾	新羅會
李相喆	自由黨	柳鴻	無所屬
趙定勳	"		

次期美國大統領「아이젠 하워」元帥來韓에對處할特別委員

(1952. 11. 13
第20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呂運弘	自由黨(合同)	張澤相	新羅會
康慶玉	"	李鍾榮	"
朴永出	"	李鍾郁	"
任興淳	民主國民黨	李容高	無所屬
金秀學	"	朴順天	"
金良洙	"	郭義榮	"
張建相	自由黨	吳緯洙	自由黨 (財政經濟委員長)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尹在根	自由黨	鄭一亨	無所屬 (外務委員長)
太完善	"	金從會	自由黨(合同) (國防委員長)

第15回 國會(定期會)

赤字豫算補填對策에 관한特別委員

(1952. 12. 23)
(第2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吳諱泳	自由黨	金從會	自由黨(院外)
金奉才	"	郭尙勳	無所屬俱樂部
金秀學	民主國民黨	徐二煥	新羅會
趙柱泳	自由黨(院外)	鄭一亨	無所屬俱樂部

昌景號沈沒事件特別調查委員

(1953. 1. 12)
(第3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方萬洙	自由黨(院外)	李采五	自由黨
金仁善	"	白南弼	新羅會
鄭在浣	民主國民黨	徐相德	無所屬俱樂部

幸運號沈沒事件特別調查委員

(1953. 1. 28)
(第16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邊光鎬	民主國民黨	李鍾純	民主國民黨
金仁善	自由黨(院外)		

人權蹂躪特別調查委員

(1953. 2. 3
第21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金 濬 泰	自由黨(院外) (法制司法)	朴 世 東	自由黨(院外)(內務)
鄭 憲 柱	自由黨(法制司法)	金 秉 鎮	自由黨(內務)
金 宗 順	新羅會(法制司法)	權 炳 魯	新羅會(內務)

政府機構改革及公務員處遇改善特別對策委員

(1953. 2. 6
第24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嚴 詳 燮	自由黨(法制司法)	郭 義 榮	無所屬俱樂部 (財政經濟)
金 正 實	自由黨(院外) (法制司法)	朴 定 根	自由黨(農林)
安 龍 大	" (內務)	柳 德 天	無所屬俱樂部(農林)
方 萬 洙	" (內務)	太 完 善	自由黨(商工)
鄭 一 亨	無所屬俱樂部(外務)	池 蓮 海	新羅會(商工)
禹 文	自由黨(院外)(外務)	李 在 鶴	自由黨(文教)
金 汶 鏞	" (國防)	李 時 穆	無所屬俱樂部(文教)
柳 鴻	無所屬(國防)	金 翼 基	自由黨(院外) (社會保健)
李 鍾 榮	新羅會(豫算決算)	俞 昇 滯	民主國民黨 (社會保健)
趙 淳	自由黨(院外) (豫算決算)	宋 邦 鏞	自由黨(交通遞信)
金 奉 才	自由黨(財政經濟)	南 松 鶴	自由黨(院外) (交通遞信)

傷病捕虜交換實施狀況觀察特別委員

(1953. 4. 16
第55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黃 聖 秀	自由黨(外務)	金 汶 鏞	自由黨(國防)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李容高	無所屬(外務)	金用雨	無所屬(社會保健)
任興淳	民主國民黨(國防)	朴永出	自由黨(社會保健)

故李始榮翁國民葬準備委員

(1953. 4. 17)
(第56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郭尙勳	無所屬	洪翼杓	無所屬
池青天	自由黨	尹致暎	"
金良洙	民主國民黨		

北進統一國民運動展開위원회特別委員

(1953. 4. 21)
(第59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尹致暎	無所屬	蘇宜奎	民主國民黨
婁恩希	自由黨	鄭一亨	無所屬
金正實	"	吳緯泳	"
金良洙	民主國民黨		

山清地區治安狀態特別調查委員

(1953. 4. 30)
(第64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安龍大	自由黨(內務)	金汶鍾	自由黨(國防)
趙定勳	" (內務)	金命洙	民主國民黨(國防)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吳誠煥	自由黨	蘇宜奎	民主國民黨
金正實	"	梁炳日	"
洪昌燮	"	李采五	無所屬
金宗順	"	朴性夏	"
韓弼洙	"		

勞務師團處遇改善에 관한特別委員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任興淳	民主國民黨(國防)	金用雨	無所屬(社會保健)
柳鴻	無所屬(國防)	俞昇濬	民主國民黨 (社會保健)
洪翼杓	" (國防)	朴永出	自由黨(社會保健)
尹在根	自由黨(國防)	張洪瑛	無所屬(財政經濟)
李錫基	" (內務)	郭義榮	自由黨(財政經濟)
嚴秉學	" (內務)	崔瑗浩	民主國民黨 (財政經濟)
趙淳	" (內務)		

休戰會談以食糧緊急施策建議를위 한大統領訪問委員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尹致暎	無所屬	朴忠植	民主國民黨(內務)
裴恩希	自由黨	任興淳	" (國防)
蘇宜奎	民主國民黨	金仁泰	無所屬(農林)
郭尙勳	無所屬		

糧穀無指令配給事件特別調查委員

(1953. 5. 30)
(第77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李 敦 善	自 由 黨	徐 相 德	無 所 屬
安 相 漢	"	嚴 秉 學	自 由 黨
池 蓮 海	"	金 仁 泰	無 所 屬
徐 範 錫	民 主 國 民 黨	徐 相 國	民 主 國 民 黨
金 奉 才	無 所 屬		

※ 本調查委員名單은 “國會史”의 資料임.

第16回 國會(臨時會)

休戰對策特別委員

(1953. 6. 4)
(第1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婁 恩 希	自 由 黨	蘇 宣 奎	民 主 國 民 黨
梁 又 正	"	任 興 淳	"
李 在 鶴	"	鄭 一 亨	無 所 屬
尹 在 根	"	柳 鴻	"
朴 永 出	"	張 建 相	"
黃 聖 秀	"	郭 尙 勳	"

申亨植妄言事件及光州·麗水通匪事件特別調查委員 (1953. 6. 30)
(第13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吳 誠 煥	自 由 黨	安 萬 福	民 主 國 民 黨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洪昌燮	無所屬	鄭憲柱	無所屬
趙光燮	"	張洪瑛	"

奪還地區收復對策委員

(1953. 8. 26
第36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洪昌燮	自由黨	金命洙	民主國民黨
金正實	"	洪吉善	"
崔獻吉	"	柳鴻	無所屬
朴勝夏	"	李鍾榮	"
趙定勳	"	鄭一亨	"
鄭文欽	"	尹吉重	"

拉致民間人士送還對策委員

(1953. 8. 28
第37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任興淳	民主國民黨	鄭一亨	無所屬
李宗鉉	無所屬	洪翼杓	"
金汶鏞	自由黨	禹文	自由黨
尹在根	"	金良洙	民主國民黨
朴永出	"	張建相	無所屬
徐相國	民主國民黨	李容高	"

糧穀無指令配給事件以光州・麗水通匪事件處理委員 (1953. 8. 28)
(第37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池蓮海	自由黨	邊鎮甲	無所屬
趙柱泳	"	郭尙勳	"
金正植	"	金仁泰	"
蘇宜奎	民主國民黨	趙光燮	自由黨

政府顛覆陰謀事件特別調查委員 (1953. 9. 24)
(第41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趙光燮	自由黨	李春基	民主國民黨
趙柱泳	"	徐範錫	無所屬
朴勝夏	"	李範昇	"

金正植議員發言內容料明委員 (1953. 10. 6)
(第50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徐二煥	自由黨	鄭純朝	民主國民黨
尹泳善	"	權仲敦	無所屬
鄭憲祚	"	趙大衍	"

第17回 國會(臨時會)

車輛檢査에 관한特別對策委員 (1953. 11. 24)
(第12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尹吉重	無所屬 (法制司法委員長)	任興淳	無所屬(國防委員長)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金宗順	自由黨	金判錫	自由黨
李錫基	自由黨 (內務委員長)	愼鍾項	自由黨 (交通遞信委員長)
權炳魯	自由黨	趙光燮	自由黨

宜寧被害事件調查及慰問委員

(1953. 11. 25)
(第13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金正實	自由黨	盧企容	民主國民黨
愼重穆	"	李時穆	無所屬
吳緯泳	無所屬		

秋穀買上方策에 관한特別委員

(1953. 11. 27)
(第15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愼重穆	自由黨	崔國鉉	無所屬
池蓮海	"	朴定根	自由黨(農林委員長)
李忠煥	"	朴晚元	自由黨 (財政經濟委員長)
朴珉基	民主國民黨	吳緯泳	無所屬 (豫算決算委員長)
金仁泰	無所屬		

釜山大火災事件調查及慰問委員

(1953. 11. 28)
(第16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郭尙勳	無所屬(全院委員長)	朴順天	無所屬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鄭基元	自由黨	錢鎮漢	無所屬
張建相	無所屬	崔成雄	自由黨
金智泰	"	金亨德	"
鄭憲柱	"		

- 備考：1. ○標는 委員長을 表示하였으며 그외의 委員長은 資料의 不在로 記載치 못한.
2. 特別委員會의 委員長制度를 確立한것은 1953年 1月 15日 國會法改正 이후부터 임.
3. 交涉團體未構成時는 1950年 5月 30日 選舉當時의 黨籍을 表示하였음.

〈參 考〉

第2代 國會中 常任委員會의 種類와 委員數의 變遷은 다음과 같다.

制憲國會	第2代國會	
制定國會法 第16條 (1948. 10. 2 法律第5號)	第2次改正國會法 第16條 (1951. 3. 15 法律第179號)	第4次改正國會法 第16條 (1953. 1. 22 法律第275號)
第 1 回	第 10 回	第 15 回
1. 法制司法 20人	1. 法制司法 20人	1. 法制司法 15人
2. 外務國防 30人	2. 內 務 20人	2. 內 務 20人
3. 內務治安 20人	3. 外 務 15人	3. 外 務 15人
4. 財政經濟 40人	4. 國 防 20人	4. 國 防 20人
5. 產 業 40人	5. 財政經濟 30人	5. 豫算決算 36人
6. 文教社會 20人	6. 農 林 20人	6. 財政經濟 20人
7. 交通遞信 20人	7. 商 工 20人	7. 農 林 20人
8. 懲戒資格 20人	8. 文 教 20人	8. 商 工 20人
	9. 社會保健 20人	9. 文 教 20人
	10. 交通遞信 15人	10. 社會保健 20人
	11. 懲戒資格 10人	11. 交通遞信 20人
	12. 國會運營 10人	12. 懲戒資格 15人
		13. 國會運營 10人

3. 國務總理・國務委員과 政府委員

第2代國會中 國務總理・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의 異動狀況은 다음과 같다.

가. 國務總理

任命年月日	部 署	姓 名	解任年月日
1950. 4. 21	國 務 總 理	申 性 模	1950. 11. 23
1950. 11. 23		張 勉	1951. 4. 24
1951. 11. 16		許 政	1952. 4. 10
1952. 4. 24		李 允 榮	1952. 5. 6
1952. 5. 6		張 澤 相	1952. 10. 6
1952. 10. 9		白 斗 鎮	

나. 國務委員

任命年月日	部 署	姓 名	解任年月日
1948. 12. 25	外 務 部 長 官	林 炳 稷	1951. 4. 16
1951. 4. 16		卞 榮 泰	
1950. 2. 7	內 務 部 長 官	白 性 郁	1950. 7. 15
1950. 7. 15		趙 炳 玉	1951. 5. 7
1951. 5. 7		李 淳 鎔	1952. 1. 12
1952. 1. 17		張 錫 潤	1952. 5. 24

任命年月日	部 署	姓 名	解任年月日
1952. 5. 24	內 務 部 長 官	李 範 爽	1952. 7. 22
1952. 7. 24		金 泰 善	1952. 8. 29
1952. 8. 29		陳 憲 植	1953. 9. 10
1953. 9. 10		黃 虎 鉉	1953. 9. 19
1953. 9. 19		白 漢 成	
1950. 4. 25	財 務 部 長 官	崔 淳 周	1951. 3. 5
1951. 3. 5		白 斗 鎮	1953. 9. 9
1953. 9. 9		朴 熙 賢	
1950. 5. 22	法 務 部 長 官	李 愚 益	1950. 11. 23
1950. 11. 23		金 俊 淵	1951. 5. 7
1951. 5. 7		趙 鎮 滿	1952. 3. 5
1952. 3. 5		徐 相 權	
1949. 3. 21	國 防 部 長 官	申 性 模	1951. 5. 7
1951. 5. 7		李 起 鵬	1952. 3. 29
1952. 3. 29		申 泰 英	1953. 6. 30
1953. 6. 30		孫 元 一	
1950. 5. 2	文 教 部 長 官	白 樂 濬	1952. 10. 30
1952. 10. 30		金 法 麟	1954. 2. 17
1954. 4. 21		李 瑄 根	
1950. 1. 21	農 林 部 長 官	尹 永 善	1950. 11. 23
1950. 11. 23		孔 鎮 恒	1951. 5. 7
1951. 5. 7		任 文 桓	1952. 3. 6

任命年月日	部 署	姓 名	解任年月日
1952. 3. 6	農 林 部 長 官	咸 仁 燮	1952. 8. 29
1952. 8. 29		愼 重 穆	1952. 9. 10
1953. 9. 10		鄭 在 高 (署理)	1953. 10. 7
1953. 10. 7		梁 聖 奉	1954. 5. 6
1954. 5. 6		尹 建 重	
1950. 5. 9	商 工 部 長 官	金 勳	1952. 3. 27
1952. 3. 27		李 教 善	1952. 11. 6
1952. 11. 6		李 載 禮	1953. 10. 7
1953. 10. 7		安 東 赫	
1950. 11. 26	保 健 部 長 官	吳 漢 泳	1952. 2. 5
1952. 2. 5		崔 在 裕	
1950. 11. 23	社 會 部 長 官	許 政	1952. 1. 20
1952. 1. 12		崔 昌 順	1952. 10. 9
1952. 10. 9		朴 衡 晉	
1950. 5. 10	交 通 部 長 官	金 錫 寬	1953. 2. 3
1953. 2. 3		尹 玟 淳	1954. 2. 10
1954. 2. 10		李 鍾 林	
1949. 6. 14	遞 信 部 長 官	張 基 永	1952. 1. 12
1952. 1. 15		李 淳 鎔	1952. 3. 27
1952. 3. 27		趙 桂 泳	1952. 10. 9
1952. 10. 9		姜 仁 澤	

任命年月日	部 署	姓 名	解任年月日
1948. 9. 27	無任所長官	李 允 榮	1952. 4. 24
1952. 5. 6		李 允 榮	1952. 7. 22
1952. 10. 9		朴 賢 淑	

ㄷ. 政府委員

任命年月日	部 署	姓 名	解任年月日
1949. 2. 24	外務部次官	曹 正 煥	1951. 6. 10
1951. 7. 10		朴 巖	1951. 8. 31
1951. 8. 31		葛 弘 基	1953. 12. 2
1953. 12. 2		曹 正 煥	
1950. 9. 11	內務部次官	洪 憲 杓	1950. 6. 20
1951. 6. 20		洪 範 善	1951. 11. 20
1951. 11. 20		張 錫 潤	1951. 1. 17
1952. 4. 30		李 丙 虎	1952. 5. 24
1952. 5. 24		洪 範 憲	1952. 7. 30
1952. 9. 17		黃 虎 鉉	1953. 9. 30
1953. 9. 30		韓 熙 錫	1954. 2. 10
1954. 2. 15		金 亨 根	
1949. 11. 17	財務部次官	金 裕 澤	1951. 9. 13
1951. 9. 14		朴 熙 賢	1953. 9. 9
1953. 9. 14		姜 聲 郃	
1950. 5. 15	國防部次官	張 曠 根	1951. 1. 23

任命年月日	部 署	姓 名	解任年月日
1951. 6. 23	國防部次官	金 一 煥	1953. 11. 9
1953. 11. 9		姜 英 勳	1953. 11. 18
1953. 11. 18		李 濬 浩	
1950. 3. 14	法務部次官	金 潤 根	1951. 11. 30
1951. 11. 30		閔 復 基	1952. 5. 27
1952. 5. 27		鄭 在 煥	1954. 2. 9
1954. 2. 17		洪 璉 基	
1950. 5. 12	文教部次官	崔 奎 南	1951. 9. 20
1951. 9. 21		高 秉 幹	1952. 11. 13
1952. 11. 14		許 增 秀	
1950. 3. 14	農林部次官	朱 碩 均	1950. 12. 16
1951. 3. 14		崔 昶 德	1951. 6. 2
1951. 6. 2		元 容 爽	1952. 10. 24
1952. 10. 24		鄭 在 高	
1950. 5. 22	商工部次官	李 丙 虎	1952. 4. 30
1952. 4. 30		咸 德 用	1952. 11. 20
1957. 11. 20		林 楨 奎	1953. 10. 20
1953. 10. 20		尹 仁 上	
1950. 12. 24	保健部次官	任 文 恒	1951. 5. 7
1951. 5. 25		崔 在 裕	1952. 2. 5
1952. 2. 7		鄭 準 謨	1954. 2. 17
1954. 2. 15		鄭 鎮 旭	

任命年月日	部 署	姓 名	解任年月日
1949. 1. 26 1952. 1. 9	社 會 部 次 官	崔 昌 順 金 容 澤	1952. 1. 12
1950. 5. 31 1953. 4. 24 1954. 2. 19	交 通 部 次 官	金 錫 明 李 鍾 林 金 允 基	1955. 4. 24 1954. 2. 19
1949. 7. 29 1952. 7. 5	遞 信 部 次 官	姜 直 淳 金 義 昌	1952. 7. 5
1950. 8. 15 1951. 11. 26 1953. 3. 6	公 報 處 長	金 活 蘭 李 哲 源 葛 弘 基	1951. 1. 26 1953. 3. 6
1948. 11. 30 1951. 5. 7 1953. 11. 11	總 務 處 長	全 奎 弘 韓 東 錫 鄭 雲 甲	1951. 4. 27 1953. 11. 11
1949. 6. 6	法 制 處 長	申 泰 益	
1950. 8. 12 1951. 3. 5 1953. 8. 3	企 劃 處 長	崔 淳 周 白 斗 鎮 元 容 爽	1951. 3. 5 1953. 8. 3
1952. 4. 4	專 賣 廳 長	金 致 榮	

任命年月日	部 署	姓 名	解任年月日
1949. 12. 17	外資購買處長	金 佑 杵	1952. 2. 7
1952. 4. 7		玄 權	1952. 12. 26
1952. 12. 26		黃 鍾 律	1953. 5. 28
1953. 11. 24		李 淳 鎔	1953. 11. 24
1953. 11. 24		孫 노 더	

※ 次官級以下는 記載치 않음.

4. 議 案

가. 議案提出數와 그 成績

(議案種別處理狀況表)

議案種別	區分	提出數	處					理		會期不 繼續 으로 廢棄
			可決	否決	廢棄	撤回	保留	返戻		
豫算案及決算		24	22					2		
法 律 案	議員發議	182	77	1	70	1	8		25	
	政府提出	216	137	1	34	5	2	4	33	
	小 計	398	214	2	104	6	10	4	58	
再議法律案		25	14(4)		6				1	
同意(承認)案		105	90	12					3	
建 議 案		136	89	1	13	1	2		30	
決 議 案		308	258	6	20	3	8		13	
重 要 動 議		201	180	5	13	1	2			
計		1,197	867(4)	26	156	11	22	6	105	

※ ()는 法律確定으로 看做한 件임.

(1) 豫算案과 決算

會 期 別	提 出 數	可 決	返 戻
第 7 回			
第 8 回	4	4	
第 9 回			
第 10 回	4	4	
第 11 回	3	3	
第 12 回	3	2	
第 13 回	(1)		
第 14 回	1(1)	1	
第 15 回	3(1)	3	
第 16 回	2(1)	1	
第 17 回	(2)		
第 18 回	4(2)	4	2
計	24	22	2

※ () 內의 數字는 前會期로부터 移越된 件임.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議決年月日	可決	返戻
8	8	6·25事變收拾非常經費豫算案(8月分) (檀紀4283年度第2回)	1950. 8. 1	"	
8	8	6·25事變收拾非常經費豫算案(9月分) (檀紀4283年度第3回)	1950. 9. 9	"	
8	8	6·25事變收拾非常經費豫算案 (檀紀4283年度第4回)	1950. 9. 30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議決年月日	可決	返戻
8	8	檀紀4283年度第5回歳入歳出追加更正豫算案	1950. 11. 25	"	
10	10	檀紀4283年度第6回歳入歳出追加更正豫算案	1951. 1. 30	"	
10	10	檀紀4283年度第7回歳入歳出追加更正豫算案	1951. 3. 31	"	
10	10	檀紀4284年度假豫算案	1951. 3. 31	"	
10	10	檀紀4284年度歳入歳出總豫算案	1951. 4. 30	"	
11	11	檀紀4284年度交通事業特別會計歳入歳出追加更正豫算案	1951. 6. 9	"	
11	11	檀紀4284年度第2回歳入歳出追加更正豫算案	1951. 8. 31	"	
11	11	檀紀4284年度第3回歳入歳出追加更正豫算案	1951. 12. 8	"	
12	12	檀紀4285年度歳入歳出假豫算案	1952. 3. 31	"	
12	12	檀紀4285年度歳入歳出總豫算案	1952. 4. 18	"	
14	14	檀紀4285年度第1回歳入歳出追加更正豫算案	1952. 12. 3	"	
15	15	檀紀4285年度第2回歳入歳出追加更正豫算案	1953. 3. 31	"	
15	15	檀紀4286年度歳入歳出假豫算案	1953. 3. 31	"	
15	15	檀紀4286年度歳入歳出總豫算案	1953. 4. 30	"	8.28 轉送
16	16	檀紀4286年度第1回歳入歳出追加更正豫算案	1953. 10. 20	"	
12	18	檀紀4283年度歳入歳出總決算案	1954. 3. 5	"	
16	18	檀紀4282年度歳入歳出總決算案	1954. 3. 15	"	
18	18	檀紀4286年度第2回歳入歳出追加更正豫算案	1954. 3. 23	"	
18	18	檀紀4287年度歳入歳出總豫算案	1954. 3. 31	"	
18	18	檀紀4287年度歳入歳出總豫算案	1954. 1. 13		"
18	18	檀紀4288年度歳入歳出總豫算案	1954. 1. 13		"

(2) 法律案

會期別處理狀況

會期別	區分 提出數	可決	否決	廢棄	撤回	保留	返戻	會期不繼續 으로 因한 廢棄
第 8 回	44	27		8		2		
第 9 回	1 (7)	2						
第 10 回	71 (6)	34	1	6	1	2		
第 11 回	59(33)	32		10		1		
第 12 回	56(49)	16	1	5	1			
第 13 回	14(82)	12		10				
第 14 回	24(74)	19		11				
第 15 回	40(68)	21		5	3			
第 16 回	30(79)	10		12			4	
第 17 回	6(83)	7		2				
第 18 回	53(80)	34		35	1	5		58
計	398	214	2	104	6	10	4	58

(㉞) 議員發議法律案

會期別	區分 提出數	可決	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繼續 으로 因한 廢棄
第 8 回	16	5		5		2	
第 9 回	(4)	1					
第 10 回	34 (3)	11	1	3	1	1	
第 11 回	30(20)	15		7		1	
第 12 回	25(27)	9		2			

會期別	區分	提出數	可決	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繼續 으로 因한 廢棄
第 13 回		6(41)	4		9			
第 14 回		13(34)	3		5			
第 15 回		10(39)	12		1			
第 16 回		20(36)	7		9			
第 17 回		4(40)	1		2			
第 18 回		24(41)	9		27		4	25
計		182	77	1	70	1	8	25

※ () 內의 數字는 前會期로부터 移越된 件數임.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繼續 으로 因한 廢棄
8	8	避難民收容에 關한 臨時措置法案	李在鶴	1950. 7. 31	〃					
8	8	漁業에 關한 臨時措置 法中改正法律案	產 業 委員長	1950. 9. 16	〃					
8	8	私刑禁止法案	法制司法 委員長	1950. 9. 19	〃					
8	8	附逆行爲特別處理法 案	法制司法 委員長	1950. 9. 29	〃					
8	8	非常事態下에 犯罪處 罰에 關한 特別措置令 中改正法律案	法制司法 委員長	1950. 11. 23	〃					
8	9	行方不明된 國會議員 에 對한 特別措置法案 〔(修)國會議員在籍 數에 關한 特別措置法 律案〕	郭尙勳	1950. 12. 12	〃					
8	10	國會議員報酬에 關한 法律中改正法律案	金益魯	1950. 12. 25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案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續 行 廢 棄
10	10	反民族行爲處罰法等 廢止에 關한 法律案	尹吉重	1951. 2. 3	"					
10	10	國會法中改正法律案	嚴詳燮	1951. 2. 24	"					
10	10	國會法中改正法律案	法制司法 委員長	1951. 2. 24	"					
10	10	歸屬農地特別措置法 案	產 業 委員長	1951. 3. 9	"					
10	10	兵役法中改正法律案 〔(修)國民防衛軍設置 法廢止에 關한 法律案〕	金意俊	1951. 4. 30	"					
10	10	非常時鄉土防衛令廢 止에 關한 法律案	金意俊	1951. 4. 30	"					
10	10	兵役法中改正法律案	金意俊	1951. 5. 12	"					
10	10	國會議員選舉法中改 正法律案	法制司法 委員長	1951. 5. 17	"					
10	10	糧穀管理法中改正法 律案	農 林 委員長	1951. 5. 17	"					
10	10	國會議員選舉法中改 正法律案	尹吉重	1951. 5. 17	"					
11	11	漁業에 關한 臨時措置 法中改正法律案	商 工 委員長	1951. 6. 6	"					
11	11	文教財團所有農地에 關한 特別補償法案 〔(修)文教財團所有農 地特別補償法案〕	文 教 委員長 農 林 委員長	1951. 6. 7	"					
10	11	地方自治法中改正法 律案	趙柱泳	1951. 7. 4	"					
11	11	地方自治法中改正法 律案	內 務 委員長	1951. 7. 7	"					
11	11	軍法會議의 裁判權에 關한 法律案	嚴詳燮	1951. 7. 12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續積因	不繼續廢棄
10	11	國家賠償法案	金正實	1951. 8. 20	〃					
11	11	水產廳設置法案	金正實	1951. 8. 20	〃					
10	11	國民醫療法案	韓國源	1951. 9. 6	〃					
11	11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	法制司法 委員長	1951. 9. 7	〃					
10	11	國家의 利害에 關係있 는 訴訟에 關한 法律案 「(修)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訴訟에 關한 法律 案」	金正實	1951. 10. 8	〃					
10	11	戰時國民生活改善法 案「(修)戰時生活改善 法案」	社會保健 委員長	1951. 10. 19	〃					
11	11	光州高等法院設置法 案	法制司法 委員長	1951. 11. 8	〃					
11	11	教育法中改正法律案	文 教 委員長	1951. 11. 15	〃					
11	11	朝鮮產金令軍政法令 第93號過渡政府法令 第150號廢止에 關한 法 律案「(修)金에 關한 臨時措置法案」	尹璵淳 商工委員 會代案	1951. 11. 20	〃					
11	11	專賣廳 및 地方專賣官 署設置法案	李忠煥 金正科	1951. 12. 5	〃					
12	12	糧穀管理法中改正法 律案	農 林 委員長	1952. 3. 5	〃					
12	12	附逆行爲特別處理法 廢止에 關한 法律案	邊鎮甲	1952. 3. 18	〃					
11	12	光武新聞紙法廢止에 關한 法律案	金正植	1952. 3. 19	〃					
12	12	農地改革事業特別會 計法案	農 林 委員長	1952. 3. 27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否決	廢決	撤回	保留	會期不續廢棄
12	12	光州高等法院判事定員에 關한 法律案	法制司法委員長	1952. 3. 28	"				
12	12	光州高等檢察廳檢事定員에 關한 法律案	法制司法委員長	1952. 3. 28	"				
12	12	政治運動規制法案 〔(修) 政治運動에 關한 法律案〕	法制司法委員長	1952. 4. 16	"				
12	12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	法制司法委員長	1952. 4. 19	"				
12	12	非常事態下의 犯罪處罰에 關한 特別措置令廢止外同法에 基因한 刑事事件臨時措置法案	邊鎮甲	1952. 6. 5	"				
12	13	文化保護法案	文教委員長	1952. 7. 21	"				
13	13	農地改革法中改正法律案	農林委員長	1952. 9. 9	"				
13	13	產業復興國債金特別會計法案	財政經濟委員長	1952. 9. 10	"				
13	13	國會法中改正法律案	法制司法委員長	1952. 9. 10	"				
14	14	免許稅法中改正法律案	韓國源	1952. 11. 22	"				
14	14	國會議員報酬에 關한 法律中改正法律案	運營委員長·財政經濟委員長	1952. 11. 24	"				
14	14	國會法中改正法律案	法制司法委員長	1952. 11. 28	"				
15	15	國會法中改正法律案	嚴詳燮	1953. 1. 15	"				
14	15	國會에서 의 證言鑑定 등에 關한 法律案	法制司法委員長	1953. 1. 19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決	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繼 續○是因 此廢棄
10	15	國政等監查法案〔(修)國政監查法案〕	金正實	1953. 1. 19	〃					
14	15	勞動組合法案	社會保健 委員長	1953. 1. 23	〃					
14	15	勞動委員會法案	社會保健 委員長	1953. 1. 27	〃					
14	15	勞動爭議法案	社會保健 委員長	1953. 1. 31	〃					
11	15	法院組織法中改正法律案	高永完	1953. 2. 7	〃					
14	15	教育公務員法案	文 教 委員長	1953. 3. 21	〃					
12	15	勤勞基準法案	金用雨	1953. 4. 15	〃					
11	15	勤勞動員法案〔(修)戰時勤勞動員法案〕	社會保健 委員長	1953. 5. 7	〃					
15	15	戰歿軍警遺族斗傷痍軍警年金法中改正法律案	社會保健 委員長	1953. 5. 7	〃					
15	15	戰歿軍警遺族斗傷痍軍警年金法中改正法律案	尹在根	1953. 5. 7	〃					
16	16	農地改革法中改正法律案	農 林 委員長	1953. 7. 10	〃					
16	16	國會議員報酬에 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運 營 委員長	1953. 7. 15	〃					
15	16	水產業法案	商 工 委員長	1953. 7. 24	〃					
15	16	簡易訴請節次에 依한歸屬解除決定의 確認에 關한法律의 廢止에 關한法律案	法制司法 委員長	1953. 7. 25	〃					
11	16	歸屬財產處理法中改正法律案	康慶玉	1953. 10. 12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續 行 廢 棄
16	16	歸屬財產處理法中改正法律案	金智泰	1953. 10. 12	"					
14	16	臨時土地收得稅法中改正法律案	康慶玉	1953. 10. 20	"					
16	17	臨時土地收得稅法中改正法律案	內務 委員長	1953. 12. 1	"					
12	18	國立劇場設置法中改正法律案	金正植	1953. 12. 26	"					
14	18	家畜保護法案	農林 委員長	1953. 12. 28	"					
16	18	彈劾裁判法中改正法律案	吳誠煥	1954. 1. 11	"					
18	18	國會議員選舉法中改正法律案	權仲敦	1954. 1. 23	"					
18	18	國會議員選舉法中改正法律案	法制司法 委員長· 內務委員 長	1954. 1. 23	"					
17	18	水產業法中改正法律案	安相漢	1954. 2. 23	"					
18	18	國會議員報酬相關法律中改正法律案	運營 委員長	1954. 3. 23	"					
18	18	織物稅法廢止法律案	財政經濟 委員長	1954. 3. 27	"					
18	18	非常事態下未收復地區選舉相關臨時措置法案	尹在根	1954. 3. 31	"					
10	10	國會法中改正法律案	張洪瑛	1951. 2. 24	"					
8	8	防衛隊法案	南松鶴	1950. 8. 2			"			
8	8	進戰調員臨時措置法案	李鍾郁	1950. 9. 16			"			
8	8	教員兵役徵集延期臨時措置法案	徐取濠	1950. 9. 16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續 因 廢 棄
8	8	避難民救護에 關한 臨時 措置法案	朴永出	1950. 9. 16						
8	8	關稅法中改正法律案	愼鏞頊	1950. 11. 25						
10	10	特殊農地處理法案	金宗順	1951. 5. 1						
10	10	物品稅法中改正法律 案	金亨德	1951. 5. 10						
10	10	國會議員選舉法中改 正法律案	趙柱泳	1951. 5. 11						
11	11	地稅法中改正法律案	農 林 委員長	1951. 7. 23						
10	11	行政事件訴訟法案	金正實	1951. 8. 8						
8	11	政府組織法中改正法 律案	吳緯泳	1951. 8. 18						
8	11	政府組織法中改正法 律案	方萬殊	1951. 8. 18						
10	11	政府組織法中改正法 律案	徐珉濠	1951. 8. 18						
10	11	政府組織法中改正法 律案	梁又正	1951. 8. 18						
10	11	學兵及學生士官特別 任用에 關한 臨時措置 法案	朴哲雄	1951. 11. 7						
10	12	非常事態下의 事情變 更規整法案	金意俊	1952. 3. 15						
12	12	鑛業法中改正法律案	太完善	1952. 5. 19						
12	13	憲法改正案	郭尙勳	1952. 7. 4						
11	13	農地改革法中改正法 律案	金益魯	1952. 9. 1						
13	13	農地改革法中改正法 律案	郭義榮	1952. 9. 1						
11	13	畜牛屠殺禁止臨時措 置法案	金益魯	1952. 9. 9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決	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繼 ○ 因 續補廢棄
12	13	農地改革法中改正法律案	金宗順	1952. 9. 9						
10	13	官紀肅清및 이에 隨件하는 臨時特別措置法案	方萬洙	1952. 9. 10						
11	13	特別監察員法案	權仲敦	1952. 9. 10						
11	13	刑法中改正法律案	徐珉濠	1952. 9. 10						
11	13	夏節時刻法案	金用雨	1952. 9. 10						
10	14	勞動組合法案	趙光燮 林基奉	1952. 11. 5						
11	14	國會議員報酬에 關한 法律中改正法律案	權泰郁 金正植	1952. 11. 24						
12	14	國會法中改正法律案	運營 委員長	1952. 11. 28						
12	14	國會法中改正法律案	邊鎮甲	1952. 11. 28						
12	14	物品稅法中改正法律案	柳 鴻	1952. 12. 1						
12	15	勤勞基準法案	林基奉	1953. 1. 13						
14	16	農地改革法中改正法律案	金宗順	1953. 6. 13						
13	16	罰金等臨時措置法中改正法律案	法制司法 委員長	1953. 7. 9						
12	16	關稅法中改正法律案	交通遞信 委員長	1953. 7. 21						
15	16	關稅法中改正法律案	吳誠煥	1953. 7. 21						
12	16	密輸入防止臨時措置法案	趙瓊奎	1953. 7. 22						
10	16	物資價格等特殊管理	朴晚元	1953. 7. 24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否決	廢決	撤回	保留	會期不繼 或因 針廢棄
		法案							
12	16	租稅特例法中改正法律案	交通遞信 委員長	1953. 7. 24					
14	16	簡易訴請節次에 依는 歸屬解除決定에 對한 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	法制司法 委員長	1953. 7. 25					
16	16	歸屬財產處理法中改正法律案	金智泰	1953. 10. 12					
16	17	緊急金融措置法中改正法律案	金仁泰	1953. 11. 18					
16	17	韓國銀行法中改正法律案	金仁泰	1953. 11. 18					
16	18	國會議員選舉法中改正法律案	崔緩浩	1954. 1. 23					
17	18	國會議員選舉法中改正法律案	尹宅重	1954. 1. 23					
18	18	國會議員選舉法中改正法律案	趙光燮	1954. 1. 23					
18	18	國會議員選舉法中改正法律案	郭義榮	1954. 1. 23					
18	18	國會議員選舉法中改正法律案	李甲成	1954. 1. 23					
18	18	國會議員選舉法中改正法律案	蘇宜奎	1954. 1. 23					
18	18	國會議員選舉法中改正法律案	李鎮洙	1954. 1. 23					
15	18	經濟調整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	財政經濟 委員長	1954. 2. 22					
11	18	學徒徵集特別措置法案	李敦善	1954. 2. 25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因
16	18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金智泰	1954. 3. 15						
16	18	特別市指定에 관한法律案	金智泰	1954. 3. 15						
16	18	全州地方法院井邑支院合議部昇格에 관한法律案	金宅述	1954. 3. 17						
17	18	大邱地方法院安東支院合議部昇格에 관한法律案	金翼基	1954. 3. 17						
17	18	大田地方法院洪城支院合議部昇格에 관한法律案	兪昇濬	1954. 3. 17						
18	18	國會議員選舉法中改正法律案	嚴秉學	1954. 3. 17						
18	18	國會議員選舉法中改正法律案	金奉才	1954. 3. 17						
18	18	國會議員選舉法中改正法律案	李宗鉉	1954. 3. 17						
18	18	國會議員選舉法中改正法律案	金意俊	1954. 3. 17						
18	18	國會議員選舉法中改正法律案	安龍大	1954. 3. 17						
18	18	國會議員選舉法中改正法律案	裴恩希	1954. 3. 17						
10	18	生必物資戰時特別措置法案	李鍾郁	1954. 3. 26						
11	18	韓國國民銀行法案	金秀學	1954. 3. 26						
14	18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	文教 委員長	1954. 3. 26						
16	18	國定教科書公社法案	金鳳祚	1954. 3. 26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續 인 회 기 중 인 회 기 중 인 회 기 중 인
18	18	國會議員選舉法中改正法律案	內務委員長 法制司法委員長	1954. 3. 26				"		
16	18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	內務委員長	1954. 3. 29				"		
11	18	徵發에 關한 特別措置令中改正法律案	法制司法委員長	1954. 12. 21				"		
10	10	韓國銀行法中改正法律案	財政經濟委員長	1951. 4. 20				"		
8	8	警察援護法案	內務治安委員長	1950. 9. 30					"	
8	8	官紀肅清에 關한 特別措置法案	方萬洙	1950. 9. 16					"	
10	10	漁業에 關한 臨時措置法中改正法律案	李采五	1951. 5. 17					"	
10	11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修)~受特別市指定에 關한 法律案〕	金亨德	1951. 7. 4					"	
16	18	水產團體役員選舉 및 任免에 關한 臨時措置法案	李采五	1954. 1. 6					"	
18	18	國會議員選舉法中改正法律案	朴永出	1954. 1. 23					"	
15	18	忠武市設置에 關한 法律案	徐相顯	1954. 3. 17					"	
12	18	特定鑛山處理에 關한 臨時措置法案	商工委員長	1954. 3. 21					"	
10	18	戒嚴法中改正法律案	嚴詳燮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否決	廢案	撤回	保留	會期不繼 續으로 社廢棄
10	18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方萬洙						"
11	18	國防警備法中改正法律案	嚴詳燮						"
11	18	海岸警備法中改正法律案	嚴詳燮						"
11	18	救國義勇隊組織法案	金俊熙						"
11	18	鄉校財產管理法案	崔成雄						"
11	18	國軍組織法中改正法律案	任容淳						"
11	18	漁業에 關한 臨時措置法中改正法律案	康慶玉						"
12	18	電氣事業法案	徐取濠						"
12	18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金宗順 池蓮海						"
12	18	海外財產搬入法案	鄭一亨						"
13	18	著作權法案	文 教 委員長						"
15	18	外國留學에 關한 法律案	外 務 委員長						"
15	18	教育用語에 關한 法律案	金奉才						"
16	18	森林保護法案	邊鎮甲						"
16	18	船員法案	林基奉						"
16	18	大韓鹽業公社法案	張洪琰						"
16	18	林產燃料使用制限法案	邊鎮甲						"
16	18	年金法案	方萬洙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否	廢	撤	保	會期不繼 續으로因 於廢棄
					決	決	棄	回	留	
18	18	判事以檢事特別任用 選舉法案	金意俊							"
18	18	證券法案	金永善							"
18	18	國會法中改正法律案	金奉才							"
18	18	農業協同組合法案	農 林 委員長							"
18	18	獸醫師法案	農 林 委員長							"
18	18	特殊鑛山處理法案	商 工 委員長							"

(+) 政府提出法律案

會期別	區 分							會期不繼 續으로因 於廢棄
	提出數	可決	否決	廢棄	撤回	保留	返戻	
第 8 回	28	22		3				
第 9 回	1 (3)	1						
第 10 回	37 (3)	23		3		1		
第 11 回	29(13)	17		3				
第 12 回	31(22)	7	1	3	1			
第 13 回	8(41)	8		1				
第 14 回	11(40)	16		6				
第 15 回	30(29)	9		4	3			
第 16 回	10(43)	3		3			4	
第 17 回	2(43)	6						
第 18 回	29(39)	25		8	1	1		33
計	216	137	1	34	5	2	4	33

※ ()內는 前會期로부터 移越된 件임.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提出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 續 因 廢棄
8	8	避難民收容에 關한 臨時措置法中改正法律案	政 府	1950. 9. 18	"					
8	8	公務員臨時登錄法案	"	1950. 9. 30	"					
8	8	侵犯地域內金融機關의 預金에 關한 特別措置法案	"	1950. 10. 12	"					
8	8	入場稅法中改正法律案	"	1950. 11. 18	"					
8	8	馬券稅法中改正法律案	"	1950. 11. 18	"					
8	8	電氣「가스」稅法中改正法律案	"	1950. 11. 18	"					
8	8	遊興飲食稅法中改正法律案	"	1950. 11. 18	"					
8	8	物品稅法案	"	1950. 11. 22	"					
8	8	印紙稅法中改正法律案	"	1950. 11. 22	"					
8	8	登錄稅法案	"	1950. 11. 22	"					
8	8	免許稅法中改正法律案	"	1950. 11. 22	"					
8	8	營業稅法中改正法律案	"	1950. 11. 22	"					
8	8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	"	1950. 11. 22	"					
8	8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	"	1950. 11. 22	"					
8	8	臨時租稅措置法案	"	1950. 11. 23	"					
8	8	臨時租稅增徵法案	"	1950. 11. 23	"					
8	8	通商郵便物의 種類에	"	1950. 11. 23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提出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續 因 於 廢 棄
		料金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8	8	臨時關稅法案「(修)關稅臨時徵收法案」	政 府	1950. 11. 24	"					
8	8	地稅法案	"	1950. 11. 24	"					
8	8	地籍法案	"	1950. 11. 25	"					
8	8	判事及檢事特別任用試驗法案	"	1950. 11. 25	"					
8	8	糧穀證券法案	"	1950. 11. 25	"					
8	9	國民防衛軍設置法案	"	1950. 12. 16	"					
9	10	附逆行爲特別處理法中改正法律案	"	1950. 12. 25	"					
10	10	海岸警備法中改正法律案	"	1951. 2. 15	"					
10	10	防空法案	"	1951. 2. 27	"					
8	10	教育法中改正法律案	"	1951. 3. 7	"					
10	10	國債補助券法案	"	1951. 3. 19	"					
10	10	通行稅法中改正法律案	"	1951. 3. 19	"					
10	10	6·25事變收拾費特別會計法案	"	1951. 3. 20	"					
10	10	租稅特例法案	"	1951. 3. 24	"					
10	10	檀紀4283年度學年末及檀紀4284年度學年初에 관한件	"	1951. 3. 26	"					
10	10	警察援護法案	"	1951. 3. 29	"					
10	10	歲入補填國債發行에 관한件	"	1951. 3. 30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提出者	議決年月日	可決	否決	廢案	撤回	保留	會期不續 으로 廢案
10	10	外資特別會計法改正法律案	政府	1951. 3. 30	"					
10	10	租稅臨時增徵法中改正法律案	"	1951. 3. 30	"					
10	10	韓美經濟援助協定에 의한 對充資金運用特別會計法案	"	1951. 3. 30	"					
10	10	臨時地方分與稅法案	"	1951. 3. 31	"					
10	10	軍事郵便法案	"	1951. 4. 17	"					
10	10	租稅犯處罰法案	"	1951. 4. 26	"					
10	10	郵便年金의 年額에 關한 法律中改正法律案	"	1951. 5. 3	"					
10	10	國民生命保險의 保險金額에 關한 法律中改正法律案	"	1951. 5. 3	"					
10	10	租稅犯處罰手續法案 〔(修)租稅犯處罰節次法案〕	"	1951. 5. 4	"					
10	10	愛國福券發行法案	"	1951. 5. 4	"					
10	10	愛國福券特別會計法案	"	1951. 5. 5	"					
10	10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	"	1951. 5. 12	"					
10	11	中央都賣市場法案	"	1951. 6. 5	"					
10	11	國稅增徵法中改正法律案	"	1951. 6. 7	"					
11	11	訴願法案	"	1951. 7. 19	"					
10	11	酒類業組合法案	"	1951. 8. 6	"					
10	11	行政訴訟法案	"	1951. 8. 8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提出者	議決年月日	可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繼續 으로因 한廢棄
11	11	順稅法案	政 府	1951. 8. 8	〃				
11	11	韓國造幣公社法案	〃	1951. 8. 13	〃				
10	11	罰金等臨時措置法案	〃	1951. 8. 20	〃				
10	11	山林保護臨時措置法案	〃	1951. 9. 3	〃				
11	11	財政法案	〃	1951. 9. 7	〃				
11	11	臨時土地收得稅法案	〃	1951. 9. 9	〃				
11	11	稅關官署設置法中改正法律案	〃	1951. 10. 19	〃				
11	11	寄附禁止法案〔(修)寄附金品募集禁止法案〕	〃	1951. 10. 26	〃				
11	11	通常郵便物の種類및料金에 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	1951. 11. 2	〃				
11	11	關稅法中改正法律案	〃	1951. 11. 20	〃				
10	11	鑛業法案	〃	1951. 11. 27	〃				
11	11	簡易訴請節次에 의한歸屬解除決定의 確認에 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	1951. 11. 27	〃				
11	12	特許法中改正法律案	〃	1952. 3. 28	〃				
12	12	外資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	〃	1952. 4. 3	〃				
12	12	放送事業特別會計法廢止에 關한法律案	〃	1952. 4. 3	〃				
12	12	歲入補填國債發行에 關한件	〃	1952. 4. 4	〃				
12	12	軍法務官任用法案	〃	1952. 4. 7	〃				
10	12	檢事懲戒法案	〃	1952. 5. 23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提出者	議決年月日	可決	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繼 續으로因 廢棄
12	12	營業稅法中改正法律案	政府	1952. 6. 5	"					
12	13	憲法修正案	"	1952. 7. 4	"					
13	13	大統領・副統領選舉法案	"	1952. 7. 15	"					
12	13	地方分與稅法案	"	1952. 8. 22	"					
12	13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	"	1952. 9. 1	"					
12	13	戰死軍警遺族及傷殘軍警年金法案	"	1952. 9. 5	"					
13	13	國庫金端數計算法中改正法律案	"	1952. 9. 10	"					
13	13	產業復興債券發行法案	"	1952. 9. 10	"					
13	13	郵便物斗種類及料金 引關法律中改正法律案	"	1952. 9. 10	"					
12	14	國稅徵收法中改正法律案	"	1952. 10. 20	"					
12	14	臨時租稅措置法中改正法律案	"	1952. 10. 21	"					
12	14	租稅特例法中改正法律案	"	1952. 10. 21	"					
12	14	租稅臨時增徵法中改正法律案	"	1952. 10. 21	"					
12	14	登錄稅法中改正法律案	"	1952. 11. 10	"					
12	14	相續稅法中改正法律案	"	1952. 11. 10	"					
11	14	商工會議所法案	"	1952. 11. 13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提出者	議決年月日	可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繼 續으로 廢棄	不繼 因
12	14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	政 府	1952. 11. 22	"					
14	14	經濟調整特別會計法案	"	1952. 11. 24	"					
14	14	外資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	"	1952. 11. 24	"					
14	14	中央都賣市場法中改正法律案	"	1952. 11. 26	"					
12	14	郵便年金法案	"	1952. 11. 26	"					
12	14	國民生命保險法案	"	1952. 11. 26	"					
12	14	市郡의 設置 斗 郡의 管轄 區域 變更에 關한 法律 (修) 巨濟郡 設置에 關한 法案	"	1952. 11. 27	"					
12	14	續稅法案	"	1952. 11. 29	"					
12	14	物品稅法中改正法律案	"	1952. 12. 1	"					
15	15	緊急金融措置法案	"	1953. 2. 26	"					
15	15	戰亂收拾特別會計法案	"	1953. 3. 30	"					
15	15	舊皇室財產管理特別會計法案	"	1953. 3. 31	"					
15	15	西南地區戰鬪警察隊設置法案	"	1953. 4. 6	"					
13	15	舊皇室財產法案	"	1953. 4. 28	"					
15	15	酒稅法中改正法律案	"	1953. 4. 28	"					
15	15	韓國造幣公社法中改正法律案	"	1953. 5. 1	"					
15	15	大韓石炭公社法中改正法律案	"	1953. 5. 4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提出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案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續 議 決
15	15	韓國造船公社法中改正法律案	政 府	1953. 5. 7	"					
10	16	刑法案	"	1953. 7. 9	"					
15	16	關稅法中改正法律案	"	1953. 9. 25	"					
12	16	臨時土地收得稅法中改正法律案	"	1953. 10. 20	"					
11	17	藥師法案		1953. 11. 13	"					
16	17	糧穀管理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	"	1953. 11. 14	"					
14	17	警察官職務執行法案	"	1953. 11. 21	"					
11	17	韓國產業銀行法案	"	1953. 11. 28	"					
14	17	漁業資源保護法案	"	1953. 12. 1	"					
15	17	參議院議員選舉法案	"	1953. 12. 1	"					
12	18	傳染病豫防法案	"	1954. 1. 11	"					
17	18	財政法中改正法律案	"	1954. 1. 13	"					
15	18	刑事訴訟法案	"	1954. 2. 19	"					
18	18	行政代執行法案	"	1954. 2. 19	"					
18	18	對充資金特別會計法案	"	1954. 2. 22	"					
18	18	經濟調整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	"	1954. 2. 22	"					
18	18	經濟復興特別會計法案	"	1954. 2. 22	"					
18	18	外資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	"	1954. 2. 22	"					
14	18	輕罪處罰法案「(修)輕犯罪處罰法案」	"	1954. 3. 9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提出者	議決年月日	可 否 決	廢 決	撤 回	保 留	會期不 續 因 廢案
18	18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	政 府	1954. 3. 26	"				
18	18	入場稅法中改正法律案	"	1954. 3. 27	"				
18	18	遊興飲食稅法中改正法律案	"	1954. 3. 27	"				
18	18	地方分與稅法中改正法律案	"	1954. 3. 29	"				
18	18	酒稅法中改正法律案	"	1954. 3. 29	"				
18	18	所得稅法案	"	1954. 3. 29	"				
18	18	物品稅法中改正法律案	"	1954. 3. 29	"				
18	18	登錄稅法中改正法律案	"	1954. 3. 29	"				
18	18	營業稅法中改正法律案	"	1954. 3. 29	"				
18	18	通行稅法中改正法律案	"	1954. 3. 29	"				
18	18	租稅特例法廢止法律案	"	1954. 3. 29	"				
18	18	租稅臨時增徵法廢止法律案	"	1954. 3. 29	"				
18	18	免許稅法廢止法律案	"	1954. 3. 29	"				
18	18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	"	1954. 3. 29	"				
18	18	租稅犯處罰法中改正法律案	"	1954. 3. 29	"				
18	18	臨時土地收得稅法中改正法律案	"	1954. 3. 31	"				
11	12	憲法改正案	"	1952. 1. 18	"				
8	8	污物掃除法案	"	1950. 9. 13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提出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 續으로 廢棄
8	8	公務員身分에 關한特 別措置法案	政 府	1950.11. 2						
8	8	酒稅法中改正法律案	"	1950.11.18						
10	10	地稅臨時措置法案	"	1951. 1.31						
8	10	農地改革緊急措置法 案	"	1951. 2.28						
10	10	國會議員選舉法中改 正法律案	"	1951. 5.11						
11	11	地方交通官署設置法 中改正法律案	"	1951. 7. 5						
11	11	政府組織法中改正法 律案及復興院設置法 案	"	1951. 9. 7						
11	11	防空法中改正法律案	"	1951.10.31						
12	12	美貨表示韓國銀行通 貨安定證券發行法案	"	1952. 3.26						
11	12	糧穀管理特別會計法 中改正法律案	"	1952. 4. 3						
10	12	農地代價特別會計法 案	"	1952. 5.12						
12	13	港灣運送業法案	"	1952. 9. 3						
14	14	6·25事變으로因하여 行方不明이된國會議 員에 關한特別措置法 案	"	1952.10.31						
11	14	勞動組合法案	"	1952.11. 5						
11	14	勞動爭議調停法案	"	1952.11. 5						
11	14	教育公務員法案	"	1952.11.20						
11	14	學校學年特別措置法 案	"	1952.12. 7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提出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續 因 廢 棄
11	14	家畜保護法案	政 府	1952. 12. 4						
13	15	勤勞基準法案	"	1953. 1. 13						
10	15	水產業法案	"	1953. 3. 20						
11	15	戰時勤勞動員法案	"	1953. 4. 7						
15	15	利子制限法案	"	1953. 5. 30						
15	16	歸屬財產處理法中改 正法律案	"	1953. 10. 12						
16	16	歸屬財產處理法中改 正法律案	"	1953. 10. 12						
11	16	糧穀管理法中改正法 律案	"	1953. 10. 20						
15	18	海空港檢役法案	"	1954. 1. 11						
15	18	司法書士法案	"	1954. 3. 12						
15	18	地方分與稅法中改正 法律案	"	1954. 3. 27						
15	18	大韓海運公社法中改 正法律案	"	1954. 3. 26						
12	18	間稅國稅徵收及處罰 補則法案	"	1954. 3. 27						
18	18	獸醫師法案	"	1954. 3. 27						
18	18	織物稅法中改正法律 案	"	1954. 3. 27						
18	18	電氣·가스稅法中改 正法律案	"	1954. 3. 29						
11	12	續稅法案	"	1952. 5. 7						
14	15	選舉法案	"	1953. 4. 17						
15	15	國會議員選舉法中改 正法律案	"	1953. 4. 17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提出者	議決年月日	可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繼續廢棄	不繼續廢棄
11	15	歸屬財產處理法中改正法律案	政府	1953. 5. 28				〃		
18	18	憲法改正案	〃	1954. 3. 15				〃		
10	10	臨時軍事費特別會計法案	〃	1951. 3. 6				〃		
17	18	市郡의 設置와 郡의 管轄區域變更에 關한 法律案	〃	1954. 3. 17				〃		
16	16	政治運動에 關한 法律廢止에 關한 法律案	〃	1953. 6. 30						(返戻)
16	16	國會에서 의 證言 鑑定 등에 關한 法律案	〃	1953. 6. 30						(返戻)
16	16	非常事態下의 犯罪處罰에 關한 特別措置令廢止와 同法에 基因한 刑事事件臨時措置法廢止에 關한 法律案	〃	1953. 6. 30						(返戻)
16	16	舊皇室財產法案	〃	1953. 6. 30						(返戻)
10	18	國軍組織法中改正法律案	〃							會期不繼續廢棄
10	18	少年法案	〃							〃
11	18	文教財團所有農地特別補償法中改正法律案	〃							〃
12	18	煙草專賣法案	〃							〃
12	18	鹽專賣法案	〃							〃
12	18	人蔘專賣法案	〃							〃
12	18	專賣犯處分節次法案	〃							〃
12	18	鑛業法中改正法律案	〃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提出者	議決年月日	可否決	廢案	撤回	保留	會期不續 續으로 社廢案
13	18	航空法案	政府						"
13	18	水產物檢査法中改正法律案	"						"
14	18	歸屬財產處理法第19條第3項에 依한 納付金額變更에 關한 法律案	"						"
14	18	法人任員 등 處罰에 關한 法律案	"						"
14	18	國民의 出入國에 關한 法律案	"						"
15	18	民事訴訟法案	"						"
15	18	民事訴訟費用法案	"						"
15	18	刑事訴訟費用法案	"						"
15	18	6·25 事變으로 인하여 行方不明이 된 國會議員에 關한 特別措置法案	"						"
15	18	民事訴訟印紙法案	"						"
15	18	郵便法案	"						"
15	18	軍事援護法中改正法律案	"						"
15	18	運輸事故特別處理法案	"						"
15	18	大韓製藥公社法案	"						"
15	18	職業技能登錄法案	"						"
15	18	外國留學에 關한 法律案	"						"
15	18	警察援護法中改正法律案	"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提出者	議決年月日	可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續 續行廢棄
16	18	法官懲戒法案	政府						"
16	18	外國言論報道機關의 國內設置에 관한法律案	"						"
16	18	警察法案	"						"
16	18	戰時動勞動員法中改正法律案	"						"
18	18	寄附金品募集禁止法 中改正法律案	"						"
18	18	請願警察에 관한法律案	"						"
18	18	特殊選舉犯處罰法案	"						"
18	18	古物營業法案	"						"

※ 法律案의 (修)는 題目이 修正된 案件임.

(3) 法律案再議의件

區分 會期別	拒否數	法律確定	法律確定으로 看做	廢棄	會期不續 續行廢棄
第 8 回	2	2			
第 9 回	1				
第 10 回	2(1)	3			
第 11 回	4	1	3		
第 12 回	4				
第 13 回	(4)		1		
第 14 回	1(3)			1	

區分 會期別	拒否數	法律確定	法律確定 으로 看做	廢棄	會期不繼 續으로 因廢棄
第 15 回	3(3)	4		2	
第 16 回	2				
第 17 回	3(2)	3		1	
第 18 回	3(1)	1		2	1
計	25	14	4	6	1

※ () 內의 數字는 前會期로부터 移越된 件數임.

拒否 會期	處理 會期	件名	議決年月日	法律 確定	法律確定 으로 看做	廢棄	會期不繼 續으로 因廢棄
8	8	私刑禁止法案	1950. 11. 13	//			
8	8	附逆行爲特別處理法案	1950. 11. 13	//			
9	10	非常事態下의 犯罪處罰에 關한 特別措置令中改正法律案	1951. 1. 18	//			
10	10	國會議員報酬에 關한 法律中改正法律案	1951. 1. 18	//			
10	10	歲入補填國債發行에 關한 件	1951. 4. 16	//			
11	11	文教財團所有農地特別補償法案	1951. 7. 2	//			
12	15	政治運動에 關한 臨時措置法案	1953. 5. 30	//			
12	15	非常事態下의 犯罪處罰에 關한 特別措置令廢止와 同法에 基因한 刑事事件 臨時措置法案	1953. 5. 30	//			
15	15	舊皇室財產法案	1953. 5. 30	//			
15	15	國會에서 의 證言鑑定等에 關한 法律案	1953. 5. 30	//			
17	17	歸屬財產處理法中改正法律案	1953. 11. 24	//			

拒否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議決年月日	法律 確定	法律確定 으로看做	廢棄	會期不 續으로 廢棄
17	17	臨時土地收得稅法中改正法律案	1953. 11. 24	〃			
16	17	農地改革法中改正法律案	1953. 11. 24	〃			
18	18	刑事訴訟法案	1954. 3. 19	〃			
11	11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1)	1951. 10. 10		〃		
11	11	水產廳設置法案	1951. 10. 10		〃		
11	11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1951. 10. 13		〃		
12	13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2)	1952. 7. 4		〃		
14	14	農地改革法中改正法律案	1952. 11. 17			〃	
15	15	國會法中改正法律案	1953. 1. 13			〃	
12	15	檢事懲戒法案	1953. 5. 30			〃	
16	17	簡易訴請節次에 依한歸屬解除決定의 確認에 關한法律의 廢止에 關한法律案	1953. 11. 24			〃	
17	18	參議院議員選舉法案	1953. 12. 24			〃	
18	18	國會議員選舉法中改正法律案	1954. 2. 25			〃	
18	18	非常事態下未收復地區選舉에 關한臨時措置法案					〃

(4) 同意(承認)案

區分	會期別	第8回	第9回	第10回	第11回	第12回	第13回	第14回	第15回	第16回	第17回	第18回	計
		數	數	數	數	數	數	數	數	數	數	數	
法	提出	10	1		1		1	1	1(1)	1(1)	(1)	1(1)	17
	同意	9			1		1		1			2	14
	不同意	1	1							1			3
條約協定	提出			2	1			2	(1)	2	(2)	2(2)	9
	同意				1			1				4	8
	不同意								1				1
豫算支出	提出					1	1(1)	1(2)	2(1)	1(2)	(3)	2(3)	10
	同意		2					2	1			5	10
	提出				7	11(5)	1(6)	4(2)	2	3(1)	(2)	2(1)	30

區分	會期別																		計
	第8回	第9回	第10回	第11回	第12回	第13回	第14回	第15回	第16回	第17回	第18回								
其他 保證 職員 資條	同			2	9	4	3	1	2	1	3	24							
	不				1	1	3				1	6							
其 他	提出數	2		10	3	5(2)	2(2)	2(1)	7(2)	1(4)	7(1)	39							
	同	2		10	1	5	3	1	4	4	4	34							
	不								1		1	2							
	會期不繼續으로 인한廢棄										3	3							
計	提出數	14	1	2	19	15(5)	10(6)	7(4)	14(6)	1(12)	14(8)	105							
	同	13		2	14	10	9	4	6	5	17	90							
	不	1	1			1	3	1	2		2	12							
會期不繼續으로 인한廢棄											3	3							

※ () 內는 前會期로부터 移越된 件數임.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提出者	議決年月日	同意	不同意	會期不繼 續으로 인하여 廢棄
8	8	非常事態下의 犯罪處罰에 關한 特別措置令	政府	1950. 7. 29	"		
8	8	戒嚴下 軍事裁判에 關한 特別措置令	"	1950. 7. 29	"		
8	8	徵發에 關한 臨時措置令	"	1950. 7. 29	"		
8	8	金融機關預金等 支拂에 關한 特別措置令	"	1950. 7. 30	"		
8	8	金融機關預金代拂에 關한 特別措置令	"	1950. 7. 30	"		
8	8	鐵道輸送貨物 特別措置令	"	1950. 7. 30	"		
8	8	6·25 事變 財政緊急處分의 件	"	1950. 7. 30	"		
8	8	非常時 警察官 特別懲戒令	"	1950. 7. 31	"		
8	8	檀紀4283年度 政府一時借入金 限度額擴張의 件	"	1950. 8. 2	"		
8	8	非常時 鄉土防衛令(緊急命令第9號)	"	1950. 8. 17	"		
8	8	朝鮮銀行券의 流通 및 交換에 關한 件	"	1950. 9. 18	"		
8	8	檀紀4283年 產糧穀買入數量 및 價格決定의 件	"	1950. 11. 14	"		
8	8	檀紀4283年度 第5回 追加更正豫算中一部使用의 件	"	1950. 11. 15	"		
10	10	國際赤十字社의 韓國內活動에 關한 同意案	"	1951. 2. 3	"		
10	10	大韓民國과 「유엔」 國際兒童緊急救濟財團과의 救助協定에 關한 同意案	"	1951. 3. 30	"		
11	11	檀紀4284年 產夏穀買入數量決定에 關한 件	"	1951. 7. 6	"		
11	11	檀紀4284年 產夏穀買入價格決定에 關한 件	"	1951. 7. 6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提出者	議決年月日	同意	不同意	會期不屆 廢棄
11	11	檀紀4284米穀年度下半期糧穀需給計劃에 關한件	政府	1951. 8. 1	"		
11	11	檀紀4284年政府所有糧穀販賣價格決定에 關한件	"	1951. 8. 30	"		
11	11	國會旅費規程改正의件	國會	1951. 9. 10	"		
11	11	大韓民國과 WHO 의 協定批准에 關한同意案	政府	1951. 10. 13	"		
11	11	郵便規則中改正의件	"	1951. 11. 2	"		
11	11	檀紀4284年度의 大韓水利組合聯合會에 對한年度內一時借入金及資材購入資金融資에 關한元利金政府保證의件	"	1951. 11. 2	"		
11	11	輸入肥料引受資金에 對한政府保證貸付同意案	"	1951. 11. 2	"		
11	11	國聯軍의 國軍輸送鐵道運賃引上에 關한同意案	"	1951. 11. 23	"		
11	11	製造煙草價格決定에 關한同意案	"	1951. 12. 1	"		
11	11	檀紀4284年度秋穀買入價格決定에 關한件	"	1951. 12. 4	"		
11	11	檀紀4285米穀年度政府所有糧穀販賣價格改正에 關한件	"	1951. 12. 4	"		
11	11	檀紀4285米穀年度政府糧穀需給計劃에 關한件	"	1951. 12. 6	"		
11	11	大韓石炭公社運營資金融資에 對한政府保證의件	"	1951. 11. 8 (一部)	"		
	12	"		1952. 3. 8	"		
12	12	檀紀4285年產藥工品에 關한買上資金政府保證에 關한同意案	"	1951. 12. 27	"		
12	12	檀紀4284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의 總則變更에 關한同意案	"	1952. 3. 29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提出者	議 年 月 日	決 日	同意	不同 意	會期不 續廢棄 或因
12	12	大韓石炭公社資本金第2回拂込에 關한件	政府	1952.	4. 7	"		
12	12	鹽賣渡價格決定에 關한件	"	1952.	4. 7	"		
12	12	朝鮮運輸會社施設補修及運營資金政府保證融資同意案	"	1952.	4. 8	"		
12	12	檀紀4285年度國庫債務負擔行爲中大韓金聯의 輸入肥料引受及操作費에 對한政府保證融資同意案	"	1952.	5. 23	"		
12	12	大韓石炭公社炭礦施設復舊工事及企業資金限度金政府保證融資同意案	"	1952.	5. 23	"		
12	12	檀紀4285年度國庫債務負擔行爲中大韓石公運營資金政府保證融資同意案	"	1952.	5. 23	"		
12	12	檀紀4285年度營農資金500億圓政府保證融資同意案	"	1952.	6. 27	"		
13	13	國有鐵道運費改正에 關한件	"	1952.	7. 16	"		
12	13	檀紀4285年度國庫債務負擔行爲中交通事業特別會計鐵道補修及復舊工事費等融資同意案	"	1952.	7. 16	"		
12	13	檀紀4285年度國庫債務負擔行爲中大韓水聯經常費及資材基金充當金等融資同意案	"	1952.	7. 23	"		
12	13	檀紀4285年度國庫債務負擔行爲中朝鮮電業小溪谷發電施設及復舊工事費融資同意案	"	1952.	9. 5	"		
13	13	寧越火力發電所·華川水力發電所復舊資金政府保證融資同意案	"	1952.	9. 5	"		
13	13	輸入肥料販賣價格改正에 關한件	"	1952.	9. 10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提出者	議年 月日	決日	同意	不同意	會期不繼 續或因 廢棄
13	13	遞信料金改正에 關한件	政府	1952.	9.10	"		
13	13	檀紀4285年產夏穀買入價格決定에 關한件	"	1952.	9.10	"		
13	13	政府糧穀販賣價格改正에 關한件	"	1952.	9.10	"		
13	13	檀紀4285年產夏穀收納買入計劃에 關한件	"	1952.	9.10	"		
14	14	大韓民國의「유네스코」憲章遵守誓約에 關한同意의件	"	1952.	11.10	"		
14	14	專賣價格引上의緊急財政處分承認에 關한件	"	1952.	11.11	"		
14	14	戰歿軍警遺家族及傷痍軍警年金法에 依한年金額同意에 關한件	"	1952.	11.26	"		
14	14	國庫債務負擔行為案中立稻等을先賣한農家負債整理資金政府保證融資同意案	"	1952.	11.28	"		
14	14	第4回歲入補填國債發行에 關한件	"	1952.	11.28	"		
14	14	檀紀4285年度藥工品買入資金政府保證融資同意案	"	1952.	12. 1	"		
12	14	大韓造船公社「부로드」號塲場修理資金政府保證融資同意案	"	1952.	12. 4	"		
14	14	檀紀4285年度秋穀買入價格決定及政府糧穀販賣價格改正의件	"	1952.	12. 5	"		
14	14	檀紀4286米穀年度政府管理糧穀需給計劃에 關한件	"	1952.	12. 5	"		
15	15	緊急命令通貨緊急措置承認에 關한件	"	1953.	2.21	"		
15	15	戰歿軍警遺族及傷痍軍警年	"	1953.	3.17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提出者	議年	決月	決日	同意	不同	會期不繼 續廢棄	期不繼 因
		金法에 依한 年金額에 關한 同意案								
15	15	檀紀4285年度國庫債務負擔行爲中藥工品買上資金融資同意案	政府	1953.	3.	30	"			
15	15	第5回5分利建國國債發行에 關한 同意의 件	"	1953.	3.	30	"			
16	16	檀紀4286年產夏穀收納價格決定에 關한 件	"	1953.	8.	29	"			
16	16	檀紀4286年度國庫債務負擔行爲案 (大韓水利組合會 및 交通事業特別會計關係)	"	1953.	10.	14	"			
16	16	國有鐵道運費改正에 關한 件	"	1953.	10.	14	"			
16	16	石炭販賣價格改正에 關한 件	"	1953.	10.	15	"			
16	16	梁又正議員拘束同意의 件	"	1953.	10.	17	"			
16	16	檀紀4286年度國庫債務負擔行爲案 (交通事業特別會計 및 大韓金聯關係)	"	1953.	10.	20	"			
16	17	檀紀4286年產秋穀一般買入價格決定에 關한 件	"	1953.	11.	17	"			
16	17	導入肥料價格改正에 關한 件	"	1953.	11.	18	"			
17	17	導入肥料販賣價格改正에 關한 同意案		1953.	11.	18	"			
16	17	檀紀4286年度國庫債務負擔行爲中大韓金聯에 對한 導入肥料操作費引上資金政府保證融資同意案	"	1953.	11.	26	"			
16	17	電氣料金改正에 關한 件	"	1953.	11.	26	"			
16	18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批准同意의 件	"	1954.	1.	15	"			
16	18	檀紀4287米穀年度政府管理	"	1954.	3.	9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提出者	議 年	決 月	日	同意	不同 意	會期不 續或不 廢棄
		糧穀需給計劃에 관한 同意의 件							
18	18	檀紀4286年産秋穀買入價格 및 檀紀4287米穀年度政府糧 穀販賣價格決定에 관한件	政府	1954.	3.	9	"		
18	18	憲法改正案撤回에 관한承認 의件	"	1954.	3.	15	"		
18	18	第1回産業復興國債發行에 關한 同意의件	"	1954.	3.	23	"		
18	18	第2回産業復興國債發行에 關한件	"	1954.	3.	23	"		
18	18	檀紀4281年度豫備費支辨承 認에 관한件	"	1954.	3.	24	"		
13	18	檀紀4282年度豫備費支辨承 認에 관한件	"	1954.	3.	24	"		
12	18	檀紀4283年度豫備費支辨承 認에 관한件	"	1954.	3.	24	"		
15	18	檀紀4284年度豫備費支辨承 認에 관한件	"	1954.	3.	24	"		
18	18	檀紀4285年度豫備費支辨承 認에 관한件	"	1954.	3.	24	"		
18	18	第6回五分利建國國債發行 에 관한件	"	1954.	3.	27	"		
18	18	檀紀4286年度國庫債務負擔 行爲中大韓造船公社에 對한 政府保證融資同意案	"	1954.	3.	31	"		
18	18	國際電氣通信條約批准에 關 한 同意의件	"	1954.	3.	31	"		
18	18	萬國郵便條約及其他約定의 批准에 관한 同意案	"	1954.	3.	31	"		
18	18	檀紀4286年度國庫債務負擔	"	1954.	3.	31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提出者	議年 月日	決日	同意	不同 意	會期不繼 續으로因 社廢棄
		行爲中大韓金聯에 對한 藥工 品買上資金政府保證融資同 意案						
14	18	捕獲審判令承認의件 (緊急 命令第12條)	政府	1954.	3.31	"		
8	8	非常時 鄉土防衛令 (緊急命 令第7號)	"	1950.	8.1	"		
9	9	地稅에 關한 臨時措置令	"	1950.	12.13	"		
11	12	檀紀4284年度 產藥工品買上 資金融資同意案	"	1951.	12.27	"		
12	13	檀紀4285年度 國庫債務負擔 行爲中 韓國造幣公社造幣工 場新築費融資同意案	"	1952.	7.18	"		
11	14	湖南地區 揚水用送電施設復 舊資金融資同意案	"	1952.	11.26	"		
11	14	京仁地區 發電施設緊急復舊 工事融資同意案	"	1952.	11.26	"		
11	14	政府代行機關에 對한 貸出金 政府保證의件	"	1952.	11.26	"		
14	15	國寶美術品 國外搬出展覽에 關한 同意의件	"	1953.	3.17	"		
16	16	臨時土地收得稅法中 改正法 律案撤回의件	"	1953.	10.10	"		
15	16	檀紀4286米穀年度 政府管理 糧穀販賣價格附帶條件第8 項改正에 關한 同意의件	"	1953.	10.20	"		
18	18	導入肥料販賣價格改正에 關 한件	"	1954.	3.19	"		
15	18	檀紀4285年度 國庫債務負擔 行爲中 大韓造船公社에 對한 融資同意案	"	1954.	3.21	"		
16	18	文化財團展示에 對한 同意의	"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提出者	議 年 月 日	同意	不同 意	會期不繼 續 因 廢 棄
		件					
18	18	電氣料金改正에 關한件	政府				"
18	18	石炭販賣價格改正에 關한件	"				"

(5) 建議案

區分 會期別	提出數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繼 續 因 廢 棄
第8回	15	9	1	3	1		
第9回	(1)						1
第10回	15	7		1			
第11回	32(7)	22		2		2	13
第12回	19	12					
第13回	9(7)	8		2			
第14回	5(6)	4					
第15回	12(7)	7		1			
第16回	17(11)	12		4			
第17回	6(12)	4					14
第18回	6	4					2
計	136	89	1	13	1	2	30

※ ()內的 數字는 前會期로 부터 移越된 件數임.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發議者	議年 月 日	決日	可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繼 廢棄	不繼 因
8	8	武器交涉及募兵에 關한 建議案	張澤相	1950. 7. 29	"						
8	8	戰時內閣即時強化에 關한 建議案	朴永出	1950. 7. 29	"						
8	8	對外交陣強化에 關한 建議案	朴永出	1950. 7. 29	"						
8	8	國際聯合感謝日制定에 關한 建議案	鄭一亨	1950. 7. 29	"						
8	8	一般生活必需品輸送에 關한 建議案	愼鍾瑛	1950. 9. 3	"						
8	8	避難民收容對策에 關한 建議案	朴晚元	1950. 9. 12	"						
8	8	避難民輸送에 關한 建議案	朴永出	1950. 9. 30	"						
8	8	後方殘敵掃蕩을 爲한 國軍 增設 및 武裝強化에 關한 建議案	李判烈	1950. 11. 14	"						
8	8	農村必需品의 配給制度實施에 關한 建議案	郭義榮	1950. 11. 25	"						
10	10	第2國民兵處遇에 關한 建議案	李鍾郁	1951. 1. 16	"						
10	10	傷痍軍警의 職業輔導機關 設置에 關한 建議案	鄭在浣	1951. 2. 1	"						
10	10	學舍徵用에 對한 緩化策 建議案	鄭在浣	1951. 3. 8	"						
10	10	肥料對策에 關한 建議案 〔(修)肥料及農耕牛對策에 關한 建議案〕	農林 委員長	1951. 5. 5	"						
10	10	無許可建築物等強制撤去 保留에 關한 建議案	鄭一亨	1951. 5. 14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發議者	議年 月 日	可決	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續 續行廢棄
10	10	前副統領李始榮氏의 生活保障에 關한 建議案	金奉才	1951. 5. 19	〃					
10	10	戰災地域緊急施策에 關한 建議案	邊鎮甲	1951. 5. 21	〃					
11	11	對聯合軍貸與金處理 및 援助物資販賣價格算出에 適用한 弗貨換算率決定에 關한 建議案	朴定根 柳 鴻	1951. 6. 5	〃					
11	11	救國總力聯盟解體에 關한 建議案 「(修)社會團體의 寄附金徵收等民弊根絶에 關한 建議案」	尹吉重 宋邦鏞	1951. 6. 9	〃					
11	11	外交使節團派遣에 關한 建議案	郭泰珍	1951. 7. 2	〃					
11	11	對日講和條約問題에 對處할 外交使節團派遣에 關한 建議案	金良洙	1951. 7. 19	〃					
11	11	經濟使節團派遣에 關한 建議案	金奉才	1951. 9. 7	〃					
11	11	戰災孤兒救助施設擴充強化에 關한 建議案	吳誼寬	1951. 9. 10	〃					
11	11	後方軍人의 武器携帶制限에 關한 建議案	金用雨	1951. 9. 10	〃					
11	11	發電施設其他重要國家施設特別警備에 關한 建議案	徐珉豪	1951. 9. 10	〃					
11	11	最高勳章贈呈에 關한 建議案	梁又正	1951. 10. 13	〃					
11	11	駐日大使召喚에 關한 建議案	金良洙	1951. 10. 17	〃					
11	11	江原道未收復地區緊急收復에 關한 建議案	安相漢	1951. 11. 27	〃					
11	11	後方治安確保에 關한 建議案	任永信	1951. 10. 31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發議者	議年月日	可決	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繼續 對廢棄
11	11	被害港에 對한 緊急修理要請에 關한 建議案	鄭在浣	1951. 11. 2	〃					
11	11	學徒의 徵集과 軍事訓練方法에 關한 建議案 「(修)在學生學業繼續에 關한 特別措置의 件」	嚴祥燮	1951. 11. 7	〃					
11	11	過渡政府時外貨預託金辨濟에 關한 建議案	權泰郁	1951. 11. 12	〃					
11	11	延白· 柳津地區確保에 關한 建議案	金泰熙	1951. 11. 15	〃					
11	11	大田臨時遷都에 關한 建議案	金鋪化	1951. 11. 15	〃					
11	11	前保導聯盟員等包攝에 關한 建議案	崔成雄	1951. 11. 19	〃					
11	11	傷病軍人接護事業強化에 關한 建議案 「(修)傷病軍警接護事業強化에 關한 建議案」	徐珉濠	1951. 11. 20	〃					
11	11	慶北線復舊에 關한 建議案	李浩相 白南賦 金翼基	1951. 11. 20	〃					
11	11	政府保有古蹟檢出과 車輛外註修繕에 關한 建議案	交通通 信委員 長	1951. 11. 23	〃					
11	11	續紀4283年度地稅一部減免에 關한 建議案	金仁泰	1951. 12. 4	〃					
12	12	土地收得稅法 및 分配農地歸屬農地價還米에 關한 建議案	郭義榮	1951. 12. 27	〃					
12	12	戰災民住宅再建에 關한 建議案	社會保 健委員 長	1951. 12. 27	〃					
12	12	補關選舉實施區有權者에 對한 勞務動員保留에 關한 建議案	趙 淳	1952. 1. 15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發議者	議年月日	可決	否決	廢案	撤回	保留	會期不續	期滿不廢
12	12	慶北旱害民緊急救護에 關한 建議案	權仲敦	1952. 1. 15	"						
12	12	捕虜釋放要求에 關한 建議案	鄭一亨	1952. 1. 15	"						
12	12	比律賓國會使節團歡迎에 關한 建議案	鄭一亨	1952. 1. 15	"						
12	12	世界「올림픽」大會에 選手派遣에 關한 建議案	金用雨	1952. 1. 21	"						
12	12	板門店停戰會談決議中是正要求及善良捕虜救出에 關한 建議案	李宗鉉	1952. 2. 14	"						
12	12	江華島及喬桐島에 國軍派遣에 關한 建議案	國防委員長	1952. 2. 21	"						
12	12	軍搜查方法是正에 關한 建議案	金光俊	1952. 4. 19	"						
12	12	饑饉對策에 關한 建議案	盧企容	1952. 4. 19	"						
12	12	柔港駐在總領事の談話發表에 關한 建議案	外務委員長	1952. 5. 7	"						
13	13	國軍副食費增額에 關한 建議案「(修)國軍及戰鬪警察官副食費增額에 關한 建議案」	李載樞	1952. 7. 2	"						
13	13	埠頭作業勞賃引上에 關한 建議案	趙光燮	1952. 7. 28	"						
13	13	海外移民促進에 關한 建議案	外務委員長	1952. 9. 3	"						
13	13	유에總會에 韓國代表團派遣에 關한 建議案	外務委員長	1952. 9. 3	"						
13	13	金海月塘水門設置工事に 關한 建議案	崔瑗浩	1952. 9. 10	"						
13	13	續紀4286年度豫算編成에 關한 建議案	金奉才	1952. 9. 10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發議者	議年 月日	決日	可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繼 ○或因 廢棄
13	13	太平洋同盟締結促進에 關한 建議案	李鎮洙	1952. 9. 10	"					
13	13	秋置蕪代金支拂에 關한 建議案	邊鎮甲	1952. 9. 10	"					
14	14	傷痍軍警援護對策에 關한 建議案	朴永出	1952. 10. 23	"					
14	14	軍事實費 및 戰役軍警援護費 豫算의 特別會計編成에 關한 建議案	尹在根 郭尙勳	1952. 11. 29	"					
14	14	無許可建築物強制撤去中 止에 關한 建議案	曹秉雯	1952. 12. 3	"					
12	14	韓國人戰犯者釋放에 關한 建議案	任容淳	1952. 12. 5	"					
15	15	38度線以北奪還地區行政 權移讓 및 營農地區擴大認 定에 關한 建議案	洪昌燮	1952. 12. 22	"					
15	15	赤字豫算補填에 關한 建議 案	赤字豫 算補填 에 關한 特別委 員長	1953. 1. 31	"					
14	15	傷痍軍警教育에 關한 建議 案	金正實	1953. 2. 6	"					
15	15	圓貨의 對弗換算率60對1 堅持에 關한 建議案	池蓮海	1953. 3. 20	"					
15	15	暴風雨로 因한 東海岸一帶 被害對策에 關한 建議案	商工 委員長	1953. 4. 10	"					
15	15	原棉現在價格堅持에 關한 建議案	池蓮海	1953. 4. 15	"					
15	15	食糧緊急施策에 關한 建議 案	特別委 員長	1953. 5. 26	"					
16	16	休戰對策에 關한 建議案	休戰對 策委員 長	1953. 6. 9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 年 月 日	決 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續 廢 棄
16	16	軍換率引上反對에 關한 建議案	財政經濟委員長 商工委員長	1953.	6. 10	〃					
16	16	韓中同盟締結에 關한 建議案	尹致暎	1953.	6. 11	〃					
16	16	休戰反對國民運動展開에 關한 建議案	郭尙勳	1953.	6. 11	〃					
16	16	日本官憲의 獨島不法占據에 關한 建議案	外務委員長	1953.	7. 8	〃					
16	16	水害豫防에 關한 建議案	社會保健委員長	1953.	7. 8	〃					
16	16	申亨植妄言事件調查處理에 關한 建議案	特別調查委員長	1953.	7. 22	〃					
16	16	漢江渡江制限撤廢에 關한 建議案	崔國鉉	1953.	8. 26	〃					
16	16	後方治安確保에 關한 建議案	金宇城	1953.	10. 17	〃					
16	16	拉致人士歸還促進에 關한 建議案	李宗鉉	1953.	10. 20	〃					
16	16	國會議員의 國際會議參席에 關한 建議案	外務委員長	1953.	7. 25	〃					
16	16	共匪被害地區의 救護強化의 負擔輕減에 關한 建議案	嚴祥燮	1953.	10. 20	〃					
17	17	拉致民間人士送還促進에 關한 建議案	特別對策委員長	1953.	11. 14	〃					
17	17	8250部隊處遇改善에 關한 建議案	尹在根	1953.	11. 20	〃					
17	17	韓·日會談에 關한 建議案	朴永出	1953.	11. 24	〃					
17	17	車輛檢査로 因한 交通難緩和에 關한 建議案	交通遞信委員長	1953.	11. 24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 年 月 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繼 續。因 廢棄
18	18	「反共青年의 날」制定 및 同 記念行事實施에 關한 建議 案	議 長	1953. 12. 23	〃					
18	18	宜寧邑被襲事件調查와 今 後對策에 關한 建議案	特別調 查委員 長	1953. 12. 29	〃					
18	18	反共捕虜釋放後援護對策 에 關한 建議案	朴永出	1953. 12. 29	〃					
18	18	韓·美重石協定에 關한 建 議案	商 工 委員長	1954. 3. 17	〃					
8	8	避難民就業斡旋에 關한 建 議案	康慶玉	1950. 8. 2	〃					
8	8	軍類似團體遊擊總司令部 解體要求에 關한 建議案	崔成雄	1950. 11. 8		〃				
8	8	官公吏給料現物支給制實 施에 關한 建議案	徐範錫	1950. 11. 25		〃				
8	8	戰災地區工業再建에 關한 建議案	金亨德	1950. 11. 25		〃				
10	10	民主言論暢達과 人權擁護 에 關한 建議案	文 敎 委員長	1951. 5. 10		〃				
11	11	農業要員確保에 關한 建議 案	崔成雄 朴晚元	1951. 9. 10		〃				
11	11	海外新聞記者特派에 關한 建議案	任容淳	1951. 11. 17		〃				
12	13	肥料緊急對策에 關한 建議 案	金奉才	1952. 9. 6		〃				
12	13	營農資金放出에 關한 建議 案	曹秉燮	1952. 9. 6		〃				
15	15	木浦港修築에 關한 建議案	林基奉 金宗順	1953. 3. 17		〃				
15	16	戰災民 및 避難民에 對한 小 規模生業資金融資斡旋에 關한 建議案	金仁泰	1953. 6. 10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 年 月 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休 留	會期不 續으로 廢棄
16	16	大田·安東以北鐵道旅行 에 C·A·C 證明制度撤廢 에 關한 建議案	金仁泰	1953. 7. 14				"		
12	16	地價補償金支拂에 關한 建 議案	嚴秉學	1953. 7. 24				"		
12	16	産業資金放出에 關한 建 議案	金智泰	1953. 7. 25				"		
8	8	糧穀對策急速樹立促求에 關한 建議案	池蓮海	1950. 10. 12				"		
11	11	停戰協商에 關한 建議案	李宗鉉	1951. 7. 7					"	
11	11	政府機關一部遷都에 關한 建議案	吳誠煥	1951. 10. 19					"	
8	9	行政機構에 附隨된 任意團 體解體에 關한 建議案	崔成雄							"
10	11	歸屬財產(事業體)拂下에 關한 建議案	趙光燮							"
10	11	物價安定策에 關한 建議案	李致善							"
10	11	地主轉業對策에 關한 建議 案	洪昌燮							"
10	11	接待婦制度廢止에 關한 建 議案	嚴秉學							"
10	11	朝鮮紡織國營에 關한 建議 案	任容淳							"
10	11	鐵道現代化促進에 關한 建 議案	黃聖秀							"
10	11	濟州道開發積極推進에 關 한 建議案	康慶玉							"
11	11	綠肥原料採取禁止解除에 關한 建議案	權仲敦							"
11	11	大邱市再建促進에 關한 建 議案	朴性夏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發議者	議年	決月	決日	可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繼 續○或因 廢棄
11	11	義勇警察의 國費正規警察 改編에 關한 建議案	邊鎮甲								"
11	11	國寶美術古蹟等守護에 關 한 建議案	朴性夏								"
11	11	官報 및 法令集發刊配付에 關한 建議案	邊鎮甲								"
11	11	民族正氣強化運動에 關한 建議案	金正基								"
12	17	特殊公務員에 武功勳章授 與에 關한 建議案	方萬洙								"
12	17	政府米放出에 關한 建議案	朴晚元								"
13	17	서울 遷都에 關한 建議案	呂運弘								"
14	17	農村指導要員確保에 關한 建議案	郭義榮								"
15	17	軍事施設擴充에 徵發된 農 地等補償金豫算編成에 關 한 建議案	康慶玉								"
15	17	徵兵忌避者收容所의 運營 方針에 關한 建議案	趙瓊奎								"
15	17	國民班長徵用保留에 關한 建議案	白南軾								"
15	17	國產品愛用に 關한 建議案	金奉才								"
16	17	南江放水路工事着工에 關 한 建議案	金正實								"
16	17	湖南線直通列車運行에 關 한 建議案	曹秉燮								"
16	17	秋穀收穫豫想高再調査에 關한 建議案	金宗順								"
16	17	서울에 서 湖南·全羅兩線 急行列車每日運行에 關한 建議案	嚴詳燮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 年 月 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繼 續으로因 한廢棄
17	17	後方共匪掃滅에 관한建議案	任永信							///
17	17	大邱市達城川改修工事促進에 관한建議案	朴性夏							///
18	18	美極東司令部에 對한韓國產軍需物資購買要請에 관한建議案	康慶玉							///
18	18	糧穀類輸入을爲한政府保有弗割當取消에 관한建議案	金奉才							///

備考：建議案의 (修)는 題目이 修正된 案件임.

(6) 決議案

區分 會期別	區分							會期不繼 續으로因 한廢棄
	提出數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第 7 回	2	1	1					
第 8 回	48	35	2	5		3	3	
第 9 回	3	3						
第 10 回	50	43	1	2		1	3	
第 11 回	53	41		6	1	2	3	
第 12 回	38	32		3	1	1	1	
第 13 回	12	10				1		
第 14 回	22(1)	18	1	2	1		1	
第 15 回	37	33	1	1			1	
第 16 回	20(1)	19		1			1	

會期別	區分						會期不繼 續으로 因 한 廢棄
	提出數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第 17 回	9	9					
第 18 回	14	14					
計	308	258	6	20	3	8	13

※ () 內는 前會期로부터 移越된 件數임.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繼 續으로 因 한 廢棄
7	7	國會議員釋放에 關한 件	金雄鎮	1950. 6. 20	〃					
8	8	常任委員會設置에 關한 臨時措置法案	尹吉重	1950. 7. 27	〃					
8	8	「유엔」軍總司令官「백 아더」將軍에게 보내는 「메세지」發送의 件	李鎮洙	1950. 7. 28	〃					
8	8	軍警에게 보내는 感謝 文發送에 關한 件	鄭一亨	1950. 7. 29	〃					
8	8	「유엔」軍將兵에게 보내는 「메세지」發送에 關한 件	蘇宜奎	1950. 7. 29	〃					
8	8	「유엔」韓國委員會에 寄 보내는 「메세지」發 送에 關한 件	鄭一亨	1950. 7. 29	〃					
8	8	被占領地帶에 「미라」 撤布에 關한 決議案	蘇宜奎	1950. 7. 29	〃					
8	8	國軍 및 「유엔」軍一線 將兵慰問에 關한 件	尹吉重	1950. 7. 29	〃					
8	8	交通部從業員에게 보 내는 感謝 文發送에 關 한 件	李鎮洙	1950. 7. 30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 續으로 廢棄
8	8	金瑛泰議員釋放要求 에 관한決議案	趙瓊奎	1950. 8. 16	〃					
8	8	會期延期에 관한件	蘇宜奎	1950. 8. 16	〃					
8	8	對韓援助諸國에게 보 내는感謝文發送에關 한件	白南軾	1950. 9. 1	〃					
8	8	韓·中國境까지進擊 을要請하는「메세지」 發送의件	李鍾郁	1950. 9. 1	〃					
8	8	憲法委員會委員選舉 의件	尹吉重	1950. 9. 3	〃					
8	8	彈劾裁判所審判官選 舉의件	尹吉重	1950. 9. 4	〃					
8	8	「제노아이드」廢止法 案에大韓民國政府連 署提出의件	尹吉重	1950. 9. 4	〃					
8	8	「유엔」總會및美國等 禮訪議員派遣의件	朴永出	1950. 9. 6	〃					
8	8	大統領에게國務總理 早速任命및內務·國 防部長官問責要請에 에 관한決議案	李奎甲	1950. 9. 6	〃					
8	8	總攻擊促進에 관한「메 세지」發送의件	徐相德	1950. 9. 7	〃					
8	8	一線將兵各地區避難 民傷痍軍管慰問視察 에 관한件	朴永出	1950. 9. 16	〃					
8	8	「맥아더」元帥및仁川 上陸一線將兵에게感 謝文發送에 관한件	任興淳	1950. 9. 18	〃					
8	8	會期延期에 관한件	李鍾郁	1950. 9. 17	〃					
8	8	「유엔」總會에「메세 지」發送에 관한件	金鳳祚	1950. 9. 19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繼 續으로因 社廢棄
8	8	首都奪還에 關한 感謝文發送의 件	南松鶴 金泰熙 蘇宜奎	1950. 9. 27	"				
8	8	一線警察官에 感謝文發送의 件	李錫基	1950. 9. 28	"				
8	8	「유엔」總會에 要請文發送에 關한 件	金鳳祚	1950. 9. 30	"				
8	8	首都奪還作戰各指揮官에 對한 感謝文發送에 關한 件	李鎮洪	1950. 10. 7	"				
8	8	「유엔」軍總司令官「백아더」將軍 및 「엔」少將에 對한 勳章授與에 關한 件	議 長	1950. 10. 7	"				
8	8	會期延期에 關한 決議案	金宗順	1950. 10. 10	"				
8	8	國會自家肅清에 關한 決議案	郭尙勳	1950. 11. 1	"				
8	8	非常戒嚴解除要求決議案	徐珉濂	1950. 11. 2	"				
8	8	「트루만」美大統領暗殺未遂事件에 關한 慰問電文發送의 件	張澤相	1950. 11. 2	"				
8	8	以北奪還地域實情調查慰問團派遣에 關한 決議案	李宗鉉	1950. 11. 3	"				
8	8	以北愛國同胞에 對한 「메세지」發送의 件	李宗鉉	1950. 11. 6	"				
8	8	韓國統一復興對策委員會設置에 關한 決議案	權仲敦	1950. 11. 14	"				
8	8	會期延期에 關한 件	朴永出	1950. 11. 15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否決	廢決	撤回	保留	會期不續으로廢案
9	9	三千萬同胞에게 보내는檄文·「유엔」軍 및 一線軍警에게 보내는 激勵文에 관한決議案	金從會	1950. 12. 11	〃				
9	9	一線軍警「크리스마스」祝賀慰問에 관한決議案	康慶玉	1950. 12. 12	〃				
9	9	「유엔」總會三人委員會에 「메세지」發送의 件·「유엔」總會에게 呈된 13個國의 停戰案에 對한決議案	嚴詳燮	1950. 12. 16	〃				
10	10	日本派遣委員增員에 關한決議案	郭尙勳	1951. 1. 16	〃				
10	10	非常時局下緊急援護對策講究에 關한決議案	太完善	1951. 1. 19	〃				
10	10	戰災避難民慰撫及戰意昂揚激勵團派遣에 關한決議案	李采五	1951. 1. 20	〃				
10	10	錦江以北戰災民救出에 關한決議案	李鎮洙	1950. 1. 20	〃				
10	10	侵略者中共即時膺懲要請에 關한決議案	朴永出	1950. 1. 20	〃				
10	10	檀紀4284年總豫算案提出要求에 關한決議案	李相喆	1951. 1. 30	〃				
10	10	中共侵略者規定案可決에 對한感謝文「메세지」發送에 關한決議案	黃聖秀	1951. 2. 1	〃				
10	10	第2國民兵處遇調查團派遣에 關한決議案	宋邦鏞	1951. 2. 1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繼 續으로因 此廢棄
10	10	太平洋防衛同盟締結 에關한建議案「(修)太 平洋條約締結促進에 關한決議案」	朴永出 鄭一亨	1951. 2. 2	〃					
10	10	團體交涉會構成에關 한決議案	申光均	1951. 2. 3	〃					
10	10	國會事務監査에關한 決議案	白南軾	1951. 2. 3	〃					
10	10	遣日委員團(2人)渡日 에關한決議案	徐珉濠	1951. 2. 13	〃					
10	10	濟州道地區非常戒嚴 解除要求에關한決議 案	金仁善	1951. 2. 13	〃					
10	10	傷殘兵及避難民救護 에關한決議案	崔獻吉	1951. 2. 22	〃					
10	10	共匪로인한全南·全 北地方의被害狀況調 査에關한決議案	邊鎮甲	1951. 2. 24	〃					
10	10	國會自家肅清에關한 件	懲戒資格 委員長	1951. 3. 7	〃					
10	10	常任委員會改編에關 한決議案	蘇宜奎	1951. 3. 9	〃					
10	10	會期延期에關한決議 案(3月31日까지)	金益魯	1951. 3. 10	〃					
10	10	檀紀4284年度假豫算 提出要求에關한決議 案	李載禮	1951. 3. 19	〃					
10	10	首都奪還에대한感謝 「메세지」發送의件	吉秉雯	1951. 3. 19	〃					
10	10	國政監査實施에關한 決議案	崔成雄	1951. 3. 20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補 續 으로 廢 棄
10	10	第2國民兵및傷喪軍人處遇改善에關한決議案	朴永出	1951. 3. 23	〃					
10	10	非常戒嚴(全南北·慶南北)解除要求에關한決議案	金宗順	1951. 3. 27	〃					
10	10	非常戒嚴(忠北堤川·丹陽)解除要求에關한決議案	李忠煥	1951. 3. 27	〃					
10	10	會期延期에關한決議案(4月30日까지)	太完善	1951. 3. 31	〃					
10	10	「유엔」總會및「트루만」大統領에게「메세지」發送에關한決議案	方萬洙	1951. 4. 2	〃					
10	10	國政監査班構成에關한決議案	運 營 委員長	1951. 4. 2	〃					
10	10	「맥아더」線確保에關한決議案	洪昌雙	1951. 4. 24	〃					
10	10	政府委員任命承諾取消에關한決議案	李載澄	1951. 4. 24	〃					
10	10	國軍10個師團增設武裝要請에關한決議案	金從會	1951. 4. 25	〃					
10	10	會期延期에關한件(5月30日까지)	李相喆	1951. 4. 30	〃					
10	10	追加豫算提出要請에關한決議案	李在鶴	1951. 5. 1	〃					
10	10	合同搜查本部解體에關한決議案	金宗順	1951. 5. 2	〃					
10	10	中國立法院과監察院에「메세지」發送의件	議 長	1951. 5. 2	〃					
10	10	癩病患者收容對策에關한件	權仲敦	1951. 5. 2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 續으로 因廢棄
10	10	一線師團長等의 國防 長官留任運動에 關한 件	南松鶴	1951. 5. 3	〃					
10	10	國民防衛軍疑獄事件 에 關한 決議案	特別調查 委員長	1951. 5. 8	〃					
10	10	居昌事件 調查處理에 關한 決議案	徐二煥	1951. 5. 14	〃					
10	10	國會議員補闕選舉實 施에 關한 件	趙柱永	1951. 5. 18	〃					
10	10	「에이·알·케이」議 長에게 感謝「메세지」 發送의 件	金用雨	1951. 5. 18	〃					
10	10	軍法會議裁判權의 限 界에 關한 決議案	白南軾	1951. 5. 22	〃					
10	10	美第2師團長「라푸너」 少將에게 感謝「메세 지」發送에 關한 決議案	梁又正	1951. 5. 28	〃					
10	10	未決議案繼續審査에 關한 決議案	李相喆	1951. 5. 29	〃					
11	11	國軍第8師團에 感謝 「메세지」發送에 關한 決議案	金宇城	1951. 6. 5	〃					
11	11	韓國戰綫停戰協商說 反對에 關한 決議案	曹秉雲	1951. 6. 5	〃					
11	11	國政監査結果處理에 關한 件	處 理 委員會	1951. 6. 11	〃					
11	11	會期延期에 關한 件 (6月30日~7月29日)	白南軾	1951. 6. 29	〃					
11	11	停戰協商說에 對한 呼 訴文發送의 件(停戰協	郭泰珍	1951. 6. 29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續 開 會 以 致 廢 棄
		商說에 對한 反對 決議案)								
11	11	友邦國家獨立記念日 慶祝에 關한 決議案	金用雨 鄭一亨	1951. 7. 2	〃					
11	11	地方實情報告와 處理 에 關한 決議案	池蓮海	1951. 7. 12	〃					
11	11	違法國債消化是正에 關한 決議案	金宗順	1951. 7. 18	〃					
11	11	建議·決議의 處理에 關한 決議案	朴寬元	1951. 7. 21	〃					
11	11	國會運營에 關한 決議 案	議 長	1951. 7. 23	〃					
11	11	停戰會談에 關한 美「에 치슨」國務長官聲明에 對한 感謝文發送의 件 決議案	鄭一亨	1951. 7. 23	〃					
11	11	會期延期에 關한 件 (7月30日~8月28日)	運 營 委員長	1951. 7. 28	〃					
11	11	飛行機獻納金釀出에 關한 決議案	徐相德	1951. 8. 6	〃					
11	11	美大統領·「미조리」 州知事에게 慰問文에 關한 決議案	呂運弘	1951. 8. 10	〃					
11	11	韓國救護衣類蒐集의 달制定에 對한 感謝文 發送의 件決議案	黃聖秀	1951. 8. 17	〃					
11	11	國會議員의 歸屬財產 (企業體)管理參與에 關한 決議案	嚴詳雙	1951. 8. 17	〃					
11	11	我國海兵隊勇戰에 對 한 感謝文發送의 件	李鎮洙	1951. 8. 25	〃					
11	11	豫算增額同意要求에 關한 件	財政經濟 委員長	1951. 8. 27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繼 續으로因 廢棄
11	11	會期延期에 관한件 (8月29日~9月27日)	運 營 委員長	1951. 8. 27	"					
11	11	美國會에 感謝「메세지」發送에 관한決議案	朴永出	1951. 8. 29	"					
11	11	國會圖書室設置에 관한決議案	尹宅重	1951. 9. 10	"					
11	11	會期延期에 관한件 (9月28日~10月27日)	運 營 委員長	1951. 9. 26	"					
11	11	傷痍軍警및 戰役軍警 援護金釀出에 관한決議案	太完善	1951. 10. 1	"					
11	11	後方治安確保를爲한 兵力配置要求에 관한決議案	趙 淳 任永信	1951. 10. 8	"					
11	11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等異議의件返戻에 關한決議案	趙柱泳	1951. 10. 10	"					
11	11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異議의件返戻에 關한決議案	議 長	1951. 10. 13	"					
11	11	傷痍軍人援護行事に 對한感謝狀贈呈에 關한決議案	社會保健 委員長	1951. 10. 17	"					
11	11	會期延期에 관한件 (10月28日~11月26日)	運 營 委員長	1951. 10. 27	"					
11	11	英國國會및 「치친」新 內閣에게 「메세지」發 送에 관한件	金用雨	1951. 11. 3	"					
11	11	內務部長官(李淳鎔) 不信任決議案	內 務 委員長	1951. 11. 6	"					
11	11	內務部長官引責辭職 에 관한決議案	金奉才	1951. 11. 6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 續으로 廢棄
11	11	陸軍第1訓練所視察 調査團派遣에 關한 決 議案	姜昌鎔	1951. 11. 6	"					
11	11	「뉴욕타임즈」紙發刊 百周年記念祝賀「메세 지」發送에 關한 決議案	任永信	1951. 11. 12	"					
11	11	開城中立地帶設置反 對에 關한 決議案	金從會	1951. 11. 15	"					
11	11	內務部所管第3回追 加豫算審議保留의 件	內 務 委員長	1951. 11. 21	"					
11	11	會期延期에 關한 決議 案 (11月27日~12月19日)	運 營 委員長	1951. 11. 26	"					
11	11	停戰會談에 關한 決議 案	金從會	1951. 12. 1	"					
11	11	一線軍警慰問에 關한 決議案	梁又正	1951. 12. 1	"					
11	11	內務部所管第3回追 加豫算全額削減에 關 한 決議案	禹 文	1951. 12. 3	"					
11	11	臨時土地收得稅法實 施에 對한 國政監查의 件	金正植	1951. 12. 7	"					
11	11	議案繼續審查에 關한 決議案	運 營 委員長	1951. 12. 8	"					
12	12	補關選舉監視調查委 員會派遣에 關한 決議 案	郭泰珍	1952. 1. 21	"					
12	12	朝紡爭議事件真相調 查에 關한 決議案	嚴詳燮	1952. 1. 21	"					
12	12	國政監查實施에 關한 決議案	金正植	1952. 1. 23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繼 續으로因 社廢棄
12	12	智異山, 太白山地區 戰關司令官에게感謝 文發送에關한決議案	趙 淳 金正植	1952. 1. 24	"					
12	12	國會議員召選說에關 한大統領言明에關한 決議案	特 別 委員長	1952. 2. 29	"					
12	12	朝紡爭議事件에關한 決議案	調 查 委員長	1952. 2. 29	"					
12	12	緊急食糧對策委員會 構成에關한決議案	李鍾榮	1952. 3. 5	"					
12	12	「改憲案否決經緯의護 憲決議까지의眞相」册 字印刷配布에關한決 議案	特 別 委員長	1952. 3. 10	"					
12	12	捕虜實情調查團派遣 에關한決議案	具乙會	1952. 3. 10	"					
12	12	會期延期에關한決議 案(自3月9日~至4 月10日)	運 營 委員長	1952. 3. 18	"					
12	12	朝紡爭議事件眞相調 查에關한決議案(第2 次)	金用雨	1952. 3. 18	"					
12	12	食糧事情調查團派遣 에關한決議案	食糧對策 委員長	1952. 3. 19	"					
12	12	「올림픽」基金提供에 關한決議案	張洪瑛	1952. 3. 19	"					
12	12	檀紀4285年度豫算案 修正追加및假豫算提 出에關한決議案	財政經濟 委員長	1952. 3. 28	"					
12	12	會期延期에關한決議 案(自4月11日~至6 月30日)	金意俊	1952. 4. 4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案	撤 回	保 留	會期不繼 續으로 廢案	因
12	12	檀紀4285年度歲出豫 算案一部增額同意要 請에關한件	財政經濟 委員長	1952. 4. 17	〃						
12	12	地方議員選舉視察調 査에關한決議案	趙 淳	1952. 4. 17	〃						
12	12	檀紀4285年度農地開 發資金融資要請에關 한決議案	財政經濟 委員長· 農林委員 長	1952. 4. 18	〃						
12	12	食糧非常措置策監視 에關한決議案	農 林 委員長	1952. 5. 9	〃						
12	12	徐珉濂議員釋放要求 에關한決議案	金意俊	1952. 5. 14	〃						
12	12	非常戒嚴令解除(釜 山)要求에關한決議案	金宗順	1952. 5. 28	〃						
12	12	國會議員釋放要求에 關한決議案	蘇宜奎	1952. 5. 30	〃						
12	12	自由黨(合同)議員出 席忠告에關한決議案	李鍾榮	1952. 6. 5	〃						
12	12	護憲警告에關한決議 案	鄭純朝	1952. 6. 11	〃						
12	12	大統領出席要請에關 한決議案	李鍾榮	1952. 6. 12	〃						
12	12	大統領任期에關한決 議案	安相漢 徐二煥	1952. 6. 12	〃						
12	12	臨時議長選舉에關한 決議案	徐二煥	1952. 6. 18	〃						
12	12	國會議員의 國際共產 黨關聯事件調査에關 한決議案	李宗欽	1952. 6. 19	〃						
12	12	國會議員의 國家保安 法違反被疑事件軍法 會議公開要請에關한 決議案	金仁泰	1952. 6. 19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繼 續으로因 此廢棄
12	12	大統領任期滿了에 關한決議案	趙柱泳	1952. 6. 23	"					
12	12	議案繼續審議에 關한決議案	白南軾	1952. 6. 28	"					
12	12	大統領狙擊事件調查 에關한決議案	金智泰	1952. 6. 28	"					
13	13	政府保有弗 및 重石弗 에依한輸入糧穀及肥 料其他物資取扱事項 調査에關한件	朴晚元	1952. 7. 18	"					
13	13	會期延期에關한決議 案(自7月31日~至 8月29日)	運 營 委員長	1952. 7. 28	"					
13	13	大統領宣誓式舉行에 關한決議案	議 長	1952. 8. 13	"					
13	13	會期延期에關한決議 案(自8月30日~至9 月10日)	邊嶺甲 白南軾	1952. 8. 28	"					
13	13	駐日韓國同胞實態調 査에關한決議案	外 務 委員長	1952. 9. 3	"					
13	13	國會親善使節及視察 團海外派遣에關한決 議案	外 務 委員長	1952. 9. 3	"					
13	13	再建「다임스」援助에 關한決議案	社會保健 委員長	1952. 9. 3	"					
13	13	空軍增強促進에關한 決議案	國 防 委員長	1952. 9. 5	"					
13	13	颱風被害調査團派遣 에關한決議案	池蓮海	1952. 9. 9	"					
13	13	議案繼續審查에關한 決議案	運 營 委員長	1952. 9. 10	"					
14	14	首都師團·第九師團 및 海兵隊에게感謝文發	朴永出	1952. 10. 16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繼 續으로因 廢棄
		送이關한決議案								
14	14	國務總理任命에 對한 議決定數에 關한決議 案	郭尙勳	1952. 10. 16	"					
14	14	國務院組織完了時에 關한決議案	蘇宜奎	1952. 10. 16	"					
14	14	第7回「유엔」總會에 「에세지」發送에 關한 決議案	外務 委員長	1952. 10. 17	"					
14	14	重石弗事件調查報告 處理委員構成에 關한 決議案	曹奉岩	1952. 10. 28	"					
14	14	國務院不信任決議議 決定足數에 關한決議 案	郭尙勳	1952. 10. 30	"					
14	14	「아이제하위」美國大 統領當選祝賀文發送 에 關한決議案	外務 委員長	1952. 11. 6	"					
14	14	尹致暎議員發言內容 糾明에 關한件	郭尙勳	1952. 11. 8	"					
14	14	忠魂塔建立基金贈出 에 關한決議案	金奉才	1952. 11. 12	"					
14	14	會期延期에 關한決議 案(自11月14日~至11 月30日)	運營 委員長	1952. 11. 12	"					
14	14	次期美國大統領「아」 元帥來韓에 對處한特 別委員會構成에 關한 決議案	太完善 嚴詳燮	1952. 11. 13	"					
14	14	在日僑胞代表國會參 席에 關한決議案	法制司法 委員長· 外務委員 長	1952. 11. 24	"					
14	14	卞榮泰外務部長官召 還에 關한決議案	郭尙勳	1952. 11. 25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否決	廢案	撤回	保留	會期不繼續 으로因 於廢案
14	14	「아이제하위」元帥에게韓國陸海空軍增強要請에關한「엑세이저」發送의件	國防委員長	1952. 11. 25	〃				
14	14	會期延期에關한決議案(自12月1日~至12月19日)	運營委員長	1952. 11. 29	〃				
14	14	前線 및 訓練中의 將兵慰問에關한決議案	國防委員長	1952. 12. 3	〃				
14	14	一線將兵慰問金醜出에關한決議案	運營委員長	1952. 12. 4	〃				
14	14	議案繼續審査에關한決議案	運營委員長	1952. 12. 5	〃				
15	15	「아이제하위」美大統領就任祝賀使節團派遣에關한決議案	外務委員長	1952. 12. 23	〃				
15	15	檀紀4286年度赤字豫算補填對策特別委員會構成에關한件	宋邦鏞	1952. 12. 23	〃				
15	15	昌景號沈沒事件調査에關한件	金仁善	1953. 1. 12	〃				
15	15	國會議員全員赤十字社加入에關한決議案	黃聖秀	1953. 1. 14	〃				
15	15	昌景號遭難者에對한吊慰金醜出의件	李采五	1953. 1. 14	〃				
15	15	美第八軍司令官更迭에對한電文發送에關한決議案	黃聖秀	1953. 1. 26	〃				
15	15	暴風雨로因한東海岸一帶被害調査에關한件	金益魯	1953. 1. 27	〃				
15	15	群山近海의船舶沈沒事件 및 浦項近海食糧	林基奉	1953. 1. 28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否 決	廢 決	撤 回	保 留	會期不 續으로 因 廢棄
15	15	積載船沈沒事件調查 에 관한件(幸運號事 件) 經濟및軍事援助要請 에 관한「맷세이지」發 送의件	赤字豫算 補填에關 한特別委 員長	1953. 1. 31	〃				
15	15	國際市場火災對策講 究에 관한件	李宗鉉	1953. 1. 31	〃				
15	15	美陸軍參謀總長「코린 스」將軍에게感謝文發 送의件	黃聖秀	1953. 1. 31	〃				
15	15	人權蹂躪에 관한特別 調査委員會構成에關 한件	法制司法 委員長	1953. 2. 3	〃				
15	15	國際市場火災로因한 罹災民救護金融出에 關한件	社會保健 委員長	1953. 2. 3	〃				
15	15	一線軍警慰問을爲한 國民運動展開에 관한 決議案	郭尙勳	1953. 2. 5	〃				
15	15	和蘭의風水害에對한 慰問文發送의件	鄭一亨	1953. 2. 6	〃				
15	15	英國의風水害에對한 慰問文發送의件	黃聖秀	1953. 2. 6	〃				
15	15	政府機構改編및公務 員處遇改善對策特別 委員會構成에 관한件	太完善	1953. 2. 6	〃				
15	15	會期延期에 관한決議 案(自3月20日~至4 月18日)	運 營 委員長	1953. 3. 19	〃				
15	15	停戰에 관한中共聲明 에對한反對決議案	外 務 委員長	1953. 4. 2	〃				
15	15	傷病捕虜交換에對한	朴永出	1953. 4. 10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繼續 因廢棄
		決議文發送 15件							
15	15	傷痍軍警合同結婚式祝賀金贈出에 關한 決議案	社會保健委員長	1953. 4. 11	"				
15	15	會期延期에 關한 決議案(自 4月19日~至 4月30日)	運 營委員長	1953. 4. 17	"				
15	15	前副統領李始榮翁逝去에 對한 吊慰에 關한 件	議 長	1953. 4. 17	"				
15	15	章蒼吳世昌翁逝去에 對한 吊慰에 關한 件	議 長	1953. 4. 18	"				
15	15	北進統一國民運動展開에 關한 決議案	尹致暎	1953. 4. 22	"				
15	15	寶水洞火災로 因한 罹災民慰問金贈出의 件	金奉才	1953. 4. 24	"				
15	15	會期延期에 關한 件(自 5月1日~至 5月30日)	運 營委員長	1953. 4. 24	"				
15	15	山清地區治安狀態調查에 關한 決議案	李炳洪	1953. 4. 30	"				
15	15	美下院軍事委員長「쇼트」氏에 電文發送의 件	金汶鏞	1953. 5. 6	"				
15	15	食糧無指令配給事件調查에 關한 決議案	徐範錫	1953. 5. 30	"				
15	15	議案繼續審査에 關한 決議案	運 營委員長	1953. 5. 30	"				
15	15	國務委員不信任決議定足數에 關한 決議案	運 營委員長	1953. 5. 30	"				
15	15	國政監查報告處理에 關한 決議案	國政監查處理委員長	1953. 5. 30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續 ○ 廢 棄	不 續 ○ 廢 棄
16	16	「유엔」및 援韓諸國에 休戰反對「렛세이지」 發送에 關한 決議案	休戰對策 委 員 長	1953. 6. 11	〃						
16	16	大韓戰沒軍警未亡人 援護金醜出에 關한 決 議案	申光均	1953. 6. 13	〃						
16	16	會期延期에 關한 決議 案(自7月3日~至8 月1日)	運 營 委 員 長	1953. 7. 1	〃						
16	16	反共愛國捕虜援護金 醜出에 關한 決議案	趙光燮	1953. 7. 1	〃						
16	16	東獨其他地域의 反共 鬭爭에 對한 激勵「렛세 지」發送의 件	李宗鉉	1953. 7. 7	〃						
16	16	一線 및 後方 傷痍將兵 에 對 慰問「렛세지」發 送의 件	外 務 委 員 長	1953. 7. 9	〃						
16	16	申亨植 返逆 言動 事件 調查處理를 爲 關한 決 議案	同件調查 委 員 長	1953. 7. 22	〃						
16	16	內務部次官(黃虎鉉) 罷免에 關한 決議案	同件調查 委 員 長	1953. 7. 22	〃						
16	16	會期延期에 關한 決議 案(自8月2日~至8 月30日)	運 營 委 員 長	1953. 7. 24	〃						
16	16	休戰會談에 對한 政府 態度 支持에 關한 決議 案	休戰對策 委 員 長	1953. 8. 3	〃						
16	16	糧穀無指令配給事件 調查報告接受에 關한 件	同件調查 委 員 長	1953. 8. 26	〃						
16	16	光州·麗水通匪事件 調查報告接受에 關한 件	同件調查 委 員 長	1953. 8. 26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繼 繳○로因 社廢棄
16	16	遷都聲明書發表에 關한 決議案	運 營 委員長	1953. 8. 28	"				
16	16	會期延期에 關한 決議案(自 9 月 1 日~至 9 月 30 日)	運 營 委員長	1953. 8. 28	"				
16	16	「學生의 날」制定에 關한 決議案	金宗順	1953. 10. 20	"				
16	16	議案繼續審査에 關한 決議案	運 營 委員長	1953. 10. 20	"				
16	16	官營料金引上에 對한 附帶決議案	財政經濟 委員長· 商工委員 長	1953. 10. 20	"				
16	16	反共愛國捕虜慰問金 釀出에 關한 決議案	外務委員 長·國防 委員 長	1953. 10. 20	"				
16	16	國政監查後政府處理 狀況報告促求에 關한 決議案	崔成雄	1953. 10. 20	"				
17	17	「현」將軍에 寄致民間 人士送還促進을 要請하는 「햇 세 지」發送의 件	同件特別 委員 長	1953. 11. 14	"				
17	17	「막사이사이」氏의 比 律賓大統領當選祝賀 電文發送의 件	金用雨	1953. 11. 14	"				
17	17	「하와이」在留同胞 50 周年祝賀電文發送의 件	金東成	1953. 11. 15	"				
17	17	電氣料金改正에 關한 同意案上程要求의 件	商 工 委員長	1953. 11. 23	"				
17	17	釜山市大火災罹災民 救護金釀出에 關한 決議案	社會保健 委員 長	1953. 11. 28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續 因 此 廢 棄
17	17	韓國產業銀行法實施 에關한附帶決議案	財政經濟 委員長	1953. 11. 28	〃					
17	17	會期延期에關한決議 案(自11月29日~至12 月19日)	運 營 委員長	1953. 11. 28	〃					
17	17	國政監查實施에關한 決議案	運 營 委員長	1953. 12. 1	〃					
17	17	議案繼續審査에關한 決議案	運 營 委員長	1953. 12. 1	〃					
18	18	年末年始一線將兵慰 問金釀出에關한決議 案	國 防 委員長	1953. 12. 24	〃					
18	18	梁又正議員辭任書處 理에關한件	申翼熙	1953. 12. 24	〃					
18	18	檀紀4286年產糧穀賣 買價格決定및4287年 度政府管理糧穀需給 計劃同意案至急提出 에關한決議案	農 林 委員長	1954. 1. 7	〃					
18	18	反共捕虜釋放及印度 軍非行에對한警告에 關한決議案	國防委員 長・外務 委員長	1954. 1. 9	〃					
18	18	美軍二個師團撤收反 對에關한決議案	國 防 委員長	1954. 1. 13	〃					
18	18	國政監查實施에關한 決議案	運 營 委員長	1954. 1. 14	〃					
18	18	反共愛國青年援護金 釀出에關한決議案	趙光燮	1954. 1. 22	〃					
18	18	國政監查實施에關한 決議案	運 營 委員長	1954. 1. 23	〃					
18	18	李大統領에게感謝狀 과記念品贈呈에關한 決議案	愼錫珥	1954. 3. 12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繼 續으로因 한廢棄
18	18	工兵團等有功한部隊 에게感謝狀授與에關 한決議案	國 防 委員長	1954. 3. 13	"					
18	18	會期延期에關한決議 案(自3月20日~至3 月27日)	運 營 委員長	1954. 3. 19	"					
18	18	會期延期에關한決議 案(自3月28日~至3 月31日)	運 營 委員長	1954. 3. 27	"					
18	18	會期延期에關한決議 案(自4月1日~至4 月30日)	運 營 委員長	1954. 3. 31	"					
18	18	反共亞細亞民族大會 開催歡迎에關한決議 案	衷恩希	1954. 3. 31	"					
7	7	施政方針에關한決議 案	南松鶴	1950. 6. 20	"					
8	8	臨時特別委員會設置 에關한決議案	李時穆	1950. 7. 28	"					
8	8	國民總力動員宣言에 關한決議案	金凡父	1950. 7. 31	"					
10	10	國政協議會設置에關 한決議案	李宗欽	1951. 2. 2	"					
14	14	國務院不信任에關한 決議案	徐範錫	1952. 10. 30	"					
15	15	內務部長官(陳憲植) 不信任決議案	李鍾榮	1953. 5. 30	"					
8	8	國土統一特別委員會 設置에關한決議案	黃聖秀	1950. 7. 28	"					
8	8	北韓統治에關한決議 案	李判烈	1950. 9. 6	"					
8	8	國會議員懲戒에關한 特別規則案	懲戒資格 委員 長	1950. 9. 19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否決	廢案	撤回	保留	會期不續因
8	8	戰後再建에 關한 特別委員會設置에 關한 決議案	蘇宜奎	1950. 10. 10		〃			
8	8	非常戒嚴解除要求 決議案	趙柱泳	1950. 11. 2		〃			
10	10	「유에」總會三人委員會의 韓國停戰案에 對한 決議案	宋邦鏞	1951. 1. 20		〃			
10	10	共匪討伐軍團設置要求에 關한 決議案	鄭在浣	1951. 4. 2		〃			
11	11	夏期服裝에 關한 決議案	李鍾郁	1951. 7. 15		〃			
11	11	交通事故頻發과 主務長官責任糾彈에 關한 決議案	林基奉	1951. 8. 11		〃			
11	11	全羅北道廳舍全燒事件 調査에 關한 決議案	崔成雄	1951. 11. 9		〃			
11	11	大統領面談에 關한 決議案	曹秉雯	1951. 11. 27		〃			
11	11	第3回追加豫算審査에 關한 決議案	全院委員長	1951. 12. 1		〃			
11	11	地方自治法實施에 關한 決議案	曹奉岩	1951. 12. 3		〃			
12	12	政治運動規制法案廢棄에 關한 決議案	金正實	1952. 6. 14		〃			
12	12	全院委員會隨時召集에 關한 決議案	安相漢	1952. 6. 5		〃			
12	12	護憲眞意周知에 關한 決議案	安相漢	1952. 6. 16		〃			
13	14	「유에」總會에 對한 要請과 外交推進에 關한 決議案	任永信	1952. 10. 23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繼 續○或因 廢棄
14	14	國務院不信任決議 決定足數에 關한 決議 案	徐範錫	1952. 10. 30			〃			
15	15	國政監査施行에 關한 決議案	趙光燮	1953. 2. 5			〃			
15	16	弗換算率引上反對에 關한 決議案	趙瓊圭	1953. 6. 9			〃			
11	11	板間店休戰會談「유 엔」代表懇問에 關한 決議案	金東成	1951. 11. 26				〃		
12	12	韓國에 關聯있는 外國 記事印刷配布에 關한 決議案	安相漢	1952. 6. 11				〃		
14	14	韓國休戰에 關한 印度 提案反對聲明發送에 關한 件	金宗順	1952. 12. 5				〃		
8	8	濟州地區戒嚴宣布解 除에 關한 決議案	姜昌培	1950. 9. 28					〃	
8	8	「유엔」總會에서 通 過한 韓國問題에 關한 決議案에 대한 「메세지」 發送의 件	李判烈	1950. 10. 10					〃	
8	8	國務委員引責辭職勸 告에 關한 決議案	崔元鳳	1950. 11. 7					〃	
10	10	印度首相糾彈에 關한 決議案	梁又正	1951. 1. 27					〃	
11	11	農耕作에 協助한 軍需 局에 感謝文發送의 件	崔國鉉	1951. 6. 28					〃	
11	11	豫算案審査權限界에 關한 決議案	嚴詳燮	1951. 12. 7					〃	
12	12	復興委員會設置에 關 한 決議案	康慶玉	1952. 3. 10					〃	
13	13	憲法研究委員會設置 에 關한 決議案	徐二煥	1952. 9. 9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續 因 廢 棄
8		國政監查權隨時發動 에 關한 決議案	徐範錫							"
8		非常時局援護對策委 員會設置에 關한 決議 案	太完善							"
8		日本視察團派遣에 關 한 決議案	康慶玉							"
10		文教部所管教育費豫 算額增加同意要請에 關한 決議案	文 教 委員長							"
10		肥料緊急對策에 關한 決議案	金奉才							"
10		審査完了된捕虜釋放 要請에 關한 決議案	禹 文							"
11		法律公布周和及國會 諸決議迅速處決에 關 한 決議案	金宗順							"
11		三陟地帶工業施設國 政監查에 關한 決議案	任容淳							"
11		憲法改正에 對한輿論 調査에 關한 決議案	金宗順							"
12		國會自律的解散에 關 한 決議案	李甲成							"
14		國政監查에 關한 決議 案	金宗順							"
15		系統不明軍事機關에 에 關한 緊急對策講究에 關한 決議案	呂運弘							"
16		三·八以南各島嶼再 確保와 撤收避難民救 護對策에 關한 決議案	吳誼寬							"

備考：決議案의 (修)는 題目이 修正된 案件임.

(7) 重要動議

會期別	區分						會期不繼 續으로因 廢棄
	提出數	可決	否決	廢棄	撤回	保留	
第8回	19	16	1	2			
第9回	5	5					
第10回	49	44	4			1	
第11回	31	29		1		1	
第12回	14	12		2			
第13回	10	7		2	1		
第14回	11	11					
第15回	13	12		1			
第16回	27	23		4			
第17回	9	9					
第18回	13	12		1			
計	201	180	5	13	1	2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發議者	議年月日	可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繼 續으로因 廢棄
8	8	非常事態對策講究爲韓國 務委員出席要請의件	李宗鉉	1950. 7. 27	〃				
8	8	戰死한美人記者에對한吊電 發送의件	金東成	1950. 7. 28	〃				
8	8	休會에關한件 (自8月3日~至8月14日)	張洪琰	1950. 8. 2	〃				
8	8	休會에關한件 (自8月16日~至8月31日)	金東成	1950. 8. 17	〃				
8	8	유엔韓委印度代表逝去에對 한吊電發送의件	金東成	1950. 8. 17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案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續 ○ 因 廢 案
8	8	傷喪軍警援護法制定에 관한 件	李鎮洙	1950. 9. 8	〃					
8	8	休會에 관한件 (自9月20日~至9月26日)	金鳳祚	1950. 9. 19	〃					
8	8	休會에 관한件 (自10月1日~至10月6日)	南松鶴	1950. 10. 1	〃					
8	8	六·二五事變에犧牲된軍警 과一般同胞에게對한默念의 件	議 長	1950. 10. 7	〃					
8	8	戰災地區視察을爲한休會의 件 (自10月13日~至10月27日)	金宗順	1950. 10. 10	〃					
8	8	議員出席通知의件	朴勝夏	1950. 11. 1	〃					
8	8	戰況報告聽取의件	禹 文	1950. 11. 10	〃					
8	8	休會에 관한件 (自11月16日~至11月17日)	金從會	1950. 11. 15	〃					
8	8	北韓緩衝地帶設置調查報告 의件	朴永出	1950. 11. 15	〃					
8	8	會議時間變更의件	蘇宜奎	1950. 11. 22	〃					
8	8	附逆行爲特別審査委員會委 員選任의件	李鍾郁	1950. 11. 22	〃					
9	9	國會議員殉國에對한默念의 件	議 長	1950. 12. 12	〃					
9	9	在京議員出席勵行에 관한件	朴定根	1950. 12. 14	〃					
9	9	外國通信雜誌의大韓民國및 國會에關한記事糾明의件	金從會 李宗鉉	1950. 12. 14	〃					
9	9	滅共總武裝國民大會參席의 件	嚴詳燮	1950. 12. 14	〃					
9	9	戰時對策을聽取하기爲한國 務委員出席要請의件	朴永出	1950. 12. 15	〃					
10	10	國務委員出席要請에 관한件	兪昇滿	1950. 12. 21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案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續 ○ 因	廢 案
10	10	故「위키」中將吊慰에 관한件	鄭一亨 曹秉燮	1950. 12. 24	〃						
10	10	國會議員報酬에 관한法律中 改正法律案上程要求에 관한 件	李鍾榮	1950. 12. 24	〃						
10	10	休會에 관한件 (自1950年12月26日 ~至1951年1月14日)	南松鶴	1950. 12. 25	〃						
10	10	國務委員出席要請에 관한件	郭泰珍	1951. 1. 15	〃						
10	10	武器要請에 관한計劃書作成 의件	嚴詳燮	1951. 1. 15	〃						
10	10	對日講和와我國의對策樹立 에 관한件	李鍾郁	1951. 1. 17	〃						
10	10	故徐載弼博士吊慰의件	尹宅重	1951. 1. 19	〃						
10	10	國務委員出席要請에 관한件	朴勝夏	1951. 1. 20	〃						
10	10	休會의件 (自2月5日~至2月11日)	徐珉燮	1951. 2. 3	〃						
10	10	國務委員出席要請에 관한件	洪昌燮	1951. 2. 13	〃						
10	10	遣日委員團入國許可再交涉 에 관한件	嚴詳燮	1951. 2. 15	〃						
10	10	和蘭軍司令官故「레·오덴」 中佐吊慰에 관한件	鄭一亨	1951. 2. 20	〃						
10	10	國務委員出席要請에 관한件	金永善	1951. 2. 22	〃						
10	10	國務總理出席에 관한件	南松鶴	1951. 2. 22	〃						
10	10	故「언더우드」博士吊慰에 關한件	李奎甲	1951. 2. 22	〃						
10	10	豫算案豫備審査에 관한件	朴晚元	1951. 2. 24	〃						
10	10	美第9軍團司令官故「무어」 少將吊慰의件	尹城淳 鄭一亨	1951. 2. 26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續 續으로 因廢棄
10	10	休會의件 (自3月12日~至3月18日)	金光俊	1951. 3. 10	"				
10	10	大統領및國務委員出席要請에關한件	金光俊 李載濬	1951. 3. 29	"				
10	10	地稅物納에대한報償處理에關한件	趙柱泳	1951. 4. 2	"				
10	10	國務總理出席要請에關한件	黃聖秀	1951. 4. 16	"				
10	10	壁報事件調查報告의件	李鍾洙	1951. 4. 17	"				
10	10	居昌事件調查報告處理에關한件	俞昇濬	1951. 4. 18	"				
10	10	休會의件 (自4月21日~至4月23日)	李載濬	1951. 4. 20	"				
10	10	歸屬財產(事業體)拂下内幕調查의件	趙光燮	1951. 4. 25	"				
10	10	兵役法中改正法律案緊急審査에關한件	金鳳祚	1951. 4. 28	"				
10	10	英聯邦軍旅團에對한吊慰의件	黃聖秀	1951. 5. 4	"				
10	10	加平戰線에서玉碎한國軍將兵에게吊慰金傳達의件	徐珉濠	1951. 5. 5	"				
10	10	國政監査結果處理委員選定의件	李相喆	1951. 5. 5	"				
10	10	「유엔」韓國再建委員招請의件	議長	1951. 5. 5	"				
10	10	國民防衛軍疑獄事件調查處理委員選定의件	李宗鉉	1951. 5. 8	"				
10	10	居昌事件調查處理委員選定의件	李容高	1951. 5. 8	"				
10	10	副統領李始榮辭職書封還에關한件	李鍾郁	1951. 5. 11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否決	廢案	撤回	保留	會期不繼 積으로 因廢棄
10	10	國民防衛軍疑獄事件調查의件	嚴詳燮	1951. 5. 12	〃				
10	10	副統領李始榮辭職書受理에關한件	曹秉燮	1951. 5. 14	〃				
10	10	副統領選舉에關한動議	趙柱泳	1951. 5. 14	〃				
10	10	國務委員의國籍및公民權有無에關한法的解釋에關한件	金仁善	1951. 5. 14	〃				
10	10	軍法會議裁判權의限界에關한證言要求의件	南松鶴	1951. 5. 21	〃				
10	10	休會에關한件 (自4月23日~至4月27日)	白南軾	1951. 5. 22	〃				
10	10	戰災民假住宅強制撤去에關한動議	洪昌燮	1951. 5. 22	〃				
10	10	國務總理및國務委員出席要請에關한動議	徐珉濠 慎鏞珢	1951. 5. 28	〃				
10	10	弗貨換算率「유엔」에對한貸上金및(ECA)資金運用에關한問題等協議報告의件	朴定根 柳鴻 太完善	1951. 5. 28	〃				
10	10	秘密會議速記錄非公開에關한動議	議長	1951. 5. 29	〃				
11	11	國債消化와諸稅金徵收狀態調查에關한件	徐珉濠	1951. 6. 6	〃				
11	11	清州事件真相報告와事後措置聽取에關한件	成得煥	1951. 6. 7	〃				
11	11	清州被襲事件調查의件	成得煥	1951. 6. 7	〃				
11	11	國務委員出席要請에關한動議	黃聖秀	1951. 6. 9	〃				
11	11	休會에關한件 (自6月12日~至6月26日)	白南軾	1951. 6. 11	〃				
11	11	國會議員舌禍事件調查에關한件	金奉才	1951. 6. 21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 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業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續 因	繼 續 廢 業
11	11	國務委員出席要請에 關한件	趙瓊奎	1951. 6. 29	〃						
11	11	停戰問題를 中心한 政府와 國 會와의 協議에 關한件	議 長	1951. 6. 30	〃						
11	11	外務長官의 國際情勢報告의 件	梁又正	1951. 7. 1	〃						
11	11	國務委員出席要請에 關한動 議	李鍾郁	1951. 7. 5	〃						
11	11	海上交通事故真相調查에 關 한動議	金泰熙	1951. 7. 14	〃						
11	11	國務委員出席要請에 關한動 議	任永信	1951. 7. 14	〃						
11	11	大統領出席要請에 關한動議	鄭一亨	1951. 7. 23	〃						
11	11	便利號沈沒事件調查의 件	金泰熙	1951. 8. 11	〃						
11	11	國務委員出席要請에 關한動 議	李炳洪	1951. 8. 13	〃						
11	11	金副統領問病에 關한動議	李奎甲	1951. 8. 13	〃						
11	11	國務委員出席要請에 關한動 議	徐二煥	1951. 8. 20	〃						
11	11	國民防衛軍事件에 關한請願 處理結果聽取에 關한動議	吳誠煥	1951. 9. 8	〃						
11	11	國務委員出席要請에 關한動 議	金宗順	1951. 9. 9	〃						
11	11	休會에 關한件 (自9月11日~至9月24日)	白南弼	1951. 9. 10	〃						
11	11	國務委員出席要請에 關한動 議	任永信	1951. 10. 26	〃						
11	11	會議日字와 時間에 關한動議	方萬洙	1951. 10. 29	〃						
11	11	休會에 關한件 (自11月13日~至11月14日)	議 長	1951. 11. 12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繼 續으로因 한廢棄
11	11	韓日會談經過報告要請에 關한件	朴永出	1951. 11. 15	〃					
11	11	國務委員出席要請에 關한動議	徐範錫 白南賦	1951. 11. 19	〃					
11	11	美國副統領夫婦歡迎에 關한動議	鄭一亨	1951. 11. 23	〃					
11	11	休會에 關한件 (11月 28日)	議 長	1951. 11. 27	〃					
11	11	全院委員會開議에 關한動議	金益魯	1951. 11. 29	〃					
11	11	休會에 關한件 (自12月10日~至12月18日)	金奉才	1951. 12. 8	〃					
12	12	休會에 關한件 (自4284年12月28日 至4285年1月6日) 改(自4284年12月28日 至4285年1月14日)	運 營 委員長 宋邦鏞	1951. 12. 27	〃					
12	12	休會에 關한件 (自1月25日~至2月13日)	運 營 委員長	1952. 1. 24	〃					
12	12	休會에 關한件 (自3月12日~至3月17日)	運 營 委員長	1952. 2. 10	〃					
12	12	議事進行之 關한件	議 長	1952. 2. 16	〃					
12	12	大法院長의 證言聽取에 關한件	徐範錫	1952. 2. 19	〃					
12	12	議事日程配定에 關한件	議 長	1952. 2. 19	〃					
12	12	國會議員召選說과「 메모」事 件調査의件	徐珉濂	1952. 2. 29	〃					
12	12	故羅仁協氏에 對한吊慰의件	洪昌燮	1952. 4. 17	〃					
12	12	休會에 關한件 (自4月20日~至5月10日)	運 營 委員長	1952. 4. 19	〃					
12	12	故徐大尉吊慰에 關한件	金正植	1952. 5. 14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案	撤 回	保 留	會期不 續으로 廢案
12	12	國際共產黨에 關聯된 國會議 員懲戒委員會廻付에 關한件	李宗鉉	1952. 6. 5 "						
12	12	副統領(金性洙)辭任書受理 에 關한件	朴永出	1952. 6. 28 "						
13	13	休會에 關한件 (自 7 月 8 日 ~ 至 7 月 9 日)	南松鶴	1952. 7. 7 "						
13	13	會議日字에 關한件	運 營 委員長	1952. 7. 21 "						
13	13	休會에 關한件 (自 7 月 29 日 ~ 至 8 月 12 日)	運 營 委員長	1952. 7. 28 "						
13	13	休會에 關한件 (自 8 月 14 日 ~ 至 8 月 16 日)	李鍾郁	1952. 8. 13 "						
13	13	開議 및 會議時間勵行에 關한 件	議 長	1952. 8. 25 "						
13	13	會議連日開議의件	議 長	1952. 9. 5 "						
13	13	政府保有弗 및 重石弗拂下에 依한輸入糧穀肥料等取扱狀 況繼續調査에 關한件	邊光錫	1952. 9. 10 "						
14	14	休會에 關한件 (10 月 24 日)	議 長	1952. 10. 23 "						
14	14	休會에 關한件 (自 10 月 28 日 ~ 至 10 月 30 日)	運 營 委員長	1952. 10. 25 "						
14	14	休會에 關한動議議案의件	運 營 委員長	1952. 10. 27 "						
14	14	重石弗事件調査報告要請의 件	慎鋪頂	1952. 10. 28 "						
14	14	重石弗事件調査報告接受에 關한動議	徐範錫	1952. 10. 28 "						
14	14	休會에 關한件 (自 10 月 30 日 ~ 至 11 月 1 日)	金仁泰	1952. 10. 28 "						
14	14	休會에 關한動議議案의件	金仁泰	1952. 10. 29 "						
14	14	休會에 關한件 (自 10 月 31 日 ~ 至 11 月 3 日)	運 營 委員長	1952. 10. 30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繼 續으로因 社廢棄
14	14	經濟調整協定の法的根據의 同意與否問題審査의件	議 長	1952. 11. 22	〃					
14	14	勞動關係法案上程에關한動 議	錢鎮漢	1952. 11. 25	〃					
14	14	休會에關한件 (自12月6日~至12月18日)	運 營 委員長	1952. 12. 5	〃					
15	15	休會에關한件 (自4285年12月24日 至4286年1月10日)	俞昇濬	1952. 12. 22	〃					
15	15	休會에關한件 (自4286年2月9日 至4286年2月28日)	運 營 委員長	1953. 2. 5	〃					
15	15	休會에關한件 (自2月23日~至2月24日)	運 營 委員長	1953. 2. 21	〃					
15	15	休會에關한件 (自3月2日~至3月14日)	運 營 委員長	1953. 2. 28	〃					
15	15	刑法案緊急上程에關한件	金宗順	1953. 3. 23	〃					
15	15	休會에關한件 (自3月25日~至3月27日)	運 營 委員長	1953. 3. 24	〃					
15	15	國際情勢調查研究報告에關 한件	李采五	1953. 4. 1	〃					
15	15	本會議時間變更에關한件	運 營 委員長	1953. 4. 6	〃					
15	15	食糧事情調査에關한件	任永信	1953. 4. 7	〃					
15	15	幸運號沈沒事件調査의件	邊光鎬	1953. 4. 30	〃					
15	15	休會에關한件 (自5月8日~至5月21日)	運 營 委員長	1953. 5. 6	〃					
15	15	議事通信記事(大統領의유 에側休散案非公式承認의 件) 眞否調査料明의件	洪昌燮	1953. 5. 29	〃					
16	16	國務委員出席要請에關한件	趙瓊奎	1953. 6. 4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 續으로 因	不 廢 棄
16	16	休戰對策委員會構成에 관한 件	朴永出	1953. 6. 4	〃						
16	16	休會에 관한件 (自 6 月 15 日 ~ 至 6 月 23 日)	金濟能	1953. 6. 13	〃						
16	16	休戰에 對한 待 期 態 勢 的 議 案 審議保留에 관한 動議	金正實	1953. 6. 8	〃						
16	16	全院委員會開議에 관한 動議	吳誠煥	1953. 6. 13	〃						
16	16	反共捕虜釋放에 관한 質問을 爲한 國務委員出席要請의 件	鄭一亨	1953. 6. 24	〃						
16	16	中亨植妄言事件 및 光州·麗 水通匪事件 調査에 관한 件	趙柱泳	1953. 6. 30	〃						
16	16	民國黨被襲事件에 對한 質問 을爲한 國務委員出席要請의 件	蘇宜奎	1953. 7. 8	〃						
16	16	休會에 관한件 (自 7 月 16 日 ~ 至 7 月 18 日)	運 營 委員長	1953. 7. 15	〃						
16	16	休戰會談에 관한 質問과 外務 部長官出席要請에 관한 動議	朴永出	1953. 7. 15	〃						
16	16	休會에 관한件 (自 7 月 27 日 ~ 至 8 月 14 日)	運 營 委員長	1953. 7. 24	〃						
16	16	美國務長官歡迎委員會構成 에 관한件	外 務 委員長	1953. 8. 3	〃						
16	16	休會에 관한件 (自 8 月 5 日 ~ 至 8 月 22 日)	柳 鴻	1953. 8. 4	〃						
16	16	歸還勇士 및 「현」少將歡迎에 關한件	任興淳	1953. 8. 4	〃						
16	16	奪還地區收復對策委員會構 成에 관한件	洪昌燮	1953. 8. 26	〃						
16	16	糧穀無指令配給事件 및 光州 麗水通匪事件處理委員會構 成에 관한件	郭尙勳	1953. 8. 28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繼 續으로因 廢棄
16	16	地方實情調査에 關한 動議	運 營 委員長	1953. 8. 29	〃					
16	16	政府顛覆陰謀事件調査委員 會構成에 關한 件	白南軾	1953. 9. 24	〃					
16	16	印度軍의 反共捕虜殺傷事件 調査에 關한 件	朴永出	1953. 10. 2	〃					
16	16	金正植議員發言內容糾明에 關한 件	徐範錫	1953. 10. 6	〃					
16	16	歸屬財產處理法中改正法律 案審議保留에 關한 動議	徐範錫	1953. 10. 7	〃					
16	16	會議時間勵行에 關한 件	運 營 委員長	1953. 10. 12	〃					
16	16	大統領國會招請에 關한 件	李鍾榮	1953. 10. 13	〃					
17	17	議員出缺狀況調査報告의 件	懲戒資 格委員 長	1953. 11. 19	〃					
17	17	韓日會談其他當面問題에 對 한 書面質問의 件	金正實	1953. 11. 19	〃					
17	17	秋穀買上政策 및 確定된 法律 의 公布實施與否에 關한 國務 總理의 意見聽取의 件	郭尙勳	1953. 11. 24	〃					
17	17	秋穀買上對策委員會構成의 件	洪昌燮	1953. 11. 24	〃					
17	17	車輛檢查對策委員會構成에 關한 件	郭義榮	1953. 11. 24	〃					
17	17	李大統領의 南北總選舉에 關 한 談話內容確認의 件	蘇宜奎	1953. 11. 24	〃					
17	17	宜寧警察署被襲事件真相調 査의 件	議 長	1953. 11. 25	〃					
17	17	休會에 關한 件 (自12月2日~至12月18日)	運 營 委員長	1953. 12. 1	〃					
17	17	檀紀4286年度產秋穀買入價 格決定에 關한 同意案返戻에 關한 件	宋邦鍾	1953. 12. 1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續 廢 棄
18	18	休會에 관한件 (4286年 12月 25日)	運 營 委員長	1953. 12. 22	〃					
18	18	梁又正議員辭任書返戻에 關한件	議 長	1953. 12. 22	〃					
18	18	休會에 관한件 (自4286年12月30日) (至4287年 1月 5日)	運 營 委員長	1953. 12. 29	〃					
18	18	國會議員選舉法中改正法律 案提出과審議에關한動議	權仲敦	1954. 1. 6	〃					
18	18	休會에 관한件 (自 1月16日~至 1月21日)	運 營 委員長	1954. 1. 14	〃					
18	18	休會에 관한件 (自 1月25日~至 2月13日)	運 營 委員長	1954. 1. 23	〃					
18	18	休會에 관한件 (自 3月 5日~至 3月 6日)	運 營 委員長	1954. 3. 4	〃					
18	18	憲法改正案撤回에對한國務 總理의說明要求에關한動議	徐範錫	1954. 3. 9	〃					
18	18	休會에 관한件 (3月 10日)	運 營 委員長	1954. 3. 9	〃					
18	18	會議日字變更에關한動議	運 營 委員長	1954. 3. 13	〃					
18	18	統營邑의忠武市昇格에關한 法律案緊急上程에關한動議	徐相灝	1954. 3. 15	〃					
18	18	檀紀4287年度總豫算案에對 한全院委員會審議省略에關 한動議	洪翼杓	1954. 3. 29	〃					
8	8	서울市內清掃作業參加의件	權仲敦	1950. 10. 7	〃					
10	10	交涉團體名簿提出에關한件	南松鶴	1950. 12. 21	〃					
10	10	後方宣撫工作과戰時態勢完 備을爲한休會의件	金宗順	1950. 12. 24	〃					
10	10	休會에 관한件 (自 2月 2日~至 2月15日)	鄭純朝	1951. 2. 1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案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續 因 廢 棄
10	10	閉議時間勳行에 關한件	李鍾郁	1951. 3. 24	"					
8	8	空軍에 依한智異山殘敵討伐 에 關한交涉委員選出의件	李判烈	1950. 11. 8	"					
8	8	會議時間嚴守에 關한件	金宇城	1950. 11. 8	"					
11	11	國務委員出席要請에 關한動 議	張澤相	1951. 7. 19	"					
12	12	休會에 關한件 (自 5 月 10 日 ~ 至 5 月 23 日)	運 營 委員長	1952. 5. 7	"					
12	12	國務委員出席請求에 關한件 (유엔 韓委聲明에 對한 質問 을 爲하여)	方萬株	1952. 6. 2	"					
13	13	國務總理出席要請에 關한動 議	金正植	1952. 8. 28	"					
13	13	肥料工場設置冬季燃料對策 等質問을 爲한國務委員出席 要請의件	任容淳	1952. 9. 9	"					
15	15	國務委員出席要請에 關한件	林基奉	1953. 5. 4	"					
16	16	糧穀不正處分事件調査에 關 한動議	白南軾	1953. 6. 4	"					
16	16	水害對策에 關한質問을 爲한 農林部長官出席要請에 關한 件	郭義榮	1953. 7. 7	"					
16	16	休會에 關한件 (自 8 月 4 日 ~ 至 8 月 22 日)	運 營 委員長	1953. 8. 3	"					
16	16	農村食糧事情及經濟狀況調 査에 關한動議	郭義榮	1953. 8. 26	"					
18	18	參議院議員選舉法案提案에 關한動議	李道榮	1954. 2. 25	"					
13	13	休會에 關한件	運 營 委員長	1952. 7. 18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 續 對廢棄
10	10	國務總理出席要請에 關한件	朴永出	1951. 2. 1					"	
11	11	交渉團體構成에 對한法的解釋의件	金光俊	1951. 5. 29					"	

나. 國政監査와 事件調查報告

期別	第8回	第10回	第11回	第12回	第13回	第14回	第15回	第16回	第18回	計
件數	1	8	7	9	1	2	6	4	2	40

提出會期	報告王處理會期	件名	報告 또는 處理年月日	件數
8	8	北韓緩衝地帶設置云云에 對한 調查報告	1950. 11. 24	1
10	10	歸屬財産(事業體)拂下内幕調查報告의 件	1951. 3. 20	1
10	10	壁報事件調查報告의 件	1951. 3. 27	1
10	10	國會事務監事에 關한 報告	1951. 3. 27	1
10	10	國政監査報告(商工·外務·社會保健委員會)	1951. 4. 24	1
10	10	國政監査報告(商工·內務委員會)	1951. 4. 25	1
10	10	國政監査報告(國防·文教·財政經濟·法制司法·農林·交通通信委員會)	1951. 4. 26	1
10	10	國民防衛軍疑獄事件調查報告의 件	1951. 3. 29	1
10	10	居昌事件調查報告의 件	1951. 5. 8	1
11	11	濟州被襲事件調查報告의 件	1951. 6. 4	1
11	11	國會自肅에 關한 調查報告의 件	1951. 6. 6	4
11	11	國會議員舌禍事件調查報告의 件	1951. 6. 29	1
11	11	便利號沈沒事件調查報告의 件	1951. 7. 14	1
12	12	臨時土地收得稅法實施에 對한 國政監査結果報告(京畿·忠南·全北·全南·慶北道)	1951. 12. 24	1

提出會期	報告處理會期	件名	報告 또는 處理年月日	件數
12	12	臨時土地收得稅法實施에 對한 國政監查結果報告(慶南·江原·濟州道)	1951. 12. 26	1
12	12	朝鮮紡織會社爭議事件調查報告의 件(第1次)	1952. 2. 29	1
12	12	國會議員召還說과 「비모」事件調查報告의 件	1952. 2. 15	1
12	12	朝鮮紡織會社爭議事件調查報告의 件(第2次)	1952. 3. 18	1
12	12	國政監查報告의 件(外務·內務委員會)	1952. 3. 26	1
12	12	國政監查報告의 件(國防·財政經濟委員會)	1952. 3. 27	1
12	12	徐珉濠議員事件調查報告	1952. 5. 9 1952. 5. 12 1952. 5. 13	1
12	12	大統領狙擊事件調查報告의 件	1952. 6. 28	1
13	13	政府保有弗曳重石弗에 依한 輸入糧穀肥料其他物資取扱에 對한 調查報告의 件	1952. 7. 25 1952. 9. 10	1
14	14	重石弗事件調查報告의 件	1952. 10. 25	1
14	14	國會議員의 立稻先買事實有無調查報告의 件	1952. 12. 4	1
15	15	昌景號沈沒事件調查報告의 件	1953. 1. 12 1953. 2. 7	1
15	15	幸運號沈沒事件調查報告의 件	1953. 1. 28	1
15	15	人權蹂躪事件調查報告의 件	1953. 2. 3	1
15	15	國際市場火災事件調查報告의 件	1953. 2. 7	1
15	15	暴風雨로 因한 東海岸一帶被害調查報告의 件	1953. 4. 8	1
15	15	一線勞務師團實情調查報告의 件	1953. 5. 23	1
15	16	糧穀無指令配給事件調查報告의 件	1953. 8. 25 1953. 8. 26	1

提出會期	報告處理會期	件名	報告 또는 處理年月日	件數
15	16	申亨植妄言事件 및 光州·麗水通匪事件調查報告의件	1953. 6. 30 1953. 7. 14 1953. 7. 16 1953. 8. 3	1
16	16	印度軍의反共愛國捕虜射殺事件調查報告의件	1953. 10. 20	1
16	16	金正植議員發言內容調查報告의件	1953. 10. 8	1
18	18	國政監查報告 (內務·國防·豫算決算·財政經濟·農林委員會)	1954. 4. 22	1
18	18	國政監查報告의件(書面) (商工·文教·社會·保健·交通遞信·法制司法委員會)	1954. 4. 23	1

다. 選舉와 任命承認

會 期	第 7 回	第 8 回	第 10 回	第 12 回	第 13 回	第 15 回	第 16 回	第 18 回	計
件 數	3	28	1	6	6	15	3	14	76

會期別	件 名	選舉年月日	選舉件
7	議長·副議長選舉 (議長:申翼熙 副議長:張澤相 " :曹奉岩)	1950. 6. 19	3
8	全院委員長選舉(委員長:池青天)	1950. 7. 30	1
8	事務總長(朴鍾萬)任命承認件	1950. 8. 17	1(承認)
8	憲法委員會委員選舉 (委 員:蘇宜奎·鄭憲柱·南松鶴 金鳳祚·李道榮 豫備委員:梁炳日·李在鶴·尹吉重 金光俊·金益魯)	1950. 9. 3	10
8	彈劾裁判所審判官選舉 (裁 判 官:郭尙勳·李載滢·張澤相 李錫基·張洪瑛 豫備審判官:李鍾榮·任興淳·權仲敦 尹宅重·李炳洪)	1950. 9. 4	10
8	附逆行爲特別審查中央委員選舉 (金俊淵·金雄權·梁又正·朴勝夏·金鍾烈)	1950. 11. 23	5
8	國務總理(白樂濬)任命承認件	1950. 11. 3	不承認

會期別	件名	選舉年月日	選舉件數
8	國務總理(張勉)任命承認의件	1950. 11. 23	1(承認)
10	副統領選舉: 金性洙	1951. 5. 16	1
12	全院委員長選舉(吳緯泳議員當選)	1952. 1. 23	1
12	副議長補闕選舉의件(副議長: 金東成)	1952. 5. 8	1
12	國務總理(張澤相)任命承認의件	1952. 5. 6	1(承認)
12	臨時議長選舉(申翼熙·曹奉岩·金東成)	1952. 6. 18	3
13	全院委員長選舉(池青天議員當選)	1952. 7. 3	1
13	議長·副議長選舉 (議長: 申翼熙) (副議長: 曹奉岩) " : 尹致燾)	1952. 7. 10	3
13	大統領·副統領選舉開票報告處理의件 (大統領: 李承晚) (副統領: 成台永)	1952. 8. 13	2
14	國務總理(李允榮)任命承認의件	1952. 10. 17	不承認
14	國務總理(李甲成)任命承認의件	1952. 11. 20	不承認
15	全院委員長選舉(郭尙勳議員當選)	1953. 1. 29	1
15	各常任委員長選舉	1953. 1. 29	13
15	國務總理(白斗鎭)任命承認의件	1952. 4. 24	1(承認)
16	大韓赤十字社組織委員補選의件 (李在鶴·朴順天·李春基) (先例에 의하여 선임은議長에게 一任함)	1952. 10. 7	3
18	全院委員長 및 各常任委員長選舉의件	1953. 12. 29	14

라. 請願提出數와 그 成績

區分 會期別	提出數	本會議에 付議하기 로 決定된 請願			本會議에 付議치 않 기 로 決定된 請願		會期不繼續 으로 因한 廢棄
		採擇	廢棄	未上程	參考로 移送	廢棄	
第8回	3					2	1
第9回							
第10回	10					1	
第11回	50 (9)	5	1	1	5	8	39
第12回	48	7			5	8	
第13回	9(28)				2	6	
第14回	11(29)				8	6	
第15回	21(26)				4		4
第16回	29(33)				7	5	
第17回	10(56)				3	4	59
第18回	34	1	1		3	7	22
計	225	13	2	1	37	47	125

備考 : ()內의 數字는 前會期에서 移越된 件數임.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本會議에 付 議하기로 決 定된 請願			本會議에 付 議치 않기로 決定된 請願		會期不繼 續으로 因 한 廢棄
			採擇	廢棄	未上程	參考로 移 送	廢棄	
10	11	농금對日輸出에 關한 請願	"					
10	11	羅老島漁場管理權移讓에 關한 請願	"					
11	11	警察官의 良民射殺에 關한 請願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本會議에 付 議하기 爲 定된 請願	本會議에 付 議치 않기 爲 定된 請願	本會議에 付 議 未 上 程	本會議에 付 議 參 考 移	本會議에 付 議 送	本會議에 付 議 廢 棄	本會議에 付 議 廢 棄
			採擇	廢棄	未上程	參考移	送	廢棄	廢棄
11	11	國民防衛軍事件에 關한 請願	〃						
11	11	光州高等法院・光州高等檢察廳設置에 關한 請願	〃						
12	12	戰罹災民住宅再建에 關한 請願	〃						
12	12	捕虜釋放要求에 關한 請願	〃						
12	12	6.25被拉致者釋放에 關한 請願	〃						
12	12	捕虜交換에 關한 請願	〃						
12	12	戰罹災民住宅再建에 關한 請願	〃						
12	12	民間抑留者釋放에 關한 請願	〃						
12	12	教育行政 및 敎職員處遇改善에 關한 請願	〃						
18	18	韓・美重石協定에 關한 請願	〃						
10	11	釜山製氷冷藏株式會社拂下에 關한 請願		〃					
18	18	地價證券發給要請에 關한 請願		〃					
10	11	南鮮水産會社殘餘資産拂下에 關한 請願			〃				
11	11	軍法會議判決再審에 關한 請願				〃			
11	11	公有水面埋立許可에 關한 請願				〃			
11	11	糞地撤去에 關한 請願				〃			
11	11	一級署昇格에 關한 請願				〃			
11	11	警察官의 良民殺害에 關한 請願				〃			
12	12	罹災民住宅撤去保留에 關한 請願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本會議에 議하기로 定된 請願		付決 本會議에 키암기로 決定된 請願		付不 不續 是 한 請願	
			採擇	廢棄	未上 程	參考 移送	廢棄	한 請願
12	12	勞働者職場保障에 關한 請願				〃		
12	12	埠頭勞働者勞賃에 關한 請願				〃		
12	12	殉國先烈的 遺家族에 關한 請願				〃		
12	12	癩病患者收容所撤去에 關한 請願				〃		
13	13	食糧配給繼續實施要請에 關한 請願				〃		
13	13	論山反共捕虜釋放要求에 關한 請願				〃		
13	14	建物撤去에 關한 請願				〃		
13	14	早害對策에 關한 請願				〃		
13	14	早害對策工事實施에 關한 請願				〃		
14	14	自動車運輸事業運營에 關한 請願				〃		
14	14	論山反共捕虜釋放要求에 關한 請願				〃		
14	14	癩病患者集團部落移轉에 關한 請願				〃		
14	14	避難民救護糧穀에 關한 請願				〃		
14	14	傷喪軍人非行에 關한 請願				〃		
15	15	木浦三鶴島堤防工事推進에 關한 請願				〃		
15	15	道路破壞에 對한 復舊要請에 關한 請願				〃		
15	15	火災燒失住宅垓地繼續使用要請에 關한 請願				〃		
15	15	仁川埠頭勞組事件에 關한 請願				〃		
15	16	住宅賃貸借契約解除에 關한 請願				〃		
15	16	土地收得稅賦課에 關한 請願				〃		
15	16	地價證券發給要請에 關한 請願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本會議에 付決 議하기로 請願		本會議에 付決 議치않기로 請願		會期 不繼 으로 인廢 한廢
			採擇	廢棄	未上 程	參考 로送 廢棄	
16	16	板子집 撤去에 關한 請願				〃	
16	16	加平號沈沒船舶拂下要請에 關한 請願				〃	
16	16	住宅明渡反對에 關한 請願				〃	
16	16	서울事業場을 交通部直屬機關으로 繼 續存續要請에 關한 請願				〃	
16	17	油沈農地對策에 關한 請願				〃	
16	17	山林伐採中止要請에 關한 請願				〃	
16	17	群山馬事會所有農地分配要請에 關한 請願				〃	
18	18	寺判林野返還에 關한 請願				〃	
18	18	産業銀行支店設置要請에 關한 請願				〃	
18	18	高等公民學校在學生中學校編入에 關 한 請願				〃	
8	8	農地改革과 秋穀買上에 關한 請願					〃
8	8	政府食糧對策新構想에 關한 請願					〃
10	10	言論人毆打에 關한 請願					〃
10	11	朝鮮丸金醬油會社管理權不正爭奪 에 關한 請願					〃
11	11	製鋼原料輸入配給에 關한 請願					〃
11	11	軍勞務者賃金早速支拂要請에 關한 請 願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本會議에 議하기로 定된	付決 議 請願	本會議에 議치않 기 定된	付 議 請願	會 不 議 로 인 廢 棄
			採擇	廢棄	未 上 程	參 考 送	廢 棄
11	11	政府및國會機關大田臨時遷都에關한 請願					"
11	11	癩病患者收用所設置反對에關한請願					"
11	11	全州高等法院·全州高等檢察廳設置 에關한請願					"
11	11	全北萬頃江高山川堤防修理에關한請 願					"
11	11	丹陽丸管理權移讓에關한請願					"
12	12	朝紡爭議事件에關한請願					"
12	12	朝紡爭議事件에關한請願					"
12	12	避難民의選舉人名簿登錄에關한請願					"
12	12	癩病豫防法成立에關한請願					"
12	12	歸屬財產貸借權確保에關한請願					"
12	12	管理船舶運營에關한請願					"
12	12	歸屬鑛山에關한請願					"
12	12	서울漢江海産業組合繼續運營에關한 請願					"
12	13	農地償還期間延長에關한請願					"
12	13	農地改良事業推進에關한請願					"
12	13	高陽水理組合擴張에關한請願					"
12	13	農地改革法에依한償還額에關한請願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本會議에 議하기 定된		付決 本會議에 決定된		付 本會議에 請願		會期 不繼 로 因廢
			採擇	廢棄	未上 程	參考 移送	廢棄		
12	13	舊王宮農地에 對한現物稅賦課保留에 關한請願						〃	
13	13	列車延長運行에 關한請願						〃	
12	14	方漁津鐵工造船株式會社와朝鮮「알미늄」工業株式會社合併反對에 關한請願						〃	
12	14	水利事業費補助에 關한請願						〃	
13	14	天草輸出解禁에 關한請願						〃	
14	14	米價引上反對에 關한請願						〃	
14	14	水利工事に 關한請願						〃	
14	14	統營邑市昇格에 關한請願						〃	
12	16	歸屬財產處理法中改正案에 關한請願						〃	
12	16	歸屬財產管理權名義書換要求에 關한請願						〃	
12	16	公正한交通行政實施에 關한請願						〃	
15	16	在日學徒教育및 財產搬入에 關한請願						〃	
15	16	鹽生產에 關한請願						〃	
14	17	統營邑市昇格에 關한請願						〃	
16	17	金融措置法改正에 關한請願						〃	
16	17	和順郡廳舍復舊要請에 關한請願						〃	
16	17	西湫橋架設要請에 關한請願						〃	
18	18	歸屬財產明渡에 關한請願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本會議에 議하기로 定된 請願		本會議에 議치않기로 決定된 請願		會 不 續 로 한 業
			採擇	廢棄	未上 程	參考 移送	
18	18	物品稅法中改正法律案에 關한 請願					"
18	18	物品稅法中改正法律案에 關한 請願					"
18	18	國產衣類品에 對한 物品稅撤廢에 關한 請願					"
18	18	酒稅法改正案에 關한 請願(2件)					"(2)
18	18	物品稅法改正案에 關한 請願					"
8	8	全南地區軍警增設配置要求에 關한 請願					"
10	11	釜山特別市昇格에 關한 請願					"
10	11	特殊農地處理法再審에 關한 請願					"
10	11	農地改革法中改正에 關한 請願					"
10	11	避難民救護對策에 關한 請願					"
11	11	高級料亭廢止에 關한 請願					"
11	11	中小企業體纖維原料及融資對策에 關한 請願					"
11	11	民間船舶不法抑留에 關한 請願					"
11	11	濟州地方專賣局 및 煙草工場의 設置와 擴張에 關한 請願					"
11	11	羅老島漁物管理權早速移讓에 關한 請願					"
11	11	六·二五事變被拉致人士救出에 關한 請願					"
11	11	江原道廳移轉反對에 關한 請願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本會議에 付 議하기로 決 定된 請願			本會議에 付 議치 않기로 決 정된 請願			會 期 不 繼 로 인 廢 棄
			採擇	廢棄	未上	參考	로送	廢棄	
11	11	避難民假住宅撤去에 關한 請願							〃
11	11	歸屬財產盜地不法占據에 關한 請願							〃
11	11	食糧需給計劃에 關한 請願							〃
11	11	重要職場食糧特配에 關한 請願							〃
11	11	鑛業開發緊急措置에 關한 請願							〃
11	11	埋築地用石塊購買權移讓에 關한 請願							〃
11	11	地下資源開發促進에 關한 請願							〃
11	11	方漁律鐵工造船會社・仁川朝鮮「알미농」工業會社合併에 關한 請願							〃
11	11	上東鑛山產重石不正賣渡及重石紛失事件에 關한 請願							〃
11	11	忠南在留避難民救護對策에 關한 請願							〃
11	11	少年訓練所假建築撤去反對에 關한 請願							〃
11	11	光武新聞紙法廢止에 關한 請願							〃
11	11	英式綴字法統一制定에 關한 請願							〃
11	11	船員食糧配給에 關한 請願							〃
11	11	國立傷痍軍人結核療養所不正事件是正에 關한 請願							〃
11	11	馬山CAC收容所入住避難民撤去反對에 關한 請願							〃
11	11	治安局通信課長罷免決議에 關한 請願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本會議에 하기로 定된 請願		付決 本會議에 처음 決定된 請願		付不 續 區 處	
			採擇	廢棄	未上 程	參考 移送	廢棄	廢棄
11	11	釜山・濟州間定期航路一部變更에 關한請願						〃
11	11	自動車臨時檢査및自動車行政刷新에 關한請願						〃
11	11	警察官의良民拷問致死事件에關한請 願						〃
11	11	漁業에關한臨時措置法改正에關한請 願						〃
11	11	朝鮮「타이아」工業會社管理運營에 關한請願						〃
11	11	行政區域變更에關한請願						〃
11	11	堡地占用許可에關한請願						〃
11	11	物品稅改正에關한請願						〃
11	11	新規于瀉地開發에關한請願						〃
11	11	避難民南下船舶管理運營에關한請願						〃
11	11	戰災避難民假住宅再建에關한請願						〃
12	15	鹽田運營權移讓에關한請願						〃
12	15	全州地方法院井邑支院의合議制로의 昇格에關한請願						〃
12	15	大邱大學解體反對에關한請願						〃
15	15	潜水機船作業區域制定要請에關한請 願						〃
12	17	新規于瀉地開發에關한請願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本會議에 議하기로 決定된	付決 議願	本會議에 議치않기로 決定된	付不 議願	會期 繼續 으로 廢棄
			採擇	廢棄 未上	參考 移送	廢棄	廢棄
12	17	過渡政府外資豫託金辨濟에 關한 請願					"
12	17	警察官의 非行에 關한 請願					"
12	17	鑛業開發緊急措施에 關한 請願					"
12	17	陶磁器物品稅免除에 關한 請願					"
12	17	水產物品稅免除要請에 關한 請願					"
12	17	捕虜交換對象除外에 關한 請願					"
12	17	歸屬財產管理權에 關한 請願					"
12	17	乾海苔物品稅에 關한 請願					"
12	17	家具物品稅免除에 關한 請願					"
12	17	國防部의 不當干涉으로 因한 歸屬財產 貸借權의 侵害에 關한 請願					"
12	17	鑛業權에 關한 請願					"
12	17	出版物法案廢棄에 關한 請願					"
12	17	大韓赤十字社事業에 關한 請願					"
12	17	捕虜釋放要求에 關한 請願					"
13	17	雲峴宮財產에 關한 請願					"
13	17	消防署長非行에 關한 請願					"
14	17	統營郡分割에 關한 請願					"
14	17	國慶日制定에 關한 請願					"
15	17	兵役法改正要請에 關한 請願					"
15	17	大邱文化劇場管理에 關한 請願					"
15	17	中等教科書發行權移動에 關한 請願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本會議에 付 議하기로 決 定된 請願		本會議에 付 議치않기로 決 定된 請願		會 不 續 로 인 원
			採擇	廢棄	未上 程	參考 로 送 廢棄	
15	17	自動車返還要請에 關한 請願					"
15	17	釜山地方檢察廳不法處事에 關한 請願					"
15	17	毛織物密輸入防止要請에 關한 請願					"
15	17	文致財團關係財産을 自由計定으로 하 는 特別措置法制定要請에 關한 請願					"
15	17	水産業法中 修正要請에 關한 請願					"
15	17	敎職員에 對한 徵召集保留에 關한 請願					"
15	17	歸屬財産處理法改正에 關한 請願					"
15	17	水産物委託販賣權에 關한 請願					"
16	17	歸屬財産管理權에 關한 請願					"
16	17	法曹人特別召集에 關한 請願					"
16	17	大韓重石鑛業株式會社運營에 關한 請 願					"
16	17	水産法中 一部修正要請에 關한 請願 (2件)					" (2)
16	17	忠南旅客自動車株式會社拂下에 關한 請願(2件)					" (2)
16	17	申亨植反逆言動調査委員會調査報告 書中是正에 關한 請願					"
16	17	農作權에 關한 請願					"
16	17	堤防復舊要請에 關한 請願					"
16	17	新規旅客自動車運營免許取消要請에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本會議에 付託 하기 된 請願		本會議에 付託 안 된 請願		會期 不繼 로 因 한 廢棄
			採擇	廢棄	未 上 程	參 考 로 送 廢棄	
		關한請願					
16	17	板子지撤去保留要請에關한請願					"
16	17	出征家族處遇에關한請願					"
16	17	井邑支院昇格要請에關한請願					"
16	17	農耕地(干拓地)鹽田化反對에關한請願					"
16	17	釜山特別市昇格要請에關한請願					"
16	17	島長線鐵道敷設과忠北線鐵道運轉事務所及機關車移轉要請에關한請願					"
16	17	郵遞局移轉要請에關한請願					"
16	17	貯水池工事로因한被害農地對策에關한請願					"
17	17	酒稅法改正要請에關한請願					"
17	17	船舶管理權移轉反對에關한請願					"
17	17	全南知事罷免要請에關한請願					"
17	17	歸屬財產拂下에關한請願					"
17	17	傾置車輛返還要請에關한請願(3件)					" (3)
17	17	學校敷地返還要請에關한請願					"
17	17	自動車取締에關한請願					"
17	17	三陟郡長省鐵業所長非行에關한請願					"
18	18	農地所有權에關한請願					"
18	18	教育機關增設에關한請願					"
18	18	養蠶再建에關한請願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本會議이 하기로 決定된 請願			本會議이 참고로 決定된 請願		會 不 續 된 請 願
			採擇	廢棄	未上 程	廢棄	廢棄	
18	18	造船用資材購買에 關한 請願						"
18	18	油類價格引上反對에 關한 請願						"
18	18	錦川護岸工事に 關한 請願						"
18	18	附逆行爲에 關한 請願						"
18	18	歸屬農地에 關한 請願						"
18	18	軍人의 住居不法侵害에 關한 請願						"
18	18	耕作地鹽田化反對에 關한 請願						"
18	18	西海島完全收復에 關한 請願						"
18	18	天日鹽田工事由 因한 豐作物浸水에 關한 請願						"
18	18	土地所有權移轉에 關한 請願						"
18	18	大同新聞版權復活要請에 關한 請願						"
18	18	同德中學校復舊要請에 關한 請願						"
18	18	襄津避難民代辯者選出에 關한 請願						"
18	18	登記代書料에 關한 請願						"
18	18	法令第120號廢棄要請에 關한 請願						"
18	18	在釜避難國民學校存續要請에 關한 請願						"
18	18	緣故地制採擇選舉法改正案反對에 關한 請願						"
18	18	刑事訴訟法案再議可決要請에 關한 請願						"
18	18	開城市等五個市郡選出民議院議員에 關한 非常措置要請에 關한 請願						"

5. 質問と答辯

가. 緊急質問과 答辯

提出 會期	件 名	發議者	提出		答 辯	
			年月日	年月日	書面	口頭
7	米價對策歸屬財産親賣 및 肥料配給에 關한 緊急質問	李鎮洙	1950. 6. 20	1950. 6. 22		農林·財務 部長官
8	戰災民 및 傷痍將兵 救護對 策에 關한 緊急質問	權仲敦	1950. 9. 1	1950. 9. 2		社會·保健· 農林部長官
8	旅行制限과 物資輸送에 關 한 緊急質問	蘇宜奎	1950. 10. 9	1950. 10. 10		國防部次官
8	戰況及 治安狀態에 關한 緊 急質問	權仲敦	1950. 11. 1	1950. 11. 1 11. 2		國防·內務 部長官
8	物價安定對策 및 鐵道復舊 狀況에 關한 緊急質問	姜昌晳	1950. 11. 4	1950. 11. 6		財務·商工· 交通部長官
8	戰災民越冬對策 및 破産家 屋拂下方法에 關한 緊急質 問	趙瓊奎 郭義榮	1950. 11. 15	1950. 11. 18		農林·保健 部長官·社會 部次官· 管財廳長
8	江原道一帶戰況 및 避難民 救護對策에 關한 緊急質問	朴勝夏	1950. 11. 21	1950. 11. 21		內務·社會 部次官
9	戰時對策에 關한 緊急質問	朴永出	1950. 12. 12	1950. 12. 16		內務·國防 部長官·社會 部次官
10	糧穀收集 및 疎開에 關한 緊 急質問	兪昇濬	1950. 12. 23	1950. 12. 23		農林部長官

提出 會期	件 名	發議者	提出		答		辯 頭
			年月日	年月日	書面	口頭	
10	避難民強制疎開 및 糧穀政策에 關한 緊急質問	朴勝夏	1951. 1. 20	1951. 1. 20			農林部長官 · 社會部次官
10	第二國民兵處遇에 關한 緊急質問	宋邦鏞	1951. 1. 23	1951. 1. 23			國防部次官
10	非常事態收拾對策에 關한 緊急質問	郭義榮	1951. 1. 16	1951. 1. 16			內務·社會 國防部長官
10	遣日委員團入國手續遲延에 關한 緊急質問	趙柱泳	1951. 2. 3	1951. 2. 3			外務部長官
10	故「부어」少將靈柩哀送에 關한 緊急質問	徐範錫	1951. 2. 7	1951. 2. 7			外務部長官
10	施政方針演說에 關한 緊急質問	議長	1951. 2. 26 3. 2	1951. 2. 26 3. 2			國務總理
10	居昌事件·壁報事件·在日學徒義勇軍歸還에 關한 緊急質問	(秘密) 會議	1951. 3. 30	1951. 3. 30			國務總理· 內務·國防 部長官
10	一線師團長等의 國防部長官留任運動에 關한 緊急質問	徐珉濂	1951. 5. 2				
10	輸入肥料對策·戰災民假住宅撤去等에 關한 緊急質問	朴定根 外 4 人	1951. 5. 12	1951. 5. 14			國務總理· 財務·社會 部長官·內 務部次官
10	戰災地區緊急施策에 關한 緊急質問	朴定根	1951. 5. 19	1951. 5. 19			財務·農林· 社會部長官
10	軍法會議裁判權의 限界에 關한 緊急質問	南松鶴	1951. 5. 21	1951. 5. 21			法務部長官 (大法院長)
10	駐桑港總領事의 電文 및 全北地方의 治安狀態에 關한 緊急質問	徐珉濂 愼鏞頊	1951. 5. 28	1951. 5. 29			國務總理· 外務·內務 部長官·國 防部次官
11	夏穀收集 및 肥料問題에 關한 緊急質問	郭義榮	1951. 6. 8	1951. 6. 8			農林部長官

提出 會期	件 名	發議者	提 出		答 辯	
			年 月 日	年 月 日	書 面	口 頭
11	38線停戰說과「마살」美國防長官의 韓國戰線視察에 關한 緊急質問	黃聖秀	1951. 6. 9	1951. 6. 9		外務部長官
11	米價對策에 關한 緊急質問	李鍾郁	1951. 7. 5	1951. 7. 5		農林部長官
11	夏穀買入에 關한 緊急質問	安龍大	1951. 7. 18	1951. 7. 18		農林·財務 部次官
11	故宋鎮禹氏殺害犯과故金九氏殺害犯出獄에 關한 緊急質問	徐二煥	1951. 8. 20	1951. 8. 20		法務部長官 ·內務部次官
11	沃川被襲事件 및 韓日會談에 關한 緊急質問	申玉休 方萬洙	1951. 10. 22	1951. 10. 22		外務部長官 內務部次官
11	太平洋同盟과停戰會談에 關한 緊急質問	徐範錫 白南軾	1951. 11. 19	1951. 11. 19		外務部長官
11	國務總理署理에 對하여 人質問題에 關한 緊急質問	金宗順	1951. 11. 23	1951. 11. 23		國務總理署 理
11	臨時土地收得稅法實施에 關한 緊急質問	池蓮海	1951. 12. 1	1951. 12. 1		財務·農林 部次官
11	大統領과의 會談經緯糾明에 關한 緊急質問	趙光燮	1951. 12. 3	1951. 12. 3		國務總理署 理
11	農林部長官證言에 對한 緊急質問	金仁泰	1951. 12. 5	1951. 12. 7		農林部長官
12	糧穀政策에 關한 緊急質問	朴永出	1952. 2. 14	1952. 2. 15		農林部長官
12	造兵廠火災事件에 對한 緊急質問	金正植	1952. 1. 22	1952. 1. 22 1. 23		國防部長官 ·國防部次官
12	朝鮮爭議事件에 對한 緊急質問	嚴祥燮	1952. 1. 22	1952. 2. 22		社會·商工 ·內務部長官
12	國會議員召還說에 對한 緊急質問	徐珉濠	1952. 2. 15	1952. 2. 16 2. 22		國務總理署 理·內務·

提出 會期	件 名	發議者	提出		答 辯	
			年月日	年月日	書 面	口 頭
12	民族宣言書에 對한緊急質問	郭尙勳	1952. 2. 29	1952. 2. 29		法務部長官 國務總理 署 理
12	食糧對策에 關한緊急質問	李鍾郁	1952. 3. 3	1952. 3. 3		農林部長官
12	朝紡爭議對策에 關한緊急質問	錢鎮漢	1952. 3. 11	1952. 3. 11		商工部長官
12	國務總理歸國遲延에 關한緊急質問	金正實	1952. 3. 19	1952. 3. 19		國務總理 署 理
12	捕虜強制送還 및 中立國休戰監視團에 蘇聯介入說에 關한緊急質問	李宗鉉	1952. 3. 28	1952. 3. 28		外務部長官
12	桑港駐在總領事談話에 關한緊急質問	徐範錫	1952. 3. 29	1952. 3. 31		外務部長官
12	食糧非常對策에 關한緊急質問	郭義榮	1952. 5. 7	1952. 5. 8		農林·社會 部長官
12	休戰會談經緯에 關한緊急質問	安龍大	1952. 5. 9	1952. 5. 10		外務部長官
12	徐取濠議員事件에 關한緊急質問	議 長	1952. 5. 13	1952. 5. 13 5. 14		法務部長官
12	韓·美經濟會談經緯에 關한緊急質問	曹秉燮	1952. 5. 16	1952. 5. 17		國務總理
12	메모事件에 關한緊急質問	郭尙勳	1952. 5. 23	1952. 5. 23		法務部長官 內務部次官
12	메모事件에 關한緊急質問	李宗鉉	1952. 5. 28	1952. 5. 28		國務總理
12	國會議員受難事件에 關한緊急質問	議 長	1952. 5. 27	1952. 5. 29		國務總理
12	國會議員受難事件에 關한緊急質問	李宗鉉	1952. 5. 28	1952. 5. 29		國防部長官

提出 會期	件 名	發議者	議 決		答 辯	
			年月日	年月日	書 面	口 頭
12	戒嚴未解除, 國會議員未 釋放及國會議員의 共產黨 關聯說에 關한 緊急質問	鄭純朝	1952. 6. 6			
13	早魃對策과 食糧政策에 關 한 質問	柳 鴻	1952. 7. 14	1952. 7. 18		農林·社會 部長官·財 務部次官
13	「유예」軍貸與金償還에 關 한 緊急質問	池蓮海	1952. 7. 25			
13	政府保有弗 및 重石弗에 依 한 輸入糧穀, 肥料其他物 資取扱에 關한 緊急質問	金光俊	1952. 7. 25	1952. 8. 26		國務總理· 內務·財務 ·法務·農 林部長官
13	非常戒嚴解除와 軍法會議 의 裁判權에 關한 緊急質問	柳 鴻	1952. 7. 28	1952. 7. 28		法務部次官
13	早魃對策과 食糧政策에 關 한 質問	白南軾 郭義榮	1952. 8. 28	1952. 8. 29		農林·財務 部次官
13	露藪代金支拂에 關한 緊急 質問	邊鎮甲	1952. 8. 28	1952. 8. 29		農林部次官
13	外交政策에 關한 緊急質問	外 務 委員長	1952. 8. 28	1952. 8. 29		外務部次官
13	「유예」軍貸與金償還拂處 理에 關한 緊急質問	南松鶴	1952. 9. 1	1952. 9. 10		財務部長官
14	傷痍軍警處遇에 關한 緊急 質問	嚴詳燮	1952. 10. 21	1952. 10. 22		國防·社會 部長官
14	第二國民兵召集과 徵兵 및 徵用에 關한 緊急質問	崔成雄	1952. 10. 23	1952. 10. 25		內務·國防 部次官
14	國政全般에 關한 緊急質問	尹致暎	1952. 10. 27	1952. 11. 27		各部處長官
15	仁川埠頭勞組被襲事件에 關한 緊急質問	林基奉	1953. 3. 18	1953. 3. 18		內務部次官
15	油類·綿糸等援助物資에	康慶玉	1953.	1953.		商工部長官

提出 會期	件 名	發議者	提 出		答 辯	
			年月日	年月日	書 面	口 頭
	對한對弗換算率에關한緊急質問	方萬洙	3. 19	3. 20		
15	産業資金凍結에關한緊急質問	柳 鴻	1953. 3. 21	1953. 3. 23		商工部長官 ・財務部次官
15	旱害民救護對策에關한緊急質問	蘇宜奎	1953. 3. 23	1953. 3. 24		農林部長官 ・財務部次官
15	食糧事情에關한緊急質問	洪昌燮	1953. 4. 8	1953. 4. 8		內務・農林 ・國防・社 會・交通部 長官・財務 部次官
15	傷病捕虜交換에關한緊急質問	鄭基元	1953. 4. 14	1953. 4. 14		外務部長官
15	原棉價格引上에關한緊急質問	李鎮洙	1953. 4. 15	1953. 4. 15		商工部長官
15	休戰會談에關한緊急質問	朴永出	1953. 5. 25	1953. 5. 28		外務部長官
16	申享植妄言事件에關한緊急質問	李鍾榮	1953. 6. 30	1953. 6. 30		內務部次官
16	印度軍의反共捕虜殺傷에關한緊急質問	朴永出	1953. 10. 2	1953. 10. 6		外務部次官
17	擅紀4286年產秋穀買上方策에關한緊急質問	邊鎮甲	1953. 11. 23	1953. 11. 24		財務部長官 ・企劃處長 ・農林部次官
17	車輛檢査에關한緊急質問	李春基	1953. 11. 24	1953. 11. 24		國務總理
17	秋穀買上및確定된法律의公布問題에關한緊急質問	郭尙勳	1953. 11. 24	1953. 11. 27		國務總理
18	反共愛國捕虜釋放後其對策에關한緊急質問	鄭憲祚	1954. 1. 22	1954. 1. 22		社會・國防 部長官

提出 會期	件 名	發議者	提出 年月日	答 辯		
				年月日	書 面	口 頭
18	韓美重石協定과「유엔」軍 의 電力代金清算에 關한 緊 急 質問	太完善	1954. 3. 15	1954. 3. 17		商工部長官
	計 77					

나. 質問과 答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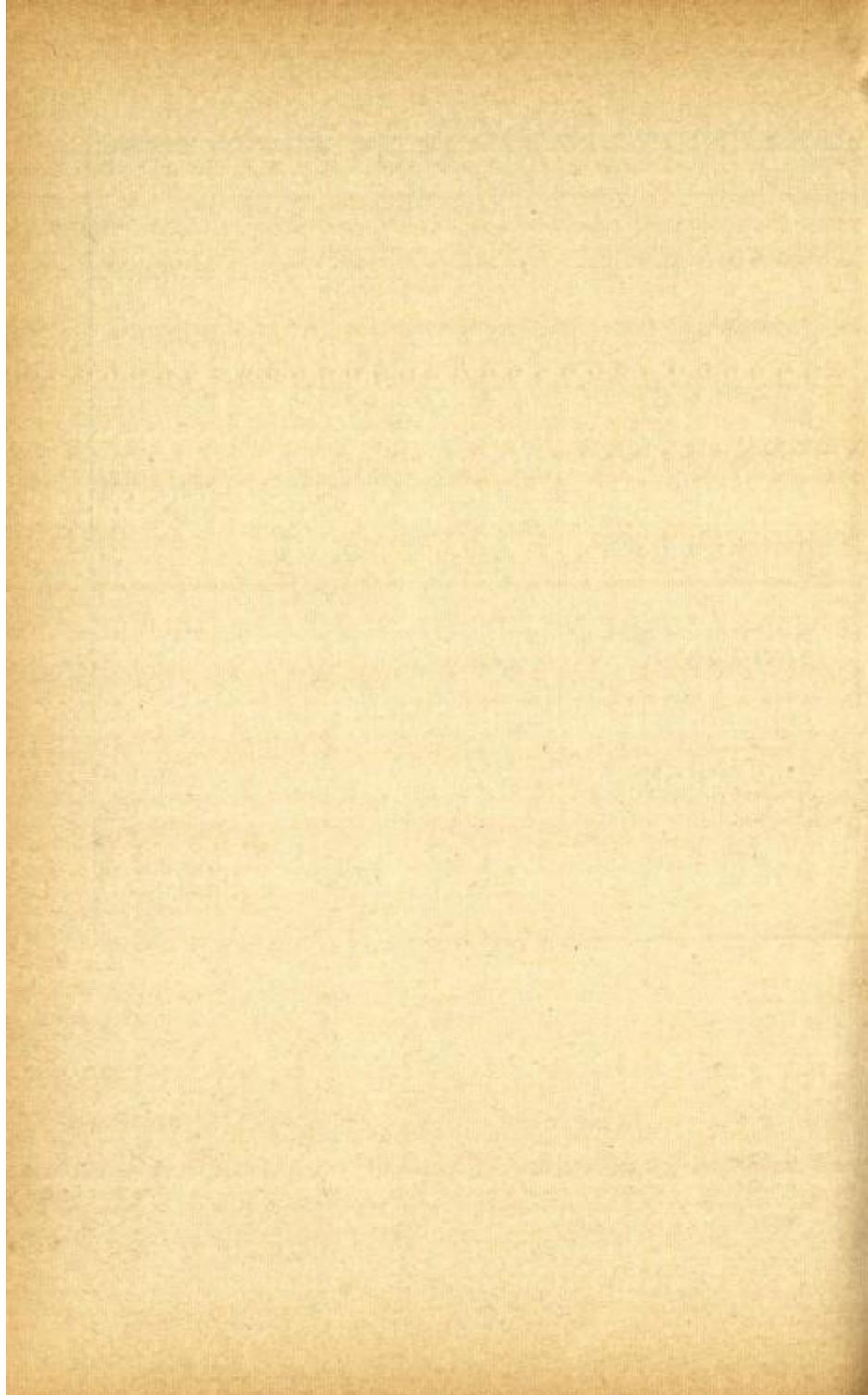
提出 會期	件 名	發議者	提出 年月日	答 辯		
				年月日	書 面	口 頭
10	共産軍再侵으로 인한 黃海 道の 諸般 事態에 關한 質問	吳誼寬	1951. 1. 19	1951. 1. 23		國防部次官
10	戰時 施策에 關한 質問	洪昌燮	1951. 2. 13	1951. 2. 17		文教·國防 ·社會·財 務部次官
10	農村經濟破綻防止對策 및 農地改革에 關한 質問	朴晚元	1951. 2. 15	1951. 3. 19	農林部 長官	文教部長官 國防·社會 財務部次官
10	物價安定 및 民生問題에 關 한 質問	金從會 郭義榮	1951. 2. 22	※ 施政方針에 對한 質問 時 包含 答辯함.		
10	對日 講和問題에 關한 質問	金正實	1951. 3. 24			
10	救護米品切에 關한 質問	太完善	1951. 5. 8	1951. 5. 14		社會部長官
11	檀紀4284年度 下半年 石炭 需給計劃과 燃料對策에 關 한 質問	太完善	1951. 7. 14	1951. 7. 29	商工· 農林· 交通部 長官	

提出 會期	件 名	發議者	提 出 年月日	答 辯		
				年月日	書 面	口 頭
11	서울特別市·江原道·京畿道4月以後月別救護米搬入에 關한 質問	太完善	1951. 7.14	1951. 8.20	社會· 農林· 交通部 長官	
11	對日講和와 賠償에 關한 質問	任永信	1951. 7.14	1951. 7.16	(非公開 會議)	
11	政府에 對한 質問(定例)			1951. 7.28		內務·國防 部次官·法 制處長
11	軍警商行爲와 寄附金徵收 에 關한 質問	趙大衍	1951. 7.29	1951. 10.31	內務部 長官	國防部次官
11	「유엔」軍貸與金에 關한 質問	太完善	1951. 7.30	1951. 8.17	財務部 長官	
11	共匪討伐政策에 關한 質問	鄭在浣	1951. 7.25			
11	政府에 對한 質問(定例)			1951. 8.4		法務·外務 部長官·財 務·社會· 內務·交通 ·國防部次 官
11	政府에 對한 質問(定例)			1951. 8.11		法務·交通 部長官
11	政府에 對한 質問(定例)			1951. 8.18		國務總理· 財務·文教 ·商工部長 官·農林部 次官
11	「유엔」韓國復興計劃과 導入態勢에 關한 質問	金永善	1951. 8.18	1951. 8.18		國務總理· 財務部長官
11	政府에 對한 質問(定例)			1951. 8.25 1951. 8.27	國務總 理·財 務部長 官	國務總理· 文教·商工 部長官·內 務·財務· 社會部次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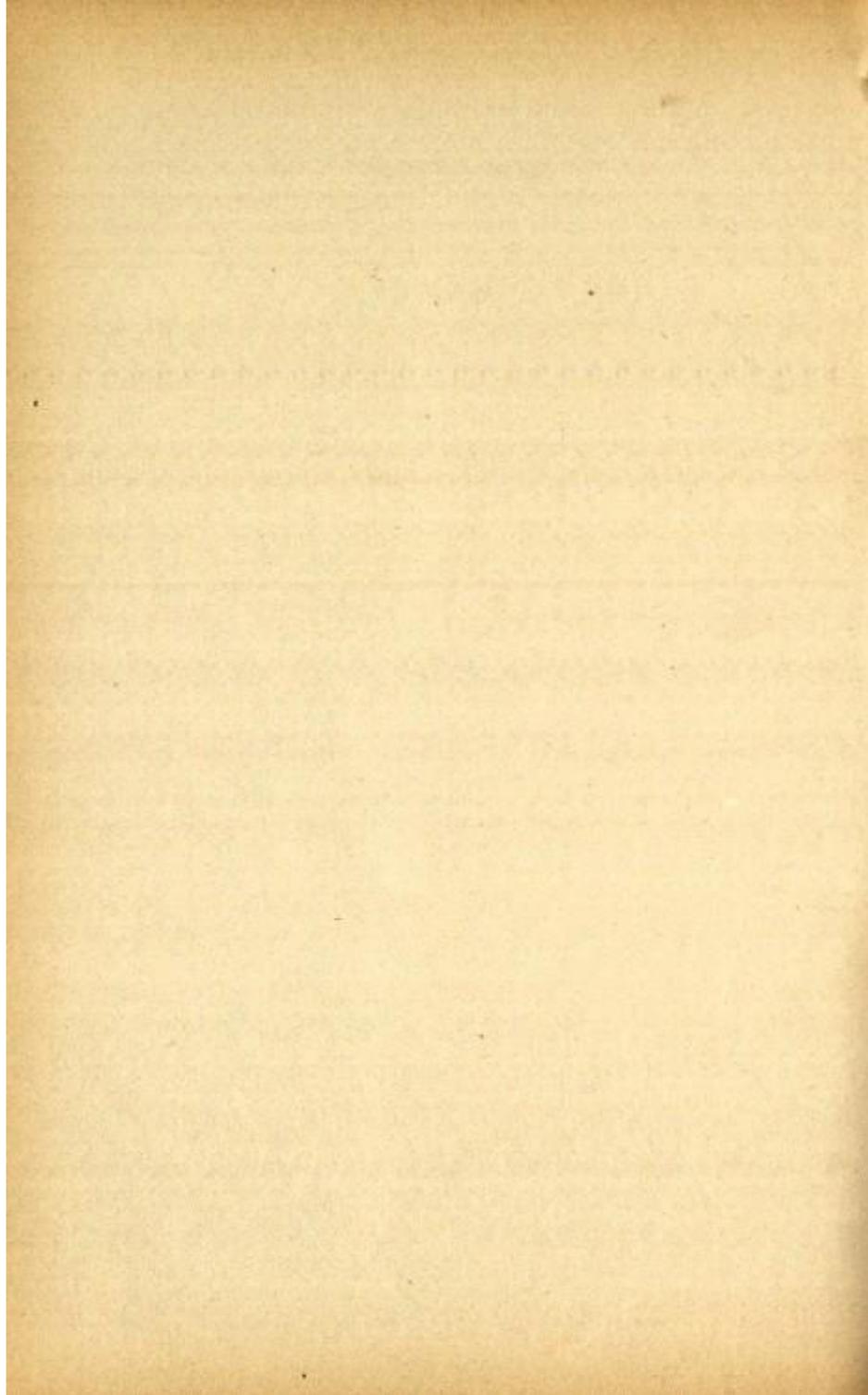
提出 會期	件 名	發議者	提出		答		辯 頭
			年月日	年月日	書	面	
11	地方實情報告에 質問		1951. 9. 29	1951. 10. 1 10. 5 10. 6			交通·文教 部長官·內 務·國防· 財務·農林 ·商工·社 會·保健· 遞信部次官
11	政府에 對한 質問(定例)			1951. 10. 20			外務·交通 部長官·內 務·國防· 社會部次官 ·官財廳長
11	政府에 對한 質問(定例)			1951. 10. 27			交通部長官 ·內務·國 防·財務· 商工部次官
11	後方治安確保에 共匪掃蕩 에 關한 質問	任永信	1951. 10. 26	1951. 10. 31			陸軍參謀總 長·治安局 長
11	政府에 對한 質問(定例)			1951. 11. 3			農林部長官 交通部次官
11	金九氏殺害犯에 宋鎮禹氏 殺害犯出獄에 關한 質問	李浩根	1951. 11. 1				
11	停戰會談에 關한 質問	金泰熙	1951. 11. 3	1951. 11. 30		國務總 理署理	
11	政府에 對한 質問(定例)			1951. 11. 10			公報處長· 農林·保健 部次官
11	政府에 對한 質問(定例)			1951. 11. 17			國務總理署 理·交通部 長官·內務 財務·商工· 農林部次官
11	政府에 對한 質問(定例)			1951. 11. 24			國務總理署 理·財務· 社會部次官

提出 會期	件 名	發議者	提出		答		
			年月日	年月日	書面	口頭	
11	監察委員長과審計院長에 對한質問	李奎甲	1951. 12.15		監察委 員長		
12	旱害對策에關한質問	陸洪均	1952. 1.12	1952. 1.31	農林部 長官		
12	山林伐採에關한質問	金仁泰	1952. 1.22	1952. 5.30 6.16	農林· 國防部 長官		
12	國會議員召還說에對한質問	特 別 委員長	1952. 2.19	1952. 2.26	大統領		
12	食糧緊急對策에關한質問	太完善	1952. 2.29	1952. 3.27	農林部 長官		
12	徵兵徵用에關한質問	郭義榮	1952. 3.8	1952. 4.10	國防部 長官		
12	未收復地區의營農政策에 關한質問	洪昌燮	1952. 3.8	1952. 4.10	農林部 長官		
12	國務總理長期事故對策에 關한質問	金正實	1952. 4.15	1952. 4.30	大統領		
14	自由米買上資金放出金融 組合聯合會商工部次官非 行에關한質問	李奎甲	1952. 11.11	1952. 11.18 11.25 12.19		財務·農林· 商工部長官	
15	38以北未收復地區行政權 移讓에關한質問	洪昌燮	1953. 3.6	1953. 4.13		國務總理署 理	
15	山淸·蔚山郡內共匪襲擊 事件에關한質問	金正實 金宗順 金泰熙 郭義榮	1953. 4.11	1953. 5.11 5.14		內務·社會· 國防·農林 部長官	
16	行政權機構簡素化및赤字 豫算補填對策에關한質問	李奎甲	1953. 7.10	1953. 7.28 9.19		財務·法務 部長官·總 務處長·企 劃處長	
16	中央線運行에關한質問	尹吉重	1953. 6.5	1953. 7.2		交通部長官	

提出 會期	件 名	發議者	提出 年月日	答 辯		
				年月日	書 面	口 頭
16	戰鬪警察隊에 關한 質問	金宗順	1953. 6. 5	1953. 7. 31		內務部長官
16	人權蹂躪에 關한 質問	嚴詳燮	1953. 7. 15	1953. 9. 9		法務部長官
16	江原道廳春川復歸에 關한 質問	尹吉重	1953. 8. 4	1953. 9. 21		內務部長官
16	未收復地區에 關한 質問	洪昌燮	1953. 8. 26	1953. 9. 21		內務·外務· 交通·社會 部長官
16	農村問題其他當面政策에 關한 質問	金奉才	1953. 9. 21	1953. 9. 28 9. 29	全國務 (政府) 委員	
16	戰死者處遇改善 및 國民財產保障에 關한 質問	農 林 委員長	1953. 10. 11			
16	秋穀收穫高再調査에 關한 質問	農 林 委員長	1953. 10. 11			
16	農村問題其他當面政策에 關한 質問(口頭質問에 未盡된 點을 書面으로 포함)					內務·國防· 商工部長官
17	韓日會談其他當面問題에 關한 質問	尹致暎	1953. 11. 11	1953. 11. 19		國務總理· 內務·國防· 商工部長官



6. (附), 式辭斗 致辭



第7回國會(臨時會)

開會式辭

5.30選舉 後 最初의 臨時會를 開會함에 즈음하여 몇 바더 말씀으로 式辭을 드리려 합니다.

大統領閣下를 비롯해서 內外貴賓 여러분을 다 한테에 모이게 하고 또 偶然한 機會에 우리 獨立을 위해서 많은 努力을 해 주시던 美國 前 上院議員이며 「유엔」總會의 前 代表로 派遣되었던 「덜레스」先生 우리 韓國 사람의 좋은 親舊요 더우기 우리 韓國獨立의 恩人이 되는 이분의 夫婦 두분을 또한 이 자리에 같이 모시게 되니 特別히 多幸으로 愉快한 일입니다.

거룩한 議事堂에 모이신 議員 여러분은 2000餘名의 候補者中 國民 多大數의 信任을 받고 各界 各層의 代辯者로 選出된 것을 感祝하는 바이며 政府가 樹立된 後 처음으로 우리들의 힘과 責任으로 實施된 總選舉에서 아무런 過誤와 紛糾도 없이 모든 愛國 政黨團體에 所屬하는 議員 여러분을 總網羅하여 舉族의으로 支持할 수 있는 名實相符한 代議機關인 이 國會를 構成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多幸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날로 迫急의 度를 더하여 가는 冷戰은 最尖端에 서 있는 新生 大韓民國으로 하여금 寸刻도 放心할 수 없는 緊迫한 處地에 놓이게 하여 앞으로 任期 4年 동안은 祖國의 統一과 民族 國家의 興亡盛衰를 左右하는 決定的 時期라는 것을 自覺하고 國民의 希望과 生死를 一身에 질머진 議員들의 重責을 痛感케 하는 것입니다. 또한 制憲國會 以來 懸案이던 當面問題로서 나날이 加騰하는 米價를 抑制하여 細窮民의 食生活에 威脅을 解消하고 恒久的인 食糧의 需給計劃을 確立하며 農地改革의 完成으로 農村經濟를 再建하고 歸屬財產의 適切한 處理, 企業體의 運營을 效果的으로 하여 生産力의 增加를 圖謀하며 ICA援助資金의 有效適切한 活用과 아울러 産業復興을 기하며 地方自治를 早速히 實施하고 軍事力의 完壁과 教育의 發展을 꾀하는 등 政治・經濟의 安定과 社會平等을 實現

하여야 할 重大課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民族의 危機에 處하며 여러가지 重大한 課業을 解決하는데 있어서 議員同志들은 各者가 所屬하는 黨派를 초월하여 民族陣營의 大同團結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勿論 모든 原則도 없는 無條件한 盲目的인 團結은 있을 수 없으며 議員 여러분은 早晚 問 政見과 抱負에 따라서 몇 개의 交涉團體를 構成하여 어느 한 團體에 所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團體는 個人的 榮譽나 黨派의 利益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오직 國家의 前途를 打開하며 民族全體의 福利를 위하여 結合된 것으로서 그 團體들의 國家民族의 大局的 見地에서는 언제나 團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自由와 平等을 達成하려는 共同目標에는 差異가 있을 수 없으며 다만 그것을 達成하는 方式과 施策을 달리하여 民主主義的인 論議 끝에는 언제나 多大數의 意思에 의하여 決定하고 그것을 追從할 것입니다. 政府는 이러한 方法으로 決定된 國會의 意思를 絕對적으로 尊重할 것이며 法律과 決議에 依據하여 모든 施策을 세 나갈 것이므로 國會와 政府는 이러한 過程과 關聯을 통하여 協調하고 鞭撻하며 政府와 國民은 國會를 媒介로 遊離되지 않고 굳은 連繫를 지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들의 周圍에는 共產國家들이 侵略의 機會를 노리고 이에 盲從하는 共產分子들은 暴力으로 內亂과 破壞를 劃策하고 있지만 國會自身的 大同團結과 政府와 國會와 國民間에 굳은 連繫로 되어있는 以上 그네들의 跳梁할 寸分の 餘地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難局이나 危機에 逢着하더라도 憲法에서 保障된 基本的 自由를 制限하며 人間의 尊嚴性을 不堂히 犧牲하지 않을 것이니 民主主義的 方法을 포기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民主主義的 方法이야말로 共產主義와 對抗할 수 있는 唯一한 武器이며 가장 좋은 助力者이며, 時時刻刻으로 變遷하는 國際・國內情勢에 適應하여 큰 過誤 없이 強力한 前進를 계속할 수 있는 方法은 民主主義 以外에는 없다는 것을 確信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友邦美國의 끊임없는 經濟的・軍事的 援助에 대하여 滿腔의 感謝와 敬意를 표하며 다같은 환경과 處地에서 고민하는 亞細亞 自由愛好民族과 步調를 같이 할 것을 믿으며 「유엔」을 통하여 國際親善과 平和를 達成하기에

絶對的인 努力을 다하여 祖國統一의 完成을 기하고 議員 여러분의 健闘를
빌어 마지 않는 바입니다.

檀紀 4283年 6月 19日

國會議長 申 翼 熙

閉會式辭

資料未備로 記錄이 없어 記載하지 못함.

大統領致辭(第7回國會 開會式)

議員 여러분! 民國國會 第2次總選舉에 被選된 여러 議員들에게 먼저 熱情的으로 致賀합니다. 議長 副議長으로 새로 被選된 여러분에게 熱情的인 歡迎의 뜻을 表하며 特히 이 申翼熙議長이 다시 議長으로 被選된 것을 모두가 기뻐합니다. 第2回總選舉가 또 充分한 成績을 이루워 內外國人的 稱頌을 받을만치 된 것을 民國全體에 對하여 熱情的으로 致賀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既成國家에서는 國會안에서 各政黨間에나 또는 行政府와 司法府에 對해서나 서로 衝突이 나고서도 全國에 危險性을 끼치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民國은 겨우 二年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어린애기의 軟弱한 形體로서 國內에 分立紛爭이 있어 가치고는 民國을 破壞하려는 在內在外한 怨讎를 對抗키 어려우므로 眞實로 愛國愛族하는 指導者들의 唯一한 口號는 마땅히 上古賢人들의 遺傳한바 兄弟鬩牆이나 外禦其侮라는 箴言을 잊지 말고 注意해야만 우리가 實로 民國을 保護하는 責任을 完遂할 수 있을 것입니다. 民國政府에서 急急히 進行할 일과 國會에서 먼저 注意해 주실만한 것을 後此로 機會에 따라 協議的으로 提出도 하고 討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第一命脈有關되는 問題에 對한 大政方針을 먼저 充實히 諒解해서 協議가 되어야 나머지 問題를 다 順序的으로 解決할 수 있을 것이므로 民主와 共產 두 主義로 對立된 世界大勢를 다시 살펴서 우리의 方針이 어떠한다는 것을 簡單히 說明하려고 합니다. 至今 世界全體가 이 두 陣營의 鬭爭에 싸여 들어서 한나라도 이 禍에 벗어나는 나라는 없는 것이다. 共產主義에 빠져서 남의 屬國으로 國家의 獨立과 人民의 自由를 다 拋棄하고 奴隸로 지나게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民主主義를 死守하고 共產主義를 阻制해서 民主制度下에 國家의 獨立과 人民의 自由를 保護하든지 이 두가지로 結末이나고 말 것이니 東西南北을 莫論하고 이 戰爭에 끼어들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冷靜戰爭의 目的이 지나간 世界二次大戰의 目的과 꼭 같해서 「히

물리」와 「못소리니」·「히로히도」가 세계를 征服해서 民主主義를 없이하고 自己들의 壓迫政策下에 統轄하려고 하던 것이 失敗된 後에 蘇聯이 그와 同一한 目的을 가지고 戰爭하는 方式만을 고쳐서 單純한 武力으로만 싸우지 않고 思想征服으로 한 세계를 만들어 統轄하라는 것이 危險한 事實은 世界大戰보다 더 크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 思想戰이 더 危險한 理由는 첫째 世界大戰에는 反民主國家들이 單純히 武力으로 세계를 征服할 計劃을 가지고 世界大戰을 始作한 故로 民主國家들이 즉시 깨닫고 일어나 民主主義가 安定할 만한 세계를 만들자는 口號로 싸워서 勝利한 것인데 蘇聯은 武力을 背後에 擴張시키며 前面으로는 共產主義를 내세우고 世上을 속여서 人心을 征服하는 故로 民主國家에서는 尋常히 放任해서 大部分이 赤化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둘째로는 共產政府에서 前無한 壓制政策을 쓰면서 表面으로는 民主國家라는 標準을 내세우는 故로 自由를 願하는 民族들이 속아들어가서 그물에 걸린 고기와 같이 다시는 빠져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요, 셋째로는 世界指導者들의 平和를 主張한다는 意圖로 暫時 平安한 것을 爲해서 撫摩手段으로 번번히 讓步하며 끌려들어가서 協議와 合作을 主張하다가 얼마는 벌써 걸려들어갔고 얼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끌려들어가고 있는 中입니다. 이것을 所謂 冷戰이라고 하며 이 冷戰으로 共產의 禍를 夢想하고 날마다 끌려들어가는 까닭에 이와같이 繼續해 나간다면 畢竟은 全世界가 다 衛星國家化를 免치 못할 것이요, 結果로는 世界兩次大戰에 全體主義國家들이 失敗한 것을 蘇聯에서 成功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民主國들이 날마다 깨어나가는 故로 몇해 前과는 大相不同입니다.

우리가 普通 民는 바는 世界가 다 自由權利를 목숨보다 重하게 여기는 故로 設令 蘇聯이 世界를 다 征服한 뒤에라도 온 世界가 다 일어나서 自由를 恢復하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며 또 世界가 다 共產主義의 征服을 받고 蘇聯이 成功할 때까지 이르지 않을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므로 冷戰으로 民主主義를 保全하지 못하면 熱戰으로라도 싸워서 勝利할 것이니 結局은 反民主主義者들이 또 失敗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다. 그러나 共產主義의 危險이 이러한 것을 覺悟한다면 어찌해서 처음 始作할 적에 制禦하지 못하고

도리어 호랑이를 길러서 世界마다 共產禍를 當한 뒤에 비로소 많은 피와 많은 犧牲을 가지고 恢復한다는 것이 疑問입니다. 그러나 近來에 와서는 모든 나라에서 이 危險을 切實히 깨닫고 相當한 準備가 充分히 되는 것에서 우리는 많은 勇氣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亞細亞東便 韓半島로서 中國과 滿洲가 다 赤化에 빠지고 우리 半島 以北이 또한 共產禍에 빠져있는 이 處地에서 우리 民族이 홀로 民主主義를 지켜서 우리 民國의 土黨가 날로 鞏固해 가며 友邦들의 同情과 後援이 漸漸 增加되어가는 까닭은 우리가 홀로 共產黨의 危險을 처음부터 看破하고 獨立과 自由를 爲해서 목숨을 바치고 至今까지 싸워나온 結果로 美國의 援助를 받게 되는 것이니 이와같이 우리 民族의 決心이 熱熱히 싸워나가는 中에 우리의 앞길이 漸漸 열려가며 國權이 더욱 鞏固해질 것이며 이것을 우리의 決心과 우리의 行動으로 世界에 表明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共產主義者들과 民主主義者들의 思想이 함께 서서 平和를 지키고 살 수 없을 것이므로 둘중에 하나가 이겨서 비로소 平和가 있을 것이니 世界가 半은 奴隸, 若 半은 自由로 平和를 扶持할 수 없음이 判斷된 緣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民國의 獨立과 우리 民族의 自由를 爲해서 끝까지 싸우려는 決心이니 우리는 무슨 關係든지 讓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親友들과 親友아닌 분들이 다 諒解하기를 바라는 同時에 共產과 合作하거나 共產을 撫摩하거나 共產에게 讓步하자는 念慮를 가진 者는 內外國人을 勿論하고 우리의 國家生命과 個人의 生命을 重要視하지 않는 것으로 認定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既往에 斐斐히 宣言한 바를 이에 다시 說明하려고 하는 것은 前에 무슨 意圖로 무슨 步調를 取했는지 다 莫論하고 至今부터는 마음을 고쳐서 民主政府를 絕對支持하기로 目的한다는 意圖를 公開로 宣言하고 實情을 表示하는 사람에게 對해서는 우리가 다 往事를 잊어버리고 握手並進하자는 것이 우리의 決心이오 이 決心을 實現해서 여러 方面으로 表明하고 있는 中에 이에 對해서 누구나 疑惑할 것이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서 또다시 宣言코자 하는 바는 所謂 以北指導者로서 外國의 指令에 服從해서 祖上의 遺業인 半島江山을 分裂시켜 外國에 隸屬시키려고 하는 者들로 다 悔改하고 돌아서

서 우리와 같은 步調를 取한다면 우리는 躊躇치 않고 다 湯滌하려는 것입
니다.

끝으로 한가지 言明하려는 것은 우리 民族이 個人의 自由權을 尊重히 여
기려면 國家의 自由權을 먼저 保護할 것을 覺悟해야 될 것입니다. 萬一 이
것을 모르고 個人의 自由權만 保護하기 爲해서 國家의 自由權을 犧牲하거나
損傷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個人의 自由權까지 抹殺시키는 것이니 獨立없는
나라 百姓들이 남의 奴隸가 되어서 어찌 個人의 自由權利를 생각할 餘地가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政府나 國會나 司法府의 大小職員과 權利多少를 莫
論하고 國家의 安全이나 權威를 妨害하려는 言論이나 行動은 絶對로 避해야
만 民國의 正當한 市民이 될 것이고 또 愛國者로 認定받게 될 것입니다. 政
府를 支持한다는 것은 政府當局을 無條件하고 支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個人은 政府의 자리에 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수 있지만 政府全體만은 憲
法土臺위에서 搖動없이 서 있어야만 民主國家의 土臺가 鞏固히 서서 國民의
自由權利와 福利를 保護해 나갈 것이므로 政府에 얹은 個人에 對해서는 어
떠한 態度를 가질지라도 民國政府에 對해서는 輕忽한 態度를 避해서 政府를
保護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옛세지」로 여러 國會議員 一同에게 致賀하며 政府大政方針의 大略
을 說明해서 여러분의 一致한 行動을 바라는 同時에 行政府 모든 當局들은
힘자라는 데까지 立法府와 協議進行하기를 힘쓸 것이니 많은 諒解로서 多端
한 國事に 協同적으로 進行하여 民國第2回 國會의 貢獻으로 民國의 發展이
世上에 자랑할만치 되기를 바라며 期待하는 바입니다. 한가지 遺憾되는 것
은 이번 第2回總選舉에도 以北同胞들이 參加되지 못해서 國會內에 一百議
席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 이는 實로 痛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
이 다 世界大勢에 因緣함을 우리가 覺悟하느니만치 不遠한 將來에는 南北同
胞들의 努力과 友邦들의 援助로 三八線을 하루마에 撤廢하고 完全無缺한 南
北統一을 完遂하게 되기를 切實히 祝禱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옛세지」를 그치겠습니다. 한가지 여러분에게 紹介해 드릴 것
은 아까 議長이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貴賓이 여기 國會에 나와 주신

것을 우리가 榮光히 여기며 榮光으로 아는 바입니다. 오늘 特別히 여기에 오신 분중에 「존 포스터·딜레스」氏입니다. 다른 분은 東洋에 올 적에 日本으로 처음 와 가지고 朝鮮으로 옵니다. 그러나 이 분은 特別히 우리나라에 먼저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日本에 가게 됩니다. 「딜레스」氏는 議長도 맡았지만 우리나라에 對해서 「파티」에서 「레이크섹세스」에서 美國에서 努力한 분이고 힘써준 분으로 여러분이 다 아실 터니까 紹介 안하겠고 이분이 우리를 爲해서 努力한 그것을 說明할 「렛세지」를 美國에서 準備해 가지고 왔어요. 오늘 보았는데 그 이야기는 아마 世界에서 다 알 것입니다. 그 將來에 대한 것과 緊急한 것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실 것입니다. 내가 紹介 안합니다. 지금 議長이 紹介해서 말씀해 줄 터인데 熱情으로 歡迎하는 뜻을 表示해서 이분이 돌아가서 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나, 그만큼 이야기 하고 아마 亦是 議長께서 紹介하실 줄 압니다.

檀紀 4283年 6月 19日

大統領 李 承 晚

第 8 回國會(臨時會)

開會式辭

資料未備로 記錄이 없어 記載하지 못함.

閉會式辭

內外賓客 여러분! 그리고 우리 國會議員 여러분!

오늘 第8回臨時國會的 閉會式를 舉行함에 際하여 두어마디 말씀으로 閉會의 辭를 披들려 함에 感慨가 가슴에 차서 말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난 5.30選舉로 各 選舉區에서 10萬의 選良이 뭉치어 마야호로 國事에 대한 經綸과 抱負를 議論하려 할 때에 曠古의 民族의 大禍인 6.25事變을 만나자 國會는 行政府와 함께 首都 서울을 死守하려 하였으나 6月 27日 共匪의 서울 侵入으로 莫不得已 國會도 行政府와 함께 南遷하게 되었습니다. 國會는 行政府를 監視한 處地에 있으면서 共匪의 南侵을 事前에 防止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惶惶히 南下함으로써 인하여 이 事變에 대한 善後措置를 圓滿히 못하였음은 國民의 앞에 未安과 罪悚한 心情을 表하는 바입니다. 國會는 서울에서 열리었던 緊急會議에서 「유엔」과 美國에 至急히 援助를 請하는 決議를 하여 國際의 援助로써 大禍의 防止를 圖하려 하였었고 南遷後로는 大田·大邱·釜山으로 전진하면서 砲火中에 會議을 繼續하며 안으로 國軍의 作戰을 爲始한 行政府의 모든 非常措置, 特히 戰時豫算緊急法案의 審議를 完遂하기에 協心戮力하였고, 밖으로 「유엔」과의 關係, 善隣美國과의 등 外交에 대한 決議를 하여서 國民外交에 힘써 왔습니다.

모든 議員들은 한 자리에 모여 國事を 審議하고 때로는 選舉區로 헤어져서 民心을 慰撫하며 特히 共匪와 死鬪하는 第一線 將兵의 慰問, 負傷하고 피를 흘리는 傷痍將兵의 慰問 等 각가지로 고루고루 全力을 기울였습니다.

多幸히 忠勇한 國軍, 正義의 使徒 「유엔」軍의 勇戰으로 首都가 다시 收復되자 共匪의 虐殺과 放火로 인하여 滿目荒涼한 서울에 돌아온 國會는 밖으로 「유엔」總會, 「유엔」軍 「맥아더」司令官에게 感謝의 뜻을 表하고, 안으로 北進 作戰하는 우리 國軍將兵과 北韓同胞에게 激勵위부의 말을 보내는 同時에 繼續하여 進擊하는 北韓收復의 義戰에 對備하는 追加豫算, 모든 戰時에 適應하는 特別法規 등을 通過시키므로 戰時國會的 機能을 다하기에 힘썼습니다.

더욱 殘賊을 掃蕩키 위한 國軍強化案, 民心不安을 除去하려는 私刑禁止法案, 政府의 改組強化를 위한 建議案 등은 民意의 反映을 위한 眷眷한 誠意의 一端이며 自家肅清을 決議한 것은 自省을 促하는 誠意의 一端입니다.

以上으로 보아 비록 그 成果는 顯著하지 못할지라도 있는 바 誠意는 다한 것으로 國民의 앞에 애오라지 自慰하면서 더욱 反省과 策勵로써 今後에 對備하려 합니다.

지금 우리의 앞에는 國難이 아직 끝나지 아니하고 國際情勢는 刻刻으로 變化하여 豫斷을 不許합니다. 全國民이 꿈에도 잊지 못하는 38의 魔線은 깨어지고 國軍과 유엔軍의 勇戰으로 國土의 完全收復이 目睫間에 있는 것은 뜨거운 感激에 감기는 바이나 天人이 共怒할 共匪의 蠻行으로 모든 愛國志士를 비롯한 數萬의 國民이 아무 罪없이 虐殺되고 放火掠奪로 인한 荒廢한 國土는 今後 우리나라로서는 거의 回復하기 어려운 世紀的 瘡痍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그 冤死한 靈魂들을 무슨 말로 哀悼하며 그 怨痛한 遺族들을 무슨 말로 慰安할는지 오직 痛恨・憤怒・哀惜으로 가슴이 차서 끝없이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千萬 國民을 代表한 國會입니다. 한갓 悲哀와 感傷만으로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거의 全人類史上의 世紀的 疾患이 된 共匪의 掃滅을 위하여 全世界 平和愛好의 國家들은 正義의 旗를 뽑고 있으며 이 自由를 위한 戰爭에는 일찍이 우리 나라를 世界地圖로서만 알고 있던 나라에서까지 뒤를 이어 援軍을 보내고 있습니다.

極東亞細亞의 한 모퉁이 우리나라의 일을 위하여 全世界는 動員되고 있으며 自由國民과 不法共匪의 決定的 決戰은 展開되고 있습니다. 不遠에 「유엔」 韓國委員團이 새로 와서 國際聯合의 偉大한 戰略戰術과 함께 우리 國土의 統一과 民主主義的 勝利에 邁進하려 합니다. 우리 國會는 안으로 國民의 民意를 徹底히 反映하여 우선 民主主義의 國內的 勝利로 今後의 復興再建에 힘쓰는 同時에 世界民主國家의 一員으로서 뚜렷하게 서서 努力 奮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閉會中에 議員同志들은 各各 民意의 把握에 힘쓰고 世界의 進運을 살피어 이 重大危局을 打開하기에 全力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끝으로 議員同志들의 健康과 奮闘을 비는 바입니다.

檀紀 4283年 11月 26日

國會議長 申 翼 熙

大統領致辭(第8回國會 閉會式)

때는 추운때에 國會에서 모든 慘酷한 地境을 當하시고 戰局을 當하시는데 對해서 우리가 다 앞으로 한 그 말씀은 議長閉會辭中에 다 切切히 말씀한 것 그것을 다 우리 政府와 大統領以下로 다 各各 同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因緣해서 다시 지기에 對해서 懇談은 안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大亂을 지내고 事變을 겪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모이셔서 추운 여기에 밤을 길도록 지나시며 여러가지 다 通過하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다 感謝히 여기는 中인데 그것도 議長 閉會辭에 말씀을 다 들은 것이니까 우리가 絶對 感謝한 것을 여러분께 表하는 것입니다.

簡單히 時間잡아서 말씀하지 않겠고 簡單히 여러분께나 속에 意圖했던 것을 말씀하려면 이번에 여러가지 豫算通過하시는 中에 두가지 條件을 簡單히 大統領이 否決한 그 理由를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나 하면 私刑禁止法案의 그 條件인데 大統領이 否認한 것은 私刑禁止라는 案件의 意圖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무엇이나 하면 지금 國法으로 私刑을 禁止한다고 그런다면 지금까지는 私刑을 認定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私刑禁止 하는 법이 다 있어 가지고 우리가 許諾하지 않는 것입니다. 萬一 政府에서 行政府에서 그 私刑禁止하는 것을 實施를 못해서 그것이 弊端이 있다고 하면 그 法案의 얘기가 私刑禁止法案을 實施를 아니해서 實施하라는 것은 正當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私刑을 禁止한다고 새로 내는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政府에서 私刑을 禁止아니한 것을 認證하는 것이 되는 까닭으로 해서 그 意圖로 否決을 했던 것이올시다.

또 그 다음 問題 한가지는 附逆處斷하는 問題에 對해서는 무슨 關係가 있느냐 하면 附逆處罰이라는 법은 立法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施行해 가는 것은 司法府에서 하는 것이 아주 分명한 分擔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憲法에는 司法府 行政府 立法府가

三區分으로 나누어서 混同을 해가지고 司法府에서 할 일을 立法府에서 한다든지 立法府에서 할 일을 司法府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混同되는 까닭으로 해서 弊害가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것을 分揀을 해서 그 條件만을 改正하면 좋겠다는 意圖로 否決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찌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아시라고 說明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豫算案件에 대해서 豫算에서 두가지 條件을 내가 말씀하려고 하는데 두가지 條件의 한가지는 무엇인고 하니 現物로 米穀收集을 한다 그 條件을 여러분들이 否決을 했는데 現物이라고 하는 것만 받지 말아라 그러면 米穀收集하는데 많은 妨害가 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한가지는 稅納받는데 얼마를 이것을 削除하게 해서 많은 稅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議論이 한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國會에서 相當히 稅納을 많이 받어서 民間에 賦役이甚할 것 같으면 依例히 削除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稅納을 내게 하는 것도 政府에서 民衆에게 낼 수 없는 것을 그냥 強制로 받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것은 낼 수도 있을만 하게 되고 또 아니내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關係로 그것을 다시 내왔던 것인데 그것을 못하게 해서 削除하게 된다면 豫算속에서 經費 쓸 것을 또 減해져야 그래야 收支가 맞아가지고 될테지 經費는 그냥 내버려 두고 收入만을 減削한다면 大端히 困難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豫算의 通過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豫算案을 議論들 하실적에는 特別히 생각들을 考慮들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면 亂時가 되서 國家에서 經費안가지고 쓸 수 없는 것은 지금 날리 戰爭에 가는데 돈없이 經費 안들고서 戰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남의 나라 사람들 보다도 우리나라에 戰爭이 있는지 할적에는 民衆이 먹을 것을 제대로 다 안먹고 서로 禁해서 못먹게 해서 어려운 줄 알면서 犧牲해 가지고 해야 戰爭에 비로소 싸우는 사람들이 아무쪼록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더욱 美國같은 나라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하는 이때에 稅納도 올리고 모

른 것을 禁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戰爭을 도읍고 여기에다 建築과 生活 救濟해 가는 것이라고 無限히 예를 많이 쓰는데 우리로서 좀 어려운 地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 남의 好意를 對答하는 것도 되고 또 우리가 우리 職責을 할려면 우리끼리 해가야 職責을 해나가는 것이예요. 우리 어려운 것이라도 아무쪼록 이 時期에 여러분이 地方에 가서서 勳勉들 하셔서 이때는 이것이 어렵드라도 해가야 된다는 것을 說明을 하고 勸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機會가 있으니 또 하려고 했던 말 한 가지 할 것은 지금 戰爭이 以北으로 鴨綠江 豆滿江 그 앞을 올라가는 中이니까 「유엔」 總司令部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얼마 안하고 다 掃蕩시켜 놓고서 國境을 다시 지키게 만들게 하고서 戰爭을 끝내게 하자 그것을 大端히 主張하는 바입니다. 그뒤에 가서 蘇聯이 어떻게 할는지 그것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國境을 恢復해 가지고 지켜가지고 統一해 가지고 한다는 메에는 그때에 가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때에 速히 마쳐가지고 할 것은 「유엔」 代表團이 오는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것은 統一完遂하는 것인데 統一完遂는 무엇으로 指標物을 잡느냐 하면 以北에 總選舉를 해서 議員들을 選舉해서 이 國會 자리 비어 놓은 것을 對處하게 만들어 두는 것이 「유엔」代表들 目的하는 것은 이번에 總選舉를 하도록 努力하자는 것입니다. 여기가 얼마 안있어서 以南 以北에 總選舉를 다 같이 한다는 이런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全的으로 反對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왜 그런고 하니 美國政府에서든지 總司令長官이 이분들이 意圖를 確實히 定해서 以南에는 選舉를 다해서 完全한 國會와 政府를 다 樹立해와 가지고 있는 完全한 獨立自主權利 主權利 主權이 있는데 다시 總選舉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完全한 內容으로 作定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까닭으로 해서 그것은 問題는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結果로서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바는 以北에 總選舉가 될 것입니다. 以北에 總選舉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하루 바삐 民心이 整頓되어야 되겠으니 民心이 整頓된다는데는 爲先 여기서도 軍警이 힘들도 많이 쓰지만 以北 同

들이 勿論 道知事를 選舉해 놓고서 그 道知事로 하여금 政令을 發表하고서 以北同胞들이 自由行政이 되어서 速히 以北에도 援助를 할 것을 지금 意圖하는 것입니다. 하로바때 治安을 平定해 놓고서 軍事의 解決을 다한 뒤에는 우리가 總選舉를 해서 以北의 代議員들이 다 여기와서 國會에 앉게 되면 「유엔」사람들의 目的으로 統一해 가려는 問題는 完遂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여러분께 미리 얘기하는 바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議論을 하고 생각을 해 두셨다가 내가 늘 하는 것이지만 速히 完遂되기를 바라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國會안에 兩院制를 만들어야 圓滿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國會憲法議論 란적에 兩院制를 얘기하다가 그것은 우리가 兩院制를 할 形便이 못되고 그래서 統一을 해서 兩院制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가 內定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民國政策을 세워 完全히 세워놓는 데에는 兩院制를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다 協議를 해 두셨다가 速히 進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大統領選舉는 兩院制로 한 뒤에는 全國民이 總選舉를 하겠다는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大端히 必要할 줄 압니다. 거기에 對해서 이 사람은 私私個人的으로 이 사람은 이 다음 總選舉에 候補者되겠다는 希望은 도무지 없는 사람으로서 民主政治를 세워 土臺를 세워 完全히 만들어 놓는 그대에 처음에 兩院制를 만들어서 完全히 해놔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가지고서 討議해 가지고 速히 그것을 만들어 노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내가 늘 말하는 것은 이 다음에 國會議員選舉할 적에 候補者 되시는 분은 各其 道라든지 各地方의 區域에서 關係되는 그러한 분이 해야지 저쪽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候補者가 된다 그래서 한분이 이곳 저곳가서 候補者가 되고 이러한 것이 大端히 鄭重하지 못한 것이고 남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좋지 않으니깐 그것을 잘 定하시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前에 우리가 얼마前에 國會에서도 提出되었고 또 政府에서도 우리가 議論해서 協議가 되어서 우리가 作定된 것의 하나는 道知事が 各道에서 道民들의 總選舉로 해가자 그런 問題가 여기에 나왔든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

에 討議가 많이 되다가 畢竟에는 우리가 作定하고 內定된 것은 只今 共產黨
題가 이것이 더 繼續해서 混亂한데다가 南北統一이 못 되고 있으니 南北
統一한 뒤에는 南北의 統一 知事는 다 各其 道에서 選舉해서 하자는 그러한
內定이 되고 協議가 되었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러한 것을 생각해
두셨다가 南北統一의 總選舉로 여기 國會가 圓滿하게 다 될적에는 格別히
作定들 하시고서 知事는 南北을 莫論하고 모두 道는 道民들의 選舉로 하자
그러면 大端히 圓滿히 될줄 압니다. 그만한 것은 내가 늘 하는 것이니까 여
리분께서 그러한 것을 다 생각해 가지고 두셨다가 時期가 오는데로 速히 處
理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只今 「유엔」代表團들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들어
온 後에 意圖속에 대강 생각있는 것은 무엇을 가졌는고 하는 只今 韓國統一
을 해가자고 하는데 그동안에 祖國統一이라면 우리는 意圖를 가진 것은 南
北이 큰 한나라요 한百姓이요 自古로 四, 五千年來 우리네가 南이고 北이로
갈라서 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他國 사람들이 저희끼리 勢力 다툼해
가다가 中間에다가 三八線을 얹는 것을 만들어 놓고서 蘇聯의 銃을 가지고
서 우리를 막아 노니까 맥혔읍니다. 이것이 터지기만 한다면 한百姓 한집안
사람들이 南北이 統一되어 가는데 統一問題가 잘 되는 것입니다.

勿論 民國政府에서 또 한가지 三千里江山 안에서 우리나라 疆土안에서는
民國政府가 相尅한 獨裁한 存在라는 것 보다는도 統一해 가지고서 다스려가는
主權이 되어 있는 것으로 因해서 펴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主權이 三八線
以南만을 限度로 해가지고 以北으로는 올라가지 말어라 自己들이 總選舉를
해는 뒤에야 總選舉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사람으로서는 似非한 말도 안되
는 것이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이것을 가
지고서 우리는 이것을 接受할 수 없으니 마치 「모스크바」 三相會議에서
했다는 그作定대로 그대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認定하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우리가 接受할 수 없으니 우리는 그대로 그냥 들어간다고 했을 터인데 國
際關係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엔」의 힘과 도움을 받아 가지고서
只今 國會가 設立되었고 또 거기서 政府樹立 해 가지고 모든 世界의 認定을
받아가지고 完全 獨立資格을 얻어오는 것이 「유엔」의 도움을 가지고서 하

는 것이고 이번 이 反亂때에도 「유엔」의 名義를 가지고서 軍事, 軍器와 軍物이 들어와 가지고서 이만한 掃蕩해 가는 이러한 자리에 있어서 또 이분들이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破壞當한 것과 都市를 建設하는데에 民生救恤해 가는때에 全的으로 하겠다고 해서 世界에서 도우려고 나와서 이만치 려나가는 이때에 이 些少한 것을 問題를 삼어 가지고 對立이 되어가지고 싸운다든지 是非한다는 것을 말하면 누가 남들도 或 말하는 그 사람들이 背恩忘德할 사람뿐이라고 할런지 모르고 또 따라서 앞에 障礙가 많이 있겠다고 생각하므로 兼해서 이 措處가 된다고 하더라도 며칠 안가지면 다 整頓될 것으로 이만큼 相議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問題를 삼을 必要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유엔」이분들이 여기에 들어 오시지만 이분들이 다 올라가서 보아야 우리 民衆이 南北으로 갈라져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도 듣고 以北同胞들이 民國政府를 支持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없고 그러한 여러가지 自己도 熱烈하게 어서 올라와서 다스려 달라는 이때에 그러한 말이 도모지 없는 것이니까 그분들도 다 協議해 가지고도 速히 措處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분들의 생각에 있는 것은 저 宣傳한 모두 못된 虛無한 말을 가지고 宣傳하는 것은 말을 듣는 것이 以北同胞들이 民國政府를 接受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思想이 얼마나 있어서 얼마를 가지고 또 지금이라도 이런 소리를 傳하는 사람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多少間 이야기를 알려고도 하고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對해서는 더군다나 國會나 政府가 한덩어리로 한뜻으로 해 가지고 南北을 다 接受해서 統一해가지고 가는 그 精神을 저 사람들에게 徹底히 알려 주어야 우리의 일도 速히 解決이 될 것이고 以北同胞들의 苦生이나 患難이 速히 處理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 各個人이나 團體的으로 무슨 생각이 있는지 무슨 意圖가 있든지간에 이런 때에 그런 것을 다 廢止해 버리고 勿論 우리 全民族이 確固한 한 덩어리로 統一된 것을 徹底히 알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民族間에 南이니 北이니 하지 않을 것 같으면 支障이 조금도 없는 것

이고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우리 民族을 妨害하는 사람이고 우리 民國을 妨害하는 사람이고 참 包容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해서 여기 國會 議員 여러분들은 勿論 다 그런것을 언제든지 짐작하시고 機會가 있는데로 우리 民族이 다 統一되어서 精神的으로 한 百姓된 것을 다 알려줄 줄 믿으므로 우리는 서로 그 點에 서로 意圖가 좀 다른 點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比較할 때가 아닙니다 다 한덩어리가 되어서 精神統一해 가지고 다 南北 改良해서 다 建築해서 새나라 새 國家를 만드는 데에 더욱 努力들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記憶하실 줄 믿는 바입니다.

檀紀 4283年 11月 26日

大統領 李 承 晚

第 9 回國會(臨時會)

開會式辭

오늘은 우리 大韓民國의 危機에 對處하기 위하여 第 9 回臨時國會를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議員同志들은 第 8 回臨時國會에서 우리의 非常時局에 對處한 모든 案件을 處理하기에 全力하고 將次 열리려는 定期國會에서 더욱 國政討論과 豫算審議에 努力하기로 하고 閉會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戰局에 새로히 重大한 局面이 展開되어 定期國會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事情이므로 우리는 60餘議員의 要請으로 이번 臨時國會를 열게 된 것입니다. 豫算 其他 重要案件에 대하여는 그 性質上 大體로 定期國會에서 討論하게 될 것이요 이번 第 9 回臨時國會에서 할 일은 主로 戰局變化로 생긴 重大時局에 置重한 것입니다.

國勢峻嚴한 이 때에 우리는 國難을 어떻게 打開할가에 대하여 많은 討論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檀紀 4283年 12月 8日

國會議長 申 翼 熙

閉會式辭

第9回臨時國會는 이로써 閉會하게 되었습니다. 閉會할 때에 말씀한 바와 같이 戰局의 急迫한 情勢에 비추어 우리는 定期國會까지 기다릴 수 없으므로 臨時國會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번 會期中에 한 일로는 國民防衛軍設置法을 通過하여 안으로 國民總武裝의 豫備的 態勢를 갖추는 同時에 3千萬 國民에게 總勵起의 檄을 들리어 對內整備을 強化하고 「유엔」軍 및 國軍將兵에게 激勵文을 보냈으며 「유엔」에서 停戰委員會가 成立되자 우리 國民은 平和는 愛好하나 3千萬國民이 熱願하는 統一에 背하여 侵略者 中共을 宥和하는 路線에 있어서는 안될 것을 力諍하는 「메시지」를 「유엔」總會에 보내서 우리 國民의 態度를 明白히 하여 對外 國民外交에 힘써 왔습니다. 이 외에 時時刻刻으로 變하는 戰局에 대한 情報을 每日 報告하여 國會로서의 모든 對策을 講究하는 동안에 어느덧 20日 定期國會를 하루 隔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오는 定期國會에 一層 더 努力한 것을 서로 서로 約束하고 節次에 의하여 本 臨時國會는 閉會하는 바입니다.

檀紀 4283年 12月 18日

國會議長 申 翼 熙

第10回國會(定期會)

開會式辭

우리는 우리 祖國의 安危가 判定되려는 暴風雨의 危難 속에 第10回定期國會를 열게 되었습니다. 6·25事變으로 內亂의 瘡痍가 그대로 남아있는 中에 中共이라는 外賊이 侵入하였으니 우리 앞에는 一難이 채 지나가지 않아서 더 큰 一難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國民을 代表한 選良으로서 어떠한 不撓不屈의 精神으로 이 難局을 打開하여야만 國民의 委託에 孤負치 않는 것입니다.

이번 國會에는 4283年の 戰時豫算을 爲始한 幾多의 重要案件이 審議될 터이니와 우리 議員同志一同이 戰時國會의 機能을 다 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點을 強調하려 합니다.

첫째 우리는 一面戰爭 一面建設에 曠古의 努力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祖國은 一步를 그르치면 全民族의 滅亡과 永遠한 奴隸에 떨어질 것이 明白하니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全國家를 들어 戰時體制를 強化하고 全國民을 戰力增強에 集中시켜 「유엔」과 努力하여 하루바삐 안으로 共匪를 討平하고 밖으로 外敵을 擊退하는 同時에 이와 아울러 戰火로 破壞된 모든 施設의 復興再建에 不退의 決意와 努力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勿論 至難한 일이나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강인한 鬪爭을 發揮하여 우리가 直面한 이 試練을 이겨내어야 할 것입니다.

東洋의 格言에 「多難興邦」이라는 말이 있으니 나라에 어려운 動亂이 많으면 그 나라는 試練을 통하여 振興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確實히 曠古의 難局을 當하였으나 우리가 우리 民族의 總知能과 努力을 기울이면 이 試練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나라를 民主主義的 原則 위에서 發展強化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民主主義는 안으로는 各個人의 人格의 尊敬과 自由를 尊重하여 그 自覺

을 促進시켜 進步發展케 하는 同時에 全國民이 哀心으로 우러나는 忠誠에서 自進해야 國難에 몸을 바칠 수 있을 것이요, 밖으로는 全世界 民主友邦의 援助와 共同鬭爭을 一層 緊密強化케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國難을 契機로 또는 이것을 口實로 삼아서 民主主義와는 大體로 距離가 있는 方向으로 발을 옮기는 일이 萬一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獨裁主義의 뒤를 따르는 그릇된 길로 빠져서 畢竟은 收拾치 못할 過誤를 犯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때일수록 一層 더 民主主義의 暢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敵의 銃劍은 間斷없이 우리 無辜한 同胞를 殺戮하고 敵의 발굽은 間斷없이 우리 國土를 짓밟고 있습니다.

全世界의 政治家들은 「유엔」을 비롯한 모든 會合에서 侵略者를 聲討하는 한편 戰爭의 擴大도 防止하려고 努力하고 있으나 戰局의 前途는 容易하게 豫斷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國民의 團結과 鬭爭을 더욱 힘차게 하는 同時에 「유엔」 및 親善友邦과의 協力으로 戰爭遂行과 國土의 復興再建에 오로지 民主主義의 路線을 堅持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賦與된 天職이요 國民의 代表機構인 國會의 使命입니다.

檀紀 4283年 12月 20日

國會議長 申 翼 熙

大統領 致辭(第10回國會 開會式)

議長, 國會議員 여러분! 第十回國會를 開會함에 臨하여 特別히 나로서 傳해드릴 말씀은 없고 또 지금 危難中에 나라를 保護해 가지고 우리 民族과 다같이 살자는 그것만이 唯一한 目的이므로 國會 여러분들도 이런 危急한 것을 아시고 무슨 일이든지 些少한 일에 關係하는 것은 다 停止해 주시고 여기에 對해서 全的으로 여기에만 努力들 하시고 議論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여러분께 要請하는 것은 國會에서 權威가 憲法上 權威있는 것만 생각들 마시고 國會에서나 政府에서나 나라를 爲해서 나라를 살리자고 하는 데에만 누구나 다 權利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에 妨害되는 일이나 하면 對內 對外에서 政府以下로 누구든지 여기에 설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徹底히 생각하시고 些少한 것을 停止해 두시고 政府에서 잘하거나 못하거나 다 위에서 좋게 해서 힘들세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힘써 주시기를 付託합니다. 여러분에게 付託할 餘地없이 여러분이 다 아실줄 압니다. 지금 戰勢로 말하면 내가 日前에 東北方面에 春川과 原州를 가서 일일이 尋訪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一線軍人들의 氣運이 다 墮落되어 어려운 形便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갔는데 우리 軍人將校들은 자주 싸워서 前進해 나가서 추운 前面에서 三八線에 當到해 가지고 三八線 넘어서 「토치카」를 몇해동안 만들어 놓고 그놈들이 「토치카」 속에서 潛伏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敵軍이 四方에서 銃을 놓기 때문에 거기에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 軍人들이 陣境에는 作定을 하고서 큰 大砲를 五百名의 軍人이 큰 大砲를 끌어다가 산으로 끌어다 놓고 산꼭대기에 올려놓고 거기서 세워 놓고서 거기에 「토치카」라는 것은 다 파괴시켜서 몇사람들 말이 인제는 이것은 破壞시켜 놓고 空軍이 航空軍이 가서 爆擊을 해서 하는데 地下에 「콘크리트」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지금 大砲로 해서 탁 破壞시켜 는 다음에 우리가 앞길이 터져서 밀고 올라가겠다고 士氣가 熱烈하고 조금도 墮落되거나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을 보

니까 또 여기 사람 말이 여기뿐만 아니라 前面의 모든 士氣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나로서는 많은 興奮된 氣運을 가지고 조금도 憂慮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戰線에는 戰線을 채워서 그 戰線을 앞으로 놓고 지키가지고 나오는 까닭
 에 서울은 여러 十萬大兵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간해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
 을 것을 確實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軍도 熱烈하게 나가서 어디까지
 든지 여기를 讓步안하겠다고 하니까 이만한 軍人들이 있으면... 中國共產軍이
 처음에 大多數가 鴨綠江을 건너온 때에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憂慮했
 다고 그래요 얼마를 接觸한 다음에 共軍이라는 것은 憂慮할 것 없으니까 그런
 것에 問題가 안된다고 합니다. 일제히 그랬읍니다. 그사람들 말이 인제 또 여
 기에 남아있는 傀儡軍이라는 것이 中國 共產軍보다 強하고 지금이라도 얼마
 憂慮되는 이 무엇이 있지만 中國共產軍이라는 것은 많이 있다 하더라도 絕
 對로 憂慮가 없다고 그러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려운 問題는
 내가 물어본 結果 배가 고프냐 추우냐 하니까 아무 걱정말라고 그래요 한가
 지는 軍人들이 山上에 올라가 있는데 그 山 밑에서 밥을 만들어 가지고 「케기」
 를 만들어 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광주리에 넣어 가지고 지게에
 지고 거기에 올라 가니까 三, 四時間 어떤 때에는 다섯時間 걸려서 軍人을
 먹이는 까닭으로 밥이 얼어서 얼음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불을 쬐 가지고 노
 켜 가지고 먹으려고 하니 大部分은 얼음을 먹는다고 그래요 반찬이라는 것
 은 「케기」 한덩어리 에다가 하루에 所謂 日人들이 만든 「무짱아치」가 없으
 니까 무를 소금에 넣어가지고 저려가지고 거기에 두조각 세조각을 그것을
 먹고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하는데 한 편 얘기를 들으면 밥을 더 먹겠다고 해
 서 間食이라도 먹겠다고 하는데 어쨌저 新聞記者에게 얘기를 했더니 日前
 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各地方 집에서 모두 間食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넣어 올려 보내면 間食이라도 조금 있으면 좋겠다고 이것은 一般의
 幣端이 안된다고 해서 新聞에 그런 것을 내서 해보라 한 것입니다. 또 한가
 지 그 사람한테 얘기할 것은 담배를 먹고 싶어서... 어느 때에는 밥은 못 먹
 어도 참지만 추운 때 무엇을 할 때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에는 葉
 草를 보내워서 이것을 가지고서 종이에 싸서 담배처럼 피고 있으나 담배만

좀 먹을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여기 新聞記者에게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담배 한 갑 먹든 것을 반갑씩 먹게 해
 가지고 軍人들에게 담배를 좀 피우게 해 주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여기서 말하지만 日前에 「트루만」 大統領이 非常令 發布한 뒤에 따라서
 美國 사람들에게 한 말이 우리가 稅를 몇갑질 내려야 되겠다고 子息들을 軍士
 에 내 보내야겠다고 飲食 먹는 것을 全部 節約해서 우리가 덜 먹고 節約해 가
 지고 앞의 軍人들에게 戰爭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먹여야 되겠다고 해
 서 宣言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感激한 생각이 無量히 나는 것입
 니다. 지금 美國 사람들은 여러 萬名의 軍人을 보내서 싸우는 이 때에 美國
 이 全的으로 稅納을 올리고 自己 먹을 것 쓸 것을 節約을 하고 機械廠에다
 가 밤낮으로 軍器軍物을 製作해 내서 나오는데로 여기에 들어오는 것입니
 다. 이래가지고 軍士를 全國的으로 募兵을 하는데 며칠안이면 四百萬大兵을
 만들기로 作定을 했습니다. 이때에 「맥아더」將軍이 考慮하고 앉은 것은 美
 國이 戰爭을 「유엔」 名義로 戰爭을 하고 앉아서 「유나이테이트·베이슨」 名
 義로 戰爭을 하는데 「유나이테이트·베이슨」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해
 가지고 退兵을 하느니 「캄푸로마이」의 所開을 해가지고 支障이 되는 것을
 美國當局에 있는 사람이 憂慮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맥아더」將軍의 決
 心과 「트루만」 大統領의 決心이 어떻다는 것은 다 아는 까닭으로 그분들이
 조곰이라도 우리에게 退兵이라든지 받을 뉘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나갈 것인데 다만 바라는 것은 다만 憂慮되는 것은 우리 韓人들의 態度
 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韓人들이 政府에서나 國會에서나 民間에서나 우리
 다 各各 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틈틈이 쥐구멍을 찾아서 내뺄
 예산을 하고 있으면 남의 나라 사람이 어떻게 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러므로 해서 내가 소리질르고 부르짖는 것은 六·二五 때의 情形과 지금과
 는 判異해서 우리 國軍이 二十萬大兵이 있어 가지고 熱烈하게 싸워나가는
 까닭으로 強兵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유엔」軍이 三十萬大兵이 있어 가
 지고 美國의 第一最新 新式으로 만든 軍器, 軍物은 다 여기에 나와서 떨어져
 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繼續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美國의 高等戰術家將校

들이 기반 다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해서 歐羅巴사람들은 걱정을 하면서 東洋을 쫓아 내 놓고 歐羅巴에 보내줘야 되겠다고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大勢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國防勢力이 이렇게 強靱한 邦人이 우리 民族性이나 海外的 도우는 勢力이나 이렇게 強하게 되어 본 적이 歷史上 없는 것입니다. 이만한 힘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恐怖心을 가지고 自己하나만 살어야 되겠다고 해서 뒤를 쫓아고 이리가고 저리가고 하는 것은 남 보기에도 창피하고 우리가 熱烈하게 싸워나갈 可能性이 없다고 하면 友邦들이 代身 싸워서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어주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國會議員 여러분이나 더구나 밤낮 나라를 위해서 努力하시는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各個人이나 全體가 나가서 民間思想과 精神을 鼓吹시켜서 우리가 中共軍이 들어오니까 다 죽는다고 이리저리 피해가는 것은 알된다고 하는 것으로 各各 諒解를 시켜서 하다 못한 竹槍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적軍이 들어오면 물리쳐야 되겠다는 決心을 가지고 鞏固히 우리 國軍의 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戰時를 當해 가지고 아무 다른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짧아서 이거서 나라의 命脈을 나라의 運命을 保存해야 되니 거기에 다른 異論이 없고 異論을 붙인다 하는 것은 無識하고 愛國心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適切히 이번에 開會하시거든 다른 些少한 생각들은 다 停止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軍人들의 앞을 保護해 주며 民衆들이 받아들여서 士氣가 돈돈해서 外國軍人들이 보기도 우리가 熱烈하게 해가는 것을 보고 걱정없다고 하고 우리 愛國精神을 내서 一層力 奮力해서 軍士도 더 많이 나오게 하면 우리에게 軍器, 軍物이 더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速히 올려 밀어서 鴨綠江 以北으로 밀어내고 그런 뒤에는 쓰련이 世界大戰을 決定하려고 하면 그때는 大戰이 鴨綠江 以北에서 나도록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計劃입니다. 나는 더 준비한 이야기도 없고 率直한 말을 여러분께 肝膽에서 나온 말을 여러분께 宣布하니까 이만한 決心을 가지실 줄 아니까 이런때에는 唯一한 目的을 먼저 가지고 더 많은 功勳과 推進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付託합니다.

檀紀 4283年 12月 20日

大統領 李 承 晚

閉會式辭

內외의 貴賓 여러분! 우리 議員同志 여러분!

오늘 第10回國會를 閉會함에 臨하여 簡單한 말씀으로 閉會辭를 드리려 합니다. 元來 定期國會는 그 主되는 任務가 豫算審議에 있으므로 豫算國會라 할 수 있으나 初創期에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審議한 案件이 山積하여 暫時도 쉴 틈이 없었고 不得已 會期를 3次나 延期하였습니다. 그러나 戰爭完遂 其他 時局的 要求인 모든 案件은 뒤를 이어 열릴 臨時國會로 넘기고 定期國會단은 一旦 閉會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會期中에는 尅대한 豫算審議를 爲始하여 國政監査, 副統候補關選舉, 幾多의 重要案件이 있었는데 우리 議員同志들은 全 會期를 通하여 眞摯한 討議와 慎重한 處理로 힘써 選良으로써의 任務를 다하기에 誠과 熱을 기울였음은 國民의 定評이 自在한 줄로 믿고 애오라지 自慰하는 바입니다.

戰時 特히 昨年 11月 中共侵入 以來에 或은 堂路의 過誤로 또는 計劃의 缺陷으로 不可抗力에 의한 悲慘 以外에 더욱 그 慘害를 增大한 일이 없지 아니한 點에 대하여는 國政의 監査와 峻嚴한 討究로써 責任의 所在을 究明하기에 힘썼고 其他 行政府의 非違에 대하여 匡正하기에 努力하였습니다.

特히 豫算審議에는 이 國政監査에 의한 行政府의 缺陷과 未備를 反映시키기에 힘써, 幾多의 修正을 加하였습니다. 尅대한 豫算 그 自體가 大體로 보아 國家의 收入面으로나 또는 國民의 負擔能力 등을 考慮할 때에 未安한 點도 없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國民의 머리 위에 賦課된 至上命令 戰爭勝利라는 唯一한 目的을 위하여 通過시킨 것이니 이 點이 豫算을 實行하는 政府로서도 特別히 慎重且細心한 注意를 하기 바라는 바입니다.

위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重要國政審議에 堂한 우리 議員同志들은 그 誠力을 다하여 왔고 特히 豫算審議때에는 그 任에 堂하여 不限不休 그 責任을 勵行한 우리 議員同志들에게 感謝와 함께 더욱 將來의 資로 삼으려 하는 바입니다.

더욱 모든 戰時的 要求인 許多한 重要案件은 다음 臨時國會로 미루고 이
로써 第10回定期國會를 閉會하는 바입니다.

檀紀 4284年 5月 30日

國會議長 申 翼 熙

第11回國會(臨時會)

開會式辭

이제 第11回國會 第8次에 걸친 臨時會를 開會함에 當하여 몇 마디 말씀으로 開會辭를 드리려 합니다. 第10回定期國會의 閉會의 뒤를 이어 臨時會를 열게 된 것은 여러 同志들도 다 아시는 바와같이 戰時國家로서 分秒를 다투어 精勵하지 않을 수 없는 超重大時局인 때문입니다.

定期國會에서 넘어온 時急히 處理하여야 할 戰時 重要案件을 本會期中에 審議하게 될 것은 勿論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歷史에 일찌기 없었고 全世界의 으로 보아도 그 類例가 없을 만한 反共戰爭을 進行하는 中이니, 戰勢의 變化, 情勢의 趨移로 생기는 모든 危局에 對處하여야 하겠읍니다.

우리나라가 全世界 民主陣營을 代表한 犧牲者로서 이 世界的 戰鬪에 登場하느니 만큼 全世界 14個國軍隊가 이 나라에서 우리 國軍과 함께 피를 흘리고 있으며 6.25事變以來 不過 10個月에 우리 편과 敵을 합하여 大略 近百萬의 死傷者를 내고 其他 非戰鬪員의 死傷者를 합하면 그 數는 百萬에 達한 것입니다.

일찌기 우리 反共戰을 指揮하던 聯合軍總司令官「맥아더」將軍은 “韓國國民의 慘狀, 敵軍의 野蠻的 虐殺, 罪없이 맞아 죽고 굶어 죽은 婦人·幼兒를 생각할 때에 가슴이 막힌다”고 그 나라 國會에서 證言한 것은 事實 그대로를 率直히 指摘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愛國青年들이 一線에서 피를 흘리고 넘어지는 反面에 一部 不正徒輩은 아직도 다 肅清되지 못하였고 國民道德은 頹廢와 惰落의 憂慮가 不無하여 戰爭을 싸고 틀며 增大하는 罪惡은 아직도 根絶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戰局의 前途는 容易하게 豫斷할 수 없어서 全世界의 大戰으로 언제 擴大될는지 모르니 이 때에는 正히 全民族으로 보아 生死興亡의 竿頭에

있으며 一步를 잘못하면 永遠히 救하기 어려운 深淵에 빠질 것입니다.

이 國際・國內로 空前의 難局을 當하여 우리는 祖國을 위하여 戰線에서 피흘리며 넘어지는 愛國青年의 죽음을 잊되게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子孫에게 恨을 千秋에 남기지 않기 위하여, 一線에서 銃劍을 들고 正義와 自由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듯이 우리 國政의 審議 또는 國政에 全生命을 걸고 피와 눈물과 땀을 바치는 것이 國民의 選良으로써 우리를 選出한 全國民의 期待에 孤負치 않는 所以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重要案件을 國民이 首肯할 수 있도록 處理하는 同時에 時時刻刻으로 變化하는 國際・國內의 모든 情勢에 適應한 對策을 세워 強力히 推進함으로써 기어코 勝利와 統一을 完遂하기를 盟誓하고 또한 約束하는 바입니다.

檀紀 4284年 5月 31日

國會議長 申 翼 熙

閉會式辭

이제 第11回臨時國會的 閉會에 臨하여 몇 마디 말씀으로 閉會의 辭를 베 풀러 합니다.

돌아보건데 過去 半年間 即 第11回臨時國會 全 會期 동안은 우리나라로다 는 그 運命을 左右하는 死活의 鬭爭을 繼續하였던 것입니다. 戰線에서는 이 나라 愛國靑年들이 위를 이어 祖國을 위하여 넘어지고 집을 잃고 衣食이 없어 거리로 流離하는 數百萬 避難民들은 飢寒에 못견디어 넘어지고 있으며 戰線에서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돌아오는 傷殘軍人들은 病院마다 차게 되는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나 解決을 것지 못한 중에 4284年은 지물려 합니다. 우리 國會의 모든 議員同志들은 이 悲痛한 現實에 가슴을 앓아가며 國民이 지워준 重大한 責任에 恒常悚懼하면서 議案討論에 孜孜히 씨웠던 것입니다. 그동안 各種 調查視察 및 其他로 若干 時日을 除한 外에 定期會인 第10回國會와 合算하면 거의 年中無休로 開會한 셈입니다.

本 臨時會는 會期 203日間에 113日을 開會하였는데 이 동안에 提案된 것이 227件, 討論된 것이 166件中 通過된 것이 136件이요 審議未了가 61件으로 戰時立法에 疏漏 없기에 힘썼으며 우리의 記憶에 남기기조차 不快하고 史上에 永遠히 汚點을 찍은 國民防衛軍事件, 居昌事件 등 不祥事에 대하여는 政府를 鞭撻하여 匡正과 肅清에 힘썼으나 그 어느 것 하나 國民의 滿足을 줄만큼 解決짓지 못한 것은 痛心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다만 戰時立法으로나, 國政의 非違를 匡正하는데나 비록 만족한 解決은 얻지 못하였을 지라도 그 어느것에 대하여든지 惓惓한 微誠을 다 하여 온 것만은 여러 議員同志들과 함께 애오라지 自慰하는 바이요, 國民大衆의 正當한 批判이 自在할 것입니다. 이제 4284年の 歲暮를 當하여 第11回臨時國會를 닫으려 하니 가슴에 萬感이 交集하여 그 말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臨時國會가 閉會한다는 것은 한 個의 形式이요 事實上으로는 明 20日로써 定期國會가 열리어 모든 未盡한 案件을 그대로 넘기어 討論하게 되었으니 여러 議

員同志들은 더욱 策勵하고 鼓舞하여 함께 討議에 힘쓰기를 約束하면서
第11回臨時國會를 閉會하는 바입니다.

檀紀 4284年 12月 19日

國會議長 申 翼 熙

第12回國會(定期會)

開會式辭

大統領, 政府 各 委員 여러분!

國會議員 여러분!

오늘 12月 20日 第12回定期會를 열게 되었습니다.

開會式에 臨해서 몇 가지의 所感과 見解를 披瀝하여 開會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4284年은 저물어가고 밝은 4285年을 맞으려는 이 때에 우리는 收復된 首都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1年前 南遷한 釜山 한 모퉁이에서 이 나라 明年 1年 동안의 모든 國策의 根源이 될 豫算을 審議하는 定期國會가 열리게 된 데 대해서는 痛恨과 感慨가 一層 깊은 바입니다.

밝은 4285年, 西紀 1952年은 여러가지 意味로 보아서 重大한 해입니다. 우리나라로서 모든 自由愛好民의 民主友邦과 함께 外敵을 驅逐하고 共匪를 討平하여야 하는 해인 同時에 全 世界로 보아서도 重大한 해입니다.

「마아셜」援助에 의한 歐洲의 經濟再建이 끝나는 해이고, 美國의 防衛態勢가 굳어지는 해이고 西獨과 日本이 各各 獨立을 回復하여 國際情勢에 새로운 勢力의 머리를 들고 일어서는 해이고, 西獨을 넣은 70個師團의 歐洲防衛軍이 編成되는 해이며, 地中海와 紅海를 거치어 中東防衛司令部가 設置되는 해이고, 中國 國民軍의 大陸反攻, 日本再軍備에 의한 새로운 登場 등 情勢는 一刻 非常의 重大性을 띠고 있는 터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冷戰이 어느 時間에 共產侵略으로 熱戰으로 變환는지는 누구나 豫測할 수 없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過去 1年 동안에 人類史上 그 類例가 없을 만큼 慘禍를 입었습니다. 數10萬 愛國青年들은 戰線을 퍼로 물들이면서 넘어지고, 數百萬의 避難民은 饑餓의 死線에 방황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外敵을 驅逐하지 못하고 叛徒를 討平하지 못하였으며, 우리 全國

민의 宿願인 國土統一이 못된 채로 板門店 停戰會談은 進行中에 있습니다. 우리 國民은 過去의 歷史를 보아서나 當面한 現實로 보아서나 平和愛好의 國民이요, 決코 好戰의 國民은 아닙니다. 그러나 最大念願인 國土統一에 一步의 前進도 없이 停戰을 하는 데는 우리 全 國民의 巨大한 犧牲을 돌아다 보아 贊同할 수 없는 바입니다.

「피의 값은 自由」인데 우리의 數10萬 愛國青年의 피는 果然 어떠한 값을 받게 되었습니까. 「유엔」의 政策下에 平和的으로 政治的 解決을 한다는 데에 누구가 反對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共産黨의 本質로 보아서 또는 이 때까지의 共産黨을 相對로 한 모든 國際會合의 結果로 보아서 그들은 欺騙과 兇謀로 一貫하였으니 이 平和的 解決의 可能性은 전혀 없다고 하여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政府와 함께 全 國民의 소리로 反對하여 왔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友邦美軍을 비롯한 모든 「유엔」軍의 死傷과 被害에 대하여 깊이 哀悼하는 바입니다.

비록 이 戰爭이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全 世界民主戰線을 위하여 싸운다 할지라도 그들이 꽃같은 青春을 이 땅에 와서 버리고 낫설은 이 땅에 묻히게 됨을 볼 때에 故國에서 悲報를 듣고 우는 父母와 함께 우리도 우는 것이요, 그들이 눈 쌓인 戰線에서 暫時 交代로 後方에 올지라도 貧弱한 이 나라로서는 따뜻한 慰安 하나 줄 수 없음을 슬퍼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主張하는 바이지만 「天은 自助하는 者를 돕는다」는 大義下에 우리가 비록 모든 民主同盟軍과 協同作戰은 할지라도 우리 國土에서 싸우는 戰爭에는 恒常 우리가 第一線에 나시고 그 最大한 犧牲은 우리가 擔當함으로써 우리가 그 主導的 地位를 차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祖國防衛의 大義를 위하여서도 그리하거니와 變하고 있는 國際情勢로 보아서도 또한 그러합니다.

비록 武器 其他 軍需는 도움을 입어도 흘리는 피는 우리가 前衛의 任務를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戰時下에는 모든 것이 戰爭에 集中되고 戰爭 第一主義로 나가야 할 것은 勿論입니다. 그러나 여러 議員同志도 諒察하심과 같이 現代戰爭은 總力戰이

나만큼 前線의 武力戰과 함께 後方의 經濟戰思想戰의 均衡과 比重을 어떻게 調和할 것인가에 대하여 慎重한 討議를 거듭하여야 할 것입니다.

定期國會는 언제나 豫算國會이지만 特히 이번國會는 위에 말씀한 戰時國策의 根幹이 될 尅大한 戰時豫算을 審議하는 것이니 만큼 그 任務의 重大性은 더욱 加重한 것입니다.

特히 明年豫算은 稅制의 重要變動을 일으키는 土地收得稅의 첫 試驗이요, 「유엔」貸與金이 漸進적으로 回收되는 해이니 이 新制의 運用과 漸進的 收入을 戰時豫算支出面에 어떻게 按配하느냐는 原則上으로 또는 技術上으로 자못 隘路와 困難이 許多할 줄 믿습니다. 여러 議員同志들은 倍前의 策勵로 이 重要任務를 遂行하여 國民의 期待에 孤負치 말고 史上未曾有의 重大困難을 打開한 것을 서로 서로 믿고 約束하면서 開會의 말씀을 끝맺는 바입니다.

檀紀 4284年 12月 20日

國會議長 申 翼 熙

大統領 致辭(第12回國會 開會式)

國會議員 여러분 國會 第12回 定期國會 날입니다. 議長께서 나와서 參禮 해 주면 좋겠다는 要請이 있고 또한 나로서도 國會議員 여러분을 만나 뵈은 지 오래이고 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兼 할 말도 있어서 나온 것입니다. 特別히 여러분께 말씀할 事項도 그리없고 또 特別히 여러분께 論議할 것도 없고 해서 아무 準備한 것 없이 그냥 잠시 여러분께 와서 祝辭나 하고 만나뵈려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 나왔으니 여러분들에게 致賀하고 싶은 것을 느낀 것은 戰亂中에서 우리가 다 罹災民으로 있어 가지고서 어려운 困難을 여러분들은 무릎쓰고 熱烈하게 해서 우리나라 民主制度를 해 나가는 國會가 正重히 이만치 해주신 것을 感謝히 여깁니다. 民主政治의 原則에 依해서 行政府와 立法府 사이에 늘 한 마음 한 뜻대로 다 나간데가 없고 또 따라서 서로 意見과 議論이 있는 것이 彼此에 切磋琢磨 해가는 程度로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서 그동안에 若干 問題가 있었지만 그것을 다 正當한 일로 한 것으로 우리는 諒解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外에는 重大한 問題로 衝突이 났거나 해서 行政府나 立法府 사이에 대해서 問題된 것이 없었고 따라서 對外的 問題에 對해서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政府와 協議까지 하는 뜻을 가지셔서 지난번 「씨즈 화이어」 停戰한다는 問題에 對해서 國會議員 여러분이 宣言해 준 것도 海外에서 남의 나라에서도 잘 알게 되어서 特別히 感謝히 여깁니다. 그 동안에 行政府에서 國會에서 通過해 가시는 일에 對해서 그것을 研究해 본다고 하면 行政府에 얹은 形便으로 그것은 不得한 境遇에 있어서 理論이 붙여지는 것이 있고 무슨 故意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예요. 行政府는 勿論 國會와 이 時期를 通해서 協同해서 重大한 問題도 討議해야 하겠다는 것을 計劃하고 그 方面에서 힘써 주시고 혹 誤解가 있은까 憂慮했던 것입니다. 勿論 國會에서 여러분이 많은 正重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서 國際問題에 關係되는 데에 조금이라도 對立되는 狀態라든지 서로 分裂되어가는 狀態가 없이 그만큼 해 주

신 것이 여러분의 意圖에 있었던 것을 行政府에 앉은 사람들은 다 고맷게
 생각하는 바이며 行政府의 사람들의 意圖가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은 그만치
 잘 諒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여러가지 點은 國會와 行政府와 協議해
 나가는 것을 힘있게 이야기할 것은 더 없으니까 다만 여러분이 아시는 바래
 로 憲法改正이라는 것은 그 前부터 憲法改正問題가 있을 때에는 무슨 이야
 기가 있었느냐 하면 大統領의 權限에 對한 것을 國務總理制로 해서 國務總
 理가 不信任이 될 때에는 總理가 잘린다고 하는 이 點을 여러분이 議論하신
 것을 내가 그 前에 이렇게 하면 國會와 政府세에 늘 對立이 되는 狀態가 海
 外로 播傳되어 가지고 또 따라서 政府가 定해가지고서 있는 그 機構를 變動
 하는 點이 많다고 해서 將來 影響이 있을 터이니까 그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表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因해가지고 改
 憲問題가 大綱되어 왔던 것인데 그 문제에 對해서는 나로는 이래요 國會議
 員 여러분이 憲法을 고쳐서 改憲을 해 가지고서 國務總理制로 해야 되겠다
 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絶對反對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改憲問題가 난다고 하면 어떤 改憲은 안하고 어떤 改憲을 하느냐 해
 서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 改憲을 한다고 하면 名目으로는 公
 式改憲이라고 하겠지만 實上에 本來 作定하려고 했던 것을 그것을 施行하자
 고 하는 것입니다. 憲法에다가 쓰기는 大統領을 國民이 選舉를 하고 兩院制
 를 만들어도 可하다고 한 것이 明文으로 써는 것은 없으나 지금 憲法委員들
 이 다 살아 있으며 그때 參席한 분도 잘 아실 터이니까 그때에 이와 같은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 合意가 되어가지고 憲法改正이 될터인데 時機가 없
 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그때에 重大한 關係가 많다고 해서 이것을 保管해 놓
 고 以後에 다시 改正하자고 한 것이예요, 그런 故로 해서 지금 그 憲法改正
 이라고 하는 것은 實上 憲法改正이 아니고 精神改正이 아니고 文句改正을
 하라고 하는 것이예요. 原法則을 따라서 하자고 하는 것이예요. 그러므로 해
 서 이것을 여러분이 重要視하고 民間에서도 重要히 봐요. 이것은 첫째 우
 리 民主制度라고 하는 것은 海內외의 輿論을 들을 때에 처음에 選舉한 그
 選舉方式이 外國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지만 稱讚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眞正한 民主制度를 쓰고 있어서 韓國은 東洋의 民主制度의 本位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를 우리는 듣고 있는 만치 지금 그 制度를 다시 만들어 내야 完全한 外國사람들이 韓國의 民主制度는 實上 完全한 制度로 되었다고 하는 그런 觀念을 우리가 들 수 있고 또한 따라서 한 便으로는 무슨 얘기가 있는고 하니 國會에서 이것을 禁止하고 있다 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國會에 제신 분이 權利에 關係해서 내놓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로 밖에 나가지 않고 여러분이 正當한 見解로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原則적으로 되겠다는 그 意圖를 再三 考慮해서 通過시켜 주시기를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아마 이 問題는 速히 制定해야 되며 또한 民間에서도 매우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些少한 問題가 아니더라도 原則만은 主張을 해서 速히 通過해 주시기를 나는 여러분에게 勸告하고 懇請하는 바입니다. 지금 얼마되지 않아서 新年을 맞이할 때에 나는 여러분에게 個人的으로 新年祝賀를 하려는 것은 올해에는 어떻게든지 南北을 統一해 가지고 다 遷都해서 지내는 것이 形便도 좀 낮게 되고 따라서 우리의 統一이 되어가지고 이 破壞된 나라를 다시 再建하는데 官民이 合作해 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新年祝賀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가지 請하고 싶은 것은 政府에서는 政府가 樹立된 以後 아직 完全히 成功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努力해 오는 것이 政府에서부터 是正을 해 가지고 民衆 全體가 醜陋하다는 것을 速히 없도록 만들어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政府에서 積極的으로 主張해 오는 것이며 또한 지금도 主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아직은 成功하였다고 볼 수 없지만 그 效果가 없지않을 줄 믿고 또한 여러분도 믿으시니까 清廉해가는 데에 政府當局만이 해가는 것보다도 全國民이 다 合心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清廉한 뜻으로 해나가는 것이 海外에 알려지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立法府하고 司法府하고 行政府사이에 서로 吹毛覓疵를 해서 이렇게 해서 서로 對立되는 것보다는 各各 自體안을 清明케 하고 清掃함으로써 저절로 和해서 海外가 우리나라 民主國은 世界 모든 나라中에서 아주 公正하고 清白한 나라라는 것을 主張해 가는 것을 海外가 確實히 諒解하도록 여러분

이 더 힘써 주시기를 付託하는 바입니다. 나는 이 말로써 그치고 國會에서
新年豫算을 잘 通過해 주시기를 바라며 새해에 萬福을 政府와 民衆의 여러분
이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이로써 祝賀합니다.

檀紀 4284年 12月 20日

大統領 李 承 晚

閉會式辭

滿堂한 貴賓 여러분! 國務委員 여러분! 第12回 定期國會는 오늘로서 閉會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定期國會는 年例에 의하여 昨年 12月 20日에 閉會된 以來 戰時豫算을 審議하는 것이 그 主되는 案件이었으나 國際 國內로 複雜한 情勢는 數次에 延期를 거듭하여 豫算會期보다 百餘日을 더 걸리어 오늘로서 閉會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定期國會의 本來의 使命인 豫算審議에 대하여는 一般·特別 會計를 합하여 2兆圓을 넘는 尨대한 戰時豫算을 議決하였으나 이것은 戰時下인 國家로서 避하지 못할 일이라 할지라도 이 豫算의 運營과 그 將來에 대하여는 警戒할 點이 許多하니 우리는 繼續하여 行政府와의 緊密한 協助가 要請되는 바입니다.

國際的으로 보아서는 지난 4月 28日로 列國의 對日講和가 效力을 發生하게 되고, 지난 5月 25日로서 對獨平和條約이 成立되어 極東과 歐洲에 各各 새로운 事態가 進展되고 있으며 우리의 直接 關係인 板門店 停戰會談은 그 本質上으로 國土統一의 希望이 稀薄한 點으로 보아 우리 國民들은 顧치 않은 바이나 우리의 單獨으로서 싸우는 戰爭이 아닌 點으로 隱忍自重하면서 그 進展을 注視하고 停戰線問題·捕虜問題·民間人釋放問題 등 部分的 여러 條件에 대하여 우리 國民의 意思를 그 會談에 反映시키기에 全力하여 왔습니다.

國內로는 食糧問題·物價問題에 쉬지 않고 關心하는 同時에 水利施設과 農地開發로 食糧難解消과 農村福利 增進에 巨額의 豫算을 傾注한 바입니다.

특히 議員同志 및 一般國民이 本會期中에 特別히 關心을 끌게 된 일은 지난 1월에 政府提出改憲案이 否決된 以來 國會議員召選에 대한 決議案을 爲始하여 憲法守護에 관한 決議案이 數次 있었고 또 本會期中에 審議未了로 다음 第13回臨時國會로 넘어가게 된 政府提出改憲案과 國會提出改憲案 등은 우리 國民 相互間에도 議論이 區區한 바입니다.

우리는 國民의 代表로서 毅然한 態度로 國家의 基本法인 우리의 憲法을

守護하는 同時에 日新하는 情勢에 最善의 解決을 期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에 幾多의 波瀾을 겪으면서 때로는 許多한 傷心事를 참으면서 終始一貫 議
案 討議에 眞摯한 誠意를 傾倒한 議員同志 여러분에게 衷心으로 感謝하는
同時에 審議未了한 案件은 明日로 열리는 臨時國會에서 더욱 더 至誠을 기
울이어 審議하여 주실 줄로 믿고 또한 期待하면서 于先 本 定期國會의 閉會
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檀紀 4285年 6月 30日

國會臨時議長 曹 奉 岩

大統領 致辭(第12回國會 閉會式)

國亂을 당하여 民國의 安危가 切迫한 이時期에 政治上 派黨으로 多少間 混亂이 있게 된것은 一般이 다 크게 痛嘆하는 바입니다. 이爭論의 要點을 大統領直選과 兩院制에 對한 改憲問題인데 이것이 全民族의 同一한 要求임으로 이것만 國會에서 通過되면 다른問題는 順序로 解決하기를 圖謀한 것이므로 各道郡民衆代表들에게 公開로 要請해서 數日間이면 이것이 通過될 希望이 있으니 時日을 許諾해달라는 懇請으로 民衆이 忍耐하고 기다려온지가 여러날이 되었고 國會議員 여러분중에 이에 對해서 努力한 분들이 여러분인줄 아는바이나 아직까지 通過가 못되고 民衆代表들은 大統領에게 強請하기에 이르러서 人心이 날로 激昂해가는 中에 反對分子들은 各種流言蜚語로 人心을 煽動시키고 있어서 時日이 갈수록 더욱 危險性을 느끼게 되는 故로 지금은 더 기다릴 수 없어서 民意를 따라 斷行하는것이 本大統領의 職責으로 覺悟하고 不日內로 公布될 것인데 어떤 方式으로 執行하자는 것은 아직 完定이 못되었으나 더 遲延한 수 없는 事實은 變動하기 어려우니 國會議員 諸氏中에도 民國을 危亂에서 保護하며 民族을 患難에서 救濟하자는 愛國公心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各各 自己의 私私意見과 觀察이 다를지라도 같은 步調로 다같이 해나가서 轉禍爲福하는 功勞를 貢獻하시도록 主張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檀紀 4285年 6月 30日

大統領 李 承 晚

第13回國會(臨時會)

開會式辭

오늘 第13回臨時國會가 열리는데 臨하여 두어마디 말씀으로 開會辭를 드리려 합니다.

本會期에서는 審議未了된 委員會 付託의 94件의 審議도 繼續하러니와 最大關心의 案件은 政府와 國會에서 各各 提出한 두 가지 改憲案의 審議表決과 이에 關聯한 大統領選舉法案 등입니다.

이 두가지 案件은 우리 國家百年의 大計를 決定하는 重大案件인 同時에 마침 「유엔」諸國과 滅共戰爭이 한창 進行되는 中이라 國際의 關心과 耳目도 集中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國家의 前途를 위하여 또는 이 當面한 大戰爭의 完遂를 위하여 이 重大한 案件을 國民에게서 받은 重大한 受任에 孤負치 않고 秋毫만치라도 偏頗에 기울어짐 없이 全國民의 期待에 맞도록 議決하여 後悔를 千載의 後에 남기지 않게 되기를 여러 議員同志와 함께 約束하고 期待하는 바입니다.

더욱 現下의 情勢로는 「유엔」의 忍耐와 誠意의 보람 없이 凶毒한 侵略者인 敵들은 功勢를 準備하고 있어 우리 國家는 正히 危急存亡의 竿頭에 서 있으니 前線의 整備와 後方의 民生 및 戰力培養에 舉國一致로 總力을 傾注하기 위하여 하루바삐 政局을 安定시키어 民心을 歸一케 하는 것이 時急히 要請되는 바입니다.

여러 議員同志는 더욱 至誠을 기울이어 嚴肅하고 眞摯하고 또한 權威있게 進行하여 審議決定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簡單히 이 開會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檀紀 4285年 7月 1日

國會臨時議長 金 東 成

閉會式辭

오늘 第13回臨時國會 閉會式에 臨하여 簡單한 말씀으로 閉會의 辭를 戒 줄려 합니다. 7月 1일부터 오늘까지 72日 동안 會期로서 그리 긴 것은 아니나 이 동안 處理한 인로는 우리 憲政史에 時期를 劃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法律案으로 憲法改正案, 大統領·副統領選舉法案의 通過 등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大統領·副統領을 國民이 直接 選舉하는 基礎를 놓은 것이며 戰歿軍警遺族 및 傷殘軍警年金案 通過는 나라를 위하여 犧牲한 분들에게 救護의 손을 펴게 하려는 것입니다. 此外에 水聯과 電業의 融資에 同意한 것은 基本事業을 促進하려 함이요 유엔總會에 代表派遣建議와 海外親善使節團 派遣決議는 國民外交를 通하여 國難을 打開하려는 것입니다. 또 行政府의 過誤를 指摘匡正하기 위하여 糧穀과 肥料에 關聯한 重石弗의 弗下 및 用途에 대한 것을 調査究明하기에 힘썼습니다. 우리는 前 會期의 波瀾의 뒤를 이어서 法案 通過決議에도 許多한 傷心事가 없지 아니하였으나 오직 未曾有의 國難임을 돌아보아 큰 破綻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局面을 收拾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誠實과 忍耐로서 一貫한 것은 오직 國家民族을 위하여 眷眷한 誠意를 다 한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未盡한 案件을 次期國會로 미루고 閉會中에 여러 議員 同志들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끊임없이 奮闘하기를 미는 바입니다.

檀紀 4285年 9月 11日

民議院議長 申 翼 熙

第14回國會(臨時會)

開會式辭

오늘 第14回臨時國會를 열게 되는데 臨하여 簡單한 몇마디 말씀으로 開會辭를 드리려 합니다. 議員 同志 여러분은 第13回臨時國會의 閉會와 함께 各 各 選舉區 또는 其他 各 地方을 巡廻하시며 國民의 苦痛과 輿論이 무엇임을 많이 視察調査研究하셨을 터이므로 이런 會期에도 應當 많은 反映이 있으리라 믿읍니다마는 臨時國會는 從來와 같이 議員의 要求에 의한 것이 아니라 第5回臨時會도 大統領의 集會要請이 있음에 의하여 열게 된 것임은 우리 國會가 생긴 以來 첫번째인 點으로 一層 特異한 바입니다.

政府에서 臨時國會를 열고 審議를 要請한 案件으로는 參議院議員選舉法案, 捕獲審判令緊急命令承認의件, 財政緊急處分承認의件, 國務總理指名에 대한認准의件 등입니다.

그 어느 것이나 對內 對外로 重要案件이지만 特히 國務總理認准의 件은 우리 憲法을 改正한 後 最初의 指名으로서 그 任務와 權限이 擴大된 性格으로 보아 一層의 重要性을 띄우는 것이니 만큼 여러분의 慎重 또는 公正한 表決을 要請하는 바입니다.

前線의 白馬高地에서는 낮이나 밤이나 우리 愛國軍人들의 피의 戰鬪가 繼續되어 全 世界의 感激이 集中되고 있으며 「뉴욕」에서 昨 14日부터 열리는 「유엔」總會에서는 우리 韓國問題가 가장 重要한 案件으로 上程되리라 합니다.

우리는 이 國際會議에 當然 또는 正當히 우리의 피의 값을 呼訴하여 全國民의 宿願인 統一自由獨立 戰取에 最大의 努力을 傾注하여야 하겠읍니다.

이번 國會에는 政府에서 提案한 案件 以外에도 議員이나 또한 政府에서 提出한 議案이 許多히 있으리라 믿읍니다마는 臨時國會는 그 性格上 于先 開會, 審議를 要請한 案件에 대하여 審議하고 一旦 閉會하는 것이 常例일 뿐 아니라 오는 12月인 約 2個月을 앞두고 열릴 定期國會를 考慮하여 이번

에는 于先 要請된 案件審議에만 集中하여야 할 것을 附言합니다.

戰時下 大統領의 要請으로 일리는 臨時國會에 臨하신 여러 議員同志의 加
一層의 努力으로 審議를 進行하여 주시기를 期待하면서 이 開會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檀紀 4285年 10月 15日

民議院議長 申 翼 熙

大統領 致辭(第14回國會 開會式)

國會가 閉會한 동안에 緊急한 問題가 생겨서 定期開會時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臨時開會를 要請한 것은 甚히 未安한中 이와같이 迅速히 開會해 주신 것을 感謝하는 바입니다. 爲先 緊急한 것은 이 戰爭中에 있어 軍事費에 免할 수 없는 追加豫算과 또 따라서 各部의 切迫한 事情으로 不得已 追加豫算을 要求하게 됨으로 時日을 遲滯키 어려운 境遇에서 特別案件을 提出하오니 速히 通過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緊急한 것은 國務總理 認准問題인데 無任所長官으로 오대동안 奉仕한 李允榮氏를 任命코저 이에 指名하였하오니 國會에서 速히 認准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거번 國會에서 改憲案을 通過한 後로 兩院制를 實施해야 憲法의 條理를 따라서 進行이 되겠음으로 法案을 簡略히 制定하여 提出하는 바이니 이것도 速히 通過해 주실 줄 믿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는 國會議員 中에 共產黨에게 잡혀간 여러분이 있는데 그 死生을 判斷하기 어려운 中이요. 또 살아있어도 얼마 안에 돌아오기를 期約하기 어려운 바 至今까지 缺席으로 지내온 것은 不得已해서 끌어왔으나 이제와서는 遲滯하기도 어렵고 또 遲滯할 수도 없으니 곧 補缺選舉를 實施키 爲해서 若干 法案을 提出하오니 이것도 異議없이 通過될 줄 아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緊急한 問題로 부질 것은 아니나 既往에 오랜 時期를 가지고 밀어왔으며 더 延期하는 것은 不可할 듯 함으로 여기 兼해서 提出합니다. 卽 우리나라 古物을 世界에 宣傳하자는 것을 여러가지로 運動하였으나 모든 障害가 層生疊出하다 只今은 우리 國會 認准이 있으면 좋겠다는 言論이 있으니 既往 準備한 것을 海外에 陳列시키도록 同意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와이·꼭」 博物館과 美州 「하바드」 大學에서 우리 돈도 들지 않고 陳列시킬 수 있으며 그 後에도 우리 經費를 안 가지고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우리 主管하는 사람이 시종 말아 할 것이오니 아무 念慮마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慘酷한 亂離가운데 우리 軍人들이 猛烈히 싸워서 世界에서 稱讚하며 우리 國軍을 大擴張하기로 公論이 돌아가고

있으니 이런 때에서 우리 後方에 있는 國民으로는 官民合同으로 支持를 받
는 行政府와 立法府가 다 같은 步調로 나아가서 速히 統一을 完遂토록 서로
努力하기 바랍니다.

檀紀 4285年 10月 15日

大統領 李 承 晚

閉會式辭

오늘 14회臨時國會를 閉會함에 臨하여 簡單히 閉會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번 臨時國會는 特히 戰爭에 隨伴되는 今年度 追加更正豫算案 其他의 法案審議를 위하여 政府의 要請으로 열렸던 것입니다. 追加更正豫算案은 1兆 8千613億圓이라는 龍大한 것으로 戰爭遂行을 위한 絶對的인 것이라 이 審議通過에 議員同志들은 많은 考慮와 論議를 거듭하여 이를 通過하였던 것입니다.

元來 臨時國會는 그 本質上 豫定한 案件審議에 그치는 것이 原則이나 多難한 戰時下이라 2次나 會期를 延長하여 滿 2個月 以上에 걸치어 38次의 本會議를 열고 「유엔」援助의 運用에 관한 特別會計法案, 中小商工業育成을 위한 商工會議所法案을 通過시키어 濟徑力 培養에 資하려 한 바입니다.

特히 農地法中改正法律案은 農民에 關係되는 바 큰 것인데 僅少한 票의 不足으로 通過치 못하였으며 立稻先賣에 대한 融資法案은 通過는 되었으나 그 時期의 關係로 充分히 效果는 올리지 못한 것을 回顧하면 많은 遺憾을 남긴 것입니다.

其他 重石弗事件이 아직 司法府의 裁量中에 있어 國民 앞에 그 眞相이 闡明되지 못하였고 國務總理의 認准이 두번이나 通過되지 못하였으며 在外使節의 失言問題에 대한 糾彈 등 國民의 代表機關인 立法府로서 匡正의 實을 明白히 具現되지 못한 것은 또한 釋然치 못한 感이 있는 바입니다.

今 會期 休會中에 多數한 議員同志들은 或은 一線 將兵을 慰問하고 或은 國民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各地를 巡廻하였고, 或은 軍事機關을 視察하고 避難民收容所를 訪問하였으니 應當 많은 資料를 蒐集하였을 줄 믿습니다.

第14회 臨時國會는 오늘로써 閉會되나 明 20日로서 定期國會가 열리는 터이니 모든 未盡한 案件과 休會中에 蒐集한 資料는 定期國會에서 充分히 開述 討議 討議되기를 期待하면서 이 閉會의 말씀을 마감하는 바입니다.

檀紀 4285年 12月 19日

民議院議長 申 翼 熙

第15回國會(定期會)

開會式辭

內外貴賓 여러분! 議員同志 여러분!

오늘 第15回定期國會에 臨하여 몇 마디로써 所感を 披瀝하여 開會의 말씀으로 드리려 합니다.

定期國會는 元來 當該 年度의 豫算審議로써 그 主되는 任務를 삼으므로 定期國會 即 豫算國會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컨대 今年은 戰時 祖國의 前途에 있어서 그 意義가 一層 重大한 해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善隣友邦인 美國은 明年 1月 20日로서 「아이젠하워」 新大統領의 就任과 함께 政府의 關係가 一新하여 獨特한 見地에서 새로운 極東政策을 세우려 하고 西隣 中共은 오히려 暫定的 休戰案조차 拒否하여 그의 宗主國인 蘇聯과 함께 平和에 대한 一片의 誠意조차 認定할 수 없으며 東隣 日本은 反共이라는 口實下에 再軍備論이 有力하게 擡頭하여 昔日의 禍心을 오히려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國際的 暴風雨속에서 지난 12月初 「아이젠하워」 美國 新大統領의 韓國訪問은 敵에 대한 和戰의 基本을 決定하는 同時에 極東諸國 相互間의 摩擦을 調整하여 太平洋의 거칠은 물결을 鎮定시키는 同時에 集團的 安全保障의 礎石을 놓으려는 것으로 推測되는 바입니다. 우리는 史上 曠古의 戰亂中에서 三千萬國民이 言語에 絶하는 苦難을 겪는 중에 있습니다. 그 當하는 苦痛의 深刻함으로 보아 平和를 渴望하기로는 우리 國民은 世界 어느 國民에게 뒤지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으로 國民의 生存과 繁榮을 위하여서나 밖으로 國際的 平和와 正義를 위하여서나 限 없는 虐殺과 奴隸化인 共產侵略을 斷然容許할 수 없고 까닭 없이 蹂躪된 主權과 強占당한 領土는 斷然코 收復되어야 합니다.

最後 1人까지 이 國民的 念願인 祖國의 統一과 民主樹立이 成就하기까지는 싸워야 한다는 것을 敬愛하는 議員同志들과 함께 誓言하는 바입니다.

豫想컨데 明年度에 政府가 提出한 豫算도 이 大義에 立脚하여 編成되었을
것이고, 우리의 審議도 또한 이 大義에 立脚하여 進行되리라 믿습니다. 이
것은 當面한 重點을 말씀한 바이어니와 우리는 언제나 大局的 着眼에 疎忽
히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힘을 戰勝에 集中한다 할지라도 後方의 治安은
維持되어야 하고 民力의 源泉인 產業은 培養되어야 하고 모든 힘의 源泉인
國民教育은 不屈의 努力으로 傾注하여야 하고 모든 戰災를 입은 同胞의 救
護와 破壞된 戰災地의 復舊는 推進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部面에 대한 輕
重의 評定과 緩急의 審査와 그 比率의 配定은 慎重 且 至誠을 기울여야 하
겠습니다. 國民의 付託을 받은 우리 議員 一同은 眷眷한 誠意로써 이 重務
의 完遂를 위하여 힘을 다할 것으로서 策勵한다는 말씀으로 이 開會의 말씀
을 끝맺는 바입니다.

檀紀 4285年 12月 20日

民議院議長 申 翼 熙

第16回國會(臨時會)

開會式辭

오늘 第16回 特別國會를 開會함에 當하여 몇 마디 말씀으로 開會辭를 드
리려 합니다. 여러 議員同志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板門店休戰會談에서 進
行되는 休戰案이 世上에 宣傳하는 바와 같다면 이것은 우리 全 國土가 廢墟
化하고 三千萬同胞가 形言할 수 없는 苦難을 받으며 數拾萬 우리 愛國青年
이 4年餘에 걸쳐서 흘린 汗을 짓밟는 것이고 우리 國民의 意思와는 全然 背
馳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全 民族의 念願인 國土의 完全統一과 自由享有를 위하여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決死鬪爭할 것을 覺悟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며 이것은 國民
의 代表인 우리들의 當然한 義務가 될 것입니다.

지금 國際情勢는 時時刻刻으로 轉變되면서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精力을 集中하여 이에 對處하여야 할 것이며 三千萬의 眞實
한 民意를 率直하고 大膽하게 表明하고 代辯하면서 이 國難打開에 挺身하여
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荒廢의 極에 이른 農村과 飢饉에 쓰러지는 農
民을 위한 緊急措置와 歲入不足의 財政運營에 대하여는 行政府와 緊密한 協
調과 協力이 있어야 할 것이며 審議未了의 諸法案과 建議 등도 今 會期에는
全部 處理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未曾有의 國家의 重大危機에 當하여 우리 議員同志들은 國民의 期待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奮闘 하기를 서로 서로 約束하면서 더욱 精勵하여 주시
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檀紀 4286年 6月 3日

民議院議長代理 曹 奉 岩
副 議 長

閉會式辭

第16回臨時會를 閉會함에 臨하여 및 마더 말씀으로 所感을 披瀝하여 閉會辭를 드리려 합니다.

지난 5月 末日로써 定期國會를 끝나치고 6月 4日에 臨時國會를 開會한 以來 會期를 세 번이나 延期하여 日數로 5個月에 걸치고, 日數로 130餘日이 걸리어 이제 閉會하게 된 바입니다.

回顧하건대 本 會期間이 우리 國家로서 多事多難하였던 때는 드뭅니다. 5月末 定期國會는 閉會되었으나 韓國戰線을 둘러싸고 國際的 壓力은 날로 加重하여 오고, 統一없는 休戰協商은 依然 進行됨으로 國民의 代表인 國會로서도 一刻의 晏然을 許할 수 없어서 다시 臨時國會를 열고 國家的 危局에 對備하는 同時에 休戰對策委員會를 組織하여 行政府와 協力一致 國難打開에 힘써 왔습니다. 特히 6月 9日에는 統一과 安全保障 없는 休戰反對, 反共捕虜의 釋放 主權을 侵害하는 外國軍에 대한 自衛權發動, 再侵防止와 北進統一의 緊急措置 등을 政府에 建議하였었습니다.

이 建議가 있는 以後 大統領의 英斷으로 6月 18日부터 우리의 愛國反共捕虜釋放의 功의 犧牲을 무릅쓰면서 實現되자 敵側의 發惡은 勿論, 全 民主世界까지도 激動하였던 바입니다.

國會는 政府와 함께 「유엔」과 友邦諸國에 統一없는 休戰을 反對하는 國民의 眞意를 끊임없이 傳하였지만 우리의 願치 않는 休戰協定은 7月 27日에 마침내 成立된 것입니다.

敵의 再侵을 防止하려는 韓·美防衛條約 締結을 前後하여 友邦의 政府와 國會의 要人들이 頻繁히 올 때마다 國會는 우리 國民의 意急를 傳達하기에 힘썼고 東獨의 反共鬪爭에는 激勵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日本의 獨島占據에는 政府에 自衛權發動을 建議하였던 바입니다. 立法으로는 그 中 重要的 것을 들면 刑法案의 制定, 水產業法의 制定, 土地收得稅法中的 改正, 歸屬 財產處理法中的 改正 등으로 國家의 安泰와 國民의 福利增進에 힘써 온 것

입니다.

이 國家多難한 中에도 몇 個의 不祥事가 없지 아니하였으니 糧穀無指令配
給事件, 光州·麗水通匪事件, 政府顛覆陰謀事件 등으로 이에 대하여 國會는
調査委員會를 構成하여 그 正體를 究明 匡正하기에 힘써 왔습니다.

나는 지난 5月 18日에 金東成議員과 함께 英國「엘리자베트」女王 戴冠式의
參加와 援助友邦親善訪問으로 떠나서 이 國家多難한 때에 오대 曠職하였던
것은 議員同志에게나 一般 國民에게나 참으로 未安하고 罪悚스러운 바입니
다. 그러나 友邦의 招待를 機會로 우리를 援助한 各國을 歷訪하여 謝意를
表함은 일적이 國會에서도 決議한 바 있었고, 또 이번 訪問을 契機로 統一
없는 休戰反對와 愛國捕虜自由釋放에 대하여 간 곳마다 힘써 強調釋明하였
음은 民命을 辱되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애오라지 自慰하는 바입니다.

나의 曠職中에 曠·尹 두 副議長을 비롯하여 여러 議員同志들이 苦難을
무릅쓰고 國政審議에 힘써 주신데 대하여는 衷心으로 感謝하는 바입니다.

審議未了와 委員會 付託의 모든 案件을 不遠에 열리는 臨時國會와 오는
定期國會에 一層 加重의 努力을 傾注하여 審議하기로 하고, 6月 4日 釜山에
서 열리었다가 지난 9月 22日부터 서울로 遷都하여 繼續하여 열렸던 第16回
臨時國會는 이로써 閉會하는 바입니다.

여러 議員同志들의 如一한 健康과 奮闘를 비는 바입니다.

檀紀 4286年 10月 21日

民議院議長 申 翼 熙

第17回國會(臨時會)

開會式辭

第17回臨時會의 開會式에 臨하여 두어마디 말씀으로 開會辭를 드리려 합니다.

이년의 臨時國會는 주로 政府에서 提出한 追加豫算案의 審議, 秋穀買上價格의 同意, 參議員選舉法 其他 16回臨時國會에서 審議未了 또는 委員會에 付託한 法案을 審議하기 위하여 열게 된 것입니다.

現下 板門店에서 열린 政治會議의 豫備會談에서 敵 共產側은 「유엔」總會에서 이미 決定된 參加國構成問題를 再然시켜 印度와 蘇聯을 所謂 中立國으로 參加시키기를 提案하고 있는데 敵의 陰謀를 輕輕히 豫斷하기 어려운 所謂 中立國이란 名目으로 親共國家를 내세워서 政治會議를 最大限으로 利用하는 外交戰術을 쓰려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法理上으로도 國際情勢로나 到底히 容認할 수 없는 中立國參加案을 提唱함으로써 政治會談을 無期延期하는 中에 武器와 軍需品을 集結하여 再侵을 準備하는 등 두어가지일 것입니다.

이 危難한 中에 열렸던 韓·日會談은 日本 代表의 暴言으로 中斷되었다 하나 그 後 日本 朝·野의 態度를 보건대 바야흐로 急한 反共戰爭의 切迫과 民主國家의 慰撫에 聲勢를 얻은 그들은 오히려 前 日의 帝國主義의 惡夢에 戀戀하여 反共戰爭 한 가운데서 형극의 길을 걸어가는 韓國의 不幸을 利用하여 幸人之不幸으로 그들의 이른바 「火災 난 마당에서 強盜질이나 좀 하자」는 兆朕이 없지 않습니다.

이 多難한 中에서 우리 國會는 行政府와의 協同一致를 圖謀하여 거미줄같이 얽힌 모든 困難과 隘路를 全 國民이 輿論을 結束하며 反映 打開하여야 할 바입니다.

本 會期中에서 審議豫定인 主要案件以外에 모든 危難한 國際情勢對處에 여러 議員 同志들은 協心戮力, 最善을 다하시기를 빈다는 말씀으로 開會辭

문을 끝맺는 바입니다.

檀紀 4286年 11月 10日

民議院議長 申 翼 熙

閉會式辭

오늘로써 第17回 臨時國會를 閉會하게 되었으므로 몇 마디의 閉會辭를 드
리기로 합니다.

이번의 臨時國會는 이 나라 國民의 多大數인 農民과 重要한 關係가 있는
秋穀買上의 價格決定과 參議員選舉法 등 其他 重要案件審議를 위하여 法定
數 議員 여러분의 召集要求로 열렸던 것입니다. 臨時國會는 會期 19日 豫定
이었으나 國際·國內로 多事한 이 나라의 政情은 會期를 延期하여 定期國會
開會期日이 明日로 迫頭한 오늘로써 閉會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會期の 主되는 案件인 參議員選舉法과 秋穀買上案을 國會의 所信대
로 審議通過한 外에 今後의 戰災復興과 關聯 있는 韓國產業銀行法案, 3面環
海의 漁業資源保護法案 등을 通過한 것이 顯著한 것입니다.

土地改革法中改正法律案의 金納制와 歸屬財產處理法中改正法律案의 緣故
者優先認定 등은 行政府와 見解의 差異가 있었으며 國民 사이에도 意見이
區區하였으나 國會로서는 이것이 產業向上과 民力培養에 가장 必要하다는
信念下에서 所信대로 處理한 바입니다.

韓·日會談에 대하여는 毅然한 態度로 나가기 위하여 行政府를 激勵하였
으며 拉致民間人家族의 懇切한 心願을 代辯하는 同時에 全世界 人類의 良心
에 呼訴한 바입니다.

눈을 國際情勢에 돌리건대 12月 4日에 열리었던 「버뮤다」會談에서는 民主
陣營의 結束을 強化하였다 하나 그것이 우리 韓國問題에 具象 實現하기까지
에는 아직도 幾多의 波瀾이 重疊할 것이요, 政治會議을 위한 板門店 豫備會
談은 敵의 無理한 主張과 暴言으로 中斷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議員同志들은 各各 末端行政의 國政을 監査하는 同時에 國民意思
의 所在을 把握하기 위하여 10餘日 동안 精勵하였으니 17回 臨時總會에서
미처 審議치 못한 모든 案件과 함께 再明 21日로써 일리는 定期國會에서
一層의 努力을 傾注하여 開陳 審議하시기 바라면서 이 閉會辭를 磨勵하는 바

입니다.

檀紀 4286年 12月 19日

民議院議長 申 翼 熙

第18回國會(定期會)

開會式辭

滿堂한 內外貴賓 여러분! 議員同志 여러분! 오늘로써 第18回 定期國會는 열렸습니다. 定期國會는 豫算國會이고 오는 1年 동안에 이 나라의 모든 施策을 어떻게 豫算面에 反映하고 具現할 것을 決定하는 會期입니다. 더욱 이런에는 財政法中 改正法律案이 上程되어 우리나라 會計年度를 每年 6月末까지로 하려는 것이 討論될 것입니다.

이案의 付託을 받아 審議中이든 豫算決算分科委員會의 說明도 있겠습니다. 마는 大體로 보아서 많은 歲入不足이 우리의 戰時下 財政을 友邦 美國의 援助에 期待하는 바 많은데 美國의 會計年度가 6月末로 되었으므로 이와 步調를 맞추려는 것이 當面現實의 要求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우리 國家의 歲入과 歲出의 按配로서 보는 角度도 있을 것이니 細心한 檢討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暫定的 休戰은 되었으나 終戰이 아닌 戰時國會로서 열리는 이런 定期國會는 敵의 再侵防止와 國土의 實力統一을 前提하고 모든 것을 國防力 增強에 重點主義로 나가야 할 것은 勿論이나 戰災復興과 傷喪軍人 및 戰死者 遺家族의 援護는 一瞬의 放心도 不許하고 舉國의 精力을 傾注하여야 할 것입니다.

韓國戰線에 參戰한 列國들은 共產黨과의 政治的 手段으로 韓國統一을 完遂한다 하니 우리로서는 國際的 協助精神에 依하여 어느 期間까지 休戰을 妨害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共產黨의 本質 蘇聯의 國民性 및 그들의 世界政策을 잘 알고 있으므로 많은 기대도 가질 수 없고 오직 國防과 生産力 增強에 邁進하는 國力の 充實만이 國土統一 安全保障의 힘이 된다는 見地에서 今年度 豫算도 編成되고 또는 運營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2月 4일부터 열리었던 「버뮤다」 會談은 民主陣營의 結束을 強化하

였다고 하나 強大國 사이에도 國情의 相異는 만드시 步調가 一致하는 點도 없지 아니하고 때로는 自己 발동의 불을 끄기에 더 注力하는 兆候도 있습니다. 東隣에 近視眼的 軍國主義再現의 念慮가 있고 西北으로는 共產侵略의 強隣을 가진 우리 韓國의 國步가 또한 艱難한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사람 말에 多亂興邦이라는 말을 聯想하여 이 모든 困亂을 天이 우리 國民에게 주는 試鍊의 하나로 알고 더욱 舉族的 團結으로써 前途를 對備하여 이 나라 千年의 大運을 決定할 때이라고 믿습니다.

議員同志 여러분은 國家의 施策과 國民의 負擔을 調整하여 豫算國會의 實을 擧함으로써 國民의 期待에 副應하도록 할 줄로 믿으면서 同志들의 倍前의 努力을 믿는 말씀으로 定期國會의 開會辭를 드립니다.

檀紀 4286年 12月 21日

民議院議長 申 翼 熙

閉會式辭

來賓 여러분! 그리고 우리 國會議員 同志 여러분!

오늘은 第18회의 國會 이 國會의 閉會式을 舉行하는 날입니다. 回數로는 이 우리의 國會가 第2代 國會議員으로서 第18회의 國會로 차례를 세고 있지만 이 第2期 우리 國會議員들은 오늘까지 아마 會議에 出席하게 되는 것은 全4年의 任期를 通해서 最後의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야 萬一 緊急한 問題가 있다든지 해서 다시 또 會議을 召集한다는 것은 例外일 것입니다마는 正常的 經過로 말하면 앞으로 5.20選舉를 끝마친 다음에 다시 召集되기까지는 아마 國會는 다시 會議을 열지 않을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例의 閉會式이라 하면 참 그야말로 式辭를 드리면 또 足하겠지만 任期가 滿了되는 이 18회의 閉會式이니 만큼 두어마디 말씀을 여느式 모다는 좀 다르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4年 동안을 通해서 우리 國會議員 同志들은 國利民福을 增通하는 基盤의 目的을 위해서 많이 努力하신 여러분으로 本 議長은 깊이 믿어서 疑心치 않습니다. 人間社會의 이 功過의 表彰이 宜當한 일이지만 自己의 主觀이나 或은 觀念的인 이야기가 아니라 客觀이나 다른 者로 볼때에도 아마 適當한 批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期間으로 보아서 民主主義의 生活을 開始한지 얼마 안되는 우리 大韓民國, 모든 가지의 訓練과 經驗이 그렇게 豊富하지 못한 우리 國會議員同志 여러분! 다같이 最上의 힘을 썼다고 할망정 所期의 業績이 없다고 하는 것도 또한 免치 못할 事實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本心으로서 最上의 힘을 다 해서 어떻게 하면 民族에게 福이 되겠느냐 하는 큰 目的을 위해서 우리의 살길인 民主主義를 志向하여 努力해 온 것은 事實입니다. 이 자리에 不肖한 나로서 오랫동안 議長이라는 地位에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努力하며 같이 協力해서 나가도록 하는데에 自己의 있는바 모든 가지는 다 바쳤다고 할망정 또한 이렇다 할만한 成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스스로 罪悚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 同志들에게 未安하게 생

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앞으로 오는 總選舉에 있어서 우리 現 國會議員으로 있는 여러 同志들 가운데에 다시 立候補해서 國會에 오려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적지 않은 數效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가지의 成功이 우리 다시 立候補해서 國會로 오려고 하는 同志들에게 와 주기를 懇切히 바라고 또 祝講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目的은 國會에 있으나 國會에 있지 않거나 國家民族을 위해서 우리의 있는 힘을 다 드리겠다고 하는 때에는 差別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民主國家의 國民의 代表로 議政壇上에서 모든 가지의 國策을 議論하게 되며 모든 가지의 法律을 制定하는데 있어서 많은 努力을 하신 우리 議員同志들 過去 4年 乃至 6年이란 經驗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많이 다시 國會에 들어 오시기를 懇切히 나 個人 뿐만 아니라 어떤 意味로 보아서 全 國民으로도 願할 줄로 아는 바입니다. 이 몇마디 말씀은 우리가 閉會式을 舉行하는 이 자리에 特別히 前途를 祝福한다는 뜻 뿐만 아니라 自己의 個人으로 여러분께 期待하고 矚望하는 바로서 또한 몇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자리에 서서 若干의 感想 나는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은 여러 同志들이 다 아시는 것이지만 이 不肖한 이 사람은 本國에 돌아온 以後로 變態奇型했을 망정 우리 國會의 前身이 되는 立法議院時代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보면 헛수로 세어 보아서 今年이 아홉해째 돌아오는 해입니다. 이 오랫동안을 議員이니 議長이니 하는 形態로서 여러분 同志들과 같이 내려온 이 때에 이 다음 5月 20日 選舉의 結果가 어떻게 될 것은 豫想하기 어렵지만 于先 이 때에는 아마 서로히 作別하는 우리이니 만큼 若干의 感想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가지가 또 다시 이야기할 餘地가 없이 가난하고 困亂하겠지만 주제에 넘치는 말이 될는지 몰라도 이 方面으로서 있는 精誠과 있는 努力을 조금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바쳐서 내려왔던 우리입니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告白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 자리에 또 모일는지 또는 이 자리에서 서로 만나는 것이 얼마 동안의 離別하는 形便으로 되어 질지는 모르지만 다만 나로서는 생각하기를 앞으로 우리의 오직 살 길은 民主主義 萬人이 自由스럽고 平等해서 자못 侵犯이나 不平矛盾이 없이 共榮共存해 나가는 우리의 살길은 오직 民主主義라는 것은

우리 同志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國號와, 우리 國策이, 우리 國憲이
作成되기를 民主主義로 되어 있는 만큼 모든 가지 一切는 오직 民主主義路
線으로 가야 될 것만은 또 다시 말씀드릴 必要가 없읍니다마는 오늘 總選舉
特別히 우리 民主主義의 基本되는 選舉에 있어서는 오직 民主主義로 自由雰
圍氣가 保障되어서 나가기를 主張할 뿐만 아니라 期待하고 또한 鬪爭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 國會의 閉會式하는 이 마당에 議長으로 式辭를 말씀하는
끝에 感想으로 한 마디를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健康과
成就가 한 때에 아울러서 여러분께 다 와주기 懇切히 바라고 믿며 이 簡單
한 몇 마디 말씀으로 閉會式辭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檀紀 4287年 5月 1日

民議院議長 申 翼 熙

